

2007

11-1351000-000038-10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7

가

가



따뜻한 사회,
보건복지가족부가
함께합니다.

www.mw.go.kr

11-1351000-000038-10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7

가



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답답



가 가 2007

2008

『2007

가 』

, 가 . ,

() 가 () 가

가

가 .

2007

4

가

, , ,

,

,

(CDA)

, 40 , 66

가

2008

‘ , ’ .

,

,

.

,

가가

.

,



답 답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007

가

』가

가

가

2008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 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제 1 장	기본시책 방향	3
1	가	3
2	2007 가	7
	Ⅰ.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7
	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강화	9
	Ⅲ.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	11
제 2 장	중점 추진시책	13
1	13
	Ⅰ.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화	13
	Ⅱ.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16
	Ⅲ. 일을 통한 적극적 탈 빈곤 정책 추진	17
	Ⅳ.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20
	Ⅴ.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	21

Contents

2	22
	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22
	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29
3	34
	Ⅰ.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34
	Ⅱ.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38
	Ⅲ. 한방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보건산업으로 육성.....	41
4	45
	Ⅰ. 범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의 생활화.....	45
	Ⅱ.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강화.....	49
	Ⅲ. 전염병 및 만성병에 대한 국가예방·관리체계 확립.....	53
	Ⅳ. 국가 암 관리 체계의 확립.....	56
	Ⅴ. 국민정신건강의 증진.....	62
5	66
	Ⅰ.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66
	Ⅱ. 국민연금 신뢰제고.....	73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제 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81
1			81
	I.	제도 개요	81
	II.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86
2			89
	I.	제도 개요	89
	II.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93
3			94
	I.	제도 개요	94
	II.	주요 내용	98
	III.	기초의료보장 현황	107
	IV.	기초의료보장의 내실화	109
4			114
	I.	제도 개요	114
	II.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115

Contents

제 4 장 사회복지서비스 125

1	125
I. 복지정책의 현 좌표와 정책환경의 변화	125
II.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127
III.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방향	128
IV. 추진 성	
. / u	



VII.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203
VIII. 노인 주거복지 증진	207
IX.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208
X.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213
XI. 경로효친 및 효 문화 확산	215
XII. 장사제도	218
4	223
I. 개요	223
II.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증진	225
III. 아동청소년의 활동지원	237
IV. 아동청소년교류증진	246
V. 아동청소년 복지체계 확충	257
VI. 청소년 상담활동	264
VII.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275
VIII.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290
IX.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300
5	313
I. 제도 개요	313
II.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315
III. 보육서비스 공급 활성화	318
IV. 보육시설 및 보육취약계층 지원강화	321
V. 보육서비스 질 제고	325
VI.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329

Contents

6	330
I.	개 요	330
II.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340
III.	장애인 소득보장	346
IV.	장애인 직업재활	348
V.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351
7	358
I.	노숙인·폭방거주자 지원 대책	358
II.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361
III.	의사상자 예우	364
8	367
I.	추진 배경	367
II.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05~'09) 추진 현황	368
III.	향후 계획	372

제 5 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373

1	373
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73
II.	지방이양사업의 정착 및 내실화	376
III.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382
IV.	사회복지관의 지원 및 육성	388



2		391
	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및 육성	391
	II.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394
	III. 기부식품제공사업(Food Bank)	396
	IV.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실시	398
3		400
	I. 보건복지콜센터 운영배경	400
	II.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상담현황	401
	III. 고객중심의 콜센터 운영추진	404
	IV. 향후과제	406
제 6 장 건강보험		407
1		407
	I. 개 요	407
	II.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제도 운영	412
	III.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417
	IV.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422
2		425
	I. 건강보험 수가관리	425
	II.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 체계의 발전	429
	III. 건강보험 정보화사업(EDI)	434

Contents

3	436
I.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436
II.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440
III.	보험약제 사후관리	442
4	444
I.	요양기관 사후관리	444
II.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448
III.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관리	451
IV.	건강보험 심판청구	453

제7장 국민연금 457

1	457
I.	적용 대상	458
II.	연금급여	459
III.	사회보장협정	464
2	467
I.	개 요	467
II.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 : 2007	470
III.	국민연금기금 관리 · 운용 : 2007	472



IV. 국민연금기금의 3대 정책과제	481
V. 국민연금 재정계산 : 2008	486
3	487
I. 전 국민 연금제도의 정착	487
II. 연금급여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491

제 8 장 보건의료정책 **493**

1	493
I. 개 요	493
II.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499
III. 의료의 질 관리	501
IV.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508
2	522
I.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522
II.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제도 적정관리	529
III.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532
IV.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지원	534
3	547
I.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547
II.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554

Contents

Ⅲ.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560
Ⅳ.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563
Ⅴ.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제도 운영	568

4

574

Ⅰ. 혈액사업 현황	574
Ⅱ. 혈액관리 정책	578
Ⅲ. 혈액사업 추진방향	583

5

584

Ⅰ. 개 요	584
Ⅱ. 장기이식 관리체계	585
Ⅲ. 장기의 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	586
Ⅳ. 장기이식 관련기관	590
Ⅴ. 장기이식 관리업무 운영방향	593

제9장 보건산업 육성사업 595

1

595

Ⅰ. 보건산업 육성	595
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602
Ⅲ. 보건의료 정보화 및 u-Healthcare 활성화	605
Ⅳ. 생명윤리 인프라 구축	609



2		617
제10장 의약품 · 식품정책 623		
1		623
	I. 의약품 정책의 기본 방향	623
	II.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626
	III. 의약품 등의 공급 · 유통체계 개선	630
2		634
	I. 식품환경의 변화	634
	II. 식품위생 관련 제도 개선	635
	III. 식품정책 방향	640
	IV.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	644
제11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649		
1		649
	I. 개 요	649
	II. 범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의 생활화	651
	III. 국민건강 교육 · 홍보	655
	IV.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강화	656

Contents

V. 국민건강영양관리의 실천 등	663
VI.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 기초 연구	665
VII. 질병의 조기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668
2	676
I. 개 요	676
II. 모성건강관리 강화	677
III. 영유아 장애예방 및 미숙아 관리체계 강화	680
IV. 불임부부 지원사업	683
3	684
I. 급성전염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684
II. 전염병 감시	692
III. 예방접종 관리	699
IV. 결핵 관리	704
V. HIV/AIDS 및 성병 관리	709
VI. 한센병 관리	717
VII. 검역 관리	721
4	726
I. 공중위생관리법 연혁	726
II. 공중위생업소 현황	731
III.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관리·운영	732



5	· ()	736
	I. 개요	736
	II. 만성질환의 특성 및 현황	737
	III.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740
	IV.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743
6		746
	I. 개요	746
	II. 국가 암 관리사업	748
	III.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763
7		769
	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	770
	II.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772
	III.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773
	IV.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여건 개선	776
	V.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779
8		782
	I. 개요	782
	II. 구강보건정책	784
	III. 치과의료정책	791

Contents

제12장 한방정책 793

1 21 793

2 795

Ⅰ. 개 요 795

Ⅱ. 한의약 육성 추진 796

Ⅲ. 한방의료 자원 797

Ⅳ. 한방 공공보건사업 799

Ⅴ. 한의학의 국제 교류 802

3 805

Ⅰ. 개 요 805

Ⅱ. 한약 규격화 제도 805

Ⅲ. 한약유통실명제 추진 807

Ⅳ.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 808

4 810

Ⅰ. 개 요 810

Ⅱ. 한방산업 육성 811

Ⅲ.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 812

Ⅳ.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 815



제 13 장 정책혁신 817

1	가	817
2		821
	Ⅰ. 추진 배경	821
	Ⅱ. 규제개혁 추진 현황	822
3		827
	Ⅰ. 설치 목적	827
	Ⅱ. 회의 운영 실적	827
	Ⅲ. 향후 운영 방안	830

제 14 장 정책홍보 관리 831

1		831
	Ⅰ. 정책홍보의 방향	831
	Ⅱ. 주요 정책홍보 추진현황 및 분석	832
	Ⅲ. 향후 추진계획	835
2	가	836
	Ⅰ. 통계관리 체계	836
	Ⅱ.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	836
	Ⅲ. OECD 통계 생산 및 관리	840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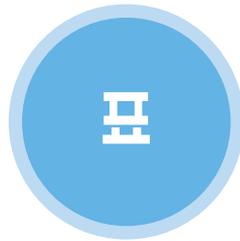
3	843
I.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843
II.	식·의약품분야 정보화	845
III.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846
IV.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848
V.	보건복지 행정분야 정보화	850
VI.	보육 및 가족분야 정보화	851
VII.	청소년분야 정보화	853
VIII.	정보화 평가	853
4	856
I.	중요성	856
II.	국제협력사업	857
III.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867
IV.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68
5	870
I.	국제통상 개관	870
II.	WTO/DDA 협상	872
III.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878



제3부 부 록

제 1 장	보건복지 조직 · 기능 및 정원현황	893
1	2007	893
2	.	897
3		901
4		902
5		908
제 2 장	예산 현황	909
1	2007	909
2		911
제 3 장	보건복지가족 관계법령 제정 · 개정 현황	912
1	가	912
2	.	914
3	.	926
4	.	935
제 4 장	주요 유관법인 현황	948

Contents



차례

< 1-2-1>	22
< 1-2-2>	27
< 1-2-3>	29
< 1-2-4>	가	30
< 1-2-5>	45
< 1-2-6>	50
< 1-2-7>	68
< 1-2-8>	2008	70
< 1-2-9>	72
< 2-3-1>	2007 가	83
< 2-3-2>	83
< 2-3-3>	86
< 2-3-4>	2007 가	98
< 2-3-5>	2007	100
< 2-3-6>	2007	102
< 2-3-7>	103
< 2-3-8>	가	104
< 2-3-9>	106
< 2-3-10>	107
< 2-3-11>	108
< 2-3-12>	109



< 2-3-13>		111
< 2-3-14>		111
< 2-3-15>		112
< 2-3-16>	65	113
< 2-3-17>		116
< 2-3-18>		117
< 2-3-19>	5	118
< 2-4-1>	가	139
< 2-4-2>	가	140
< 2-4-3>	가	142
< 2-4-4>	가	142
< 2-4-5>	가	143
< 2-4-6>	가	143
< 2-4-7>	가	144
< 2-4-8>	2007 가	145
< 2-4-9>	가	146
< 2-4-10>	2007 가	147
< 2-4-11>	2007 가	148
< 2-4-12>		가	149
< 2-4-13>	2007	149
< 2-4-14>	150
< 2-4-15>		150
< 2-4-16>		151
< 2-4-17>		151
< 2-4-18>		가	151
< 2-4-19>		154

Contents

< 2-4-20>	154
< 2-4-21>	18	156
< 2-4-22>	가 :	156
< 2-4-23>	158
< 2-4-24>	2007 가	159
< 2-4-25>	2007	162
< 2-4-26>	164
< 2-4-27>	164
< 2-4-28>	2007	165
< 2-4-29>	2007 가	166
< 2-4-30>	2007	167
< 2-4-31>	172
< 2-4-32>	172
< 2-4-33>	가	174
< 2-4-34>	가	174
< 2-4-35>	175
< 2-4-36>	2008	179
< 2-4-37>	202
< 2-4-38>	가	205
< 2-4-39>	5	206
< 2-4-40>	207
< 2-4-41>	208
< 2-4-42>	2007	210
< 2-4-43>	2007	210
< 2-4-44>	211
< 2-4-45>	212



- < 2-4-46>
- < 2-4-47>
- < 2-4-48>
- < 2-4-49>
- < 2-4-50>
- < 2-4-51>
- < 2-4-5P>
- < 2-4-™3>
- < 2-4-™s>
- < 2-4-—>
- < 2-4-—6>
- < 2-4-57>
- < 2-4-58>
- < 2-4-5 >
- < 2-4-〔0>
- < 2-4-〔1>
- < 2-4-〔P>
- < 2-4- '3>
- < 2-4- 's>
- < 2-4- 『—>
- < 2-4- 『6>
- < 2-4-〔7>
- < 2-4-〔8>
- < 2-4-〔 >
- < 2-4- 0>
- < 2-4- 1>

	가	213
		216
		217
		220
		231
	· ½ 厚	
	麥績 厚車 是	233
	ヴ 遂 ; 分 車	
	小 巢 鉸	236
	麩 閨 2 眞 ½ ㄱ	
	遂 籤 止 銀 奇 車 翁	
	· 慧 遂 車	
	麥績 · 屬 基 連 魯	
	222w9 胥	ヴ 韜 絨 屬
	旱 子	
	黍 質	2r
	絛 畏† 岑	
	絛 i	2r7
	222w	
	豈 · 黃 殿 絛	
	222w	黍 i 多 2 q
	222w	小 2™k
	222w	隨 子 絛™ 王
	豕 峇 擬	2™

Contents

< 2-4-72>	259
< 2-4-73>	가	260
< 2-4-74>	262
< 2-4-75>	263
< 2-4-76>	CYS - Net	265
< 2-4-77>	CYS - Net	265
< 2-4-78>	1388	266
< 2-4-79>	Help Call 1388	267
< 2-4-80>	269
< 2-4-81>	269
< 2-4-82>	270
< 2-4-83>	271
< 2-4-84>	271
< 2-4-85>	(2007)	272
< 2-4-86>	2007 . . . ()	273
< 2-4-87>	2007	274
< 2-4-88>	(182)	278
< 2-4-89>	D/B ()	279
< 2-4-90>	283
< 2-4-91>	285
< 2-4-92>	289
< 2-4-93>	291
< 2-4-94>	(2007)	291
< 2-4-95>	가 . . . ()	292
< 2-4-96>	293
< 2-4-97>	293



< 2-4-98>	가	295
< 2-4-99>	3~5	296
< 2-4-100>		297
< 2-4-101>		300
< 2-4-102>		301
< 2-4-103>		301
< 2-4-104>		302
< 2-4-105>		302
< 2-4-106>		303
< 2-4-107>		303
< 2-4-108>		303
< 2-4-109>		307
< 2-4-110>		309
< 2-4-111>		309
< 2-4-112>		312
< 2-4-113>		314
< 2-4-114>		316
< 2-4-115>	가	317
< 2-4-116>	5	317
< 2-4-117>		318
< 2-4-118>		319
< 2-4-119>		(2005~2007)	320
< 2-4-120>		(2006~2007)	321
< 2-4-121>		321
< 2-4-122>		322
< 2-4-123>	가	326

Contents

< 2-4-124>	327
< 2-4-125>	336
< 2-4-126>	가 (2005)	337
< 2-4-127>	338
< 2-4-128>	340
< 2-4-129>	(.)	344
< 2-4-130>	349
< 2-4-131>	349
< 2-4-132>	350
< 2-4-133>	353
< 2-4-134>	354
< 2-4-135>	355
< 2-4-136>	357
< 2-4-137>	359
< 2-4-138>	360
< 2-4-139>	2007	361
< 2-4-140>	366
< 2-4-141>	371
< 2-5-1>	375
< 2-5-2>	(2005)	377
< 2-5-3>	가	379
< 2-5-4>	379
< 2-5-5>	0.11%p	380
< 2-5-6>	381
< 2-5-7>	가	384
< 2-5-8>	13 (群)	385



< 2-5-9>	390
< 2-5-10>		390
< 2-5-11>		390
< 2-5-12>		392
< 2-5-13>		(2007.12.1~2008.1.31)	392
< 2-5-14>	2007	393
< 2-5-15>		395
< 2-5-16>	395
< 2-5-17>	396
< 2-5-18>		(2004~2007)	397
< 2-5-19>		399
< 2-5-20>		401
< 2-6-1>		407
< 2-6-2>		409
< 2-6-3>		411
< 2-6-4>	가	413
< 2-6-5>	가	413
< 2-6-6>		414
< 2-6-7>		415
< 2-6-8>		415
< 2-6-9>		419
< 2-6-10>		420
< 2-6-11>	가	427
< 2-6-12>	가	가	428
< 2-6-13>		가	436
< 2-6-14>		가	438

Contents

< 2-6-15>	가 가	439
< 2-6-16>	가	443
< 2-6-17>	()	445
< 2-6-18>	가	448
< 2-6-19>		452
< 2-6-20>	()	455
< 2-6-21>	()	456
< 2-7-1>	가	458
< 2-7-2>		461
< 2-7-3>	2007 가 ()	463
< 2-7-4>	가	464
< 2-7-5>		468
< 2-7-6>		472
< 2-7-7>		473
< 2-7-8>		475
< 2-7-9>	(가)	476
< 2-7-10>		477
< 2-7-11>	:	478
< 2-7-12>		479
< 2-7-13>		480
< 2-7-14>		480
< 2-7-15>	(08~ 12)	482
< 2-8-1>		496
< 2-8-2>		496
< 2-8-3>	GDP (2004)	500
< 2-8-4>	가	514



< 2-8-5>		516
< 2-8-6>	2007	가 520
< 2-8-7>		2008 523
< 2-8-8>		523
< 2-8-9>		524
< 2-8-10>		525
< 2-8-11>		526
< 2-8-12>		가 529
< 2-8-13>		가 (2007 ~2008) 530
< 2-8-14>		(2007) 532
< 2-8-15>		537
< 2-8-16>		538
< 2-8-17>		539
< 2-8-18>		542
< 2-8-19>		가 (2004) 542
< 2-8-20>	119	(2007) 544
< 2-8-21>		OECD 가 548
< 2-8-22>		(가) 548
< 2-8-23>		549
< 2-8-24>		OECD 가 549
< 2-8-25>		550
< 2-8-26>		557
< 2-8-27>		560
< 2-8-28>		561
< 2-8-29>		2007 562
< 2-8-30>		() 562

Contents

< 2-8-31>	.	570
< 2-8-32>	.	571
< 2-8-33>	.	576
< 2-8-34>	.	581
< 2-8-35>	.	586
< 2-8-36>	.	588
< 2-8-37>	.	590
< 2-8-38>	.	594
< 2-9-1>	2007	603
< 2-10-1>	.	626
< 2-10-2>	.	636
< 2-10-3>	.	642
< 2-10-4>	.가	646
< 2-10-5>	.	646
< 2-10-6>	.	646
< 2-10-7>	.	647
< 2-10-8>	.	648
< 2-10-9>	.	648
< 2-11-1>	.	652
< 2-11-2>	.	653
< 2-11-3>	.	653
< 2-11-4>	.	654
< 2-11-5>	.	657
< 2-11-6>	.	659
< 2-11-7>	.	662
< 2-11-8>	.	664



< 2-11-9>		(1 1)	664
< 2-11-10>	4		667
< 2-11-11>			681
< 2-11-12>			681
< 2-11-13>			687
< 2-11-14>			692
< 2-11-15>		1	693
< 2-11-16>		2	694
< 2-11-17>			695
< 2-11-18>			696
< 2-11-19>			696
< 2-11-20>			698
< 2-11-21>	3		700
< 2-11-22>			701
< 2-11-23>	B		701
< 2-11-24>	3		702
< 2-11-25>	3	가	702
< 2-11-26>			703
< 2-11-27>		(Tuberculosis Prevalence Rate)	705
< 2-11-28>	BCG		706
< 2-11-29>	HIV/AIDS	()	710
< 2-11-30>			711
< 2-11-31>			712
< 2-11-32>			713
< 2-11-33>			715
< 2-11-34>			715

Contents

< 2-11-35>	715
< 2-11-36>	718
< 2-11-37>	2008	719
< 2-11-38>	721
< 2-11-39>	732
< 2-11-40>	2006	732
< 2-11-41>	738
< 2-11-42>	739
< 2-11-43>	739
< 2-11-44>	740
< 2-11-45>	742
< 2-11-46>	744
< 2-11-47>	745
< 2-11-48>	10	747
< 2-11-49>	748
< 2-11-50>	DB	751
< 2-11-51>	753
< 2-11-52>	6 . . . 5	754
< 2-11-53>	4 (1999~2002)	754
< 2-11-54>	2007 가	756
< 2-11-55>	5	756
< 2-11-56>	가	757
< 2-11-57>	759
< 2-11-58>	760
< 2-11-59>	763
< 2-11-60>	765



< 2-11-61>	778
< 2-11-62>	779
< 2-11-63>	779
< 2-11-64>	12	783
< 2-11-65>	OECD 가 12	783
< 2-11-66>	2010	785
< 2-11-67>	791
< 2-12-1>	797
< 2-12-2>	799
< 2-12-3>	812
< 2-12-4>	2010	813
< 2-13-1>	823
< 2-13-2>	2007	824
< 2-14-1>	가 (2008.7)	838
< 2-14-2>	OECD	841
< 2-14-3>	가 가	854
< 2-14-4>	857
< 2-14-5>	WHO	859
< 2-14-6>	WHO	860
< 2-14-7>	WHO	860
< 2-14-8>	867
< 2-14-9>	가	872
< 2-14-10>	가	874
< 2-14-11>	()	886
< 3-2-1>	2007	909
< 3-2-2>	2007 ()	910
< 3-2-3>	911

Contents

그림 차례

[2-3-1]	84
[2-3-2]	95
[2-3-3]	103
[2-3-4]	105
[2-3-5]	106
[2-3-6]	112
[2-3-7]	112
[2-3-8]	116
[2-4-1]	126
[2-4-2]	129
[2-4-3]	131
[2-4-4]	4	132
[2-4-5]	133
[2-4-6]	1 가	137
[2-4-7]	183
[2-4-8]	243
[2-4-9]	(CYS - Net)	264
[2-4-10]	272
[2-4-11]	280
[2-4-12]	「」	298



A large light blue rectangular area with a folded top-right corner, containing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Contents

[2-10-1]	(2006)	647
[2-11-1]	666
[2-11-2]	669
[2-11-3]	722
[2-11-4]	723
[2-11-5]	723
[2-11-6]	724
[2-11-7]	761
[2-14-1]	가	845
[2-14-2]	848
[2-14-3]	851
[2-14-4]	852
[2-14-5]	, 가,	855
[2-14-6]	WHO	860
[2-14-7]	866



제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기본시책 방향 - 제1장

중점 추진시책 - 제2장

제 1 장

기본시책 방향*

제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제 1 절

보건복지가족 정책비전 및 성과

1.

(2004~2008)

2007

가

“ ”

90

가

가

가

*집필자 : 기획조정담당관 이형훈

“ ”

2007

-

-

-

-

-

-

-

가가

가

가

2.

가

2007

「 21 - 」

/

가

가

가

가

(05), 5

(06),

72 (10)

‘ Health 2010 ’

R&D

가

LPG



2007년 보건복지가족 정책 방향

제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2003

, 21

, 2007 가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97

가

가

2007

2008

07

5%

07

1.

1

06 3

77 2 (04)
(03)

07

(Micro-Credit)

08 가(3)

. 2007

(07.7.23) 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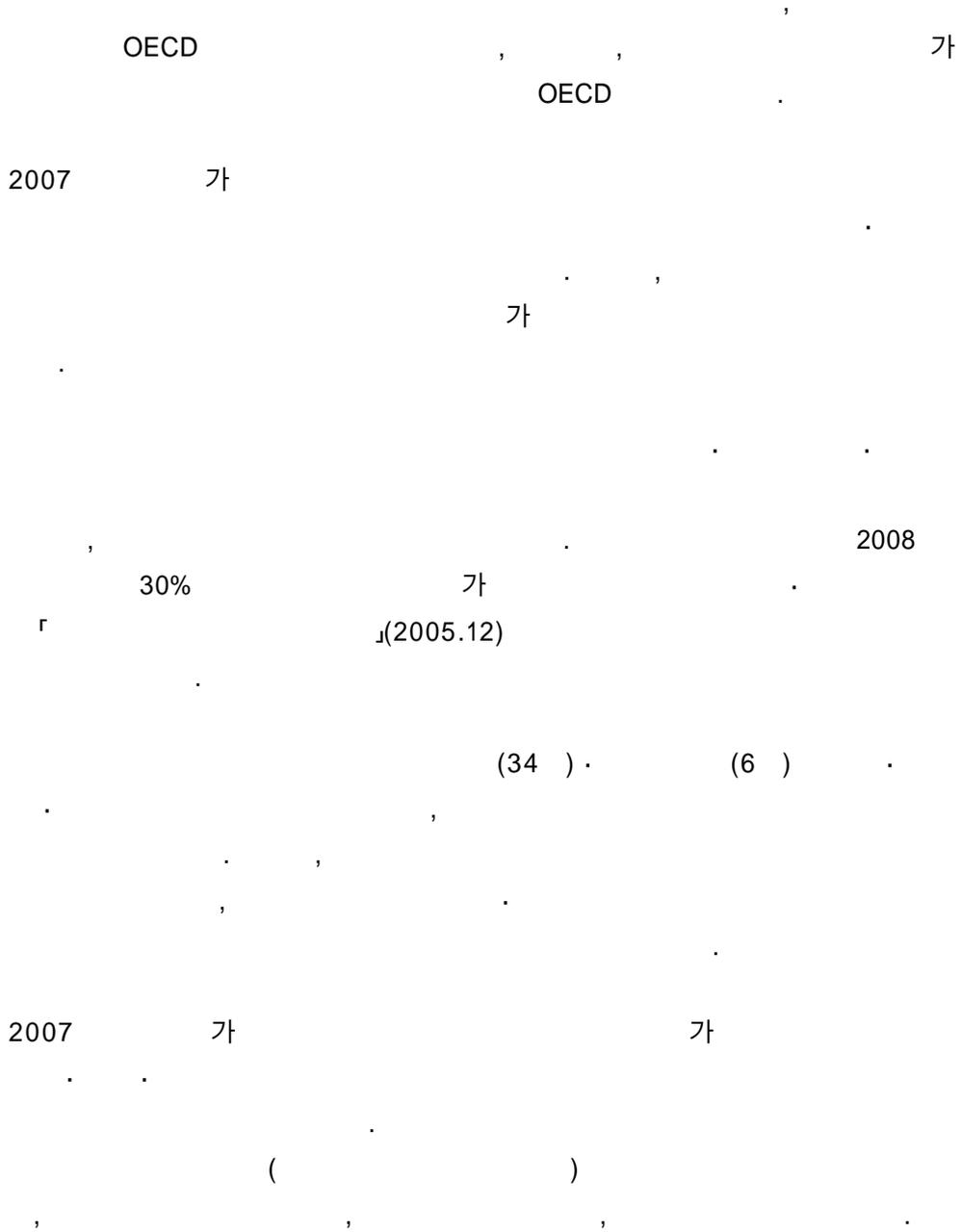
(07 339 , 10,059),

. 2007 21 ‘ 가 ’

가

2008 129

II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강화



07 40 66

6

가 08.3.21 ‘ ’

09 3 .

, 가 (05),

(06) 07 (03), .

(07.5)

, 가

, 가,

가 , 07

2004 61.3%

2005 6 “ ”

. 07 , (6 3

6 2)

가 가가 2007

Targeting

60% , 5
08 7
, 가
가
가 .
() .

제 2 장

중점 추진시책

제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제 1 절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적극적 탈 빈곤 정책 추진

I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화*

1.

2007 3

가

2.

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것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005 12 2007 1

1

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권 부여

가 ,

가 가

2007 1

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 All or Nothing ”

2006 12	2007 7
---------	--------

3.

2007 가 가	가 가 ,
가 가	, 6,733가 (17,431)
, 3,396가 (7,519)	

4.

2007	2~3
------	-----

II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1.

가 가

2005 12
2006 3 24 가
2007 2

2.

가 , 가
가 , ,
가 .

8

가

1

*집필자 :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효원

4 (2).

3.

2007

130% 150%

. 2

가

가

III 일을 통한 적극적 탈 빈곤 정책 추진*

1.

2000 10

가

*집필자 : 자립지원투자과장 김영선

2.

가.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120%) 가 , 04

, 06

, 07

()

나.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

가
가

가

가

가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가 .

(Micro-credit)

라.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가

(Micro-credit) , 2008 3 가

3.

가 . ,

IV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1.

1977년, 가가) 가가
 가 .
 가 , 2000 10
 가 2001 5
 , , .

2.

2004년 2 (20% 15%),
 (2 30 30 20), (6
 1 30 5 , 2
 120)

3.

가
 , 2003
 (2003 5 28 . .)
 가

*집필자 : 기초의료보장과장 정윤순

가
 2006 234 . . 1 2004 51 , 2005 150 ,
 , 2008 60 가 , 2007 205 가 .

V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

가
 2007 339
 10,059
 162
 가, ,
 , , 가
 , 2007 ,
 , 가, 가

*집필자 : 장애인소득보장과장 김수영

I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1.

연도	가	가	가
2018	1.08	18	2005
2026	(14%)	(20%)	가
2028	115 / 39	73 / 21	24 / 12
2030	18		

※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예

가, ,
가,
가
가
가

2. 1 .

2005 9 「 . 」 「 . 」
()가 . 2005 12 가 .
2006 8 ‘ 2010 ’ ‘ 1
(2006~2010) ’ .
‘ , ’ ‘ 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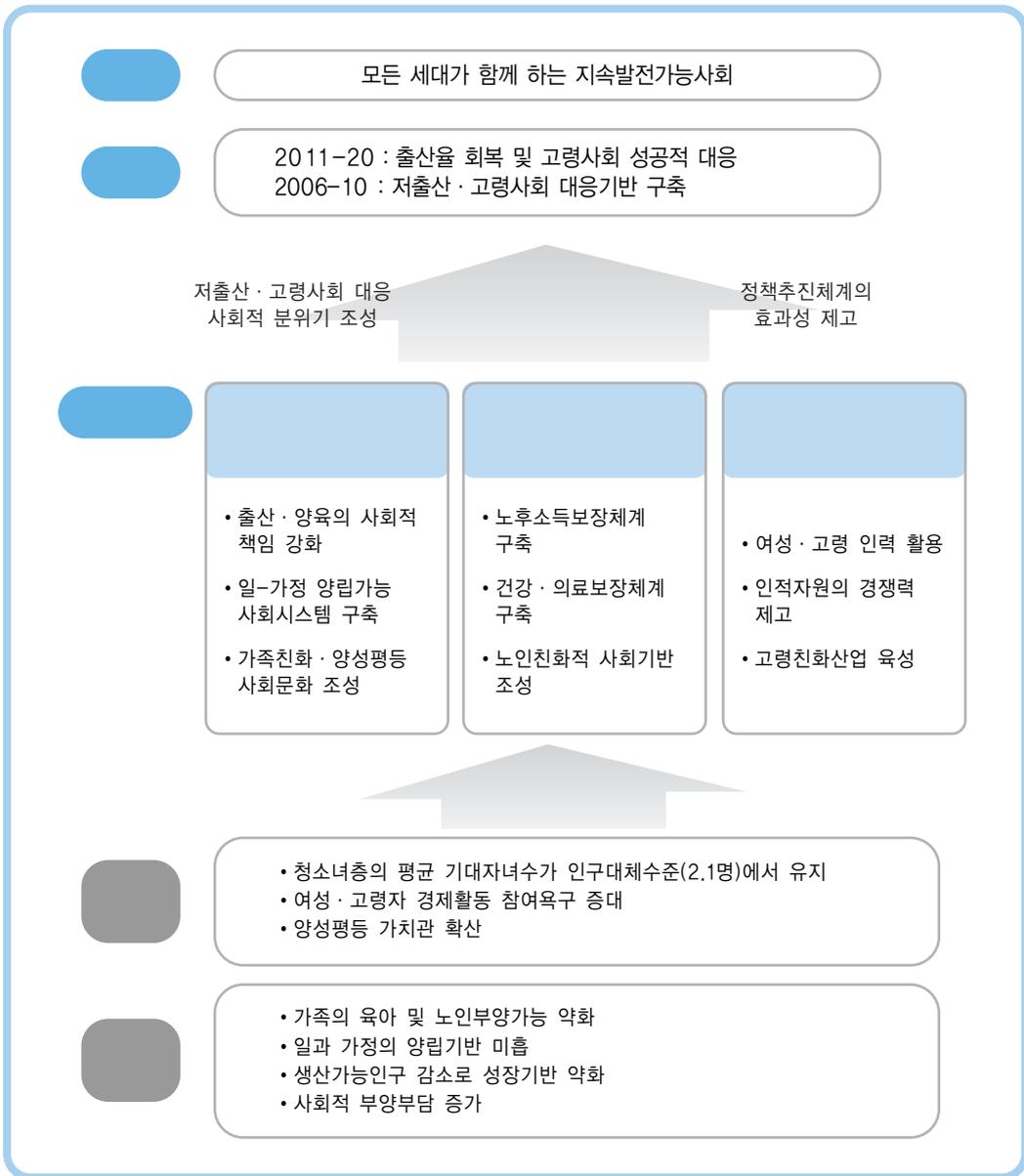
「 . 」
‘ 1 (2010) ’ 242
가 2006 , 2007 .
가 가
2008 .
가 , ‘ , ’ ,
2008 ‘ 1 , .

가. 비전 2020 및 정책목표

가 . 5 .
1 (2006~2010) . ,

2 (2011~2015)
(2016~2020) OECD 가

, 3



1
가

나. 정책추진 방향

가

다. 주요내용

1 (2006 ~2010)
32.1 3
242

. . . 3 , . ,
 , 가 , , , ,
 가 , 가 가 가,
 . , ' , ' , ,
 . , 가
 , 가
 . 가
 . , 2008 7 가
 . (universal design)
 , 가
 . , .
 ' , , ,
 .
 1 (06.8)
 (06 4.5 07 5.9 08
 8.9).

가 2008 1.8

〈표 1-2-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조 원)

구 분	'05	'06~'10								
		계	'06		'07		'08		'09	'10
			계획	확정	계획	확정	계획	확정		
계	2.4	32.1	3.7	4.5	5.7	5.9	7.1	8.9	7.3	8.2
저 출 산	1.1	18.9	2.1	2.1	3.2	3.0	4.0	3.9	4.6	5.0
고 령 화	0.7	7.2	0.8	1.3	1.3	1.6	1.8	3.7	1.4	1.9
성장동력	0.7	6.0	0.8	1.1	1.2	1.3	1.3	1.4	1.3	1.4

라. 향후계획

가 가 가

3. . 가

가. 평가 기본 방향

‘ . ’ 16 .
 가 .
 . 가
 가
 , 2007 2006 .
 가 (07.8.~12.). 18 16 . ,
 2006 3 204 가 . 가 .
 . 5 가 . 가

나. 추진 계획

2007 가 , 2008 .
 가 . 2007 가
 .
 가 가
 가 . 가 .
 2008 8 ,

II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1.

가 , 가
1983 , 2001 * 1.3

〈표 1-2-3〉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단위 : 천명, %)

구 분	198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생아수	859	729	721	696	678	643	616	637	557	495	493	476	438	451	497
합계출산율	2.42	1.67	1.65	1.58	1.54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1.13	1.26

※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08. 2)

가 , 2004
가 가 ,
(20~34) , 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자녀수

〈표 1-2-4〉 가임여성 인구

(단위 : 천명)

	1970 (A)	1980	1990 (B)	2000 (C)	2006	2007 (D)	증 감		
							(D-A)	(D-B)	(D-C)
가임여성 (15~49)	7,437	9,959	12,128	13,716	13,615	13,579	6,142	1,451	△137
주출산연령 (20~34)	3,491	4,708	6,220	6,300	5,774	5,622	2,131	△598	△678
20~24	1,254	2,015	2,105	1,914	1,741	1,634	380	△471	△280
25~29	1,129	1,488	2,104	2,193	1,933	1,958	829	△146	△235
30~34	1,108	1,205	2,011	2,193	2,100	2,030	922	19	△63

※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잠정결과(2008. 2)

2.

가 2018 4,934

,

.

가 가

,

가 ,

.

가

.

가

3. 2007

구분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TV, ,	천원	37.5													
07	천원														
TV, , , ,	천원	360													
가 PD , , ,	천원														
10 10	천원														
10	천원														

4.

가. 저출산 대응 지자체 인구시책 활성화 추진

가

가

232

2007

가

가

나. 학교인구교육 활성화 추진

가

가

가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I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1. 가

1977 12 1989

가

21

가

가

WTO/DDA

가

가

가

*집필자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강립

2.

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가

5 (05~09)

가

가

가

2005 12

2005

나. 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가

2003
 (04 300 , 05 200 , 06 100) ,
 2004 300
 가 .
 2006 2007 4
 가 .
 가 .
 , 1975 .

다. 인력·병상 등 보건자원의 적정 공급 및 질적 제고

2009 10% ,
 가 .
 가 .
 가 .

라.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WHO

3.

가. 제도 개선

2007

가

가

나. 응급의료 재정 확충

2003

50

500

, 2004

162 3

2006

다.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 구축

가

가

2003 6

2004 6

14

2004 9
16

2005 2

2005

45

2006

가

라. 해외재해 응급지원

2007

II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1.

가

*집필자 : 보건산업정책과장 송재찬

(NT) (IT), (BT),
가
가
M&A()

2.

(Health Industry)

4
가
60 70% 4 5
2007 97,629 R&D 8,200 (8.4%)
1 (Pfizer 8 6)
, 2006
10 , 89 10 2006
30 . 2005 200 14 ,
2006 12 59 ,
가

3.

가.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

2004 11 가
 ‘ 50 ’
 가 .
 2007 ‘ 50 ’
 . 50 , 가 ,
 , 가

나. 보건의료기술 R&D지원체계 개선

1995 128 2007 1,018 13
 8 가 . 가
 R&D .
 ,
 , 10 , 가 3
 ,
 R&D . . 가

다. 소결

가

III 한방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보건산업으로 육성*

1.

가. 한의약육성법 제정

2003년 8월 14일 제8회 대통령령 제21867호로 「한의약육성법」(이하 ‘한약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의약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의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한의약산업발전기금(이하 ‘한약육성기금’)을 설립한다. (6)
- 한의약산업발전기금의 출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 한의약산업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4)

가 가 가

나.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방산업발전법」(이하 ‘한방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방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방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방산업발전기금(이하 ‘한방산업기금’)을 설립한다. (6)
- 한방산업발전기금의 출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 한방산업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4)

가 가 가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WHO) 2050 50

가가

5 (, ,)

. 가 .

*집필자 : 한의약산업과장 박상표

2.

가가

5

R&D

가가

3.

가.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가 , 가

1999. 12. 15 「

12. 29

2007 49 가

8

2007 12

1,368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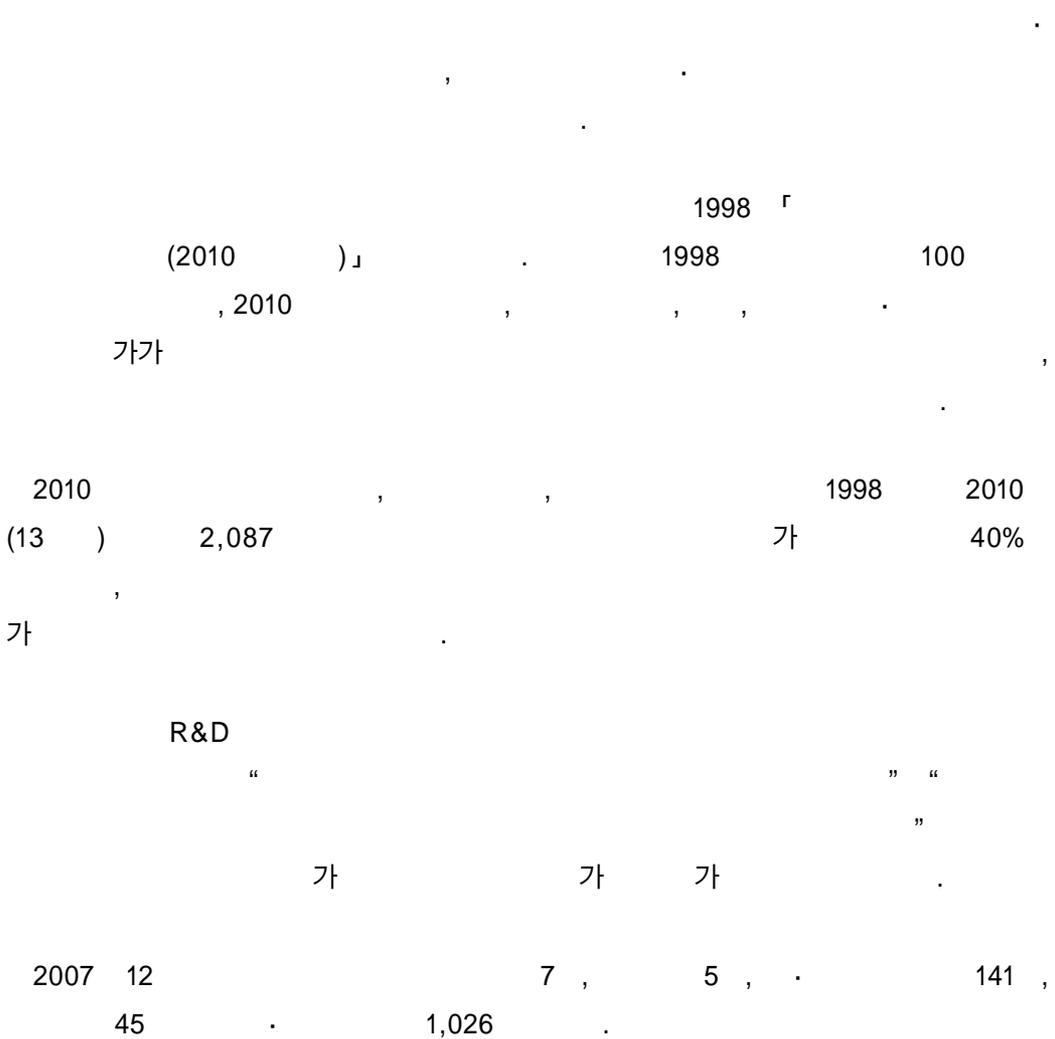
1996

, 1998

3

120

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



, 2007 9
(2008~2017)」

「 R&D .

(2008~2017)」

21 가

5

다. 고품질의 한약유통 추진

.가 . 가

가

가

가

(2006 155

2007 255),

제 4 절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사업의 강화

제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1. 범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의 생활화*

1.

1990 1995
가
(17.0%), (18.9%) (52.3%)

〈표 1-2-5〉 성인 흡연을 국제비교

(단위 : %)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호 주	18.9	16.5	17.7
캐 나 다	17.0	13.0	15.0
프 랑 스	28.0	19.0	23.0
미 국	19.0	15.1	17.0
일 본	46.9	13.2	29.4
한 국	52.3	5.8	28.9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6, 한국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임

1 29 OECD 19 (2003)
가
18 64 (Alcohol use disorder)
6.8% 221 (2001,).

*집필자 : 건강증진과장 신승일

가 , 20 가 1998
 26.3% 2005 31.5% 가 (, 25)
 가 .

2.

가 ,
 .
 1986 1
 “ ” , 1995 “
 ” .

4
 1 2002 (HP 2010) , 가
 2005 .
 1998 10 9 , 1999 9 가 가
 18 2001 6 3 , ,
 . 2002 10
 (, , ,) ,
 2003 100 , 2004 156 2005
 4 .

가 , 가
 , () , 가

3.

2007

“ ” 가

가

4.

2005

가

2008

“ ”

가

가

가

가

5. ()

가

가

가

2005~2006 1, 2

2007 13 20

, 11,162

6.

27 가

가

가

2004

2006

, 2007 40

66

「 」 6

「 」

가
가
「 1·2
가
09.3.22
08.3.21「
가
가
가

II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강화*

2006 44.1%(, 12)
(OECD) 가 , , ,
9 가
가
FCTC()
2007 (43.8%)
(20) 312

*집필자 : 건강증진과장 신승일

· · , 16 · · ,
 42% 297,509
 · 2010 30%
 · (< 1-2-6>) .

〈표 1-2-6〉 연도별 금연사업 예산의 분포

(단위 :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	665	646	1,825	4,283	7,814	6,703	8,002	25,961	31,502	31,195

※ 주 : 금액은 예산액 기준(국민건강보험지원 등은 제외)으로 지방비를 포함하지 않은 국비 기준임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해당년도

1.

가 , ,
 , () .
 , ,
 , ,
 가 , ,
 , , , ,
 , ,
 , ,
 , ,
 , 가 , ,
 , ,

2.

가 .

가 .

6 (, , , , ,) .

가 .

,

.

(,

, 2007) 가 가 88.6%가 .

3.

.

, ,

.

, (http://www.cleanschool.or.kr

) 가 ,

,

, 2007 가

.

118

2007 ‘

(Smoke - Free Hospital) , 46

『 』 ‘
 ,
 , .
 , ,
 , ,
 , .
 가
 7
 TV , 2007 『 』 2 (가
 ,) 『 』 3 (, 가 ,) ,
 .
 ‘ 가 ’ .

4. 가가

() (,) 6

2007 297,509 276,427 가
 , 4 221,015 (79.95%), 6
 200,558 (72.55%), 6 120,807 (43.66%)

140
 6 (35.5%) 3495 (53.8%), 12 2124 (41.3%), 6 7,853 903
 ()
 2007 12,183
 1 6

5.

가

가

WHO FCTC

2

58 WHO

III 전염병 및 만성병에 대한 국가예방·관리체계 확립*

1.

20

가

가.

가

가

*집필자 : 질병정책과장 정은경

가
,
,
가
.
,
, 2005
가 ^ 가
, 2006
-
,
07 5
.
,
“ ” (05. 7.)
,
, 가 가
, 가
, (WHO) (IHR)
, IHR

2.

가

2000	1,451	109	
2003	1,451	109	
2006	1,451	109	(06.6)
2007	1,451	109	(07.5)

가

3.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451)	가	2000	, 2001
(, , ,)	109		

가
 (01 4 02 6 03 8 04 11 05 71 06 89 07
 111) , 2007 111 . 21,000 391
 () . 3 5 ,
 20 30 .

가

IV 국가 암 관리 체계의 확립*

1. 가

1 27.0%가 .
 ,
 가 가
 , 가 .

2. 가

가 가
 . 1996 가 10 가 2005

*집필자 : 암정책과장 이민원

가 , 2006 2 10
 2015 가
 2003 2004 3 .
 ^ _ (2006.10.28) 2007 4 ^ _
 (2007.4.28) . ^ _ 가
 가 가
 가 .
 , , , 가
 , .
 ^ _ 가 .
 15 .
 가 , , ,
 가 , , ,
 가 , , ,
 가 , , ,
 , , ,
 , , , 가
 , , ,
 , , , 9 .

가 . .
,

가

가
가 .

3. . .

,
가 .

2006 10 10
가 ,
가 .

, . ,

, . 2005
8 가 .

4. 5

가 ,
. 1999 , ,

5 (, , , ,) 가 , 2002 가 , 2003 , 2004 가 , 2005 가 50% , 2006 . , 2007 가 가 63,000 가 52,500 가 3,9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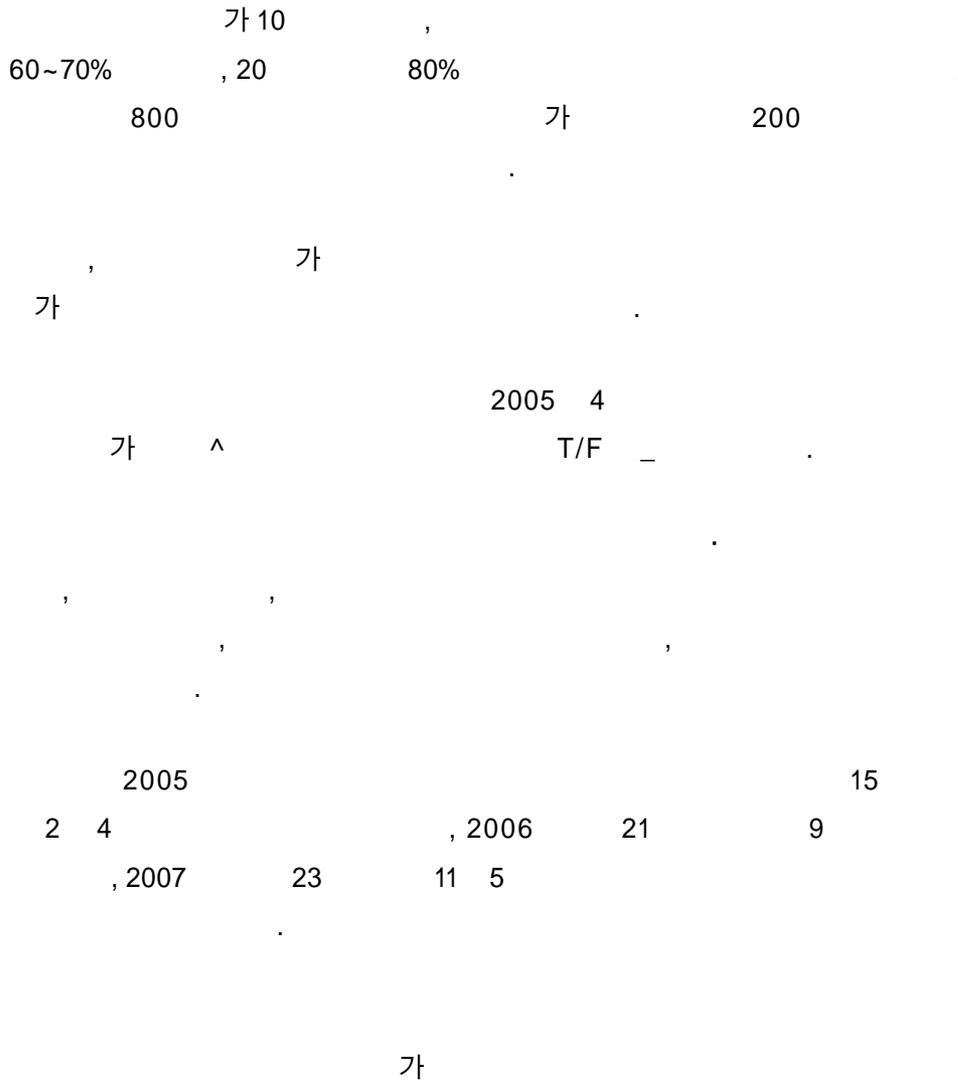
5.

18 . 18 . 70 80% , 가 . 02 ~ 04 . 가 1,663 25 . 2005 16 18 (0~17) , (C00~C97, D00~D09, D37~D48) () .

25 70
 1 2
 1 . , ,
 2006 . 300% 4 가
 351 1 9 8 2,046
 (5,203) , 2007 .
 300% 4 가 361 2
 2,407 (4,425) .
 , 18 .
 , , , 가 가
 가 .
 2005 18 .
 가 2007
 3 , 3
 1 20 1 2007
 29,806 (11,348) .
 , 가 63,000 ,
 가 52,500 3 1

6.

가
 . 1994 2007
 14 , 2010 20 .



제1부 기본시책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7.

가

, 가

가 , 가 ,

2004 , , , 2005 , ,

3 , 2006 , , 가 9

2006 가

가 , ,

가

가 , 가 가

V 국민정신건강의 증진*

1.

*집필자 : 정신건강정책과장 류지형

2008년 2010년 1월 1일 기준, 2007년 92, 59, 128, 2

2.

10 가

溪 芪苗 葱 醯 臙 鷄茶 並享 兩綈罰葭含

가 , ,

, ,

,

.

.

.

4.

.

2007 12

59

14

가

가

가

1,097

65

.

.

.

,

5.

. 2006

18

64

5.6%

179

,

,

GDP

2.9%

20

.

2006 8 29 가 “ 2010 ” ,
 , . . .
 .
 20 . 96 , 2010 18
 .
 6. 가
 .
 가
 , 2007
 .
 ,
 가 .

제 5 절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 신뢰 제고

I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1.

가 , 가

가

가 가

1996 , 가 , 가,

가 2001

4 1,978 가 가 ,

, 2001 5.31. 가 . .

2006 , ^

5 5 , -

가 , “ ” ^

-

*집필자 : 보험정책과장 임종규

2006
5 가
가
50%

〈표 1-2-7〉 연도별 건강보험재정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입(A)	78,491	86,923	95,29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8	252,697
지 출(B)	87,092	95,614	105,38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5	255,544
당기수지	△8,601	△8,691	△10,009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수지율(B/A)	110.9	110.0	110.6	120.7	105.5	93.6	91.6	94.2	100.3	101.1
누적수지	30,359	22,425	9,18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다. 재정안정대책의 상시적 추진

가
가
10% 5 가 2 가
5%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007 가 , 가 .

2001 가 , 가 .

3. 가. 추진 배경

3 1 4 1 가 .

가 , .

가 , .

2004 가 .

2004 7 2005 6 가 .

TF_ , 가 .

70% .

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표 1-2-8〉 20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 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보장율	64%	68%	70%	71.5%
(암환자)	(64.4%)	(70.1%)	(75%)	(76%)
(투입재정)	(1조5천억원)	(1조원)	(7천억원)	(5천억원)
집중지원 중증질환	3개 상병군	4개 상병군	7~8개 상병군	9~10개 상병군
개별비급여 보험적용	항암제 등	식대 초음파·PET	기준병실 확대	
보험료율 인상	2.38%	3.5% 이상	6% 이상	3.5% 이상

2008
2005
2006

2005 1 5 , 2006 1 , 2007 7 , 2008 5
2005 2.38%, 2006 3.5% , 2007 6% , 2008 3.5%

가 , , 가

20% 10%

가

, 6

, PET()

100

2006 6

〈표 1-2-9〉 건강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현황

- 2004. 1. 암환자, 62개 희귀질환자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 2004. 3. 감마나이트 수술
- 2004. 7. 진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실시
- 2005. 1. MRI 보험 적용,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정신질환외래 본인부담 경감(30~50% → 20%)
- 2005. 3. 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건강보험 적용기준 완화
- 2005. 4.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05. 6.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기간 연장(90일 → 180일)
- 2005. 9. 암 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법정본인부담 인하 20% → 10%)
- 2006. 1. 만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이식수술 건강보험 적용전환(간, 심장, 폐, 췌장), 특정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율 경감(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50% → 20%)
- 2006. 6. PET, 식대 건강보험 적용
- 2007. 6. 희귀난치성환자 외래경감확대(15개항목),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장애인임산부 진료 활성화,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
- 2007. 7.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확대(6개월 3백만원 → 6개월 2백만원)
- 2007. 8. 만6세미만 외래본인부담 경감(성인의 70%수준으로)
- 2007. 11. 영유아 건강검진 본인부담경감

가

20.7%

2006 6

, 2007 7

200

가

다. 보장성 강화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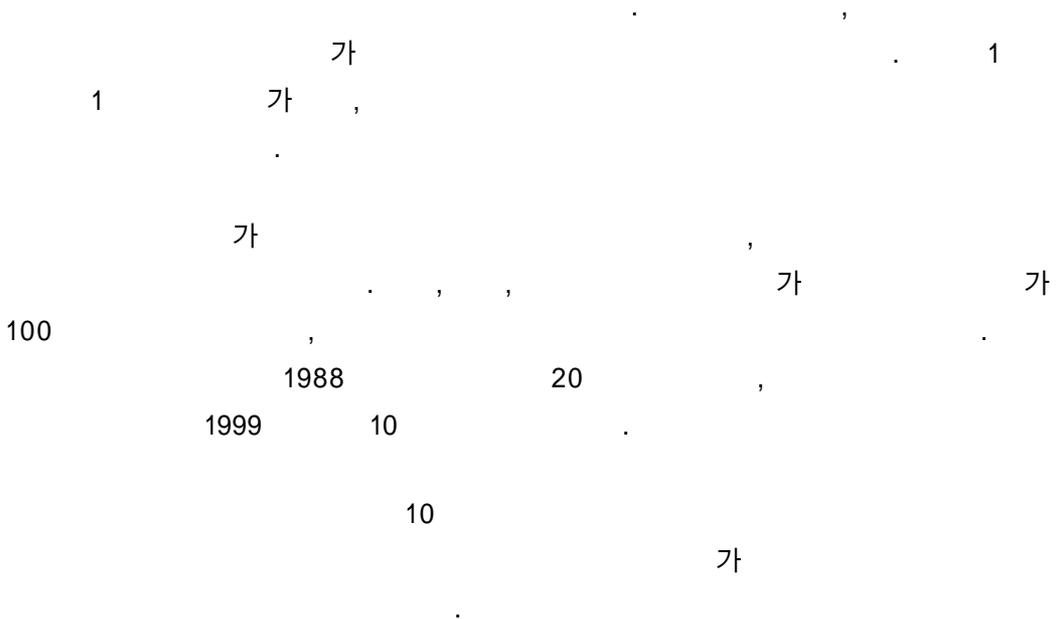
49.6%

2006

70.1% 20.5%p

73%

II 국민연금 신뢰제고*



*집필자 : 국민연금정책과장 고득영

가 가

1988 20

가 2004

2004 「 8 」

가 ‘ ’ 2003

가

2047

1

2000 가 , (1994

1999 .) 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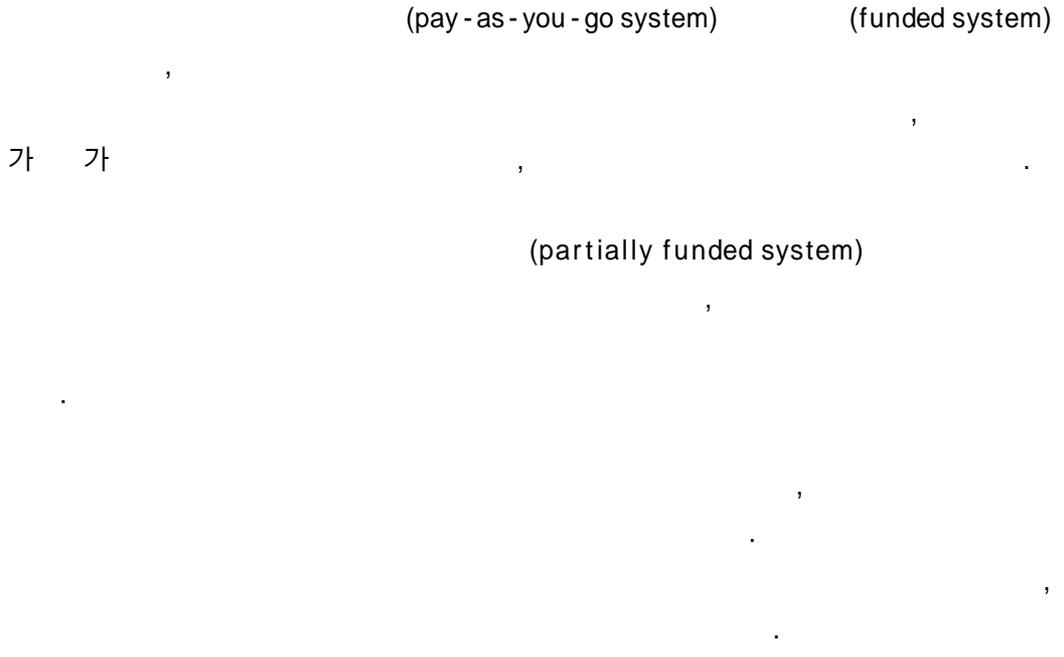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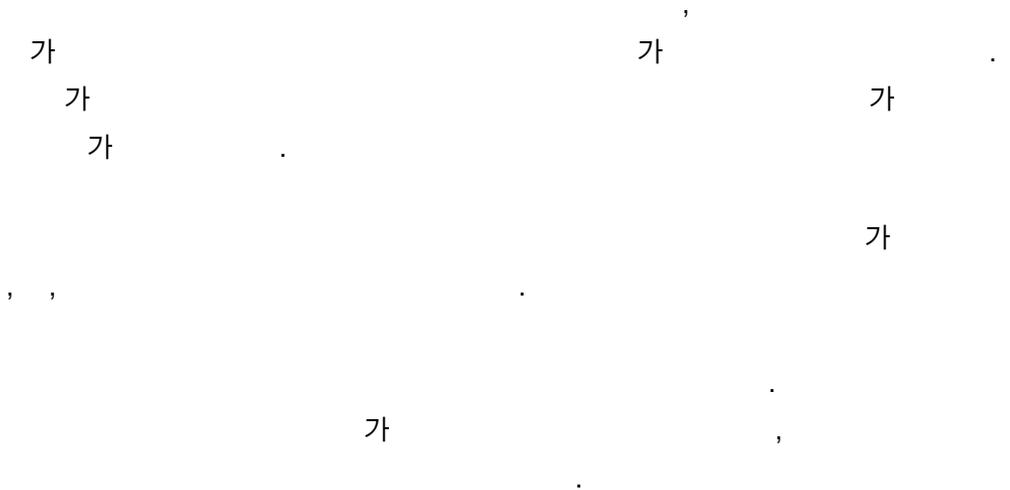
가. 연금수급 불안에 따른 불신

가

가



나. 국민연금 운영상의 불신



가 , 가 가 ;
 가 ‘ ’ , ‘ 가 ;
 가 가 가 ‘ ;
 가가 , ‘ ;

다. 공적 보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 부족

가 , 가 가 ;
 , 가 .
 가 .
 가 가 가 가 ;
 () 가 ;

2.

가. 연금수급불안 해소 대책

2003
 4 2007 7 3 2007 7 23 .

가
 가
 가 2060 50 가
 ,
 ,
 .

나. 국민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가 () 가
 .
 2004
 ,
 ,
 , 100 가
 .
 ,
 .

다. 제도의 인식제고·오해불식

,
 .
 ,
 .

가 , .
, .
, 4 (, .)
, .
가 , .
CSA , .

3.

, .
, .
, .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제 3 장

사회복지서비스 - 제 4 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 제 5 장

건강보험 - 제 6 장

국민연금 - 제 7 장

보건의료정책 - 제 8 장

보건산업 육성사업 - 제 9 장

의약품·식품정책 - 제10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 제11장

한방정책 - 제12장

정책혁신 - 제13장

정책홍보 관리 - 제14장

제 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I 제도 개요

가

가가

1.

1961

가

*집필자 :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호원

1997 . , 가 , , , 가
가 .

, 1998 45 가^ㅅ 가가
-

‘國民基礎生活保障法’ (1999. 9. 7) .

, 가, ‘ .
1 , 2000. 10. 1 .

2.

가 40 , 가
가가 .
가 .

, 가 .
가
가 .

, 가가 .

가

가

3.

가. 수급자 선정기준

가 가

, 가

〈표 2-3-1〉 2007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등)

〈표 2-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현황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0. 10	688,354	1,488,874	688,354	1,412,473	76,401
2002. 12	691,018	1,352,858	691,018	1,277,298	75,560
2003. 12	717,861	1,376,524	717,861	1,294,809	81,715
2004. 12	753,681	1,425,371	753,681	1,338,997	86,374
2005. 12	809,745	1,515,281	809,745	1,427,613	87,668
2006. 12	831,692	1,535,352	831,692	1,450,234	85,118
2007. 12	852,420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2002 12 가 가

가

[그림 2-3-1]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 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

* 승 용 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적용

나. 급여내용

3), , (3 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Moral Hazard)

가

가

가

가

가

1 (1)

〈표 2-3-3〉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 제도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생 활 보 호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19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재산 2,900만원(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대 상 자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급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 중고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동일
자활지원 계획	<p>〈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육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II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1.

가

, 가 .

가

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 , 가 , 가 가 . 가 가

가 ,

2005 12 2007 1

1 .

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권 부여

가 , 가 가

2007 1

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근거 마련

· · 7 가 ,
 “ All or Nothing ” , ,
 2006 12 2007 7

2.

2006 가 가 ,
 가 가 가 가
 , , , 3,396가 (7,519)
 , 6,733가 (17,431)

3.

가 ,
 2007 2~3 . .

제 2 절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I 제도 개요

가 , , , 가 , , .

1.

2004 12 5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호원

가

가

2005 3 12 23 , , , 2005 가
2006 3 24 가

2.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가

나. 단기지원 원칙

1 (1)
4 (2)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라.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마.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 . 가 .
가 .

3.

가 . 가 , 가 , ,
가
. 가
. 가 가 가 가
. 가
. 1 ()

4.

종 류	지 원 내 용
-----	---------

● ●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기 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4인가구 기준 1,001,424원 	1개월(최장 4개월)
그 밖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비 : 6만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 해산비 : 50만원(1회지원) • 장제비 : 50만원(1회지원) • 전기요금 : 50만원이내(1회지원) - 단전되어 1개월이상 경과된 때 	1개월(최장 4개월)
타제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차상위의료급여 등과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 없음

5.



6.

구 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건수(건)	24,932	2,921	21,273	252	23	463
지원인원수(명)	30,176	7,349	21,273	559	33	962
지원금액(백만원)	30,381	1,812	28,417	46	4	102

※ 2007년도 긴급복지지원 현황(2007.12.월말 기준)

II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2

1.

2007 12
130% 150%

2.

120 3가

가

2007 12

3.



기초의료보장제도*

I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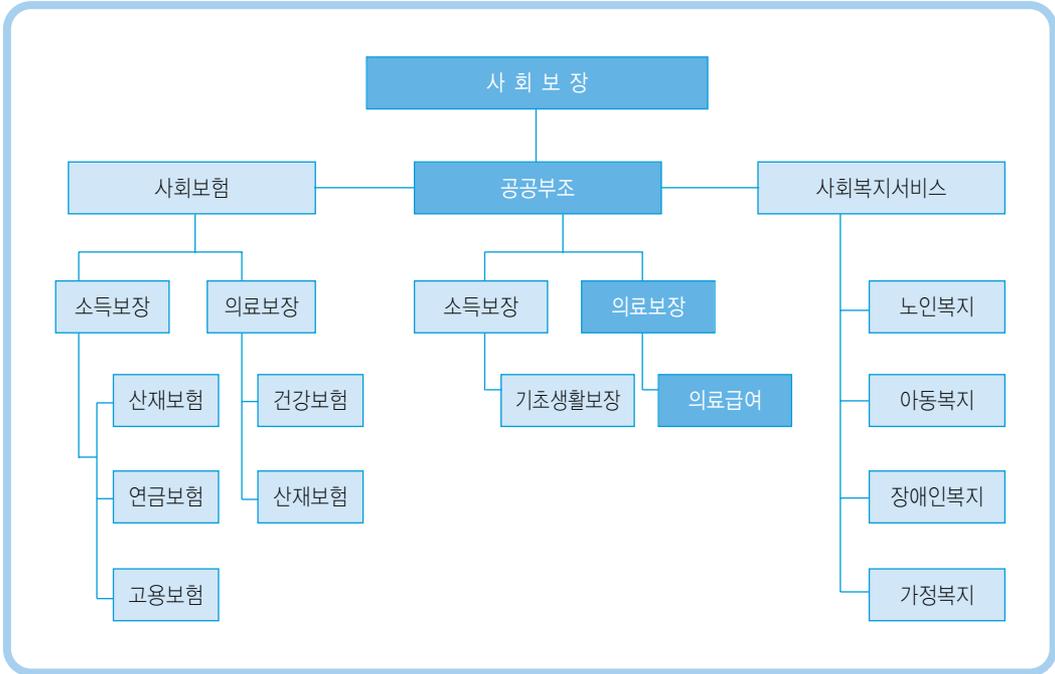
1.

가

가

*집필자 : 기초의료보장과장 정윤순

[그림 2-3-2] 의료급여 사업



2.

1977

가

가

1995 180
 210 ,65 , 가
 240 (1996), 270 (1997),
 300 (1998), 330 (1999) 가 2000

가 2002 1
 가
 365 , 가 가
 가 가
 , 11 30 가 , 가
 , 120

가
 , 1998
 , 1999

가 가
 가
 가 . 1998
 가 가 50%
 , 2000 11 75%

2004
 20% 15% , 30 30
 20

2004 7 6
120

2005 4 , 가
2004 74 2005 98 , 2006 107

, 2000 2001 가
가 , .

, 2003 5

가

2004 5 , 가, ,

가 가

가
 2006 7 「
 2007 7 1

II 주요 내용

1.

가
 가 (18)
 (means test)

가. 소득 및 재산기준

가 , 가
 (가 +)
 가 .
 가 가 가 120% 가
 , 18

〈표 2-3-4〉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 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최저생계비(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차상위기준(월)	523,105	881,294	1,167,439	1,446,642	1,686,494	1,931,556

가 가
 가 (가) , 가
 3,800 (9,500), 3,100 (7,750),
 2,900 (7,250) .
 4.17%, 6.26%,
 100%가 .

나. 부양의무자 기준

(1) 가 ,
 * ,
 .
 가 가 ,
 , .

*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130% 미만」이고,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42배 이상
-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소득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300% 이상

다. 수급권자 유형

1 2
 . 1 2
 1 , 2 .

〈표 2-3-5〉 2007년도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기준

구 분	수 급 권 자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북한이탈주민 • 18세 미만 국내입양아동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

1 가 가

(18 , 65 , .

가 가 가 . ,

) 18 가 가

가 . 2 (18 65),

18 .

가 , , (가 , ,)

가

1 .

2.

가 , , , , , , , .

, . , . , , , , .

가
 (1.2)

1, (20%)

1, 1,000, 2
 1,500, 3, 2,000, 500

, 2, , 1
 1,000, 500, 1, , 2
 3, 15%

, , 15%
 2, 가, 20

가
 50%, , 1, 30, 2, , 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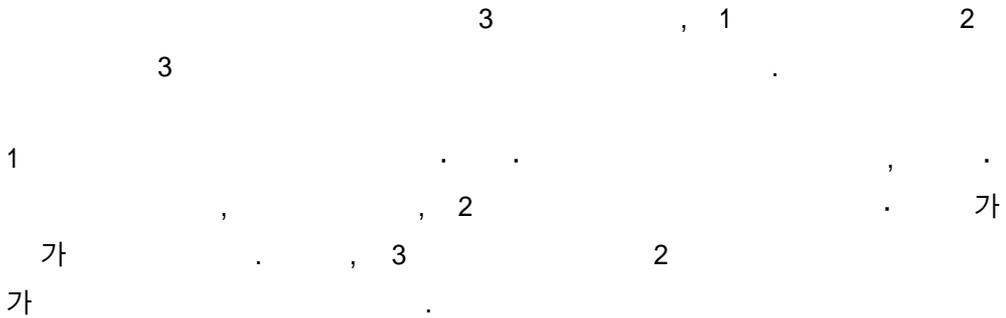
20, 가

, 1, 30, 5, , 2, 6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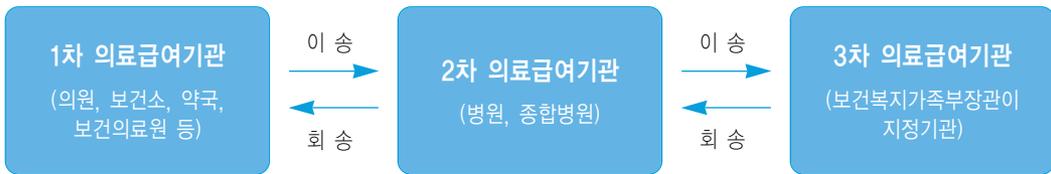
〈표 2-3-6〉 2007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기준

구 분		본 인 부 담 금
1 종	외 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 없음 • 1차의료급여기관 1,000원 • 2차의료급여기관 1,500원 • 3차의료급여기관 2,000원 • PET, MRI, CT 등 : 급여비용의 5%
	입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단, 입원식대비용 1식 680원 부담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및 행려환자 제외)
	약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전당 500원(처방전 없이 약국 직접 조제시 900원)
2 종	외 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 없음 • 1차의료급여기관 : 1,000원 • 2차의료급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1,000원 그 이외의 질환은 진료비의 1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만성질환자(의료급여수거기준및일반기준 제1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외래진료,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 대사장애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4. 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5.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간이식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 치료제 포함)를 투여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의료급여기관 : 15% • PET, MRI, CT 등 : 급여비용의 15%
	입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진료(암등 중증질환은 10% 부담) : 15% - 단, 입원식대비용 1식 680원 부담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및 행려환자 제외)
	약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전당 500원(처방전 없이 약국 직접 조제시 900원)

3.



[그림 2-3-3] 의료급여 진료절차 체계도



[표 2-3-7]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의료급여기관	진료범위
1 차	<p>가.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p> <p>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p> <p>다. 질병상태·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p> <p>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p> <p>마.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p> <p>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의 진료</p> <p><약 국></p> <p>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p> <p>나.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p>

의료급여기관	진 료 범 위
2 차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의료급여절차 예외의 경우)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다.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의 진료
3 차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의료급여절차 예외의 경우)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다.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4. 가

가 가 100%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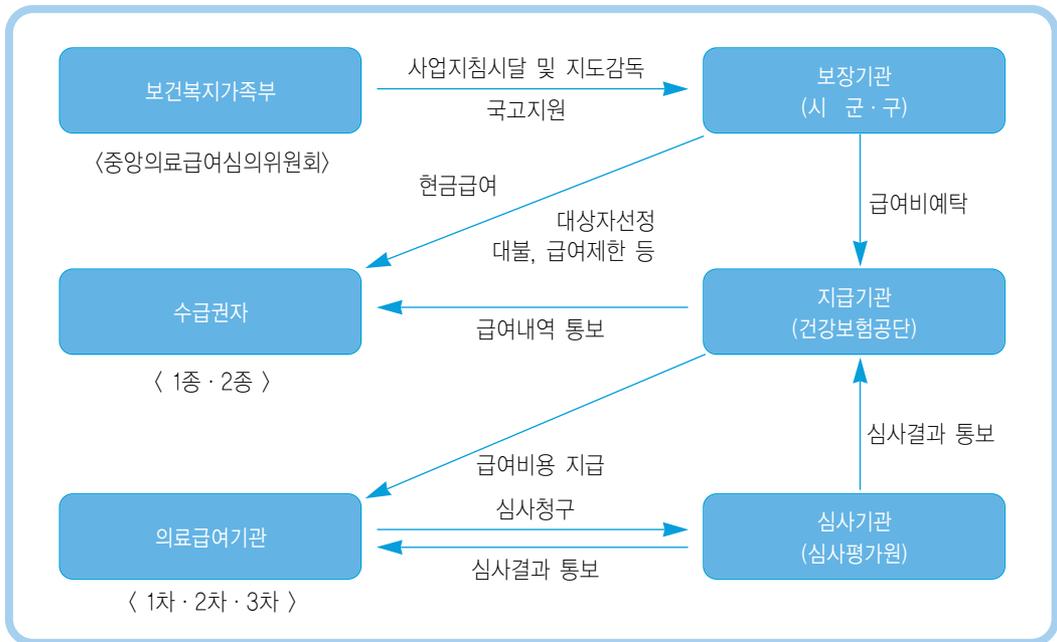
〈표 2-3-8〉 의료급여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구 분	3차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의료급여가산율	22%	18%	15%	11%
건강보험가산율	30%	25%	20%	15%

5.

, 가 가 , 가

[그림 2-3-4]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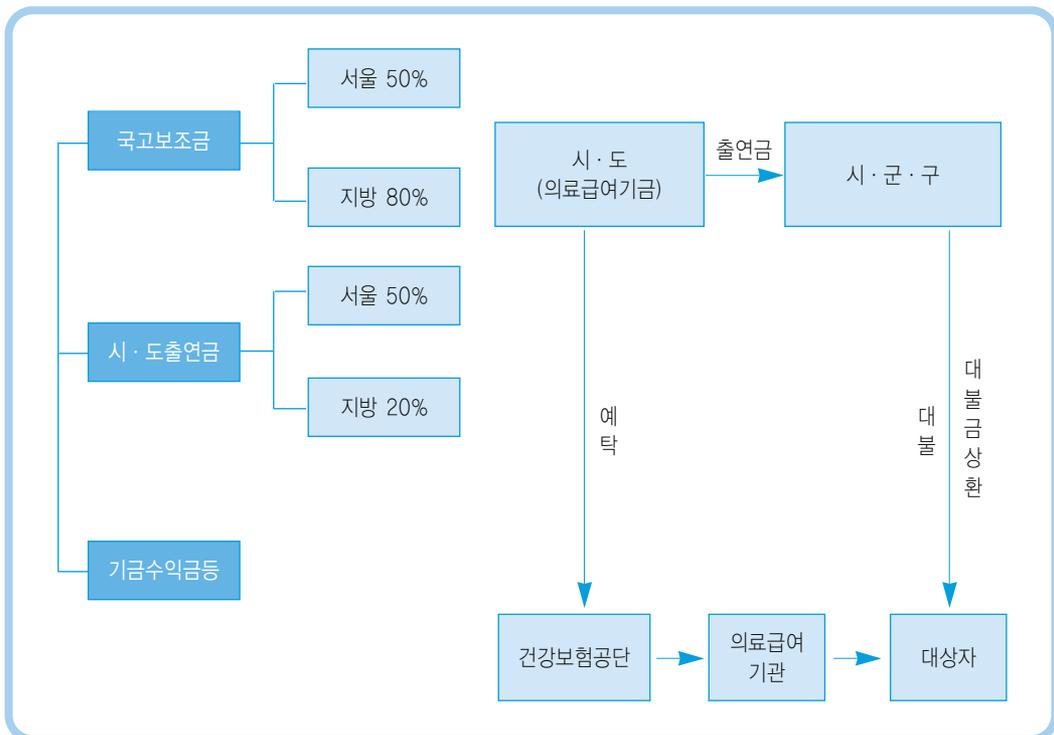
50%, 80%

6%, 4%

〈표 2-3-9〉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구 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자치구	시	자치구	도	시	군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국비	50%		80%		80%		
합계	100%		100%		100%		

〔그림 2-3-5〕 기금조성 및 운용체계



III 기초의료보장 현황

1.

2002 142 가
 , 2005 176 , 2006 183 , 2007
 185 .

〈표 2-3-10〉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 추이

(단위 : 명,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수급자	증가율	수급자	증가율	수급자	증가율	수급자	증가율	수급자	증가율	
계	1,453,786	2.3	1,528,843	5.2	1,761,565	15.2	1,828,627	3.8	1,852,714	1.3	
1종	소 계	867,305	4.6	919,181	6.0	996,449	8.4	1,028,536	3.2	1,062,236	3.3
	기초생활	690,766	4.5	729,537	5.6	793,508	8.8	822,484	3.7	850,760	3.4
	사회복지시설	81,715	3.3	86,374	5.7	87,668	1.5	85,118	-2.9	86,655	1.8
	국가유공자	80,584	6.0	83,999	4.2	85,287	1.5	85,214	-0.1	84,332	-1.0
	북한이탈자	2,994	12.9	4,481	49.7	5,158	15.1	6,335	22.8	7,933	25.2
	인간문화재	425	10.4	434	2.1	410	-5.5	317	-22.7	312	-1.6
	광주민주화	9,221	1.2	9,342	1.3	9,322	-0.2	9,281	-0.4	9,249	-0.3
	이재민	1,172	305.5	20	-98.3	561	2,705.0	59	-89.5	13	-78.0
	의사상자	428	-1.6	525	22.7	574	9.3	732	27.5	791	8.1
	군입대자	-	-	-	-	-	-	-	-	1,988	-
	차상위	-	-	4,469	-	13,258	196.7	17,773	34.1	17,989	1.2
	입양아동	-	-	-	-	703	-	1,223	74.0	2,241	82.2
	2종	소 계	586,481	-0.9	609,662	4.0	765,116	25.5	800,091	4.6	790,451
기초생활		586,481	-0.9	596,639	1.7	630,792	5.7	617,016	-2.2	596,391	-3.3
군입대자		-	-	-	-	-	-	-	-	4,012	-
차상위		-	-	13,023	-	47,378	263.8	70,063	47.9	73,182	4.5
12세미만		-	-	-	-	86,946	-	113,012	30.0	116,866	3.4

2.

2002 20,313 2006 39,251 , 2007
 42,238 가 , 가 2005 23.8%, 2006 21.4%, 2007
 7.6% .

가 2006 , 가 ,
 (MRI) 가 , .
 가 , 가 .
 가 2006
 가 ,
 가 .

〈표 2-3-11〉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지급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진료비	22,149	9.0	26,111	17.9	32,337	23.8	39,251	21.4	42,238	7.6
1종	18,059	11.5	21,556	19.4	26,219	21.6	31,180	18.9	33,510	7.5
2종	4,089	-0.7	4,556	11.4	6,117	34.3	8,071	31.9	8,728	8.1

3.

2002 22,119 2006 34,885 ,
 2007 46,753 .
 , 2002
 2003
 가,
 가 2004 . 2006
 8,570 , 가 2007 3,738

〈표 2-3-12〉 의료급여예산 및 미지급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 산 액	22,119	23,073	24,631	29,057	34,885	46,753
국 비	16,901	17,612	18,807	22,145	26,621	35,927
지 방 비	5,218	5,461	5,824	6,912	8,264	11,234
미지급액 (국고)	902 (722)	239 (166)	1,069 (823)	4,255 (3,277)	8,570 (6,599)	3,738 (2,878)

IV 기초의료보장의 내실화

1.

가 (PET)

6 10% 98

107

가 2

가

3

3

2.

가 가

가

가

232

3.

가, 20,313
) 가 , 2002
 4 2006 39,251 2
 2004 ~2006 21% 가 , 2007
 18,229 50%(9,148)가 가
 (2007 3,738
)
 가 가
 가 가

가 2006 1 ~2 (2006 1 ~3)
 18.6% , 가
 8.13% 가 (1.5%) .

〈표 2-3-1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현황

구 분	중복일수	대상건	중복건수	점유율(%)	중복비율(%)	중복일수
전 체	소계	2,683,141	497,623	100.00	18.6	1,680,822
	3일이하		417,885	83.98		
	4일이상		79,738	16.02		

※ 주 : 2006. 1월과 2월 진료월 중복처방 비교(2006. 1~3월 심결기준)

〈표 2-3-14〉 병용금지 의약품 처방 현황

보험자	연령구분	대상자수	병 용 금 기		
			건 수	수진자수	수진자비율(%)
건강보험	계	1,000	326	15	1.50
	65세 이상	531	37	2	0.38
	65세 미만	469	289	13	2.77
의료급여	계	1,008	1,218	82	8.13
	65세 이상	450	571	41	9.11
	65세 미만	558	647	41	7.35

※ 주 : 1) 06년 1월~3월 진료분 병용금지 발생건수
 2) 각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투약일수 상위자(건강보험 1,000명, 의료급여 1,008명)에 대한 병용금지 의약품 처방현황임.
 3) 동일날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다수의 원외처방전 투약내역을 투약일자별로 병합한 결과 투약일자별로 발생한 병용금지 건수(처방전별 병용금기는 미발생)

가 2006 7
 「 」 ,
 가 .
 , 2006

, 2007 7 1 6,000

〈표 2-3-15〉 수급권자 본인부담 수준

구 분	의원급	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	CT, MRI, PET	약 국	입 원
1 종	1,000원	1,500원	2,000원	5%	500원	없 음
2 종	1,000원	15%	15%	15%	500원	15%

〔그림 2-3-6〕 종전 급여일수 파악 기간



〔그림 2-3-7〕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급여일수 관리



2004 ~ 2006 21% 가 2007 7.6%
 , 42,238 .
 가, 가 ,
 25%
 가 .

〈표 2-3-16〉 65세 이상 수급권자 수 및 진료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전체수급자수	1,528,843	1,761,565	1,828,627	1,852,714
65세이상 수급자수 (비중)	415,346 (27.2%)	452,480 (25.7%)	469,152 (25.7%)	486,055 (26.2%)
총진료비	26,111	32,337	39,251	42,238
65세이상 총진료비 (비중)	9,943 (38.1%)	12,427 (38.4%)	15,255 (38.9%)	16,291 (38.6%)



자활지원사업*

I 제도 개요

2000 10

가

,

.

. .

. 가 . .

가

,

.

.

. .

,

,

.

.

**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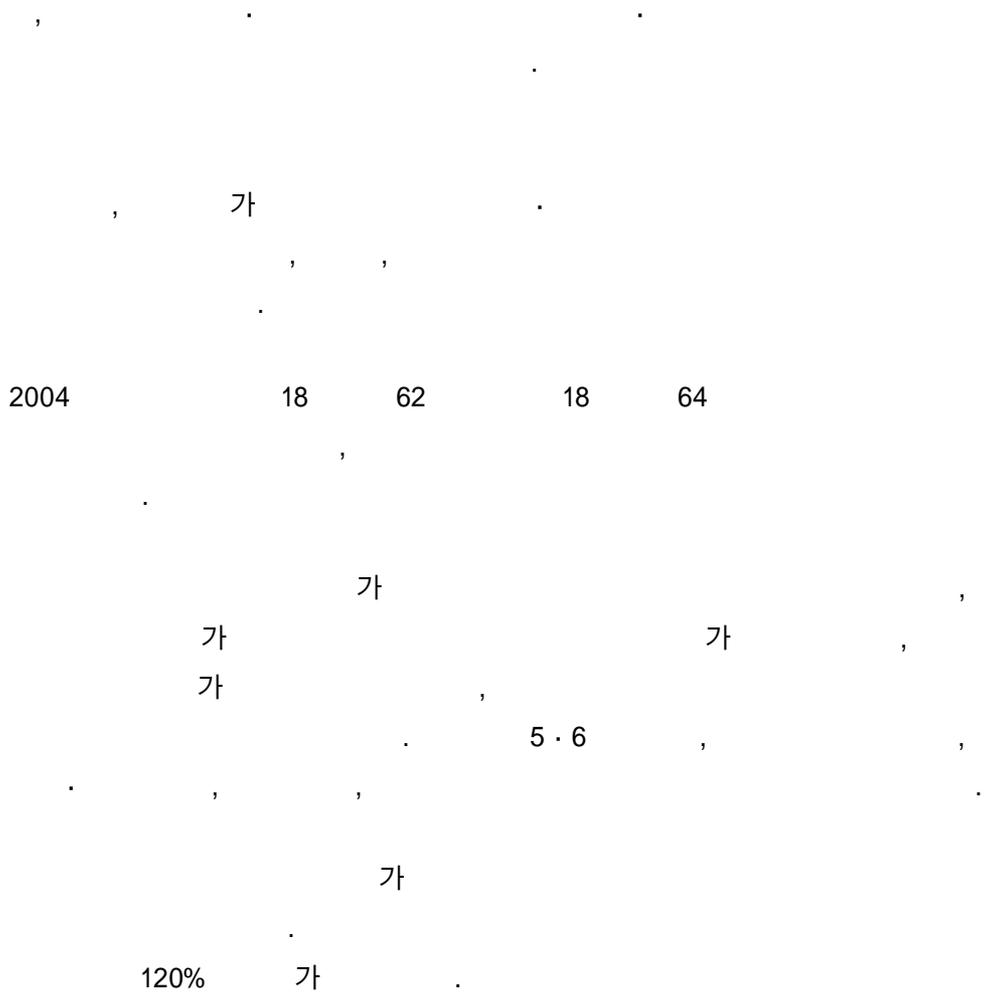
*집필자 : 자립지원투자과장 김영선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06.12)

II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1.

가. 자활사업대상자 확대와 관리강화



〈표 2-3-17〉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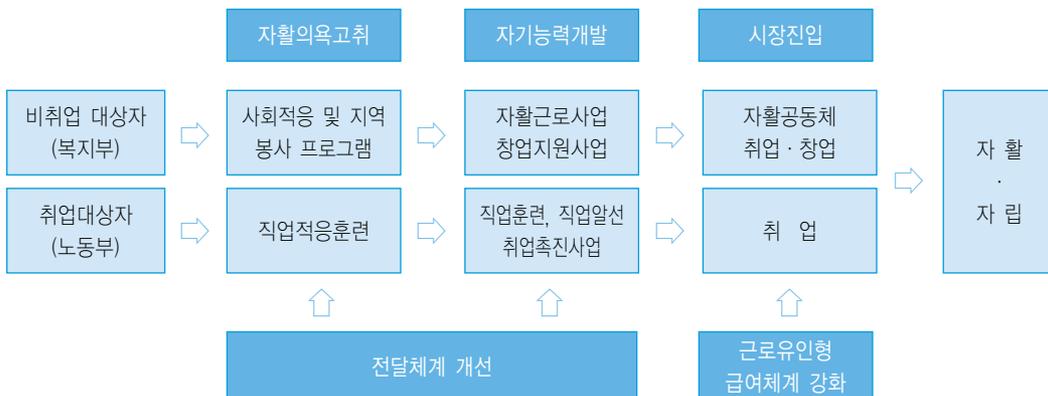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계	수 급 자			차상위계층 (희망참여자)	
		소 계	조건부 수급자 (의무참여자)	자활특례자 및일반수급자 (희망참여자)		
2006	12월말현재	61,297	41,902	33,918	7,984	19,395
	누 계	86,796	60,105	47,907	12,198	26,691
2007	12월말현재	60,025	41,080	33,612	7,468	18,945
	누 계	87,282	60,258	48,289	11,969	27,024

※ 누계는 자활사업 연간 실 참여인원 임

나. 다양한 자활사업프로그램 실시

〔그림 2-3-8〕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표 2-3-18〉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계 (A+B)	복 지 부(시·군·구 자활프로그램)								노동부 (B)	비 고
		소계 (A)	자활 공동체	자 활 근 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소계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 유지형	인턴형 등			
2007 12월말	60	58	5	48	7	18	23	0	5	2	-
조건부 수급자	34	32	1	27	3	9	15	0	4	2	
차상위 계층 등	26	26	4	21	4	9	8	0	1	0	자활특례, 일반수급 자 포함

(1) 비 취업대상자 프로그램(보건복지가족부)

(가)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2007년 12월말 기준,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사업에 참여한 자활사업자 수는 5천 8백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다. 지역봉사 사업은 5천 명, 사회적응프로그램은 8백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와 4.0% 증가하였다.

(나) 자활근로사업

가

2003년 5월 2007년 48

〈표 2-3-19〉 5대 표준화 자활사업 추진현황 (2007.12.31. 현재)

구 분	계	집수리	간 병	청 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단수	1,468	350	468	400	224	26
참여자(명)	14,867	1,961	5,915	4,336	2,496	159

(다) 자활공동체

2007년 817 842 5.2 , 1 가 가

(2) 취업대상자 프로그램(노동부)

가

가

다. 자활사업 추진기반 강화

(1) 민간부문 자활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1996	20	209	242
	, 2003	, 2005	
	28		

2004 3 ()
 , ,) 2006
 2007

(2) 창업지원사업

(가) 자활기금 설치·운영

18
 가 , , ,
 ,
 . 2007 1,850

(나) 생업자금융자 사업

가 12 , 20 ,
 3%, 5 5
 . 2007 (2007 4 ~ 2008 3) 가 512가
 72

(다) 무담보 소액대출(Micro-credit)
 (Micro-credit)

2
 2% , 1 4 , . 2005

2007 140 20 , ,

(3)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가 ,
가

가 .

가

() , 가
가 30% , 가

2.

가. 성과

, 가

2007 3,406
, 2004 5.4%, 2005 5.5%, 2006 6.0%, 2007 6.3%

가 ,

가 .

가

14% .

가 (69%), (48%)
 13% 76.3%
 32.9% , * ,
 2,050(2007)

나. 한계

가 가 ()가
 , 가 2008
 (EITC)
 가 .
 가 , 가
 , 가
 가 ,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편방안' 2006

3.

‘ (welfare-in-work) ; (welfare-to-work) ‘ ;

‘ ; ‘ ; 가

‘ 先 , 後 ‘

가. 자활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내실화 추진

가

, 가

2007 47% () ,

가

나. 자활지원인프라의 강화

. 2007 7

, 2008 10

3 가

다. 자활사업 성과관리 개선

)

(가

가

가

가

라.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 시스템 활성화

2008

200

제 4 장

사회복지서비스

제 1 절

사회서비스 확충*

I 복지정책의 현 좌표와 정책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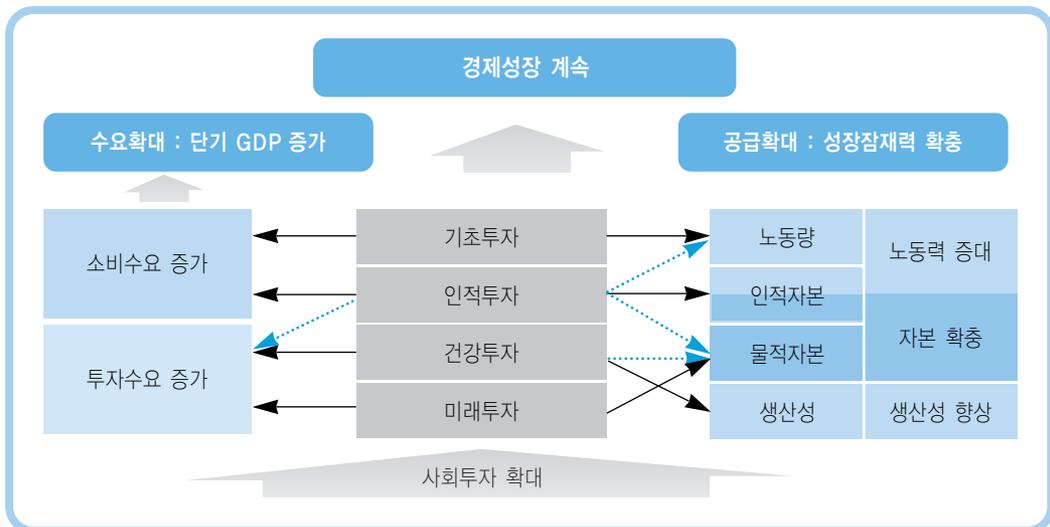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가 가 , .
 , ,
 .
 가 , .
 ,
 가 .
 가 , , ,
 (new social risks)

*집필자 :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박인석

가 ‘ 가 2030 ’ (06)

[그림 2-4-1] 사회투자과 경제성장간 선순환 개념도



가

II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 , · 가 ,

· (Social Service) (Personal Social Service Human Service), (Welfare Service), (Social Care) 가

(, ISIC).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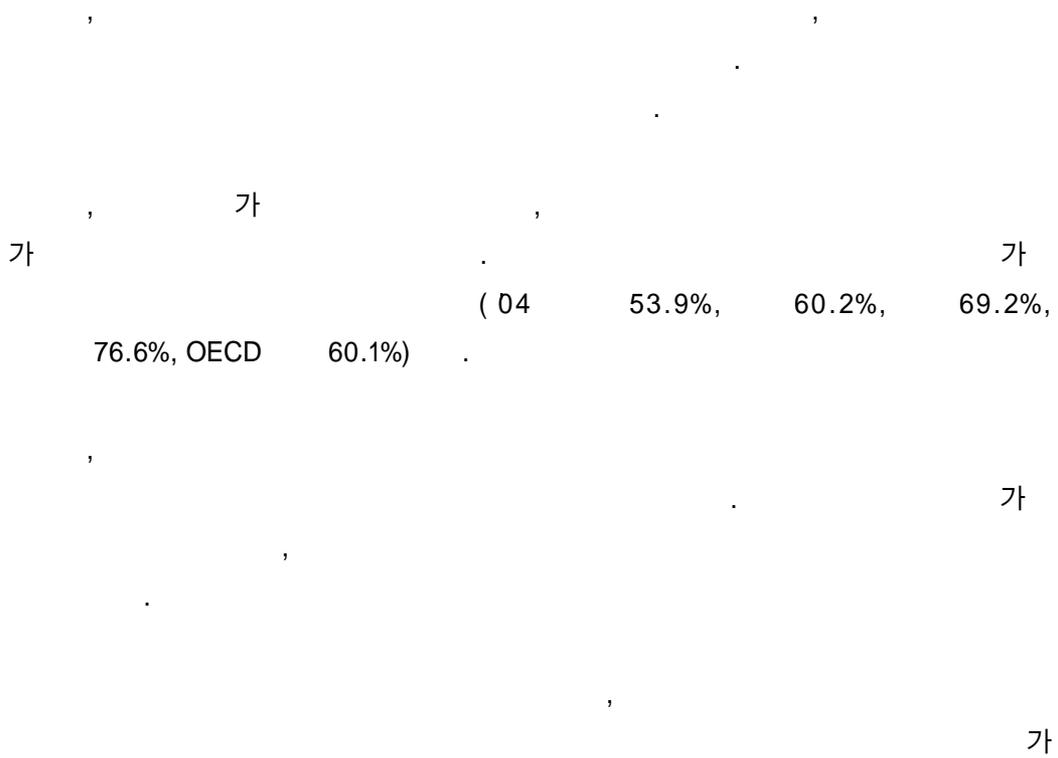
· ,

· (10) 12.2

· 38.1 가

(12.7%) (OECD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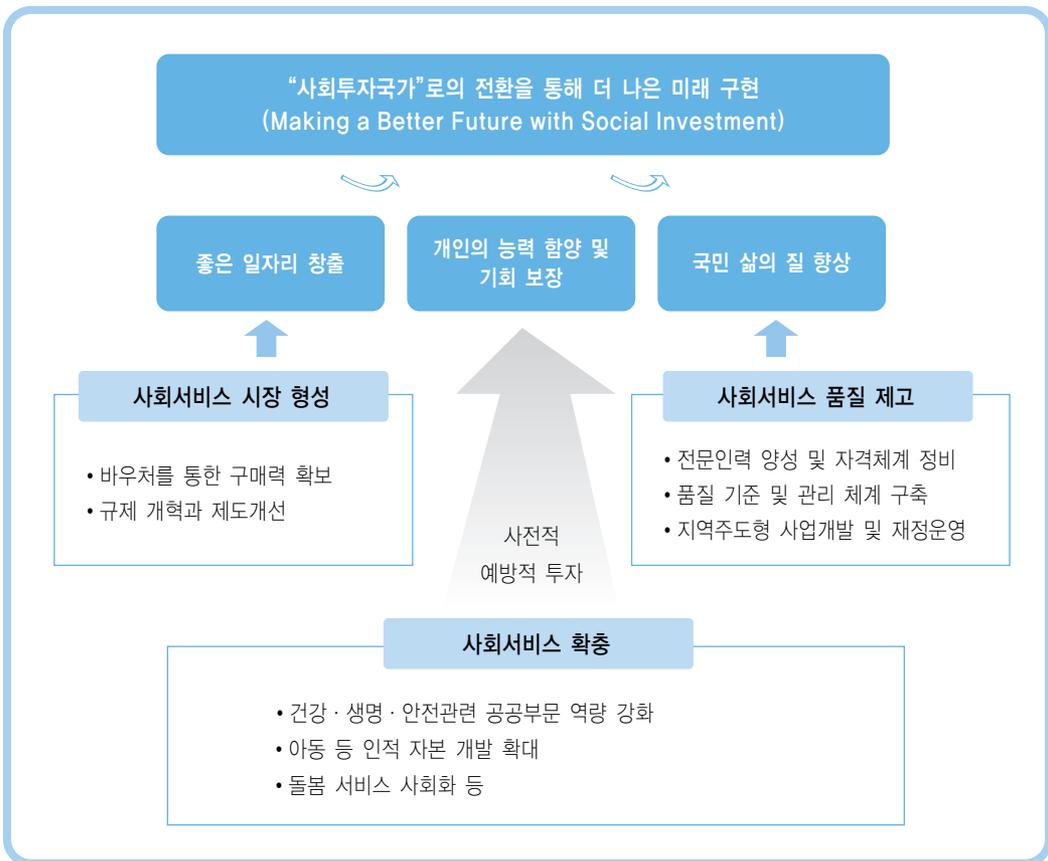
가



III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방향

가 . 가

[그림 2-4-2] 사회서비스 추진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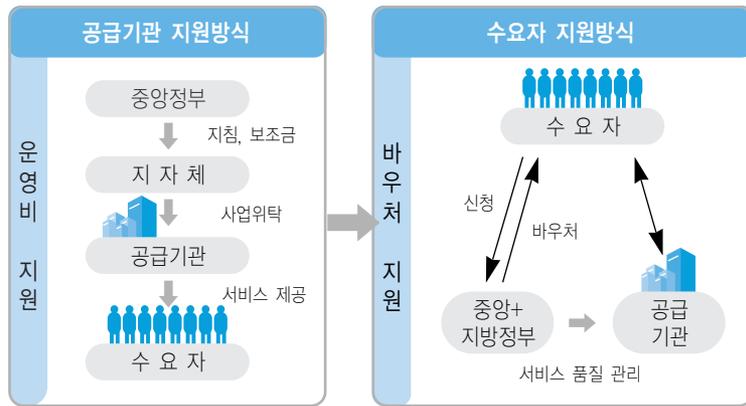


IV 추진 성과

구분	2006		2007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9,150	95.0%	15,200	98.0%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1,135	11.5%	7,563	46.5%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2.5%		48.5%	
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3.5%		49.5%	
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4.5%		50.5%	
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5.5%		51.5%	
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6.5%		52.5%	
8.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7.5%		53.5%	
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8.5%		54.5%	
1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19.5%		55.5%	
1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0.5%		56.5%	
1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1.5%		57.5%	
1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2.5%		58.5%	
1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3.5%		59.5%	
1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4.5%		60.5%	
1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5.5%		61.5%	
1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6.5%		62.5%	
18.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7.5%		63.5%	
1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8.5%		64.5%	
2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29.5%		65.5%	
2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0.5%		66.5%	
2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1.5%		67.5%	
2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2.5%		68.5%	
2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3.5%		69.5%	
2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4.5%		70.5%	
2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5.5%		71.5%	
2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6.5%		72.5%	
28.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7.5%		73.5%	
2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8.5%		74.5%	
3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39.5%		75.5%	
3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0.5%		76.5%	
3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1.5%		77.5%	
3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2.5%		78.5%	
3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3.5%		79.5%	
3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4.5%		80.5%	
3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5.5%		81.5%	
3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6.5%		82.5%	
38.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7.5%		83.5%	
3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8.5%		84.5%	
4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49.5%		85.5%	
4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0.5%		86.5%	
4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1.5%		87.5%	
4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2.5%		88.5%	
4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3.5%		89.5%	
4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4.5%		90.5%	
4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5.5%		91.5%	
4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6.5%		92.5%	
48.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7.5%		93.5%	
4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8.5%		94.5%	
5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59.5%		95.5%	
5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60.5%		96.5%	
5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61.5%		97.5%	
5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62.5%		98.5%	
5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63.5%		99.5%	
5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률	64.5%		100.0%	

2007

[그림 2-4-3] 재정투입방식의 차이



32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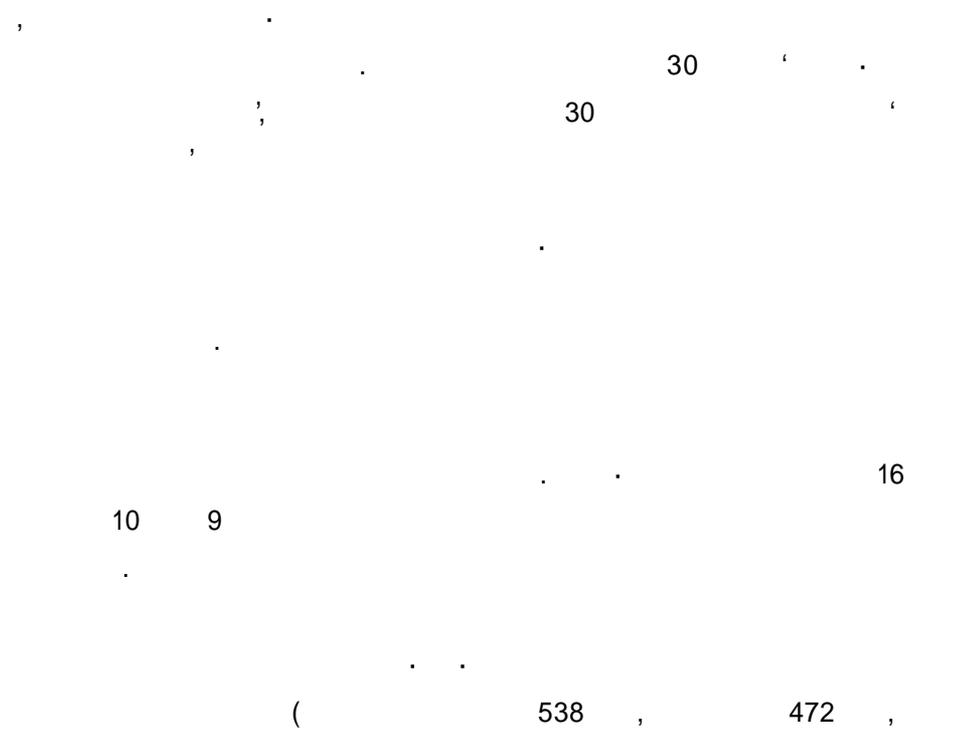
가

2007 300
2007 5 3 12

2007 4 가 41 가 20 가 37
2 . .

[그림 2-4-4] 보건복지분야 4대 바우처 사업 현황

구 분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산모신생아도우미
개 요	가사 및 활동지원	일상생활 보조 및 활동지원	지자체 중심 신규서비스 개발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대상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15천명)	1급 중증장애인 (20천명)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106천명)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43천명)
본인부담	18~48천원(월)	14~40천원(월)		



458)

35%, 10% 가가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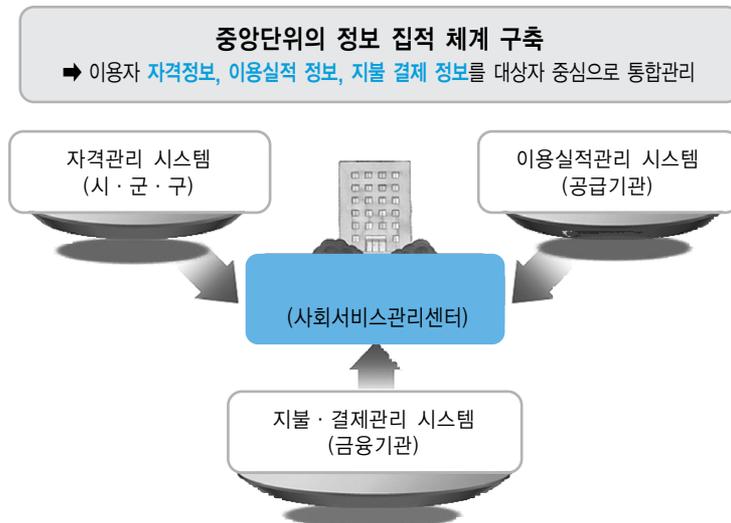
(e - voucher)

가‘

가가

, 2007 5

[그림 2-4-5]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가

가

가



가족정책

I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추진*

가 가 가 가 가 가 .
 ,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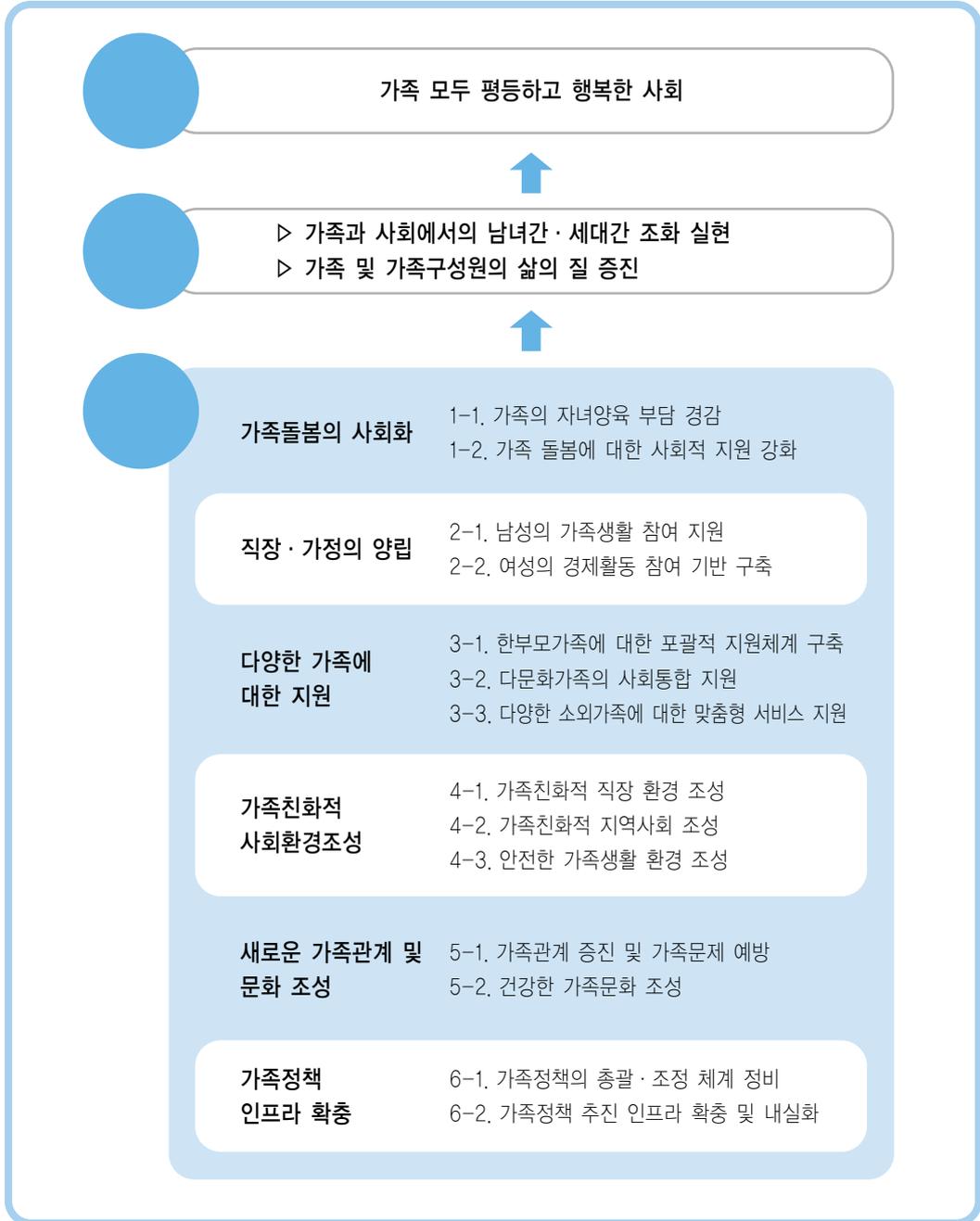
가 가 가 , ,
 ,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 - (04.2.9) ,가 ,가
 5 . 1 가 (06~ 10)
 가 2006 11 28 .

1 가 가,
 , ‘가 ,
 ‘가 . ‘가 가
 , 6 190 .

*집필자 : 가족정책과장 윤현덕

[그림 2-4-6]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주요 정책 과제



,가
 ,
 , .
 ,
 .가 가 , 가 .
 . 가
 가, .
 .
 가 가 , 가 , 가 , 가
 가 .
 가 ,
 가 가 , 가 ,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II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가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현황

가 가 [^] 가 2004 2 9
 35 가 가 , , ,
 가 , 가 , 가
 , . . . 가 . . .
 가 2004 3 (2004. 6~12) , 2007
 66 .

<표 2-4-1>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도별 설치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3	16	50	66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비운영지원 수	3	7	21	34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66 가 2007 ,
 14 , 52 가 가
 , , ,
 .
 ()가 ,
 가 27 40.9% .

*집필자 : 가족정책과장 윤현덕

〈표 2-4-2〉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도별 설치 현황

시·도	설치수	설치지역	시·도	설치수	설치지역
총 양	1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22	서울시,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중랑구	경기도	17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 파주시, 고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부천시, 수원시, 군포시, 화성시, 여주군, 김포시, 가평군, 포천시, 안양시
			강원도	2	속초, 양구
			충청북도	1	청주시
부산광역시	3	부산시, 해운대구, 진구	충청남도	3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대구광역시	2	달서구, 중구	전라북도	2	익산시, 군산시
인천광역시	3	부평구, 중구, 서구	전라남도	1	여수시
광주광역시	1	동구	경상북도	2	포항시, 칠곡군
대전광역시	1	대전시	경상남도	3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울산광역시	1	울산시	제주특별자치도	1	서귀포시
			총 계	66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 사업 현황

2007 가

가) ,가 (가) , 가 1) ,가 (가 , 가 , 가 1) (,) 가 (,) .

2007 가 , 가

가 ‘ 가 ’ 가 가 가 . (61)가
 가 가 .
 가 가 가 가
 (2)가 , 가 가 가
 , 가 가 .
 , 가 , 가 . 가 가
 가 , 가 .

2. 가

가. 가족교육 사업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2007 가 가 , ,
가 가

나. 가족상담사업

가 가 가 가

가 가 2 , 가 가 .

〈표 2-4-5〉 가족상담사업 참여인원

성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남 성	3,491	6,665	5,740	8,546	24,442
여 성	8,637	14,096	12,140	17,155	52,028
계	12,128	20,761	17,880	25,701	76,470

다. 가족문화사업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

〈표 2-4-6〉 대상별 가족문화사업 참여 인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부 부	49	236	201	566	1,052
부 모	54	2,130	89	512	2,785
아 동	2,439	3,592	3,644	1,016	10,691
청소년	5,049	99	291	1,118	6,557
성 인	4,274	4,371	2,395	3,783	14,823
부모자녀	3,682	4,685	4,865	8,297	21,529
전 체	11,690	46,874	24,946	26,901	110,411
기 타	247	709	602	14,987	16,545
계	27,484	62,696	37,033	57,180	184,393

가 가 , , 가
 .
 가 ‘ 가 ’
 가 , . 2/4
 가 4/4 .

〈표 2-4-7〉 주제별 가족문화사업 프로그램 수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다양한 체험활동	46	52	88	88	274
놀토프로그램	5	31	9	28	73
가족여행	2	8	18	15	43
영화/연극제/음악회	8	13	15	14	50
봉사단 활동	86	143	123	141	493
가족축제	3	45	7	27	82
계	150	292	260	313	1,015

라. 가족지원사업

가 가 가 .
 , , 가 가
 .
 가
 가 .
 가 가 .
 2007 가 < 2-4-8> .
 2005 10 2007 45 가 .

〈표 2-4-8〉 200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별 이용자수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가족교육	13,828	49,362	43,167	54,222	160,579
가족상담	12,128	20,761	17,880	25,701	76,470
가족문화	27,484	62,696	37,033	57,180	184,393
가족지원	3,753	7,410	9,762	12,419	33,344
계	57,193	140,229	107,842	149,522	454,786

III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FFI :

*집필자 : 가족정책과장 윤현덕

Family Friendliness Index) . , , , 931
 . 2007 가 41.7 (100)

가 가 가 「가
 , , , 2008
 가 가 .

〈표 2-4-9〉 가족친화지수 측정결과

구 분		전 체	정부 및 지자체	대학교	공기업	기 업
2007년	사례수	931개	275개	56개	100개	500개
	가족친화지수	42점	52점	41점	46점	36점
2006년	사례수	705개	285개	46개	-	374개
	가족친화지수	37점	44점	39점	-	31점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 가 가
 , , 3 가 2007 3

IV 한부모 가족지원*

가 가 가 가 가 5 ,
5 2 3 가 ,
가 가 가 .

1. 가

2007 ^ 가 _ 가 가
147,947 , 395,335 , ^ 가 _
73,305 , 189,854 , 가

〈표 2-4-10〉 2007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국가보훈법 대상
세 대	147,947	73,305	74,575	67
세대원	395,335	189,854	205,331	150

가. 자녀양육지원

(1) 지원 대상

가 18
가
22 가

*집필자 : 가족지원과장 김혜선

가

130%

4 가 157

※주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7만원씩 증가

(2) 지원 내용

가 가

6

5

가

가

〈표 2-4-12〉 연도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용자 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세대수	123	143	138	133
금 액	1,560	2,000	2,000	1,995

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가

2007

가

가 가 가

가

〈표 2-4-13〉 2007 자녀양육비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실적

합 계	처리건수						
	구조건수(가사)			기타건수			
	계	소송구조	소장등 구조	계(g)	이 송	취 하	상 담
750	513	442	71	237	63	12	162

2. 가

가. 모·부자보호시설

18 가 . 가 .

3~5 ,

〈표 2-4-14〉 연도별 모·부자보호시설 보호 실적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시설수	입소자수	퇴소자수	연 도 말 현 황					
				계	모	부양자수		노령자수	
						남	여	남	여
2004	40	887	816	2,635	945	818	869	-	3
2005	40	778	766	2,654	955	825	871	-	3
2006	41	810	909	2,555	926	796	830	-	3
2007	42	840	910	2,473	910	789	773	-	1

나. 모자자립시설

18 가 가 3~5 가 4

〈표 2-4-15〉 연도별 모자자립시설 보호 실적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시설수	입소자수	퇴소자수	연 도 말 현 황					
				계	모	부양자수		노령자수	
						남	여	남	여
2004	4	59	52	161	57	50	54	-	-
2005	4	22	41	161	56	48	57	-	-
2006	4	35	68	129	46	35	47	-	1
2007	4	45	50	127	45	43	38	-	1

다. 일시보호시설

가
6 (3 가) 14

〈표 2-4-16〉 연도별 일시보호시설 보호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시설수	입소자수	퇴소자수	연도말 현원		
				계	모	아동
2004	14	1,581	1,494	324	181	143
2005	14	1,735	1,721	305	163	142
2006	14	1,588	1,598	311	155	156
2007	14	1,515	1,557	309	154	155

라. 미혼모자시설

(6)

1 (6 가) 25 가

〈표 2-4-17〉 연도별 미혼모자시설 보호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시설수	11	18	20	25
입소자	1,620	2,123	1,920	2,656

마.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가 2

, , 1 가 . 1

〈표 2-4-18〉 연도별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보호 실적

연도	시설수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현원
2006	16개	77세대	98명	23명
2007	15개	77세대	128명	21명

가
가 ,
가 .

3. 가

가. 저소득한부모가족 취업지원사업

가
MOU , .

가 ,가 가
가 ,

나.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1) 목적

가 One-stop 가
가 , 가 가

(2) 대상

가 ,
가 , 가
가 1 50~60가

* 가 : , , , , (5)

(3) 주요내용

가 , 가 , 가 , 가 .

(4) 향후 추진계획

가 가 , 가 , 가

V 아이돌보미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가 가 가 , 가 , 가 22 , 25 30 가 . 가 가 21 , 가 .

1.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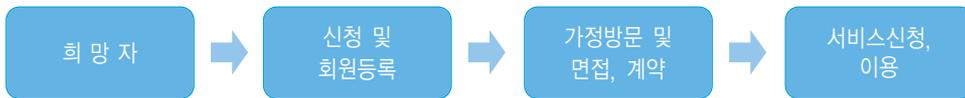
가 가 . , , 가

*집필자 : 가족지원과장 김혜선

나. 지원 대상

0 (3) ~ 12 ()
가

〈표 2-4-19〉 아이돌보미 이용 절차



다. 지원 내용

가 , , ,
120 (960)
5 , . 6

답 (50%) : 1,000
(4,000)

답 (50%) : 4,000
(1,000)

* 가

〈표 2-4-20〉 서비스 이용 기준요금

시 간	요 금		
	저렴형	일반형	
기본 1시간	1,000	5,000	• 회원 회비 : 없음 • 토, 일, 공휴일은 심야시간 요금 적용
기본 2시간	2,000	8,000	
추가시간당	500	3,000	

※ 추가시간 적용 시 : 주말, 공휴일 이용시 저렴한 가구 무료, 기본형 2,500원 적용
 ※ 3명일 경우, 2명의 아이돌보미 파견(돌보미는 2명을 돌볼 때에 준하여 수당 지급)

라. 주요내용

07 가 DB
 38 (36 , 1 ,
 1) , 가 , ,
 1 .

※ 아이돌보미 총 2,177명을 양성(65세 이하, 40시간 기본교육, 매월 2시간 보수교육)

(, 가)
 2,177 137,461
 97,374 88%가
 가 55%가 45%가 가 , 가 67%,
 12%, 가 21% .
 (2)가 44% 가 , 3~5 가 33%, 6~12 가 23%
 가 가

마. 향후과제

(16) 38 ,
 (. .) , ,
 가 , 가
 가가 .

2. 가

가. 목적

가 가 (respite)

나. 지원대상

가 18 가 (100% 가)

〈표 2-4-21〉 18세미만 장애종류별 장애아동 현황

구분	계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간질
인원수	82,177	7,461	10,531	3,925	4,997	2,730	29,151	19,106	2,309	328	382	1,257

다. 지원내용

〈표 2-4-2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용료 무료

분야	지원단가	내용
돌봄지원서비스	돌보미수당 1시간당 5천원 지원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필요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연 320시간 이용 가능) ※ 교육 40시간 이론, 20시간 실습
휴식지원	1회당 1가구 20만원 이내 지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부담을 위해 가족 고충 상담서비스, 가족캠프, 장애아가족간 자조모임 결성 등 지원

*이용가정은 이용료가 무료이며, 지원단가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

라. 주요내용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복지법」 제24조(가족복지시설의 설립)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1,754개(1,400개 민간, 354개 공공)의 가족복지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2006년 1,400개(1,000개 민간, 400개 공공)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2010년 2,320개(1,800개 민간, 520개 공공)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2009년 2,000개(1,500개 민간, 500개 공공)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2010년 2,320개(1,800개 민간, 520개 공공)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2009년 2,000개(1,500개 민간, 500개 공공)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2010년 2,320개(1,800개 민간, 520개 공공)에 이를 예정이다.

가

가 DB

16 (7 , 3 , 가)

5 , 1) , 가 가 , , 1

754 () 40 , 20 , 2 . 320 , 가

가 , 가

가 (,)

3,799 42,4974

88%가

마. 향후과제

가

18 가

1

VI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

가 2007 12
 146,508 . 2007 11.1% ,
 40% .
 가 .
 .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 가 ,

〈표 2-4-23〉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혼인건수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국제결혼건수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국제결혼비율	4.8	5.2	8.4	11.4	13.6	11.9	11.1

※ 통계청, 2007. 혼인통계 결과

*집필자 : 다문화가족과장 박난숙

2. 가

2007 38 가 가

〈표 2-4-24〉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시·도	센터명	주소	개소일
	수탁기관		
중 앙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2005. 04.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서 울 (3)	성북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노동사목회관 5층	2007. 03.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서울센터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2007. 03.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01호	2006. 07.	
부 산 (2)	부산사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수로 795	2006. 04.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부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8-1	2006. 10.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대 구 (2)	대구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9-1	2006. 06.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대구달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백은관 B53-1호	2007. 04.
	대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 천 (2)	인천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46-1	2006. 10.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강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84-5	2007. 04.
	(재)천주교인천교구유지재단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시·도	센터명	주소	개소일
	수탁기관		
광주 (1)	광주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2	2006. 04.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대전 (1)	대전중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2-6, 1층	2006. 10.
	대전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1)	울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2006. 03.
	울산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4)	수원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0 수원대리구청 1층	2007. 01.
	부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층	2006. 08.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경기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2007. 01.
	남양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9-7 제2청사 2층	2007. 02.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아동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2006. 12.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릉문화원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785	2006. 12.
충북 (2)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154	2006. 03.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옥천한국어학당	충북 옥천군 옥천군·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 1층	2007. 02.
	아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2007. 07.
충남 (3)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충남 공주시 중동 321 3층	2007. 04.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금산문화원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구) 군수관사	2007. 01.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2006. 05.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호남사회연구회 논실마을사람들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221 논실마을학교	2006. 05.
전북 (3)	김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제이주여성센터	전북 김제시 서암동 393-1	2007. 01.

시·도	센터명	주소	개소일
	수탁기관		
전 남 (4)	전라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양 1000 전남도청여성정책보좌관실내	2007. 02.
	전라남도청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저전동 206-12 2층	2007. 04.
	순천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2007. 0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전남센터		
	영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2006. 04.
영암이주여성센터			
경 북 (4)	구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북 구미시 형곡2동 314-3	2006. 04.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2006. 07.
	예천군청		
	포항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4B1L	2007. 04.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문경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북 문경시 모전동 257	2007. 04.
문경시 여성회관			
경 남 (3)	경상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2호	2007. 04.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106 2층	2006. 09.
	진주 YWCA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2006. 05.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 주 (1)	제주특별자치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727 6층	2007. 05.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표 2-4-25〉 2007년 센터별·국적별 이용자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순인원)

시·도	지역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네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기타	합계
서울	성북구	118	109	14	49	22	25	-	7	7	7	1	21	380
	영등포구	71	35	38	45	4	14	-	10	8	21	-	17	263
	동대문구	50	63	66	24	9	19	1	6	9	4	3	5	259
부산	사상구	44	44	2	8	6	5	-	6	2	1	-	1	119
	남구	101	131	11	22	6	1	2	3	10	9	2	2	300
대구	남구	61	111	19	30	4	3	-	6	-	1	1	3	239
	달서구	48	30	1	4	1	3	-	3	3	2	-	2	97
인천	남구	88	59	13	27	16	16	-	8	6	5	2	10	250
	강화군	2	25	2	19	-	-	-	-	-	5	-	-	53
광주	서구	50	68	18	32	7	7	-	2	5	2	2	10	203
대전	중구	33	20	13	20	7	3	-	-	2	4	-	1	103
울산	남구	32	122	19	24	-	12	-	4	5	3	2	4	227
경기	수원시	28	31	-	32	7	3	-	1	1	3	1	3	110
	부천시	25	25	15	14	10	3	3	3	-	1	3	10	112
	안성시	19	55	6	17	3	3	-	-	-	3	-	-	106
	남양주시	41	57	39	12	4	7	-	1	3	-	-	4	168
강원	춘천시	142	62	69	68	14	11	-	16	1	-	1	4	388
	강릉시	42	17	16	14	-	-	-	-	-	4	-	-	93
충북	청주시	55	42	39	62	18	20	13	5	5	-	-	3	262
	옥천군	8	136	2	12	7	-	-	-	2	4	-	-	171
충남	아산시	59	39	38	25	5	5	2	-	4	6	5	2	190
	공주시	78	43	10	84	3	4	2	1	2	4	-	3	234
	금산군	3	71	4	29	1	-	-	-	2	2	-	-	112
전북	익산시	34	101	7	11	-	2	-	4	2	1	-	1	163
	장수군	6	18	12	55	3	-	-	-	-	9	1	-	104
	김제시	8	6	-	63	-	2	-	2	2	4	-	-	87
전남	도	98	66	48	710	35	30	-	-	2	6	1	2	998
	순천시	19	81	9	33	13	-	-	-	-	1	-	-	156
	나주시	18	46	1	64	1	8	-	-	4	4	1	-	147
	영암군	27	33	14	24	12	11	-	-	2	1	-	-	124
경북	구미시	44	37	11	6	8	5	-	-	-	1	3	-	115
	예천군	10	76	7	5	2	-	-	-	-	-	-	-	100
	포항시	33	126	20	40	6	4	-	-	4	1	2	1	237
	문경시	63	67	6	33	7	-	-	-	1	2	1	-	180
경남	도	15	47	3	2	1	1	-	-	-	1	-	-	70
	진주시	21	64	4	13	8	1	-	2	2	14	1	2	132
	김해시	41	115	10	24	11	7	1	4	3	5	1	7	229
제주특별자치도		319	246	26	147	2	11	1	18	1	6	2	2	781
총계	총인원(명)	1,954	2,524	632	1,903	263	246	25	112	100	147	36	120	8,062
	백분율(%)	24.2	31.3	7.9	23.6	3.3	3.1	0.3	1.4	1.2	1.8	0.4	1.5	100.0

가. 한국어 교육

가

나. 가족통합교육

가

가

다. 문화정서지원사업

라. 역량강화지원사업

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바. 자녀지원사업

사. 자조집단사업 및 홍보·네트워크 사업

가 , . 가 , , , .

〈표 2-4-26〉 추진목표 대비 달성결과 (2007.12.31, 단위 : 연인원, %)

사업명	목표인원(명)	달성결과(명)	백분율(%)
한국어교육	123,305	143,029	116.0
가족통합교육	14,314	18,099	126.4
문화정서지원사업	17,918	24,404	136.1
역량강화지원사업	16,837	20,151	119.7
다문화인식개선사업	12,299	17,109	139.1
자녀지원사업	25,760	25,716	99.8
찾아가는서비스	6,590	7,614	113.8
전 체	217,023	256,122	118.0

〈표 2-4-27〉 만족도 조사결과 (2007.12.31, 단위 : 순인원, %)

사업명	만족도 평균	조사인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한국어교육	95.4	3,657		14	156	1,312	2,175
		100%		0.4	4.2	35.8	59.6
가족통합교육	94.8	3,841		8	194	1,487	2,152
		100%		0.2	5	38.7	56.1
문화정서지원사업	94.8	6,237	3	23	292	2,330	3,589
		100%	0.1	0.4	4.7	37.3	57.5
역량강화지원사업	90.7	710	5	12	49	61	583
		100%	0.7	1.7	6.9	8.6	82.1
다문화인식개선사업	98.1	2,402		5	41	946	1,410
		100%		0.2	1.7	39.4	58.7
자녀지원사업	94.1	535		3	29	152	351
		100%		0.5	5.4	28.4	65.7
찾아가는서비스	93.7	193			6	89	98
		100%			3.1	46.1	50.8
전 체	95.2	총 17,575명	8	65	767	6,377	10,358
		100%		0.1	0.3	4.4	36.3

3.

가 . 2007 가 31 1 220 , 2 237 가 , 가 1 1097가 , 2 1,161가

〈표 2-4-28〉 2007년 아동양육지원사업 실적

지역	운영기관	수탁기관	도우미수(명)		지원대상가정(가정)	
			1차	2차	1차	2차
서울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7	8	35	35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7	10	33	49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7	7	34	33
부산	부산(사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	8	8	40	40
	부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여성회관	7	7	35	35
대구	대구(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불교사회복지회	9	9	45	44
인천	인천(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10	10	49	48
광주	광주(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10	10	50	50
대전	대전(중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9	42	46
울산	울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9	11	33	56
경기	남양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7	9	36	35
	안성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안성종합사회복지관	7	1차	33	1차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사업	35	사업
	수원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2차	7	2차	34
부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7	사업	35	
강원	원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5	6	26	29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홀트아동복지회강원아동상담소	5	6	25	21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릉문화원	5	6	25	27
충북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8	8	45	40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옥천한국어학당	7	8	45	40

지역	운영기관	수탁기관	도우미수(명)		지원대상가정(가정)	
			1차	2차	1차	2차
충남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8	8	39	46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금산문화원	8	8	41	44
전북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8	43	40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호남사회연구회 논실마을사람들	9	8	37	38
전남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8	8	40	40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전남센터	6	8	43	40
경북	구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아름다운가정만들기	7	9	34	45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예천군청	7	8	35	39
경남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진주YWCA	8	8	41	42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9	34	4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9	9	44	47
총 계			220	237	1,097	1,161

4. “ 가 ”

가 , , 가
 가 , 6
 , 96 가 380가 5,600

〈표 2-4-29〉 2007년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실적

구 분	지원가정수	지원횟수				
		한국어	다문화	자녀지원	산전지원	출산지원
서울/경기	49	304	65	31	15	110
강 원	112	1,814	110	190	22	356
대전/충남	53	346	79	117	15	120
충 북	58	400	60		15	100
광주/전라	66	540	100	110	11	120
대구/경상	43	325	5	60	15	110
계	381	3,729	419	508	93	916

5.

가

〈표 2-4-30〉 2007년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발간 실적

구분	언어	발간시기	보급부수	비고
첫걸음	한글	2007.5	약 5,000권	
초급	한글	2005.12	약 32,000권	2007.12. 각 2,000권 추가보급 중국어 4,000권 타갈로그어 1,500권
	베트남어	2007.1	5,000권	
	중국어 및 타갈로그어	2007.12	5,500권	
중급	한글	2007.5	약 5,000권	

6.

가 가 ,
가 가 ,
가 가 .

1973 가 1993 가 1999 가

가 , 가

가

「

·

」

(2007.12.14)

08.6.15

가

가

제3절

노인복지 정책

I 제도 개요*

1.

가. 최근의 노인복지 주요정책 흐름

분 야	문민정부 ('93~'97)	국민의 정부 ('98~'02)	참여정부 ('03~'07)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수당 지급 ('91~'97) -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월 1만원 지급 - 248천명('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연금 도입('98)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노인으로 확대 - 월 3,5만원~5만원 지급 - 551천명('98) ->616천명('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연금 지속지급 - 월 3,5만원~5만원 지급 - 619천명('03)->610천명('07)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07.4) •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마련 - 3만5천개('04)->11만개('07) - 대한노인회 지부별 취업지원센터 설치 지원 - 시도별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요양·건강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부터 공립 치매전문 병원 신축지원 시작 - '97년까지 6개소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 치매병원 지원 - 9개소('98)->27개소('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 치매전문병원 지원 확대 - 매년 5~6개씩 신축 지원 ※ 44개('03)->74개('07) • 치매간이·정밀검사 시작('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07.4) •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 시범사업 실시 - 제1차 : '05.7~'06.3 - 제2차 : '06.4~'07.4 - 제3차 : '07.5 ~'08.6

*집필자 : 노인정책과장 한문덕

분 야	문민정부 ('93~'97)	국민의 정부 ('98~'02)	참여정부 ('03~'07)
시설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노인복지시설도입('92) • 전문요양시설제도 도입 - 3개소 신축('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요양시설 지속 지원 - 4개소('98)→85개소('02) ※ 요양시설 :75개('98) →17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매년 100개소씩 확충 - 231개('03)→647개('07)
재가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 식사배달시작('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07.6)
경로효친 및 권익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승차권 대신 노인 교통수당 지급('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전철 50% →100% 할인 확대 • 무궁화호 30% 할인('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예방센터(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06) - 중앙(1개소), 지방 (18개소)

나. 최근의 노인복지 예산 증가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2005		2006		2007	
	예 산	비 중	예 산	비 중	예 산	비 중	예 산	비 중
정부예산	801,378		1,341,394		1,448,076		1,565,177	
복지부예산	38,968	4.9	93,068	6.9	103,652	7.1	115,292	7.4
노인복지	1,917	4.9	3,302	3.8	3,928	4.4	5,692	4.9

※ 복지부 예산 비중은 정부예산 대비 비율, 노인복지예산 비중은 복지부 예산 대비 결과임

※ 2005년 이후 지방이양된 예산은 제외

2.

2000	가 339	7.2%
, 2008	가	10.3%
2018	(14%)	.
가	.	.

구 분	지 원 서 비 스
노후 소득보장	• 사회공헌형 및 민간일자리 창출 등
건강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7) •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등
사회참여 확대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노인학대 상담서비스 • 노인자살·성·사기·범죄 문제 대응 • 장사 인프라 확충 및 품위있는 장사문화 창출 등

II 경로연금 지원*

가	1998	7	1
1991	70		65
가			
가		65	

*집필자 : 기초노령연금과장 최홍석

60% 가 (A) 5%

2007 4 . 2008 1

10 .

III 기초노령연금 도입 준비*

1.

가 가

가 .

가 , 가

가 .

가 가

가. 너무 많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1988 10 1995

, 1999 11

*집필자 : 기초노령연금과장 최홍석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2006 12 가 861 , 가 909
 가 가 1,774 .

〈표 2-4-33〉 가입자별 현황 (단위 : 천개소, 천명)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의
	사업장	가입자	계	도 시	농어촌	
17,740	774	8,605	9,086	7,113	1,973	49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6.12월말 기준)

가
 . 가
 2003 4 .
 . 가
 , 가 ,
 . 가
 가 .

〈표 2-4-34〉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가입자	17,740	8,605	9,086	49
납부예외자	4,936	-	4,936(54.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6.12월말 기준)

500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 , .

나. 너무 적은 경로연금 금액

1998 65
 가
 .
 550,000 65
 () 4~5 , 1933 7 1 (65)
 1 5 ~2 .
 가 10
 . 2006
 613,000 65 4 5 ~5 , 1933 7 1
 3 ~3 5 .

〈표 2-4-35〉 경로연금 대상자 및 지급액 비교

		1998년	2006년
대상자 수		55만명	62만명
지급액	80세 이상 기초수급자	5만원	5만원
	65~79세 기초수급자	4만원	4.5만원
	저소득 노인	1.5~2만원	3~3.5만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2006년 12월말 기준)

가
 .
 1933 7 1
 「 , 65
 가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 가 .

2.

가. 기초노령연금 제도 현황

2007
 4 . *
 65
 60% 2008 . 2009 1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목적)

	70%	. 2008 1	70
, 65	70	2008 7	.
, 2008	300	, 2009	360
가 **	가	가	.
2008 60%		()
가	40	,	가 64
1 65	1 64	가	
가 65	가	1	. 65
2010		.***	
	9	4	3
	가	5%	
	3%	8%	
	가		
		5	

**노인단독가구: 흔히 독거노인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서 자녀등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관계가 없다

***선정기준액 결정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2009년의 선정기준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가

가 (A) 5%

. 2028 10%

2008 . 2008

가 84,000 , 가 80%

2008 134,160 .

가 < 2-4-36>

* ** 40~90%

231 87% 201 가

80% 80% 30 .

14% 93 .

90%

23% 52 , 80% 41 (18%), 70% 108 (

47%), 50% 27 (12%), 40% 3 (1%) .

72% ,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시이면서 기초자치단체임으로 시군구에 포함 된다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과 자부재원의 합계액을 말한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부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또는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기초노령연금 국고차등보조를 위해서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재정자주도 평균치가 사용 된다

〈표 2-4-36〉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시군구별 국고지원 비율 및 분포

구 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20%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40%(3개)	50%(0개)	60%(0개)
	80%~90%	50%(27개)	60%(0개)	70%(0개)
	80% 미만	70%(108개)	80%(41개)	90%(52개)

※ ()안은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수

가 70% 2008 2 2,281 ,
2009 3 4,147 .

나. 추진현황

가 Task Force Team
. 2007 9

60%

가

2007	10	15	11	16	70	
70		73%		218	*	
						가
255		70			85%	가
2007	11	30				
2007		161				161
		131			30	
		70			81%	가
2008	1	1				2008 6
					61	
192			2008	1	31	
70		181		70		11
181	70		**	61%		70
70					76%	가
		46%	가		가 55%	69%
			가	16%	가	13%,
10%	가		33%	가	70	
38%		5%p				

*70세 이상 기존 경로연금 수급자 약 50만명을 포함.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폐지되는 저소득 노인 소득보조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과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 당시인 1998년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1월 현재 경로연금 수급자 수는 약 61만명으로 70세이상 경로연금 수급자가 약 50만명, 65세이상 70세미만이 약 11만명이다. 기존 경로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신청 없이 곧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1단계 적용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연앙인구를 표시하므로 기초노령연금 1단계 적용대상의 모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2007년 10월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70세이상 노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이다.

3. 2008

가. 2단계 확대 시행

2008 1 70 (1) 2008 7
 가 65 (2)
 1 가 1 (08.4.15~5.16)
 93 .
 가 (2~3),
 ,
 . 5 6 6
 7 .

나. 3단계 시행준비 및 제도 안정화

2009 1 65 70% 65
 . (6) , 2008 9
 1 1, 2 가 (10) ,
 60 .

다. 사후관리 체계화로 제도의 건전성 관리

update 가 (26) ,
 . .
 50%
 , . .

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가 , 「 」
가 「 」

IV 노인일자리 확충*

가 2004
가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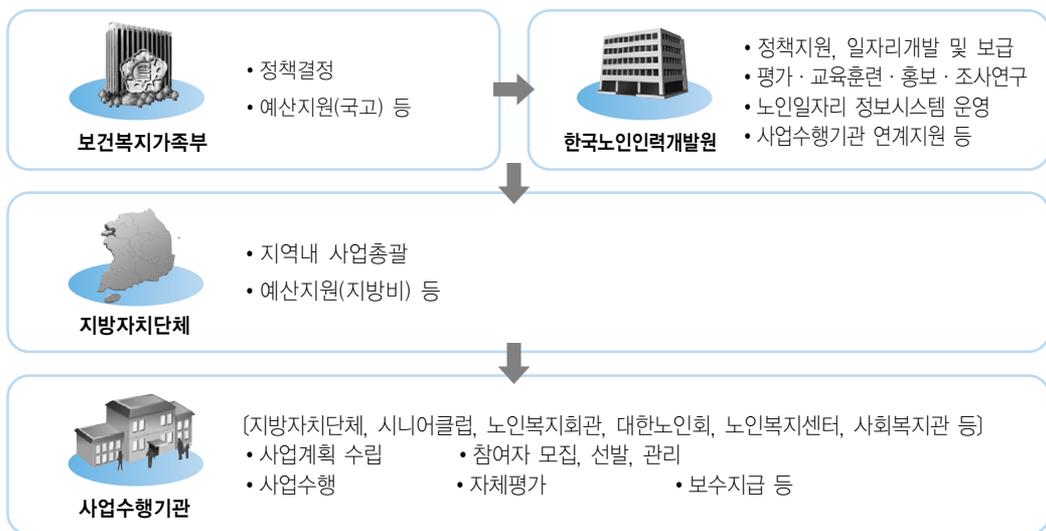
1.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집필자 : 노인지원과장 이상인

가	가	가	가
2007			
7,000	,	,	
	,	,	
	,	,	가,
	,	,	
2007 12 31	915	115,646	2,547
	,	가	

[그림 2-4-7]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2.

			(70)
2004	16	231	
2007 12 31		24,138 ,	11,611 가
			35,749

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

		77.5 (73.9 , 80.8 , 2003)
11 가 가		
(362 , 2005)	가	(8.3%, 2005)

*집필자 : 요양보험제도과장 장재혁

가 가 , 75 가
 . ,
 가
 .
 .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 ,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

가 ,

가 1

가 (,)

가

2000

가 2001

17.8% 2006 25.9%

가

가 ?

가 150 200 2008 7

40~50

가 10~20 , 가

, 가 가 가 , 가 가

, , 가 10 가

2.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 2005 5 23 가

“ ” 가

가 10

2 “ ”

“ ”

65 65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0%,

1/2 10%

2007 2008

() 가 9 15
10 19 11 8

2005

“ ”

가

2008

2007

2006 2 16

“ ” “ ” “ ” “ ”

가

, 4 18

“

”, 5 18

“

”, 8 11

“

”, 9 12

“

”, 9 13

“

”, 10 31

“

”

262

2

9

18

, 11 2 7

“ ”

. 11 6

, 11 7 , 22 , 27 , 29

, 11 30

11 30

가 ,

12 4 5

7

2007

2 5

가 , 2 6

가 , 2 22

“ ”

“ ”

2000

가

3 6

, 3 30

3 29

2007 4 2

4 27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65

가 65

, 6

5 52

1

2

(1)

1

가

가

가

가

20% 가
 (가)
 20%, 가 15%
 1/2
 (: 10%, 가 : 7.5%)
 2008 7 1

3.

가. 1차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2004 1
 2005 7 가
 가
 1
 2005 7 2006 3 9
 ()
 65
 가

1
 가 . ,1 가
 가 . 가 , 가 ,
 가 . , ,
 가 . , (care plan)
 , , .

1 가
 . 2
 가 , 가 가 가
 ,
 가
 가 .

나. 2차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1 2
 , 2006 4 2007 4 13 ,
 1 가 ,
 가 .
 , 65
 20% 10% .

가 . 가 ,
 가 .
 2 가 가
 가 .2
 .
 ,2 가 가 .
 가 , 가 , 가 .
 . , 가 , 가
 , , 가
 2 가 , 가 가 가
 ,
 가
 가 .

다. 3차 시범사업

2 2007 4
 2007 5 2008 6 14 , ,
 3 .
 16
 , 13 (2
 8 , , ,
 5 가) .
 2008 7

나. 급여 대상자의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 가 .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가 .

다. 가족수발자의 사회보장적 지원체계 마련

가
· ,가 가 ·
·
가 가 가 , 가 , 가
· 가 가 ,
가 () ·
· 가 가 가 ,가 ·
· 가가 , 가 ·
·
가 가 가 ·
,가 ,
· 가
· 가 가
·
· 가 가 가
·,가 가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가 . , 가

, 2006
 , 2007 가

35 6 1 17 ,
 2 5 20 가 가 , 가 .
 가

4 2 4 27

(1 , 2005. 7~2006. 3, 2 2006. 4~2007. 3, 3
 2007. 4~2008. 6)

65 65 가
 2008 7

2006 2

2006 5,000 8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VI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1.

(ADL) 가
7.2%
3.9% . 2007 가 3.3%,
51,310) 1% , , , 1,114 (
(5~6%)
10 , , 2011
100

*집필자 : 요양보험운영과장 최영호

2008 7
 2006~2008 3 가 (919) ,
 (2005.9) ,
 가 .

2005 72 2006
 (60~80) 87 가가
 (5~9) 98 (10~15) 96

2007 104 , 55 , 65
 , .
 08 73 , 50 , 60
 . 7

07.8 , , ,
 , 2006 ,
 , 가 , 07.4 ,
 가

가 , .

〈표 2-4-37〉 연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2007년말, 단위 : 개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15	137	164	200	282	416	642	884
무료노인요양시설	70	83	96	113	131	149	174	202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32	41	54	68	108	139	184	273
실비노인요양시설	13	13	14	19	42	123	260	350
실비전문요양시설	-	-	-	-	1	5	24	59

※ 유료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은 별도

2.

2008

07.8

(

‘ , ’

),

08.7

, 08

,

가

VII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연도	가	가	가	가	가	가
2005	가	(가) 56			, 2006
가	.				가	(95)
16	, 2007		가		14	가
(295) 49			, 2008		가	12
가	42				가	가

1. 가

연도	가	가	가	가	가	가

*집필자 : 요양보험운영과장 최영호, 노인지원과장 이상인

답

- 가 : , , .

- : .

- : , , ,

답

- ,

-

답

-

- 가

답

- (1 10,000 3

)

-

2.

가

08

답

답

답

, , 가

답

- (1 10,000 3

)

-

답

가

3.

가 가

1 45 , 3 , 2007 7

1 90 , 180 . .

쫘
쫘
쫘 , , 가
쫘
- (1 10,000 3
)
-
쫘 가

〈표 2-4-38〉 재가노인복지시설별 이용인원 (2007년말)

구 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용인원(명)	62,736	8,109	1,718
시설수(개소)	767	504	137

4. 가

2007 가 .

가 , ,

가 1 973.5m² 49

, 08 42 . .

쫘 : , ,
쫘 : , ,

答 : , 가 , 가
 答 : 가 가 가

5.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 , 가
 가 ,
 가 , 40 ,
 20 . 08 “ ”

6.

2007 88 , 2007 (481)
 18.4% 가 .

〈표 2-4-39〉 향후 5년간 독거노인 수 예측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노인수	4,810	5,016	5,193	5,357	5,537
독거노인 수	883	931	976	1,021	1,065
전체노인중 독거노인 비율	18.4	18.6	18.8	19.1	19.2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07)

2007 6 (7,000) (15)

27 2^
가

※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가
가
1 가

VIII 노인 주거복지 증진*

1.

가 가 가
가
398 , . 2007 12
16,579 .

〈표 2-4-40〉 노인 주거복지시설 현황

(2007년말)

구 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 료 시 설	
		양 로	양 로	양 로	주 택
시설수(개소)	398	147	161	76	14
입소인원(명)	16,579	5,643	2,772	4,599	3,565

*집필자 : 요양보험운영과장 최영호

2.

1997 8
가 , 가 18

(2007.8.3)

가 ,
가 , 08

〈표 2-4-41〉 현행 노인복지시설 종류

분 류	시 설 종 류
노인주거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 실비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IX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 (), ,

, 가 가 .

*집필자 : 노인정책과장 한문덕

2007 4 “ ” . ,

1.

1983

2005

1, 2

1

12

30

2

, 2003
(眼検査)

가
가
가

〈표 2-4-42〉 2007년 노인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실적 (단위: 명,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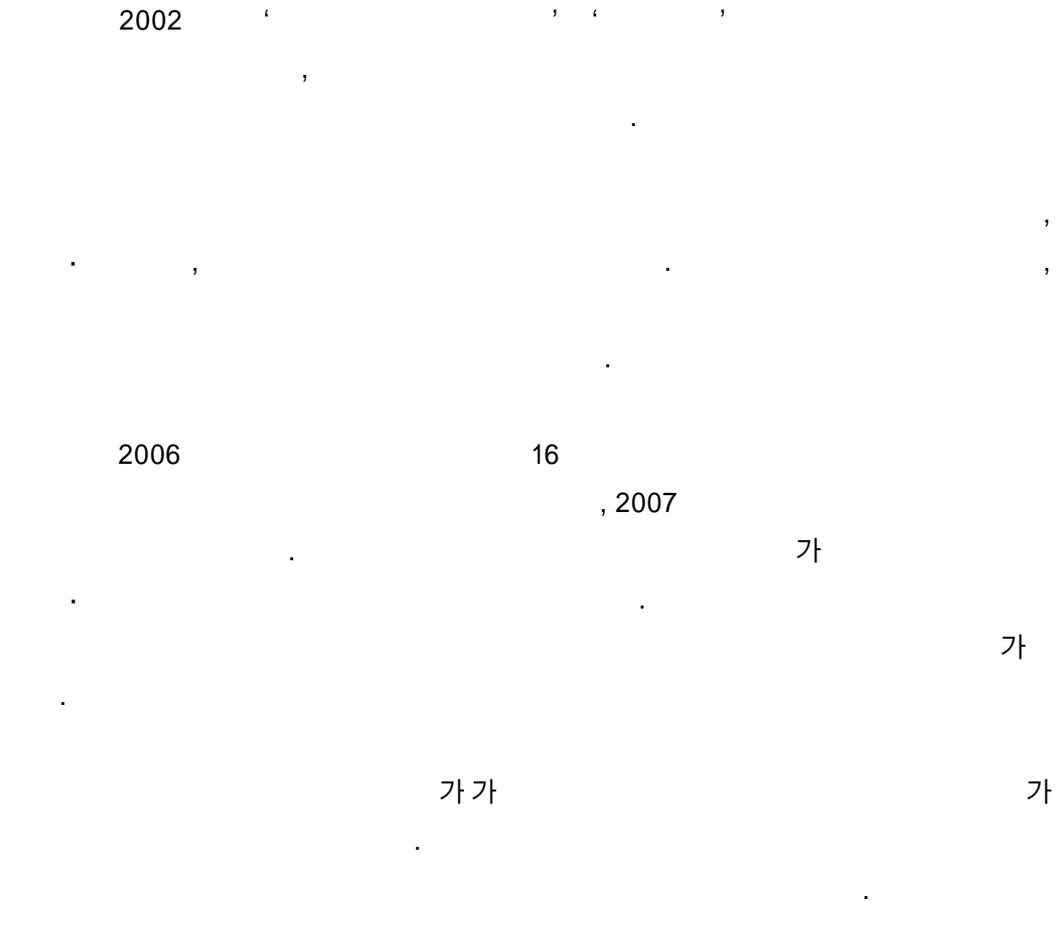
구 분	검진인원	진 단 결 과		개 안 수 술	
		안 질환자	정 상	백 내 장	망막질환
계	11,666	11,109	557	2,862	98

〈표 2-4-43〉 2007년 노인 주요 안질환 분포 (단위: 건)

계	백내장	결막·공막 질환	굴절이상	망막질환	기 타
16,421	6,824	2,404	1,703	652	4,838

2.

65 가 8.3% 400 가 ,가 , , 가 , 가 가 3 4 7 3 가



〈표 2-4-44〉 치매 노인 수 추계 (단위 : 천명)

구분	2000	2005	2007	2010	2015	2020
65세이상노인수 (%)	3,384 (7.2)	4,394 (9.1)	4,821 (9.9)	5,414 (11.0)	6,425 (12.9)	7,793 (15.6)
치매노인수	278	365	400	466	578	701
치매유병률(%)	8.2	8.3	8.3	8.6	9.0	9.0

※ 주 :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1997. 12
 3. 치매의 정도별 유병률 구성비 : 중증 1.1%, 중등증 2.3%, 경증 4.9%
 - 경증 : 독립적인 생활영위 가능, 개인위생 유지,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 보유
 - 중등증 : 독립적인 생활이 위험하고,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 필요
 - 중증 :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실,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 개인위생 유지 불능

〈표 2-4-45〉 연령별·성별 치매 유병률

(단위 : %)

구 분	계	65~69	70~74	75~79	80+
계	8.3	2.3	4.6	13.6	25.7
남	3.7	1.2	2.6	5.2	15.2
여	10.9	3.0	5.9	18.2	29.4

3.

2007 10 12 14

가

가

3

2008

X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1. 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여가복지시설	56,480	56,480	56,480	56,480	56,480
노인교실	1,082	1,082	1,082	1,082	1,082
노인휴양소	4	4	4	4	4
노인복지관	211	211	211	211	211

〈표 2-4-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05.12.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시설수	56,480	1,082	4	211

*집필자 : 노인자원과장 이상민

, 2007 211 가 .
 , 2005
 13

‘ , ‘ , ‘ , ‘ , ‘ ,
 , 2007 1,082 가 .
 , , 가
 가
 가
 (2005).

2006

2.

2007

1 2007 5 21 ~22

35 700

10 300 1,000 가 ,

“ (. .) ” ‘ ,

. 1 , 2008 2 가

XI 경로효친 및 효 문화 확산*

1.

5 8

. . , . . ,

1997 10 2 ^ 10 ^ _

, . 가 .

2007

8,683 . ,

*집필자 : 노인정책과장 한문덕

〈표 2-4-47〉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효 행 자 등					노인복지 기 여 자
		소 계	효행자	장 한 어버이	전 통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단체	
계	8,683	6,159	5,251	433	356	119	2,510
1982~2000	6,152	4,817	4,186	333	298		1,335
2001	386	199	174	13	12		187
2002	350	179	150	14	15		171
2003	370	193	162	15	16		177
2004	370	182	152	15	15		188
2005	366	180	154	14	-	12	186
2006	367	218	147	15	-	56	149
2007	322	205	123	15	-	67	11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 12

2007. 8. 3「
가 가
가
2008. 8. 4 .

2.

1980.5.8 70 , , , ,
, , , 8 50% , 1982
65 , . , , ,
5 가 . 50%
, 1984 .
가 , , ,

1990 가
 , 1994 가
 , 1996
 .
 10%, 20% 1997 8
 50% 30%
 , 100% , 1999 8
 .
 , 2004 10
 30% . 65
 (“ ”)

〈표 2-4-48〉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 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 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	100분의 100
(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고 궁	100분의 100
4. 능 원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100분의 50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XII 장사제도*

1.

가 1961

“ ”

1968 ‘ ’ 1973 1981 2

“ ” 2000.1.12 2007.5.25

2008.5.26

‘ ’

‘ ’

‘ ’

‘ ’

‘ ’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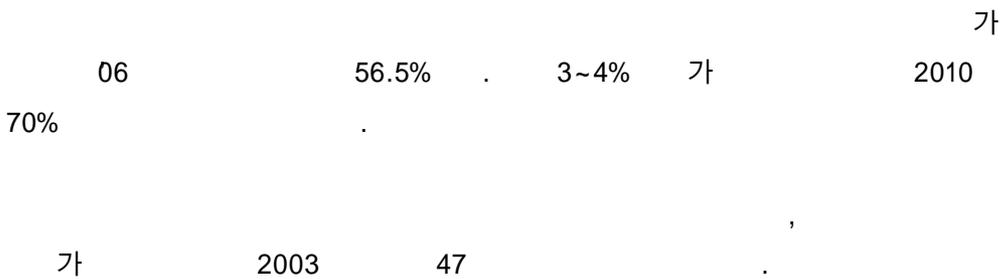
가 가 가

가

*집필자 : 노인지원과장 이상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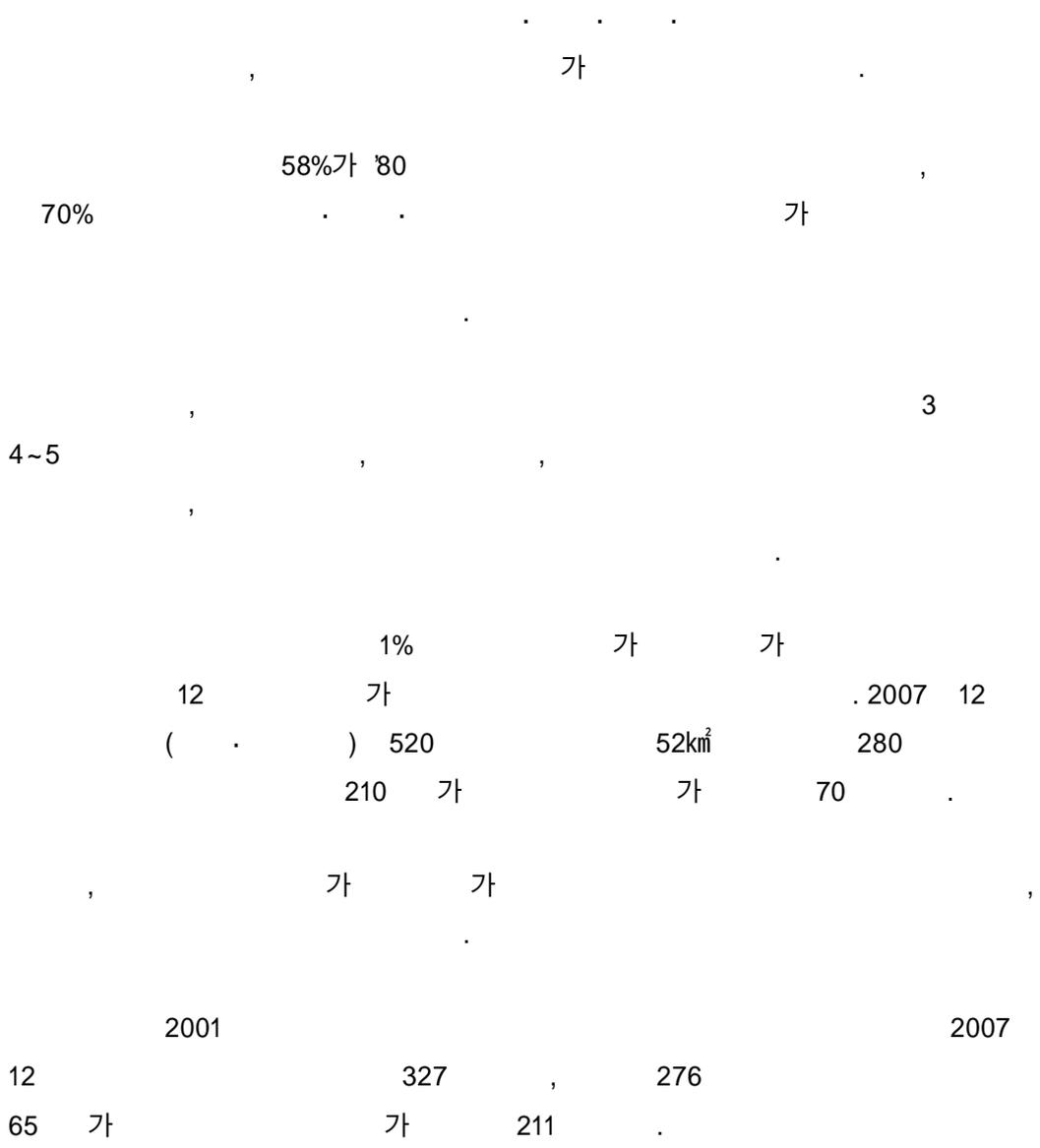


〈표 2-4-49〉 연도별 화장률 추이

(단위 : %)

'55	'70	'91	'01	'02	'03	'04	'05	'06
5.8	10.7	17.8	38.3	42.5	46.4	49.2	52.6	56.5

※ '06년 화장률 추정 : '05년 사망자수 기준 적용



가
 70 , 1 2 , 2
 , 3 1 , 1 ,
 1 1 2 가
 .
 , 500 ,
 . 가 가 .
 가 가 '99 가 .
 . . , 25
 , .
 가 .

3.

(07.12) (,)

쫼 ()
 쫼 , ,
 쫼 , ,

펼
펼
펼
펼

펼
펼
펼

펼
펼
펼
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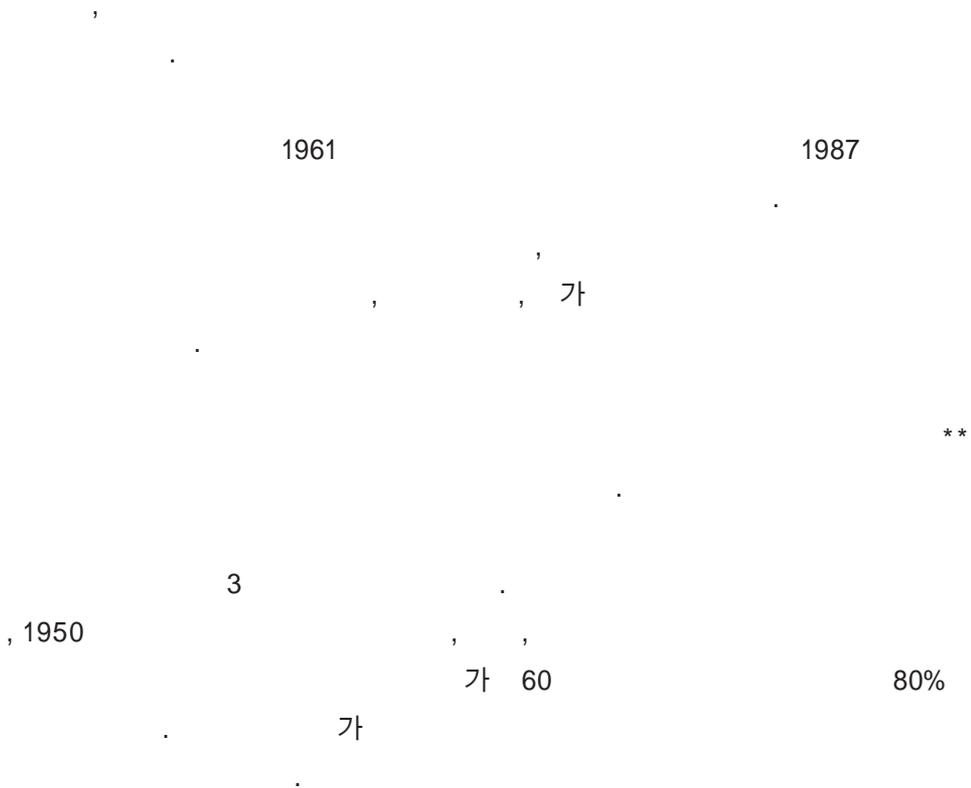
펼
펼
펼
펼

가

제 4 절

아동청소년 정책

I 개요*



*집필자 : 아동청소년정책과장 남형기

**아동은 18세미만, 청소년은 9-24세 (보호연령은 19세미만)로 9세-17세까지는 중복적 대상연령층이며 청소년보호대상 연령만을 놓고 보면 아동복지 대상과 사실상 동일 대상임을 알 수 있다.

1960 가
가
, 1970 가
. 1980
, 2000
, 1980 가
1987
, 1990 가
1991 5
2007 3 . 1990
1990
1998
, 2005 가

3

40

가

“ ”

“ (6) ”

“ (6~12) ”

“ (13~18) ”

“ (19~24) ”

II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증진*

1.

1991

가

(1989) 가

2

5

(1998~2002)

*집필자 : 아동청소년권리과장 양동교

가 . 가

3.4 가

2.

가. 청소년 권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 가

가

2005 5

TF

, TF

가

나. 청소년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4대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

2007

100

가

4

가

16

10

가

4

다. 청소년권리 조사연구 및 교육

가 (06.7.18)
가

라.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설립 추진

2008 4 가
가

3.

(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0 9 2
 가, ,가 가 1991 가 .
 가 1994 2000 1 2 가 , 1996 2003
 1997 가 2 (2003) 2001 가 ,
 , 2000 가 , 1 (1996)
 , 가 ,
 ,
 .
 2006 10
 , 가, , 가 21
 10 가
 가 .

가

2007

2002

2004 9 24

가 2007 3 9 , 2008 5 23

17 18 (2004) 18

(2005) 가

18 가

가

, 3·4 가 2008.12.19 .
 2003 가 ,
 가 .

4. .

가 2000 1
 , 2000 10 16 .
 17 ^ _ , 2001 10 .

2004 23 가 .
 . 2004 . 가
 「 」 . 1 .
 ,
 .(2007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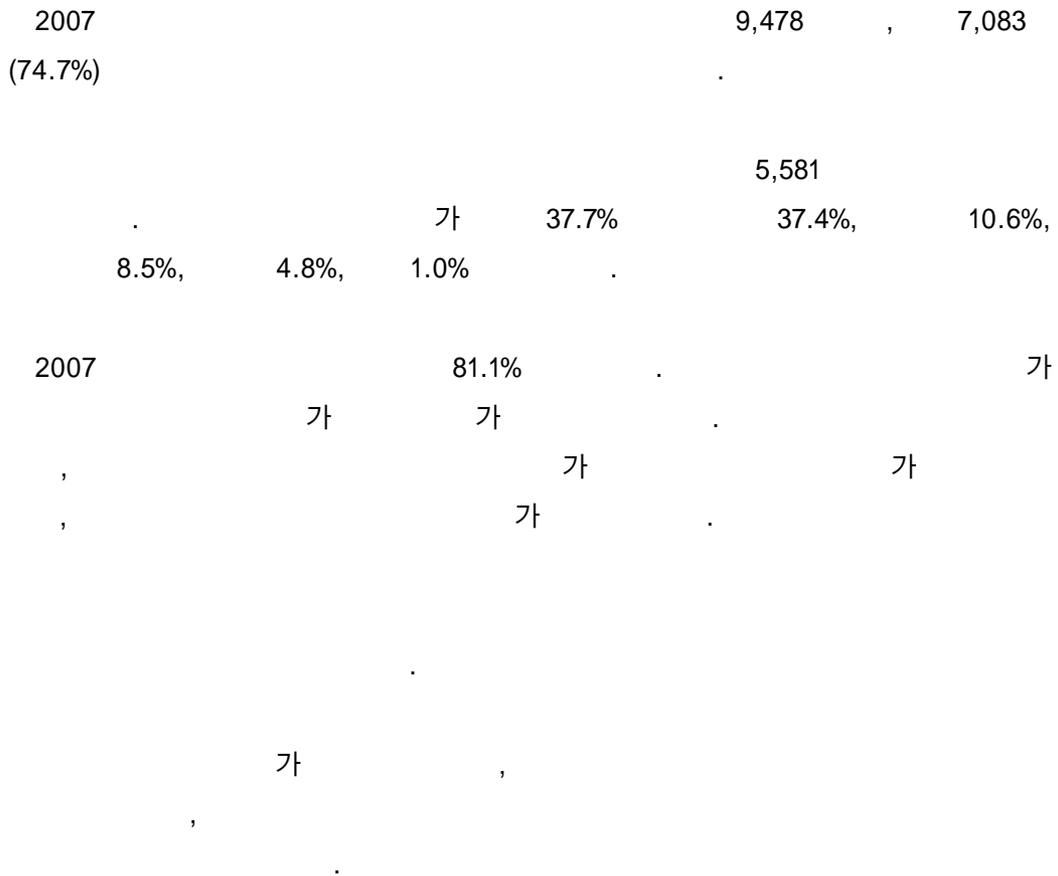
, (129) 4
 (1577 - 1391) 24 , .
 ,
 (가) , .

(2000. 10 2007. 12)

〈표 2-4-50〉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

(단위 : 건)

연 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0. 10~12	464	180	30	23	205	26	-
2001	2,105	476	114	86	672	134	623
2002	2,478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5,202	439	604	249	2,035	76	1,799
2007	5,581	473	589	266	2,107	59	2,087



5.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 , . 가
 . 98 ‘ 2
 5 , 98 11 ‘ 가
 .
 . . () 146 가 (< 2-4-51>).
 , 16 . 5 (2.5, 2.5)
 08 . .
 , 가 05
 가 ‘ (01 ,
) ‘ (98 ,)가 ,

〈표 2-4-51〉 시·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6	4	2	2	9	2	1	5	31	17	5	17	1	12	22	15	1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 9월)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

‘ , .

98 ‘ 5 ’ .
 00 ‘ ;
 ‘ 21 ’ , (04) 가
 .
 07 9 , 16 . 317 250
 가 . .(< 2-4-52>). 10 20
 , 1 .(4). 3,300
 ,

〈표 2-4-52〉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0	40	13	8	10	6	11	6	46	24	13	10	16	6	10	15	1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 9월)

다. 청소년특별회의

12 16 . 가

02 가 ,
 16
 . 04 , 05

가

가

07 590 (509 , 가 81) 5~9 16 .
 98 가 , 5
 4 (08~12)
 4

라. 아동총회

02 UN

04

가 가

07 100 16 .
 50 150 가 “ ”

6.

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1996.6.27) , 16 . 1996 ()
 1999 () 16 .
 12 .(06.7 :)

〈표 2-4-53〉 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별 운영 현황

지방센터명(개소 일자)	운영방식	위탁 단체명(운영주체)
서울(1999. 5.26)	위탁운영	한국청소년서울연맹
부산(1996. 4.17)	"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1996. 7.16)	시출연 법인	대구시청소년지원센터
인천(1996. 3.15)	위탁운영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광주(1996. 3.16)	"	흥사단 광주지부
대전(1996. 3.20)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
울산(1998. 7.08)	"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경기(1997. 10.16)	"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강원(1997. 9.01)	"	천주교 원주교구
충북(1997. 7.01)	직 영	충북도청
충남(1997. 12.06)	도출연 법인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전북(1997. 10.31)	위탁운영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남(1997. 10.15)	"	목포YMCA지부
경북(1997. 12.09)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
경남(1997. 9.30)	도출연 법인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제주(1997. 9.09)	위탁운영	(재)성지문화재단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

(1)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학교 운영

가

(2) 청소년 해외봉사단 운영

) 가

2002

2007 - FTA (2007. 6. 1) 가 가
ASEAN 2

〈표 2-4-54〉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지역 및 파견형태

연 도	파견지역(국)	파견형태	비 고
2002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호주(7개국)	14개 지방센터에서 월드컵청소년 홍보단으로 개별파견(130명)	최초 파견 사업 시작
2003	몽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6개국)	15개 지방센터에서 센터별 자체 편성을 통해 개별파견(269명)	
2004	카자흐스탄, 러시아(하바로 프스크), 몽골(3개국)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주제로 중앙센터의 조정에 의해 개별파견(162명)	
2005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지원봉사단으로 16개 지방센터에서 통합파견(176명)	구)국가청소년위원회 주최
2006	러시아 연해주(빠르티잔스크)	고려인돕기 봉사활동으로 16개 지방센터에서 통합파견(174명)	”
2007	캄보디아, 라오스	현지 봉사활동으로 16개 지방센터에서 통합 파견(183명)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7월, 2007. 10. 31~11. 8 8 9, 144, 17, 가 183 가, 2 7

(3) 청소년 봉사활동 대축제

10 12, 2007 9 가, ()

III 아동청소년의 활동지원*

1.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1985 IMF 가 가 가 가 가

*집필자 :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 신현두

가 . ‘ ’ 가

2003 12 19 16 11 “ ”가

〈표 2-4-5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규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원 개소	244	500	902	1,800	2,088
지원단가 (만원/월, 개소)	67	200	200	200	22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4.31)

(1) 서비스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 빈곤 위기·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경제교육,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건전한 놀이와 오락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특기적성, 예술치료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가정방문, 상담·정서적지지, 부모·가족 상담, 후원자 연계, 지역사회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2) 시설운영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개 인	종 교 단 체	사회복지 법 인	재 단 법 인	사 단 법 인	시 민 단 체	지자체	기 타
시설수 (비율)	2,618 (100)	1,085 (41.4)	861 (32.9)	267 (10.2)	146 (5.6)	111 (4.2)	80 (3.1)	4 (0.2)	64 (2.4)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6.30)

(3) 이용아동

(가) 연령별현황

(단위 : 명. %)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76,229명	4,127 (5.4)	32,867 (43.1)	28,177 (36.9)	9,224 (12.1)	1,413 (1.9)	421 (0.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6.30)

(나) 소득계층별 현황

구 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일 반 아 동		
				소 계	학교급식 지원 대 상	학교급식비 미 지원대상
인원(명)	76,229	21,704	30,785	21,328	10,191	13,549
비율(%)	100.0	28.5	40.3	31.3	13.4	17.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6.30 현재)

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가 가
 가
 , 2005 5
 가
 , 가
 (), , 가 가
 가 가 가 ,

가 (05 46 , 06 100 , 07 150 , 08 190) .

〈표 2-4-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구 분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일 반 형	지 원 형	혼 합 형	일 반 형	지 원 형	혼 합 형
수련시설(A형)	A-1모형	A-2모형	A-3모형	A-4모형	A-5모형	A-6모형
지역사회(B형)	B-1모형	B-2모형	B-3모형	B-4모형	B-5모형	B-6모형

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가 가 (50% : 50%)
 2007 343 가 .
 ‘가’ ‘가’ .
 ‘가’ (.) 30
 () , , 66㎡
 (20) .
 1 , ()1 ,
 . ‘ ’ (. ,) 50
 () , . , ,
 132㎡(40) .
 1 , 1 , ()1 .

〈표 2-4-57〉 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6	327	0	37	22	12	16	14	4	26	29	34	0	16	16	28	49	25
2007	343	0	37	19	27	16	13	4	25	2	34	0	17	20	28	50	2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2.

가.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실태

2 ()

가

5

가

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

가

(. . .)

〈표 2-4-58〉 전국 시·도별 동아리 특성화 분야

지 역	특성화 분야	지 역	특성화 분야
서 울	댄스스포츠	충청북도	택 건
부산광역시	영 상	충청남도	환 경
대구광역시	문 학	전라북도	과 학 연극
인천광역시	로 봇 제 작	전라남도	밴 드
광주광역시	인터넷방송	경상북도	공 예
대전광역시	전 통 문 화	경상남도	뮤 지 컬
울산광역시	힙합댄스	강 원 도	그룹사운드
경 기 도	무 선 국	제 주 도	오케스트라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2007 가 180 . 2007 5 가 526 , 7

〈표 2-4-59〉 2007년 전국 청소년시설 및 각급 학교 동아리 지원 현황

구 분	청소년시설		각급학교(초, 중, 고)	
	시 설 수	지원 동아리	학 교 수	지원 동아리
서 울	28	33	1,230	112
부 산	9	11	597	37
경 기	27	30	1,911	108
경 남	12	14	932	34
경 북	5	6	986	27
대 구	4	5	410	31
전 남	8	9	856	19
전 북	15	18	758	19
충 남	6	7	740	20
충 북	3	3	455	15
강 원	6	7	641	14
광 주	5	6	274	19
인 천	7	8	432	30
대 전	6	7	272	19
울 산	5	6	205	15
제 주	10	12	222	7
합 계	156	182	10,921	52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다. 청소년 문화존

5

2004 2005 8
 , 2006 11 2007 36

3.

가

가가

2008 6 493

4.

가. 청소년 활동시설

10

가

가

가

[그림 2-4-8]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나. 청소년수련시설

1992년 12월 810개소(수련관 143, 문화의집 198, 수련원 176, 아영장 43, 유스호스텔 102, 특화시설 6, 교육청시설 142)가 2007년 12월 264개소(수련관 4, 문화의집 9, 수련원 133, 아영장 21, 유스호스텔 91, 특화시설 0, 교육청시설 0)로 감소하였다.

〈표 2-4-6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아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교육청시설
계	810	143	198	176	43	102	6	142
공공	546	139	189	43	22	11	6	142
민간	264	4	9	133	21	91	0	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청소년시설(2개) : 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2007.12.31]

다.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사회성 함양,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 종류

청소년이용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으로 구분된다.

5.

가. 청소년지도사 제도

1993 가 가 , 2004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 및 역할

1, 2, 3 , 가 , 가,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

2007 1 1,266 , 2
 8,262 , 3 5,287 14,815 가 가
 < 2-4-61>

〈표 2-4-61〉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연도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4,815	713	708	715	341	635	593	868	988	1,583	1,429	1,370	1,317	1,392	1,248	915
1급	1,266	-	96	101	47	131	120	128	113	97	117	90	74	31	90	31
2급	8,262	485	375	361	193	314	280	530	585	990	837	700	663	456	792	701
3급	5,287	228	237	253	101	190	193	210	290	496	475	580	580	905	366	18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2007.3 634 1,941

6.

. 2007 350 가 , ,

(:)가 .

1960 1965 가

2005 가

가

IV 아동청소년교류증진*

1. 가

가

*집필자 : 아동청소년교류과장 정군식

‘가’, ‘가’ . 가 3 . 가 . 가 . . 가 , , . 가 , 가 , 가 . 2008 24 . 600 .

〈표 2-4-62〉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개황

구 분	교류 프로그램
아시아 (7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유럽 (10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중남미 (2개국)	칠레, 멕시코
중동·아프리카 등(7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표 2-4-63〉 청소년 국제교류 개황

구 분	교류 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청소년교류(26개국 상호 초청·파견) • 한·중·일 청소년 특별교류(400명 초청, 200명 파견)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조사·연수, 자원봉사, 국제회의행사, 국가별테마체험 등) • 아시아청소년 초청 연수(아시아 22개국 220명, 한국 50명) • 주한 외국인 청소년과 교류(글로벌 프렌드십 캠프) •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청소년교류(한·아세안 기금 사업)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구 분	교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간 국제 청소년교류 • 자치단체별 특성화 및 테마형 청소년교류
청소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간 국제 청소년교류 • 단체별 특성화 및 테마형 청소년교류

〈표 2-4-64〉 2007년 국가간 청소년 교류 현황

월 별	한국 청소년 파견			상대국 청소년 초청		
	대상국	기간(일자)	인 원	대상국	기 간	인 원
2월	필 리 핀	2. 6~ 2.15(10일)	10명	-	-	-
3월				그 리 스	3.26~ 3.31(6일)	2명(NGO)
4월				베 트 남	4.15~ 4.24(10일)	30명
5월	사 우 디 러 시 아	5. 7~ 5.16(10일) 5.26~ 6. 4(10일)	10명 20명	폴 란 드	5. 9~ 5.18(10일)	10명
6월	수 단 이스라엘 말레이(1차)	6. 1~ 6. 8 (8일) 6. 8~ 6.17(10일) 6.10~ 6.19(10일)	10명 10명 15명(청)	몽 골	6.21~ 6.30(10일)	10명
7월	중 국 몽 골 폴 란 드 멕 시 코 말레이(2차) 스 페 인	7. 3~ 7.12(10일) 7. 4~ 7.13(10일) 7.18~ 7.27(10일) 7.23~ 8. 1(10일) 7. 8~ 7.17(10일) 7. 9~ 7.27(19일)	40명 10명 10명 10명 14명(지도자) 3명	멕 시 코 말레이(1차) 스 페 인 수 단	7. 2~ 7.11(10일) 7.18~ 7.27(10일) 7.19~ 7.26 (8일) 7.24~ 8. 1 (9일)	10명 15명 3명 10명
8월	인 도 모 로 코	8. 1~ 8.10(10일) 8.17~ 8.26(10일)	10명 10명	말레이(2차) 사 우 디 인 도 모 로 코	8.11~ 8.20(10일) 8.18~ 8.27(10일) 8.22~ 8.31(10일) 8.23~ 8.30 (8일)	15명(지도자) 10명 10명 10명
9월	칠 레 베 트 남	9. 7~9.16(10일) 9.20~9.29(10일)	5명 20명	러 시 아 일 본	9. 3~ 9.12(10일) 9. 9~ 9.23(15일)	20명(지도자) 30명
10월	터 키 이 집 트	10.20~10.29(10일) 10.25~11. 3(10일)	10명 10명	필 리 핀 칠 레	10.29~11. 4 (7일) 10.26~11. 3 (8일)	8명 5명
11월	일 본 필 리 핀 그 리 스	11. 1~11.15(15일) 11.14~11.21 (8일) 11.27~12. 4 (8일)	30명 11명 2명	중 국 이 집 트 이스라엘 파키스탄	11. 1~11.10(10일) 11. 6~11.15(10일) 11. 8~11.16(9일) 11.26~12. 5(10일)	40명 3명 10명 10명
12월				터 키	12.10~12.17(10일)	10명
총계	19개국	21회	270명	20개국	21회	271명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연도	기간	참가자	참가국
2003	파견	54명 (청소년50, 지도자4)	4개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초청	185명 (아세안122, 한국63)	11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2004	파견	54명 (청소년50, 지도자4)	5개국 싱가포르, 말레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초청	187명 (아세안122, 한국65)	11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2005	파견	22명 (청소년20, 지도자2)	3개국 인도, 라오스, 베트남
	초청	111명 (아세안73, 한국38)	11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2006	파견	21명 (청소년19, 지도자2)	2개국 싱가포르, 필리핀
	초청	112명 (아세안65, 한국47)	10개국(미얀마 불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표 2-4-65〉 한·아세안 청소년교류 현황

연도	기간	참가자	참가국
2004	파견	54명 (청소년50, 지도자4)	4개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초청	185명 (아세안122, 한국63)	11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2005	파견	54명 (청소년50, 지도자4)	5개국 싱가포르, 말레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초청	187명 (아세안122, 한국65)	11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2006	파견	22명 (청소년20, 지도자2)	3개국 인도, 라오스, 베트남
	초청	111명 (아세안73, 한국38)	11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2007	파견	21명 (청소년19, 지도자2)	2개국 싱가포르, 필리핀
	초청	112명 (아세안65, 한국47)	10개국(미얀마 불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 (ASEAN)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

2.

가 2006 .

가 , . 「 , 「

가 「 , 「 「 , 「

」 . 「

가.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자, 조사·연수단”

4 1 가 , .

2 . 2008 75 300 .

나.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가 , 가

가 . 가 70% .

다.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2008 () 가
 9 19 316 12 ~16 . 가
 가 , ,

라.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가 가
 . 가
 16 15 300 10
 가 . , , , ,

3.

가 , 가
 가 가 ,
 가 2006 8 21 .
 2006 18 248 가 , 2007 23 250 , 2008
 24 가 256 가 . “ ”
 , , IT . , , 가 가
 , 가 .

〈표 2-4-66〉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참가 현황

국가별	연도별				국가별	연도별			
	2006	2007	2008 계획	합 계		2006	2007	2008 계획	합 계
캄보디아	15	9	10	34	인도	5	9	10	24
미얀마	10	10	10	30	파키스탄	9	10	10	29
라오스	15	9	10	34	카자흐스탄	15	11	8	34
베트남	15	10	10	35	우즈베키스탄	15	10	12	37
필리핀	15	10	10	35	방글라데시	6	10	10	26
태국	14	10	10	34	네팔		9	10	19
말레이시아	15	10	10	35	아프가니스탄		10	10	20
싱가포르	5	9	5	19	키르기스스탄		6	10	16
브루나이	5	10	10	25	중국		7	10	17
인도네시아	15	10	10	35	일본		10	10	20
몽골	15	10	10	35	한국	49	45	45	139
스리랑카	10	6	6	22	총계	248(18)	250(23)	256(24)	754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4.

가

가

가

가. 국제청소년 행사 국내 개최 지원

(1) 제18회 국제청소년광장

2007. 7. 19~26

23

100

가 가

가 가 “ ”
가 가 , , ,

〈표 2-4-67〉 2007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사 업 명	시기(기간)	장 소	인 원	비 고
국제 청소년 광장	7. 19~26(8일)	서울, 과산	23개국 100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 도전 캠프	7. 23~27(5일)	무주	22개국 10,088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8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8. 9~11(3일)	여수	37개국 6만명	전라남도(여수)
제42차 국제 청년 캠프	8. 9~19(11일)	이천	25개국 120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7 동북아 청소년 포럼	8. 16~21(6일)	서울, 천안	3개국 80명	MRA한국본부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나. 한국 청소년 해외파견 지원

(1) 청소년적십자 해외 봉사활동

()
95 2007. 7. 21 ~8. 1
8. 6~8. 16 2

(2) 한·중 청소년 친선 문화제

2007. 7. 31~8. 7
8 57 25 82 가
(, ,)

(3) 청소년 광복군 유적지 순례

● ●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사 업 명	시 기(기 간)	장 소	인 원	비 고
“청소년, 대한민국 발전! 프로젝트” - 도시 브랜드 제고, 친환경, 개방, 혁신과 노사문화, 항만·항공 허브, 산·학·연 구축 등	11월~12월	일본, 독일 등 7개국 9개팀	약 100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사랑의 집짓기 청소년 해외봉사단	12.17~2008.12.17	네팔, 마다가스카르 등 4개국	96명	한국해비타트
“청소년 다함께 행복, 다문화 체험·연수단” - 다문화, 장애, 소외청소년 체험 연수	11.26~12.23	일본 싱가포르	53명	한국유스호텔연맹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6 가 ,

2007 , 2 10 11 185

315 500 가 가 “ ”가 .

“ ” . ,

6.

〈표 2-4-70〉 가정위탁보호 현황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772	4,425	5,577	7,565	10,198	12,562	114,465	16,2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 () 가

60 5~7

1995 , 가 ()

, 1997 1999 10

, 2004 1 ‘ 가 ’ 가

2007 가 176 , 2008

가 () .

〈표 2-4-71〉 공동생활가정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	10	10	15	32	32	32	32	60	120	17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다. 국내입양

가 가

가 .

가 .

가 .

가 551
(2003. 2. 9)
2007 13 가 1 10
2007 1
2 가

〈표 2-4-72〉 국내입양 현황 (단위 :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25	1,229	1,412	1,426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1,461	1,332	1,38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라.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2007 18 가 1,630
가
가 가
가 가

〈표 2-4-73〉 소년소녀가정아동 현황

(단위 : 명, 세대)

연 도	세대수	전 세 대 원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 타
2001	5,248	8,060	133	1,640	2,611	3,414	262
2002	4,531	6,947	115	1,478	2,232	2,936	186
2003	3,994	6,184	99	1,309	1,966	2,668	142
2004	3,504	5,444	87	1,244	1,681	2,331	101
2005	2,755	4,332	85	901	1,343	1,923	80
2006	2,086	3,271	39	572	1,031	1,570	59
2007	1,630	2,501	25	401	789	1,226	6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12.31)

2.

가. 드림스타트(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가 “ ” .

(. , 04) 1.4 ,

2.2 , . 2 .

가 가 가

가

(Sure Start), (Head Start)

12 가

가

2007 16

2008 32

(CDA) 18

2005 4 Child Trust Fund()

2007 4 가

3 17

18 (CDA)

11 () ,18 3,870

가 18

가

나. 아동급식 지원

가 2000 10
 . 2000 2001
 . 2004 , . 가
 . 2007 27 .

〈표 2-4-74〉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5,112	13,552	13,610	14,533	235,202	214,009	257,276	271,60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통계(2007.12.31 기준)

3.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

2007 282 18,426 .
 2

가

〈표 2-4-75〉 아동복지시설 현황

연 도	구 분	계	양 육	직업 훈련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종합 시설	아동 복지관	아동 전용
2003	시설수(개소)	279	239	5	6	13	10	2	1	3
	보호인원(명)	18,818	17,437	158	373	244	437	169	-	-
2004	시설수(개소)	279	239	4	6	13	11	2	1	3
	보호인원(명)	19,014	17,675	130	376	246	432	155	-	-
2005	시설수(개소)	286	242	4	8	13	13	2	1	3
	보호인원(명)	19,151	17,729	110	457	229	457	169	-	-
2006	시설수(개소)	285	243	3	8	13	13	2	-	3
	보호인원(명)	18,817	17,517	75	436	235	391	163	-	-
2007	시설수(개소)	282	243	3	8	13	13	3	-	3
	보호인원(명)	18,426	17,161	72	404	269	365	155	-	-

주)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통계(2007.12.31 기준)

나.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18 가 , ,
 () , 25
 5
 1997 ,
 16
 , ,
 , 가 2006
 , ,

가

VI 청소년 상담활동*

1. (CY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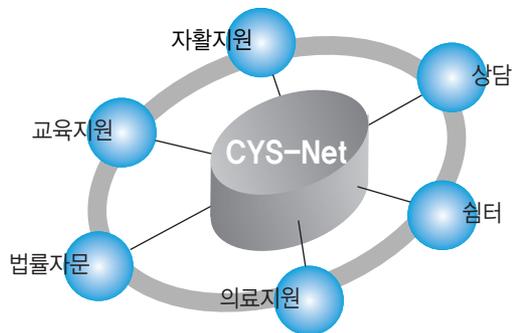
가. 추진배경

, 가 , 가 , 가 ,

 2005 5 “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 Net) ”
 “ ”

CYS-Net

[그림 2-4-9]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집필자 :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장 염미연

나. 사업내용 및 규모

CYS-Net

CYS-Net 2007 16 . 52 . .
 (,)
 1 180 (, ,
 290 , 50%) , 1
 30~40 (50%) .
 , 가
 , ,CYS-Net

〈표 2-4-76〉 **CYS-Net 서비스 이용 인원**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2006	14,055	15,135	29,190
2007	27,845	29,054	56,899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8.3)

〈표 2-4-77〉 **CYS-Net 서비스 이용 건수** (단위 : 건)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계
2006	143,490	8,365	14,860	1,957	495	1,406	918	2,166	173,657
2007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093	412,811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8.3)

, 1388 가 2003 pc , , 1388 2005 CYS-Net 가

단계별 지원단	역 할	참여기관	지원단 활동 예시
발견 지원단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기타 위기상황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상담센터에 연계	약국, 인터넷PC문화협회, 찜질방, 노래방, 교총 및 전교조 소속 교사 등 (총35,000기관+25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약국에서 임신진단 테스트를 사는 경우 1388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 상담자와 연결 - 교사가 학교에서 상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센터로 연계 및 안내
구조 지원단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지정된 장소로 동행, 이송	경찰지구대, 콜택시조합, 교통 봉사대, 아마추어무선연명 (총 12,000개 기관)	
의료	폭력, 성폭행,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원단상	비용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3.)

2. Help Call 1388

1388, 가 1588-0924,
 () 1388 (2005 9 1)
 (CYS-Net)

『Help Call 1388』
 , ,
 , ,
 365 24 - (One-Stop)

1388 2005 9 178 2007 12
 666 274%가 가 , 16 . 131
 . . 147 Help Call 1388 .
 , 1388 ,
 , PC ,
 , SKT 1388 ,
 TV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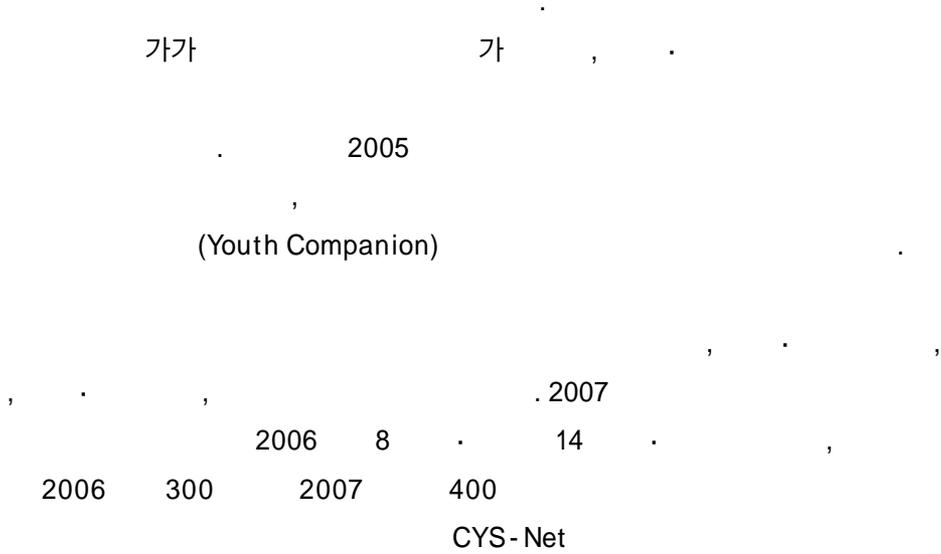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표 2-4-79〉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단위 : 건)

주요 사업내용	실 적		증(△)감		
	2007년(A)	2006년(B)	A-B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홍보					
• 신문 게재 및 홍보	79건	32건	47	146.9	
• TV 홍보	30건	25건	5	20	
Help Call 청소년전화1388 이용실적	통화횟수	243,051건	98,466건	144,585	146.8
	일평균	666건	270건	396	146.6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3.)

3. (YC)



4. 가

가. 추진배경

가 가 가 가 가

가 6 가 가

가 가

가 가

나. 사업내용 및 규모

가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일시상담	4개소	7개소	9개소
단기상담	29개소	43개소	45개소
중장기상담	15개소	21개소	25개소
계	48개소	71개소	79개소

2007년 1 (YMCA) 71 개소

〈표 2-4-80〉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일시쉼터	4개소	7개소	9개소
단기쉼터	29개소	43개소	45개소
중장기쉼터	15개소	21개소	25개소
계	48개소	71개소	79개소

※ 전액지방비 지원쉼터도 포함(2006년 8개소, 2007년 7개소)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3.)

〈표 2-4-81〉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9개)	단기쉼터(45개)	중장기쉼터(25개)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3개월 이상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 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전액지방비 지원쉼터도 포함(2006년 8개소, 2007년 7개소)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3.)

다. 청소년쉼터 입소현황

가 < 2-4-82> ,
가

〈표 2-4-82〉 청소년쉼터 이용현황

◎ 연인원

구분	나 이					보호기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소 계	15일 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소 계
'05년	18,734	54,077	57,298	9,994	140,103	16,842	14,013	39,797	24,579	44,872	140,103
'06년	20,444	70,207	84,090	18,448	193,189	24,495	24,620	58,910	37,231	47,933	193,189
'07년	11,161	79,615	97,703	20,373	208,852	31,461	25,196	57,243	49,259	45,693	208,852

◎ 실인원

구분	나 이					보호기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소 계	15일 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소 계
'05년	650	3,420	3,600	594	8,264	3,682	720	1,488	854	1,520	8,264
'06년	996	4,879	4,902	926	11,703	5,177	1,266	2,245	1,348	1,667	11,703
'07년	690	6,116	6,450	1,052	14,308	7,031	1,369	2,266	2,038	1,604	14,30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3.)

5. (.)

'90 가 , 10
가 , 가 2007 7
2,000 , 가 17,000
가 .

〈표 2-4-83〉 연령별 새터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10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04년까지	260	844	1,842	2,024	750	304	280	6,304
'05년	40	184	374	475	187	53	70	1,383
'06년	84	259	527	688	258	73	130	2,019
'07.11	448	1,510	3,308	3,946	1,581	510	584	2,181
누계	832	2,797	6,051	7,133	2,776	940	1,064	11,887

※ 자료 : 통일부(2007.11.)

〈표 2-4-84〉 다문화청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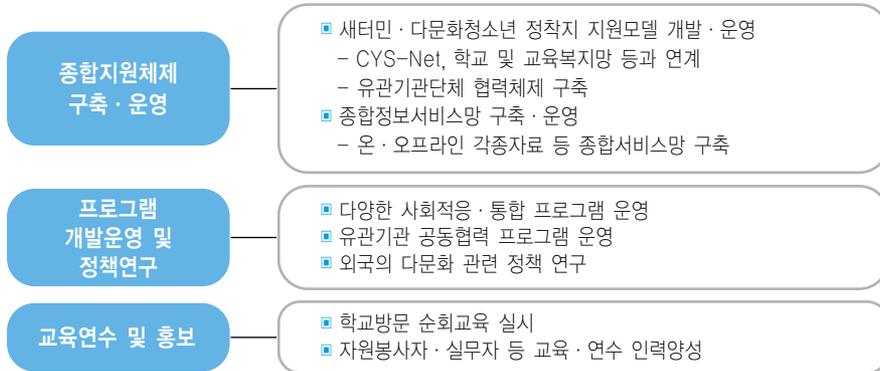
(단위 : 명)

만 6세 이하	만 7세 ~ 만 18세 이하	총 계
26,445	17,813	44,258

※ 자료 : 행정안전부(2007.8.)

(2006.4.24) , CYS-NET()

[그림 2-4-10] 새터민·다문화 청소년 지원체계



6.

가. 한국청소년상담원

()

[표 2-4-85]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2007)

(단위 : 명)

구 분	대 면 상 담			매 체 상 담				계	
	개 인	집 단	심리 검사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		DB상담 (자료조회)		웹심리 검사
					게시판 상담	채팅 상담			
지도자	16	303	0	515	33	5	-	-	872
학부모	2,087	207	263	5,500	294	25	-	-	8,376
일반인	486	92	55	1,546	304	154	-	-	2,637
청소년	3,419	463	1,044	2,888	9,102	1,743	16,898,930	16,299	16,933,888
계	6,008	1,065	1,362	10,449	9,733	1,927	16,898,930	16,299	16,945,773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3.)

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현황과 실적

(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42	33	
1990			
1991			
1992			
1993	()	()	()
1994	()	()	()
1995	()	()	()
1997	()	()	()
1999	()	()	()
2006	()	()	()
2006	()	()	()
1	()	()	()
2	()	()	()

〈표 2-4-86〉 2007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립 수	16 (25)	7 (16)	1 (8)	3 (10)	1 (5)	2 (5)	2 (5)	5 (18)	32 (31)	4 (12)	16 (16)	15 (14)	4 (22)	12 (23)	21 (20)	2 (2)
설치비율	64	44	13	30	20	40	40	28	103	33	100	107	18	52	105	100

※ 주: ()는 기초자치단체 수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3.)

(2)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42	33	
127			

· · · · · , 127 68 (54%)가 · · ·
 , 59 (46%)
 ()
 60%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활동

2007 () 2,502,712
 (1,560,607) 60% 가 1,418,012
 (52.2%), 1,296,280 (47.8%) 가 2007
 , 8.8%, 58.5%, 10.2%,
 8%, 0.5%, 0.6%, 12.3%, 1.1%
 가가

〈표 2-4-87〉 2007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적 (단위 : 명)

구 분	성 별			대 상 별									
	남	여	소 계	청 소 년						성 인			
				초	중	고	대	근 로	무 직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개인 상담	119,485	120,309	239,794	44,513	76,846	40,036	2,505	1,445	10,802	45,176	13,119	5,352	
집단 상담	765,092	822,807	1,587,899	282,431	534,903	450,143	59,454	3,837	20,752	96,188	70,388	69,803	
전화 상담	119,574	156,967	276,541	11,720	44,155	37,234	4,623	3,146	9,855	83,487	44,341	37,980	
심리 검사	개별	17,031	19,180	36,211	7,256	12,571	7,600	920	223	1,245	5,048	427	921
	집단	85,092	95,086	180,178	30,449	68,343	59,461	6,292	436	494	5,999	2,981	5,723
사이버 상담	메일	3,516	6,651	10,167	634	2,892	2,947	824	198	310	1,149	643	570
	채팅	997	1,498	2,495	145	865	770	121	56	237	76	185	40
사업수행 프로그램	10,820	6,156	16,976	1,580	4,684	5,622	189	380	3,333	318	532	338	

구분	성별			대상별									
	남	여	소계	청소년						성인			
				초	중	고	대	근로	무직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일반인	
지원 서비스	개별	59,994	63,384	123,378	17,415	34,351	17,129	377	6,675	8,372	20,357	15,249	3,453
	그룹	101,209	110,371	211,580	33,994	76,261	45,106	4,656	324	13,127	12,721	10,338	15,053
기타 상담	13,470	15,603	29,073	2,918	7,128	4,144	331	385	3,662	2,439	5,881	2,185	
합계	1,296,280	1,418,012	2,714,292	433,055	862,999	670,192	80,292	17,105	72,189	272,958	164,084	141,418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8.3.)

Ⅶ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1. 가

가 , 2002 , 2004 가 , 1991 ,

*집필자 : 아동청소년보호과장 이석규

2003

2004. 1

가

가

2005. 5 “

”

가

가

2005. 12

“

”

8

14

가

가

가

가

가

가

DNA

2006. 11

2008. 4

(08.4.30, 61)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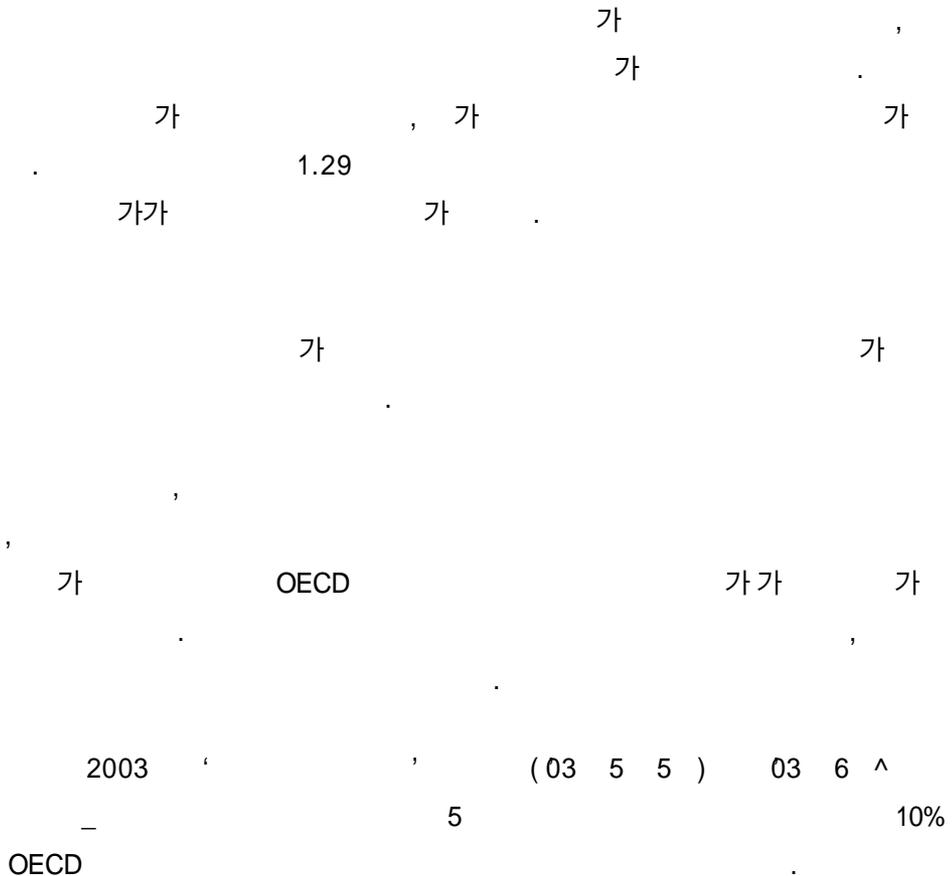
〈표 2-4-89〉 시설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현황(실종아동전문기관)

(2007.11월 기준, 단위 : 명,)

합 계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노인시설	정신의료기관
14,628	2,428	6,811	1,784	1,582	10	2,013

2.

가. 아동 안전대책의 성과



[그림 2-4-11]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 자료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2006 645 2002 46.7%가
 2002 594 2006
 318 ,
 2002 198 2006 78 , 2002 134
 58 가
 03 06 3,069 가
 2006 ,6
 9,757 ,
 2006 ' 119 ' 4,229 2,417
 , , , 18

가

(21~23) 4

2007 가 가 가가

가

가 가,

가 ,

가 2009 2

3.

가 , PC 가 가

가 2030

() 22 3

390

가. 청소년유해업소 정화

(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가

1999 7 1

67

67 가

41

22

2007 12

63

(2)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가

구분 시도별	유형 주점	단기 점	일 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무도 학원	무도 장	이용업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일반 게임장	계
서울	2,451	848	92,964	9,389	158	39	4,550	4,216	6,707	624	1,185	126,140
부산	1,000	100	29,969	9,585	753	170	1,831	2,502	2,703	431	468	63,362
대구	1,358	401	26,805	2,973	145	0	1,352	1,152	2,271	88	408	36,953
인천	1,209	651	27,267	2,109	26	0	1,101	1,430	2,257	78	485	36,613
광주	862	392	14,709	1,676	81	0	787	957	1,261	78	588	21,391
대전	515	37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 12)

가 MOU
가 ,

(3)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가 () .
가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운영 현황

200	5	3
200	50	
가		
「		
	가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3	(1981. 10. 8)	
4	(1990. 12),	6 (1993. 9), 12 (1998. 1) 14
(1999. 5)	가	5
2007 8 3		8578
2008 8		2008 8 4
		가

(다) 문제점

가	가
	가

나. 청소년보호법 점검·단속실적

	2007
9,651	2 , 8,688
91.9%가	

〈표 2-4-9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위 반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 해 매체물	구 속	불구속	행 정 처 분
2002	22,222	6,744	13,238	1,127	1,113	334	21,888	18,761
2003	17,771	4,954	10,820	1,024	973	226	17,545	15,515
2004	15,962	4,687	9,129	1,437	709	150	15,812	13,616
2005	12,615	3,080	7,430	1,385	720	47	12,568	11,081
2006	9,902	1,995	5,869	790	1,248	25	9,877	8,638
2007	9,651	1,075	7,795	565	216	2	9,649	8,68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운영

가 , 5 6 ,
324 (2007)

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 . 1994 YMCA
, 1995 1996 6 6
. 1997 .
2007 12 , 16 . 394 (20,979)

가

4.

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28.08%, 16.94%
 가 15~18
 12~14 17 가
 1998 15.1 2005 14.7
 1998 12 가 8.2% 2005
 14.8% , 13 1998 4.3% 2005
 10.1% 가 가
 13.54 ,
 15.19 가 3
 12~14 15~18 7 가
 1
 40.76%
 TV

가 1 가 26.62%, 1
 4.46% . 1 가
 1 가
 15~18 5.45%가 1 , 12~14
 3.59% .

나.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 ,
 ,
 가
 가 가
 ,
 2 (Gateway)
 .
 가
 ,
 가

(1)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

2005 WHO
 , (FCTC)
 , 2006 12 “ ”

가 . . , , () , 가

(2)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가 「 1 2002 26.0% 2007 46.6% 5 20.6% 가 2007 2 가

가 가

(3) TV방송 드라마 음주장면 모니터링 사업

, DVD, 가

가 2 , TV 가 TV

TV 2006 TV 3 (KBS, MBC, SBS)

(4)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추진

2007 2007
 4.8%, 2.6%, 16.2%,
 5.2%
 0.5%, 0.7%, 4.5%
 2000 10.7% 2007
 5.2%

〈표 2-4-92〉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대책 추진과제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교사를 통한 각종 금연 및 흡연예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학생의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강화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대상 교육과정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관람가 영화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연교실, 금연지도자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담배판매행위 처벌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담배 유통물 규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상의 담배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보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가

, ' 가

VIII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1.

가. 개요

가

가

, UCC

나. 매체물 심의기구 현황

가

가,

가,

가,

가

*집필필자 :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 김성벽

가

3

(가 , ,)

〈표 2-4-93〉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심의 기구	담당 매체	소관부처·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출판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CD	문화체육관광부·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병행

다. 음반심의 현황

가 () 2007
 1,700 , 25,520 ,
 182 , 410 .
 2007 6 9 () .
 , . 7 , 5 12

〈표 2-4-94〉 심의 건수 및 시정명령 요청 현황(2007년도)

(단위 : 건)

구 분	심의대상 음반건수	심의대상 곡 수	위반 및 시정명령 요청 건 수			
			계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청소년 유해표시	구분·격리
2006	184	2,760	-	-	-	-
2007	1,700	25,520	12	-	5	7
계	1,884	28,220	12	-	5	7

라.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1997 , 가5,104
 123,546 , IT 가 (04
 2,088 3 17,307 8.3 가)

〈표 2-4-95〉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심의기관별)

(2007.12.31 현재)

연 도	고 시 횟 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 청 노 위	계	
		도 서	정 기 간 행	만 화 단 행	만 화 잡 지	광 고	전 자 출 판	영 화	비 디 오 물	영 상 물		방송프로그램 영역				정보통신 영역				유해 업소 물품 건
												영 화	다 큐	만 화	기 타	음 악	PC 통신			
97	19	59	105	1,994	29	11	12	102	318	126	0	1,699	1	19	8	9	607	0	5	5,104
98	62	173	416	1,140	52	0	49	151	638	124	0	916	12	52	0	14	755	0	0	4,492
99	62	304	388	1,501	14	1	16	71	332	96	4	280	5	2	4	0	61	36	1	3,116
00	41	366	699	1,227	0	0	0	0	0	0	0	158	9	4	67	0	53	41	1	2,625
01	45	289	983	1,387	1	0	0	0	0	0	0	655	5	99	975	451	7	407	0	5,259
02	51	259	1,098	1,492	8	0	3	0	0	0	0	1,432	1	114	202	19	435	851	0	5,914
03	68	611	1,220	1,802	131	0	256	0	0	0	0	2,768	0	3	284	510	0	3,537	0	11,122
04	63	371	528	1,810	269	2	602	0	0	0	0	269	2	0	0	0	0	7,657	0	11,510
05	55	334	318	1,464	199	0	817	0	0	0	0	1,304	0	15	179	2	0	17,131	1	21,764
06	57	365	339	1,424	78	0	740	0	0	0	4	3,001	0	29	480	3	0	19,475	0	25,938
07	65	414	377	1,867	46	0	776	0	0	0	347	6,506	0	151	840	1	0	15,314	0	26,639
계	588	3,545	6,471	17,108	827	14	3,271	324	1,288	346	355	18,988	35	488	3,039	1,009	1,918	64,449	8	123,483
총합계				31,236					1,958		355			23,559			66,367	8	123,483	

2.

가. 현황 및 문제점

IT 과 과잉 사용, IT (98%) , 2%(20) , 12%(120) , 가, 가

〈표 2-4-96〉 인터넷 중독집단의 임상적 진단

계	주요우울 장애	충동조절 장애	과잉 행동장애	성격·품행 장애	적응장애	기타
100%	23.9%	19.6%	10.9%	21.8%	4.3%	19.6%

※ 인터넷게임중독을 호소하는 방문청소년 내담자 실제적 특성연구, 아주대, 2006

가 1 , 가

〈표 2-4-97〉 사이버 범죄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총 계	성인	청소년	청소년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2006	70,545	61,092	9,453	13.4	△9.4
2007	78,890	66,899	11,991	15.1	1.8

※ 사이버범죄현황(사이버경찰청, '03~'07)

가 1997

, TV

가

가

나. 피해예방 대책

(1) 학부모·교사 대상 사이버 윤리교육사업

2004 가 .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안내 홍보

(1388),

(3)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안내서 제작 배부

가

“ / ”

가

가,

3. .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2007 가 ’ 50 가
 * ’ 2005 3 50 3 가
 가 .
 , 가
 가 , , .
 가

〈표 2-4-98〉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국 가	전체 순위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최고속 인터넷 가입률	전화 보급률	이동전화 가입률	TV 보급률	케이블TV 가입률
스웨덴	1	3	1	15	1	11	1	14
미국	2	4	8	14	8	29	2	10
한국	3	17	5	1	11	21	21	1
스위스	4	1	16	7	2	20	27	2
네덜란드	5	6	2	6	16	15	16	3

※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7

가 , .

나. 유아대상 건전매체이용습관 형성 교육 지원

3~5 가

, ,

*국제정보화지수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계를 토대로 주요 50개국의 인터넷 이용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컴퓨터 보급률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뒤 가중치를 감안해 산출한 지수

〈표 2-4-99〉 만 3~5세 인구의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인터넷 이용률(%)	47.9	50.3	51.6
인터넷 이용자수(천명)	870	850	780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2005~2007 상반기

가 06 「 가 」
 , 07
 , 11 1,800
 .
 07 , 08
 가 , , (YP)
 .

다. 아동청소년 유해매체 변별력 제고

(1)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YP 프로그램이란?

YP ^ (YouthMapping Project)(1997) _ ^
 (Energy Patrols) _ ^
 (2001) _ “ Youth Patrol ” .
 “ YP ” (Youth Program) 가
 .
 가 ,
 (Youth Participating),
 (Youth Projecting), (Youth Patrolling), (Youth
 Powering) .

(2) YP시범학교의 활동성과

2006 2007 2

◎ 매체의 바른 활용 능력 검증

()

〈표 2-4-100〉 매체의 바른 활용 능력의 집단별 변화

구 분	집단별	대상(N)	평균(M)	분포도(SD)	유의도(p)
지식의 변화 (6문항)	비교집단	146	3.34	.99	.002
	실험집단	250	3.64	.93	
매체 사용 태도 (10문항)	비교집단	146	3.47	.87	.000
	실험집단	250	3.85	.72	
유익한 환경으로의 개선 노력(10문항)	비교집단	146	2.92	1.02	.000
	실험집단	250	3.79	.74	

p<.05

YP

YP

, YP

라. 학부모의 자녀매체지도 능력 제고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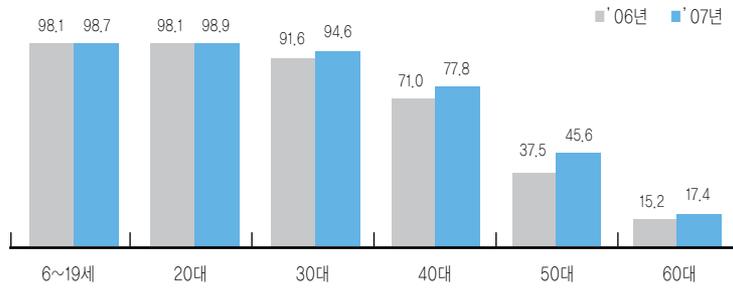
95.4%가 ‘가’

가

가

가

[그림 2-4-12]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가

1999

가

16

, 2008

1 4 1, 4

4. .

가. 추진배경

. ,

가 . 가 ,

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 구축

가 . , , .

가

, ,

가

가

가

다.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실시

가 가 , , 가
가

, , P2P , UCC

*사이버윤리지수 : 2006년 6월 개발된 구성방법을 근간으로 인터넷 업계의 도움을 받아 업계의 사이버윤리 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 지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한 자체평가지표, 시민을 대표하는 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한 이용자 평가지표 등 3가지 수준으로 측정

라.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가

7

IX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1.

가. 성매매 대상청소년 현황

2004 , 2006
 1,745 , 1,502 , 183 , 744
 60 . 2005 ,

〈표 2-4-10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현황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 거 대 상 별			조 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 속	불구속
2001	1,255	2,034	1,690	314	30	803	1,231
2002	1,270	2,014	1,510	477	27	591	1,323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 자료 : 경찰청

*집필자 : 아동청소년성보호장 임을기

가 744 590
 가 (98), (50), (5), (1)
 . 2005 가 2005 924
 2006 590 2006 가 2005

〈표 2-4-102〉 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연도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 면	기 타
2001	1,255	845	136	46	102	126
2002	1,270	916	44	61	106	143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	1,593	1,368	21	7	88	109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 자료 : 경찰청

2006 , 729 가
 528 가 , 116 , 60 , 25 .
 2005 913 2006 528 .

〈표 2-4-103〉 성매매 대상 청소년 사후처리 현황

연도별	계	형사입건	보호사건 송치	쉼터등입소	보호자인계
2001	1,102	30	75	68	929
2002	1,221	27	36	64	1,094
2003	1,316	37	22	72	1,185
2004	1,599	45	26	168	1,360
2005	1,124	30	14	167	913
2006	729	60	25	116	528

※ 자료 : 경찰청

12 가 10 , 13~14 , 88 , 15~16 가 348 , 17~18 가
 283 . 327 가 ,
 (167), (140), (9), (6) .

〈표 2-4-106〉 성매매 대상 청소년 범행동기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유형비부족	생활비마련	친구의권유	성적호기심	기 타
2001	1,102	626	199	23	25	229
2002	1,221	645	256	39	31	250
2003	1,316	629	343	30	30	284
2004	1,599	693	433	32	35	406
2005	1,124	429	438	13	34	210
2006	729	271	286	9	28	135

※ 자료 : 경찰청

〈표 2-4-107〉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기관
40시간	· 검찰수강명령 부과자 · 경찰의 대상청소년발견 통보자	· 대전광역시청소년쉼터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4주	· 40시간 수료 후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자 · 쉼터보호 청소년	· 광주YWCA위기청소년교육센터
7주	· 정신장애 청소년	· 맥지청소년쉼터
대상청소년 확보 및 상담·일시보호(1박2일)	· 경찰의 대상청소년발견 통보자	· 창원여성의집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6 7 12 5 94
2007 1 12 305

〈표 2-4-108〉 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창원여성의집 (중앙센터)	부산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대전청소년 여자쉼터	광주YWCA 위기교육센터	새날을어는청 소녀쉼터	맥지 쉼터	계
'06년 7~12월	24명	20명	10명	26명	-	14명	94명
'07년 12월	108명	58명	62명	47명	5명	25명	305명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

가. 신상공개제도의 목적과 의의

「(‘)」
 가 가 2 ‘ ,
 . 2000 7 「 」

나.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가 2 ,
 .
 20 2 , 5 ()
 , 6 1 3 () ,
 7 1 () , 8 1 ()
 . .) , 9 () ,
 10 (,) , 「
 」 가 301 , 301 2, 305 , 339
 ()
 .
 , (,) ,
 , () , (. .) , 가 .
 가
 6 , . 1 .

가
 1,341 가 3 (0.2%) 가
 2006 6 30

마.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

2001 8 30 2007 11 21 13
 6,519 , 2,171 , 2,082 ,
 1,575 , 667 , 24 .
 가 53.2% 가 , 38.3%, 8.5% .
 , 30 가 2,093 (32.2%) 가 , 20 1,773
 (27.2%), 40 1,665 (25.5%), 50 624 (9.6%), 60 364 (5.6%) .
 1,713 가 , 980 , 916 , .
 988 , 509 , 490 .
 1,156 (17.7%), 1,283 (19.7%), 407 (6.2%) 가 ,
 462 (7.2%), 446 (6.8%), 407 (6.0%), 371 (6.0%), 327
 (5.3%) .

가

〈표 2-4-109〉 범죄유형별 공개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제1차	169	65	61	27	16	-
제2차	443	150	120	123	49	1
제3차	670	214	166	178	111	1
제4차	643	208	200	155	70	10
제5차	545	168	195	107	75	-
제6차	553	200	158	128	66	1
제7차	557	174	192	134	57	-
제8차	532	210	156	94	68	4
제9차	512	174	136	137	65	-
제10차	533	186	151	147	46	3
제11차	494	155	191	128	18	2
제12차	485	136	206	128	14	1
제13차	383	131	150	89	12	1
계	6,519	2,171	2,082	1,575	667	24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3.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 개요

1990 (The Jacob Wetterling Act) , 1994 (The Megan 's Act) , 1996 (The Adam Walsh Act) 2006 (The 가 , 가 .

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제도

2 . , 13 가

30 가

가

(6)

30

1 . , 1

가

,1

500

가 가 가

가 10 가

가 가

가

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열람제도

(“ ”)

13

13

13

10 1

가

〈표 2-4-110〉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열람대상자

피해 청소년	성폭력범죄	성매수 등 성범죄
13세 미만	열람대상	재범위험성 있을 때만 열람대상
13~19세미만	재범위험성 있을 때만 열람대상	열람대상 아님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표 2-2-4-111〉 등록정보와 열람정보의 비교

등록정보	열람정보	비고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나이만 제공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미제공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보건복지가족부가 제공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5

가

가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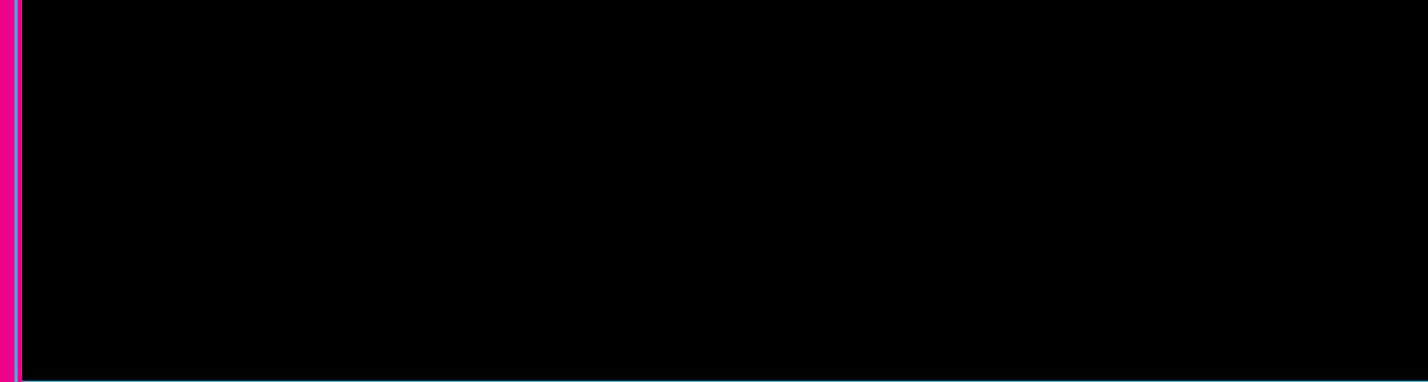
가 가

가 (2006. 7) 가 16
 . , 2007 가
 16 .
 (2006. 7), 2007
 (16) (2006. 9).
 2007 1 가 2
 .
 , , , , , , , , , 10
 가 .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嬰痘

文 卓 /#)) 蓀 苴 2△禁鏘 /关 聚身 匪 苳 蓓 業



제 5 절

보육정책

I 제도 개요*

1.

가,

,

,

가

1921

82

,

, ' 87

가

1991

가

가 , 2008

가

2008

가

가

1 4

가

2003

4.73 가 가

,

, 2006 “ ”

“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보육정책과 김현숙 서기관

〈표 2-4-113〉 보육정책의 연혁

기간	구분	주요 내용
'21~'91	구분적, 직장여성 지원을 위한 탁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위주의 탁아사업 시작 • '62~'81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 • '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 • '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 도입
'91~'04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정('91) :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 주관부처 일원화 :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설치기준의 변천 : 법제정당시('91.1)에는 인가제(가정보육시설만은 신고제)였으나, '98.7월 신고제로 완화하고 '04.1월 인가제로 다시 강화
'04.6	보육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보육과(1과)에서 1국(보육정책국) 3과(보육정책·재정·지원팀)로 개편
'04.6~'08.2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육아지원정책, '04.6)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공약사항)”에 대한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부담을 소득에 따라 50%경감, 1년간 육아휴직 포함, 평가인증제도입, 보육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2차 육아지원정책, '05.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 : 표준보육료·교육비 산정, 영아기본보조금 시범 도입 • (새싹플랜, '06.7)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06~'10)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시설을 2010까지 2배, 이용아동 30%수준까지 확충,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차등보육료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09) • (새로마지 플랜, '06.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세계최저의 저출산문제를 해결을 위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시설을 30% 확충,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만5세 무상 보육확대, 아동수당 도입검토
'08.3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관실로 이관

2.

가

, 2009

가

가

가

가 ,

II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집필자 : 보육정책과 김현숙 서기관

4

5

가

2007

6,309

836

〈표 2-4-114〉 연도별 보육료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11,360	5,218	6,142	13,822	6,309	7,514
저소득층보육료	7,849	3,591	4,258	9,707	4,418	5,290
만5세아무상보육	2,539	1,180	1,359	2,563	1,176	1,387
장애아보육료지원	490	222	268	524	237	287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483	225	258	1,028	478	550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0~4

1 () 가

2 ~5 1 2 , 3 80%, 4 50%, 5 20%

2007

가

1

361

1

317 , 2

262 , 3

180 , 4

162 (100%).

5 , r .

가 , 16

3~4 , (가 ,),

()

2 ~5 가 ()

〈표 2-4-115〉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 득 인정액	1 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2 층	116만원이하	144만원이하	168만원이하	193만원이하
	3 층	165만원이하	184만원이하	197만원이하	217만원이하
	4 층	231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69만원이하	288만원이하
	5 층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 5

가 162 , 1

가 가 100% 가 .

〈표 2-4-116〉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

,

12 (,

5) 가 (0~2) ()
 .
 (1:3)
 372
 (가, 3 . 가)

라.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가 2005
 가 100% 가
 (4) , 가 1
 181 , 1 159 , 2 131 , 3
 90 , 4 81 .

〈표 2-4-117〉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III 보육서비스 공급 활성화*

1.

가
 2007 5.7% , 11%

*집필자 : 보육재정과정장 진영주

〈표 2-4-118〉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2007.12월말,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간보육			부 모 협 등	가 정 보 육	직 장
				소 계	법인외	개 인			
시설수 (%)	30,856 (100.0)	1,748 (5.7)	1,460 (4.7)	14,083 (45.6)	1,002 (3.2)	13,081 (42.4)	61 (0.3)	13,184 (42.7)	320 (1.0)
아동수 (%)	1,099,933 (100.0)	119,141 (10.8)	118,211 (10.7)	668,390 (60.8)	55,906 (5.1)	612,484 (55.7)	1,444 (0.2)	177,623 (16.1)	15,124 (1.4)

. 2007

()

,

.

,

(2007.3).

(2007.5),

(54), (320),

(230)

2007
 ,
 9 2,700
 21 2,675
 607 10,429

〈표 2-4-120〉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용자·지원현황(2006~2007)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용자		무상지원	
	사업장수	금액	사업장수	금액
2006년	4	511	32	3,245
2007년	9	2,700	21	2,675

〈표 2-4-121〉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수	지원인원	금액
2006년	537	3,854	8,106
2007년	607	4,918	10,429

2007
 (,)

IV 보육시설 및 보육취약계층 지원강화*

2007
 , 3,577 ()

*집필자 : 보육재정과장 진영주

제2부 부문별 보건의복지가족정책

〈표 2-4-122〉 연도별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7,988	3,578	4,410	10,303	4,626	5,677
종사자 인건비	7,126*	3,158	3,968	5,444	2,424	3,020
영아 기본보조금*				3,914	1,741	2,173
시설기능보강비	600	300	300	648	324	324
교재교구비	198	88	110	210	94	116
차량운영비	64	32	32	87	43	44

※ 국비는 예산(추경 및 예비비 포함), 지방비는 확정내시 기준
 * 2006년 종사자인건비에는 영아기본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1.

가.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가
 ,
 80%, 30%, 2
 80%
 1 80%

1 가

나.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

가 50~120

가

2006 가

06

(20)

11 , 2007

9 가

다. 취약보육서비스 지원

(1) 영아보육 지원

2007 672 25,123 ,

80%, 100%가 ,

20 3 가

가 2005 가

가 1

가(0 292 , 1 134 , 2 86)

(2) 장애아보육 지원

18

80% 100% , 가

10

9 100% ,

20

3 , 1 80%(100)
 (292) 1

2007 154 가 ,
 5,887 , 685 가 , 3,332

(3)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보육 지원

가 가 가
 (07:30~19:30)

5 , 21 2
 (06 3,000 07
 4,000) . 2008

80% ,
 1 100

1 3 5
 5
 2004
 (40)

50% ,
 100% .
 가 24
 07 24

, 2007 148 698

V 보육서비스 질 제고*

1. 가

가

가 4

7 80 (21)

가 가

가 (가) 2005 가

2004 가

650 가 , 2006 2,804 가

2007 4 (2 , 4 , 6 , 10) 6,359 가 5,529 가

, 1 1,135 , 2 969 2,104 가

*집필자 : 보육지원과장 정영훈

〈표 2-4-123〉 평가 인증 지표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0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5항목)
영역 2. 운영관리(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7항목) 나. 보육인력(6항목)
영역 3. 보육과정(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8항목)
영역 4. 상호작용(11항목)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3항목)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3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2항목)

※ 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0항목)

2.

6

가

, 2006 11

가

6

(, , , ,)

(2 , 2 , 3~5) ,

가

(0~5)

(07.6)

(07.12)

3.

2005 1 가 2006 12 가

가

가

110,584 , 49,636 ,

ARS (1577 - 5654)

〈표 2-4-124〉 보육자격관리시스템 자격발급 인원처리 현황 (2007. 12월말 현재, 단위 : 건수)

구분	소계	2005	2006	2007
시설장	49,636			

※ 출처 :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자격관리시스템 산출자료

, 가

가

, ^

가

4. . .

2007 11

가 , 「 」, 「 . . .」
」

5. . .

「 . . .」
」
1
」

VI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1.

1995 .
 2007 16 , 20 가 1 37 가 16 .

2. e- ()

(ISP) (e-) . 2005 , 2006

2007 12 30,871 (100%), 1,094 ,
 171 , 3 .
 2009 .

*집필필자 : 보육지원과장 정영훈

제 6 절

장애인복지정책

I 개 요*

1.

*집필자 : 장애인정책과장 강민규

.가

, 가

2.

가.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1) 추진배경

1960년대 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음. 2005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20~64세 장애인 인구는 29.7%로, 20~49세 장애인 인구는 42%로, 53%의 장애인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음. OECD 국가의 장애인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음. OECD 국가의 장애인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음.

2

(2007.4.4)

(2) 추진내용

3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000
 가
 가
 가
 가
 가
 가

나.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1) 추진배경

1995 3 「 」 1996 2
 1996 12
 5 「 1 5 (1998~2002)
 」 1997 12 「 2 5 (2003~2007) 」
 2003 2
 「 3 5 (2008~2012) 」

(2) 추진방향

가

5

가

3.

1

가

2007 2

가

2007

4.

가. 장애인등록현황

1988 11

2007

12

2,104,889

2005

214

98%

〈표 2-4-125〉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단위 : 명)

연도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수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안면	간질
1989	176,687	108,923	13,467	26,884	27,413	-	-	-	-	-	-	-	-	-	-
1990	200,372	125,267	14,698	28,721	31,686	-	-	-	-	-	-	-	-	-	-
1991	224,025	144,080	15,720	30,373	33,852	-	-	-	-	-	-	-	-	-	-
1993	265,442	176,015	17,977	33,190	38,260	-	-	-	-	-	-	-	-	-	-
1994	294,246	197,628	19,876	35,098	41,644	-	-	-	-	-	-	-	-	-	-
1995	324,860	220,723	21,488	36,655	45,994	-	-	-	-	-	-	-	-	-	-
1996	362,475	248,690	23,507	38,465	51,813	-	-	-	-	-	-	-	-	-	-
1997	425,064	294,419	27,211	43,875	59,559	-	-	-	-	-	-	-	-	-	-
1998	527,250	371,328	34,548	52,501	68,873	-	-	-	-	-	-	-	-	-	-
1999	597,513	502,647	46,957	67,890	80,019	-	-	-	-	-	-	-	-	-	-
2000	958,196	606,422	90,997	87,387	86,793	33,126	1,514	23,559	23,427	4,971	-	-	-	-	-
2001	1,134,177	682,325	115,911	105,711	94,951	64,950	2,516	32,581	28,118	7,114	-	-	-	-	-
2002	1,294,254	754,651	135,704	123,823	103,640	91,998	4,014	39,494	32,094	8,836	-	-	-	-	-
2003	1,454,215	813,916	152,857	139,325	112,043	117,514	5,717	46,883	34,884	10,409	7,039	3,108	6,585	673	3,262
2004	1,610,994	883,296	170,107	155,382	119,207	142,804	7,740	54,333	38,175	11,634	9,768	4,072	8,182	1,114	5,180
2005	1,777,400	959,133	188,172	174,302	126,764	167,570	9,466	63,323	41,579	12,705	11,635	5,126	9,520	1,481	6,624
2006	1,967,326	1,049,396	196,507	205,155	137,596	195,253	10,926	75,058	44,571	13,739	13,035	5,875	10,461	1,863	7,891
2007	2,104,889	1,114,094	216,881	218,206	142,589	214,751	11,874	81,961	47,509	14,352	14,289	6,329	11,184	2,149	8,721

나. 장애인 실태조사

1980 5 , , , , 2005

4.6% 214 .

가 157.2 가 (2005 2/4

301.9) 52.1% , , , , ,

155.4 가 가

2007 「 가 5 3

2008 , , , , , ,

<표 2-4-126> 취업재가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2005년) (단위 : 만원)

구 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월평균 소득액	125.5	99.9	115.5	83.8	81.4	47.5	70.0	54.9	153.9	74.1	114.9

※ 출처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다.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

가

,

,

,

,

,

,

,

,

,

〈표 2-4-127〉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

(2007년 12월말 기준)

단 체 명	설 립 목 적	비 고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 복지진흥	재단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념 실현	사단법인
• 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 재활 및 자립 도모	"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념 실현	"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정신지체인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	"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성마비인의 건전한 육성 및 재활	"
•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자녀 양육 및 재활정보교환	"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간 협의조정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에 기여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제반문제 연구조사	"
• 한국인지보조기협회	보장구 제작기술 향상	"
• 자행회	정신지체아동 복지증진	"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체장애인 재활대책 도모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간 협력 강화	"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 교류·협력 지원	"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당사자단체 권리증진	"
• 한국장애인연맹(DPI)	장애인차별 제거 및 사회경제적 자립실천	"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 및 인식개선	"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 지원사업 및 권익신장	"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복지기금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재단법인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뇌병변장애인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	사단법인
• 푸르메	장애인재활병원건립	재단법인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와 정치참여 보장	사단법인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 권익보호	"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상호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자폐인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

라.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5 가
()

2007

2008 4 11

()

()

2007

가

, 2007 10 “

”

가

가

마. 장애발생예방 대책

1997

89.4%

(2005~2006),

07 75 8,803

II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가

가

90%

70%

가

〈표 2-4-128〉 장애발생 원인별 구성비

발생원인	전체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 불명
		소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소계	질환	사고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 자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 20~49

42%

68%,

*집필자 : 장애인권익증진과장 김홍중, 재활지원과장 김동호

가 UN * , 가** ,
 *** TF . (2007 1) 10
 , () (2007 11 2) ,
 2008 가 .

3.

가
 , (Rehabilitation Paradigm)
 (Independent Paradigm)
 .
 가
 가 가 가
 ,
 2007 4 .
 ,
 1 (ADL)
 (IADL) 가
 . 20~80
 .
 , 가 , , 가 ,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변용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익섭 연세대학교수, 박종운 변호사
 ***위문숙 한국DPI사무총장, 배용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4,515 . 2007 .

〈표 2-4-129〉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시·도별)

시·도	전체(성인 + 아동)	성인(만18~65세)	아동(만6~18세)
서울	2,825	1,871	954
부산	1,168	863	305
대구	684	432	252
인천	728	500	228
광주	582	431	151
대전	474	306	168
울산	273	152	121
경기	2,415	1,691	724
강원	442	343	99
충북	450	351	99
충남	550	413	137
전북	801	720	81
전남	1,013	903	110
경북	860	735	125
경남	972	731	241
제주	278	239	39
총계	14,515	10,681	3,834

4.

가. 법적 기반 정비

1995 ^ 1998 4 ^ . .
 (‘ ’)

2007 3

가

나. 편의시설 설치 현황

· 5 1998 1
 47.4% 2003 2 75.8%
 · 2008 3
 , 2004 2005
 (2004 72.3%, 2005 73.2%), 2006
 (69.4%), 2007 (61.6%)

다. 관련시책 추진

5 (2000~2004) 2000 1 가
 (Barrier - free)
 2 가 5
 (2005~2009)
 2007 ()
 “ (Barrier - Free) ”
 ()가

III 장애인 소득보장*

1.

2.

1990 2 2007
398 ()
13 , 12 , 3 .

3.

가
가 2002

*집필자 : 장애인소득보장과장 김수영

4. 2007년 장애인복지예산은 15,000억 원으로, 2006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인복지예산이 1992년 1,300억 원(1~3월)을 시작으로 2004년 11,000억 원에 이르렀던 것에서 볼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예산은 2007년 15,000억 원에서 2008년 16,500억 원으로 10%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인복지예산이 1992년 1,300억 원(1~3월)을 시작으로 2004년 11,000억 원에 이르렀던 것에서 볼 수 있다.
6. 장애인복지예산은 2007년 15,000억 원에서 2008년 16,500억 원으로 10%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인복지예산이 1992년 1,300억 원(1~3월)을 시작으로 2004년 11,000억 원에 이르렀던 것에서 볼 수 있다.

IV 장애인 직업재활*

1.

가

, 가

16

가

가

2.

339

가,

가

*집필자 : 장애인소득보장과장 김수영

〈표 2-4-1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작업 활동시설	보호 작업시설	근로 작업시설	직업 훈련시설
시설 수	339	109	189	29	12
근로 장애인수	10,059	3,074	5,238	1,344	403

※ 생상품 판매시설 : 16개소 (시·도별 1개소씩 운영), 종사자수 48명

3.

2000 가 가 (2/9)
 (353) , 162
 2007 93,329
 4,266

〈표 2-4-13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센터)	장애인 단 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평가 센터
				소 계	보호작업 시설	작업활동 시설	직업훈련 시설	
개소수	162	36	35	91	47	29	9	6
인력수	353	137	70	146	47	57	18	24

4.

가 (: 3,000 2007 : 2,000)
 가 .

5.

가 , , 가
 .
 2007 12 , , , , ,
 18 , 가 ()
 100 5 20) .

〈표 2-4-132〉 연도별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 액	8	24	297	526	689	1,244	1,391

V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1.

연도	가	가	가	가
2000	가	가	가	1
2007	609	가	가	5
2002. 1	가	가	2007	205
2006. 2	가	가	2007	558
2000	가	가	2003	가
2007	가	가	가	가

*집필자 : 재활지원과장 김동호

2.

1980

. 1997

1999 10

(TV ,), 가 (,) , 2004 , ,

1998

5

2000

2002 9 ^

231

2006 5 ^

ISO 9999

316

2007 「

」

〈표 2-4-13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교 부 실 적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음성시계	자막수신기	정형외과용구두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탐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기타
1985	1,268	406	209	309	344	-	-	-						
1990	3,981	1,702	490	1,193	454	142	-	-						
1994	2,716	881	334	797	411	293	-	-						
1995	2,301	659	307	825	416	94	-	-						
1996	2,471	643	247	892	291	398	-	-						
1997	2,208	621	270	875	5	437	-	-						
1998	1,099	793	306	-	-	-	-	-						
1999	5,884	554	251	-	-	-	3,579	1,500						
2000	8,661	-	-	-	-	-	5,654	3,007						
2001	3,280	-	-	-	-	-	-	1,957	1,323					
2002	8,235	-	-	-	-	-	-	-	982	7,253				
2003	13,437	-	-	-	-	-	-	-	-	5,694	5,101	2,168		474
2004	10,608	-	-	-	-	-	-	-	-	5,480	3,181	1,577	311	59
2005	11,508	-	-	-	-	-	-	-	-	5,741	3,289	1,423	393	662
2006	9,044	-	-	-	-	-	-	-	-	4,635	2,530	1,021	378	480
2007	9,454	-	-	-	-	-	-	-	-	4,991	2,416	1,018	253	776

3.

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가 가 . 가

1.7%

(05. 12) () , , , , , 6

, 2006 . , 2007
 , 2008~2009 (135).

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추진

, , , , 가
 가
 .
 1981 WHO 60 가 .
 2000 16 CBR 2007
 45

〈표 2-4-134〉 지역사회 거점보건소 일람

구 분	거점 보건소	개소수
도 시 형	서울 양천구, 도봉구, 부산 동구, 진구, 대구 동구, 인천 계양구, 부평구, 광주 동구,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11
농 촌 형	강원 평창군, 고성군, 양구군, 충북 옥천군, 충남 연기군, 금산군, 전북 진안군, 순창군, 전남 담양군, 무안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 청도군, 성주군, 경남 하동군, 제주 북제주군	16
도농복합형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의왕시, 화성시, 포천시, 성남 분당구, 수정구,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 전북 군산시, 남원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경남 양산시, 거제시, 진주시, 제주시	18
합 계		45

- (1)
- (2)
- (3) 가 가 , 가
- , 가 ,
- (4)
- (5) , , CBR
- (6)
-
- 가
- (7)
- , ,

다. 의료재활시설 지원

12 · 16

〈표 2-4-135〉 의료재활시설 일람

(2007년 12월말 기준)

의료재활시설명	개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4) : 서울재활병원, 삼육재활병원, 삼육부설의원, 주몽재활병원 • 부산(2) : 효정재활병원, 천성재활의원 • 대구(1) : 인제재활병원 • 인천(1) : 인천재활의원 • 대전(1) : 성세재활의원 • 강원(1) : 강원도재활병원 • 충북(1) : 충북재활의원 • 충남(1) : 신광재활의원 • 전남(1) : 덕산복지관부속재활의원 • 경북(1) : 경북재활병원 • 경남(1) : 홍익재활병원 • 제주(1) : 제주춘강의원 	16

4.

가 , , 가

. , ,

가 . 가

가 가 가

.

가 2007 4 2 (8403) 64
가

.

,

가 .

2007 5 「 」 2007 12

2007 12 「 」

, ,

.

5.

가. 현황

, , , ,

, , , ,

58

, .

〈표 2-4-136〉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소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요양	영유아	소계	근로	보호작업	소계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관	기타
시설수		314	33	14	11	131	116	9	319	24	295	1,286	157	16	24	1,089
인원		21,114	2,283	792	521	8,730	8,345	443	9,481	1,246	8,235	-	-	-	-	-

나.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가

가

2005

가

, 2007

가

(, , 가) .

제 7 절

노숙인 지원 등 기타 사회복지 정책

I 노숙인 · 쪽방거주자 지원 대책*

1.

가. 추진실적 및 성과

1999 6,200 가 2004 4,466 가
 2007 12 4,454 가 64.5%,
 11.0%, 7.8%, 6.5%

가

2003 114 2007 79
 2006 5.6% 가
 2005 960 가 2007 1,181 가
 228 , 42
 2004 155 , 2005

*집필자 : 기초생활보장과 이상희 서기관

(.) , ,
, .
,
8 , ,
,

〈표 2-4-137〉 시·도별 노숙인 분포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2007	계	4,544	2,929	498	274	116	27	155	37	353	83	13	21	38
	쉼터이용자	3,363	2,409	350	101	37	21	85	22	221	49	13	21	34
	거리노숙자	1,181	520	148	173	79	6	70	15	132	34	-	5	4

※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노숙인보호시설 미설치 지역임

나. 향후 추진 계획

가

(.)

가

가

2.

가. 추진실적 및 성과

가
 , 2007 5 7,333 5,858
 10

〈표 2-4-138〉 쪽방상담소 설치 현황

시·도	시 설 명	설치일	종사자	수탁기관
서울	중구남대문 상담센터	'00. 3.28	4	나사로의집 교회
	종로쪽방상담센터	'00. 3.15	4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용산쪽방상담센터	'01. 2.28	4	높은뜻 승의교회
	영등포쪽방상담소	'01. 3. 1	4	광야교회
	동대문쪽방상담센터	'03. 4. 1	4	우리모두복지재단
부산	동구쪽방상담소	'00. 8.18	4	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부산진쪽방상담소	'01. 4. 3	3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북구쪽방상담소	'01. 2.24	3	자원봉사 능력개발원
인천	부평쪽방상담소	'01. 2.16	3	내일을 여는집
대전	동구쪽방상담소	'01. 2.21	4	노숙인대책위원회

나. 향후 추진 계획

2005 가

II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1.

2007 38 8,193 , 12 186

〈표 2-4-139〉 2007년 부랑인시설 입소자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명)

시·도	시설 수	입 소 자 현 황(입원환자 제외)		
		계	남	여
계	38	7,689	5,228	2,461
서울	4	2,112	1,419	693
부산	3	370	236	134
대구	1	956	565	391
인천	1	354	291	63
광주	1	125	98	27
대전	1	176	123	53
경기	3	583	392	191
강원	3	256	171	85
충북	2	823	624	199
충남	1	135	103	32
전북	4	276	171	105
전남	6	647	456	191
경북	2	334	193	141
경남	4	381	257	124
제주	2	161	129	32

187 () 158 , 28 , 1
 (, , .) .
 가 .

*집필자 : 기초생활보장과 이상희 서기관

2.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가. 입소 대상

·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
(다) 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
(라) 청소년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소년
(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리) 노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
(리) 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아동
(리) 청소년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

나. 입·퇴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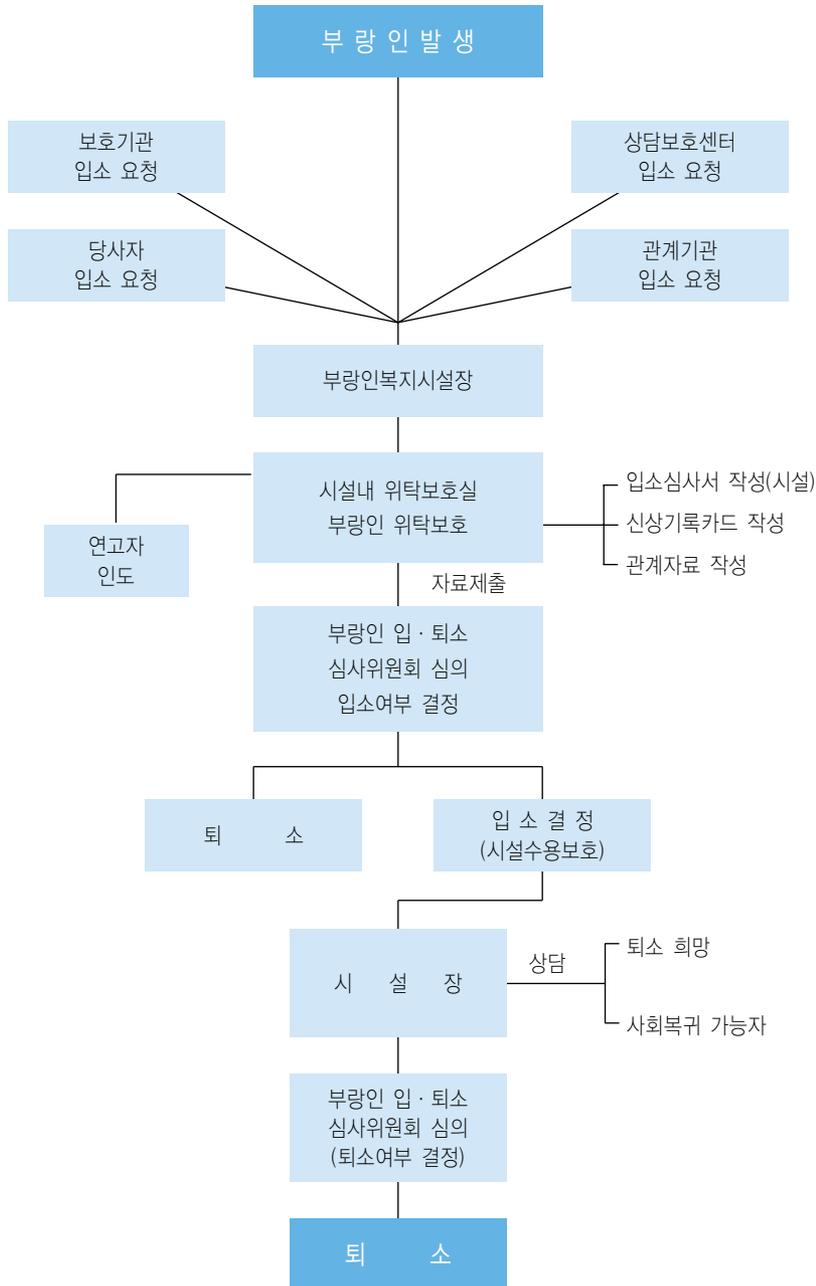
(1) 입소 절차

·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
(다) 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
(라) 청소년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소년
(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리) 노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
(리) 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아동
(리) 청소년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

(2) 퇴소 절차

1. 퇴소 대상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
(다) 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
(라) 청소년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소년
(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리) 노인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
(리) 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아동
(리) 청소년복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

[그림 2-4-13] 부랑인시설 입·퇴소 절차



(3) 위탁보호

가 20
, ()

3.

가

III 의사상자 예우*

1.

가

가

*집필자 : 민간복지과장 송정근

2.

가
가

.

,

,

,

,

가

,

,

가

,

,

가

,

,

가

,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가

.

2007

240

, 2007

1 8748

1

6

100/100~40/100

{

.

.

.

(

)}

,

.

〈표 2-4-140〉 연도별 의사상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명, 천원)

구분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호 인원	계	36	35	22	27	11	34	38	44	53	27
	의사자	21	21	15	22	9	21	29	33	43	16
	의상자	15	14	7	5	2	13	9	11	10	11
지급 기준	의사자	82,716	111,600	120,000	128,400	144,000	154,080	161,760	169,920	178,560	187,488
	의상자	41,358 ~ 15,509	111,600 ~ 44,640	120,000 ~ 48,000	128,400 ~ 51,360	144,000 ~ 57,600	154,080 ~ 61,632	161,760 ~ 64,704	169,920 ~ 67,968	178,560 ~ 71,424	187,488 ~ 74,995

※ 보상금 지급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3.

가 가 ,
가 가
2008 2 .
.
,
9 .
가 .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대책 추진*

I 추진 배경

WTO 가
 (DDA) , FTA
 .
 .
 가 , 가 가 가
 , 가 (, 가)
 가 .
 가
 2004 1 29 「
 ,
 , , 5
 , 2005 6 16 1 (05~ 09)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사회통합전략과장 최규중

II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05~'09) 추진 현황

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2007 12 85 가 , 154
12,479 . 가 가

나. 사회복지서비스

07 55) 가 (05 74 07 105) , . 가 . (05 9
4
73 (32) ,
가 .

(3,273) 5 06 (500), (05 331 07 408) , (07 33,817)

가 (05 200 07 500) (4) (05 24 09 30) , (06 1,000가)

다. 사회보험

가 29,424 가 47,820 2007 가 18,395 (8,141) , 504

18% 가 40% 2005 22% 50% , 2006 28% , 3 20%

() 2007 가 가 9,063 , 가 9,149 , 가 27 18,267 , 285 .

		19
	2008	14
16		
	07	가
라. 보건의료기반 개선		
(40)	(223 , 180)	
	(tele- health)	
(06 22 07 37)		
07 189)	, 119	(05 44
	5	(05 395 07 710)
가		
		(05 56 07 151)

07 35) . HUB (05 20
(1) .

2.

- 총 투자규모는 2조 9,331억원으로 연평균 12.6% 증가
- 국비는 2조 1,399억원으로 총 투자 규모의 73%, 지방비는 7,932억원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

“ ” 가
가
BTL

〈표 2-4-141〉 연도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투융자계획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총 계	4,373	5,686	5,932	6,423	6,917	29,331	12.6%
• 국 비	3,172	4,163	4,361	4,712	4,991	21,399	12.5%
- 일반회계	601	914	961	1,007	1,044	4,527	16.4%
- 농특회계	1,992	2,701	2,850	3,057	3,210	13,810	13.3%
- 기 금	579	548	550	648	737	3,062	6.6%
• 지 방 비	1,201	1,523	1,571	1,711	1,926	7,932	12.9%

III 향후 계획

WTO/DDA

FTA

가
가

2005 6 「 1

(05 09)」

제 5 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제 1 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가

,

가

가

,

*집필자 : 지역복지과장 임숙영

2001년 7월 2003년 7월 2005년 7월 2007년 12월

2.

가 1 가 2005년 7월 가 232 225 (97%) 1,534 12,373 答 51 55 ()

〈표 2-5-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2007년 12월 기준)

구분	시·군·구 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비고
		구성	참여 인원	구성	참여 인원	구성	구성률	분과수	참여 인원	
계	232개	232개	4,151명	232개	4,227명	225개	97%	1,534개	12,373명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52 . .

3.

가 2006 3 . .

가 . . . 가 40%가
46%

가 가 . .

, 2007

가

II 지방이양사업의 정착 및 내실화*

1.

2003.4.7
, 2003.7
(road map)

가 가

2004.7.6 149

9,581 ^
127 67 (5,959 , 12.1%) - , 71
(4 3,409 , 87.9%)

45%(62%)

가 07 , 64

*집필자 : 지역복지과장 임숙영

2004.12.30 (0.83%)
 2009 2010
 2005.1.1

〈표 2-5-2〉 이양 당시(2005년)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규모

부처별	이양금액	이양비율(%)	부처별	이양금액	이양비율(%)
보건복지부	67건 5,959억원	62.2	문화재청	2건 410억원	4.3
행정자치부	4건 742억원	7.7	농림부	9건 222억원	2.3
문화관광부	24건 356억원	3.7	기타	36건 561억원	5.9
건설교통부	7건 1,331억원	13.9	계	149건 9,581억원	100

※ 자료 : 행정안전부(2006.3)

2.

가. 지방이양사업 현황

가

가

- 경상적수요(52개)

산정항목	대상사업	
① 노인복지비 (10개)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 활성화

● ● 제5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② 장애인복지비 (20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시각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체육관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③ 아동복지비(9개)	아동시설 운영 아동급식 가정위탁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④ 그 밖의 복지비 (13개)	모자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공공보건의력개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비경상적수요(15개)

구 분	대 상 사 업	
일반수요 (8개)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지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공공보건사업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지역봉사사업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특정수요 (7개)	노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장비구입)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 보건복지분야 총 67개 사업중 3개사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2005.6.23)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은 64개임

- 대상사업 : 모자복지시설 운영,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가 67 13 ,
 24 , 4 ,가 7 , 11 , 6
 , , , 가

〈표 2-5-3〉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이양사업 현황 (2007년 기준)

구 분	계	경상적수요				비경상적수요	
	총 67개 사업	노인복지 (10개)	장애인복지 (20개)	아동복지 (9개)	그밖의 복지 (13개)	일반수요 (8개)	특정수요 (7개)
예산(10억)	2,199	383	313	313	391	22	777
비중(%)	100	17.4	14.2	14.2	17.8	0.9	35.3

※ 비경상적수요-특정수요 사업은 사회복지생활(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시설운영이 해당

〈표 2-5-4〉 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지방이양 67개 사업의 국고보조('04년까지) 및 분권교부세('05년 이후)	4,215	4,912	6,107	5,531	6,955	7,734

나. 지방이양사업 문제점 및 개선

2005 2004 가 ,
 . 가 ,
 .
 2005 (510 641
 , 2005) , (0.83%)
 가 8.6% 가 20.5% 가
 가 ,
 가 가 가

● ● 제5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2005.11 (364) , 2006
 0.83% 0.94% 1,180 ,
 2009 5,400 가

〈표 2-5-5〉 분권교부세 0.11%p 인상시 지방재정 확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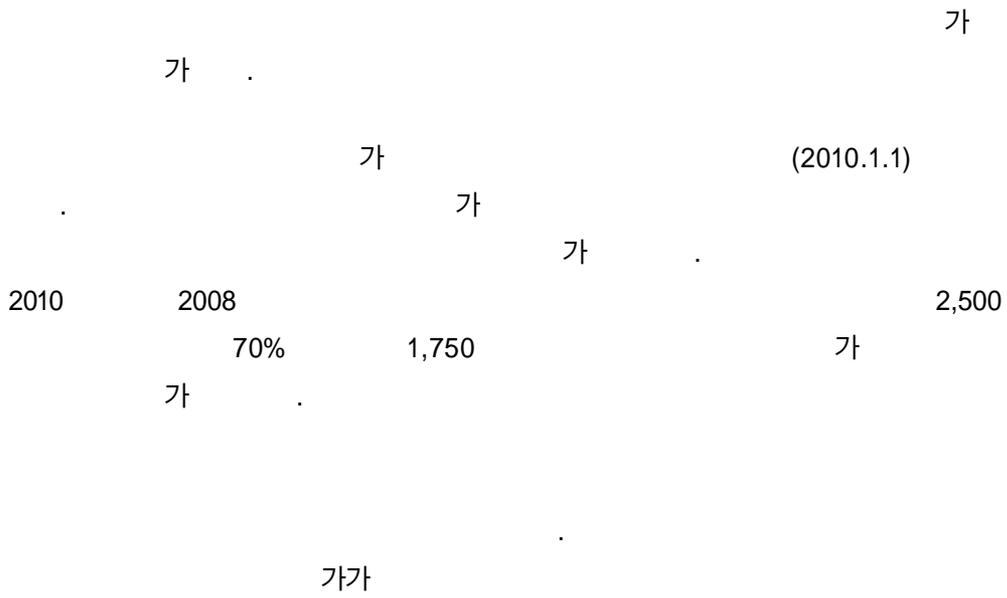
(단위 : 억원)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비 고
5,364	1,180	1,281	1,392	1,511	내국세 연평균 8.6% 증가

2005 2,131 60.3% 가 3,416
 (2006.2) (2006.3), 1 (, ,)
) (2006.7)
 (2006) ' ' (2007) 가
 가 (2007)
 가 2008

〈표 2-5-6〉 보통교부세 산정시 전체 수요 대비 사회복지 수요 비중

연 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예상)
비 중(%)	10.60	12.99	19.75	23.94



3.

(, ,) 가

() 가 ,) ^ TF_ ,2008 , 2008

가 2009 2010

(, ,) 가

III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1.

가

67 , 4

*집필자 : 지역복지과장 임숙영

가 37.5
 가 9 28 81 가

〈표 2-5-7〉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지표 현황

구 분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지표수	배 점
계	28	57	81	1,000
복지총괄	5	12	17	180
복지행정혁신	3	6	9	100
지역사회복지계획	3	8	8	100
노인복지	3	6	7	110
아동복지	3	5	8	100
장애인복지	3	6	8	100
기초생활보장	3	6	8	110
자 활	3	4	8	100
의료급여	2	4	8	100

3. 가 가

가 가 ,
 가 .
 2006 가
 가 가 4 (, , ,) ,
 2007 가 2 232
 .
 가 (群)
 . (, 74),
 . (77), . (81)

3
50%
4
5
가 13 가

〈표 2-5-8〉 13개 군(群)으로 분류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분포현황

구 분	군(群)	지자체 명
대도시	가 군	서울송파구, 서울강남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강동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서초구, 서울성북구, 서울구로구, 서울동작구, 서울마포구, 서울관악구, 대구달서구, 대구수성구, 서울노원구, 서울광진구, 인천남동구, 서울동대문구, 인천부평구
	나 군	부산진구, 서울서대문구, 대전서구, 울산남구, 인천남구, 인천서구, 서울도봉구, 서울은평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부산해운대구, 서울종로구, 서울중랑구, 울산울주군, 서울중구, 대구북구, 대전유성구, 서울강북구, 인천연수구
	다 군	서울금천구, 광주북구, 인천중구, 울산동구, 인천계양구, 부산사하구, 부산동래구, 울산북구, 광주광산구, 부산남구, 부산사상구, 광주서구, 부산기장군, 부산연제구, 부산동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부산금정구
	라 군	대구중구, 대구달성군, 부산수영구, 대전중구, 부산북구, 부산중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인천동구, 대전동구, 부산강서구, 대구남구, 광주남구, 부산영도구, 광주동구, 부산서구, 인천옹진군, 인천강화군
중·소 도시	마 군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부천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안양시, 경남창원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경기시흥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경북포항시, 경기의정부시, 경북구미시, 경기군포시, 경기평택시, 경기광주시, 전북전주시
	바 군	경기남양주시, 경남김해시, 경기광명시, 경남마산시, 경기파주시, 경남양산시, 충남아산시, 제주제주시, 경남진주시, 경기오산시, 경기김포시, 전북익산시, 전남광양시, 경기구리시, 강원원주시, 전남여수시, 경기이천시, 강원춘천시, 전남순천시
	사 군	경기의왕시, 경남거제시, 경기하남시, 경기양주시, 경북경주시, 전남목포시, 경북경산시, 경기포천시, 전북군산시, 경기안성시, 강원강릉시, 충남서산시, 경기과천시, 경남진해시, 충북충주시, 제주서귀포시, 경북김천시, 경남통영시, 충남보령시
	아 군	경북안동시, 충북제천시, 강원속초시, 충남공주시, 경남밀양시, 경남사천시, 경기동두천시, 강원동해시, 충남논산시, 경북영주시, 전북정읍시, 경북영천시, 강원태백시, 경북상주시, 전북김제시, 경북문경시, 충남계룡시, 전남나주시, 전북남원시, 강원삼척시

● ● 제5장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구 분	군(群)	지자체 명
하· 어촌	자 군	충남당진군, 경기여주군, 충북청원군, 경북칠곡군, 충북음성군, 충남연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충북진천군, 경기양평군, 경남함안군, 전남화순군, 충남예산군, 강원홍천군, 경남고성군, 경기가평군
	차 군	경남창녕군, 충남금산군, 경남거창군, 전남영광군, 경북울진군, 충남부여군, 경기연천군, 충남홍성군, 경남하동군, 강원정선군, 충북옥천군, 전남영암군, 경남남해군, 전북부안군, 전남해남군, 경남합천군
	카 군	강원평창군, 충북영동군, 충북단양군, 경북성주군, 전남담양군, 전남고흥군, 전남완도군, 강원횡성군, 충북괴산군, 강원양양군, 경북고령군, 전북고창군, 충남서천군, 경북의성군, 전남무안군, 강원양구군, 전남장성군
	타 군	강원고성군, 전남보성군, 강원철원군, 경북영덕군, 강원영월군, 경북울릉군, 전북무주군, 경북청도군, 경남의령군, 경남산청군, 충남청양군, 경북예천군, 경남함양군, 경북청송군, 강원인제군, 전북진안군
	파 군	전북임실군, 경북군위군, 전남신안군, 전남진도군, 충북증평군, 전남장흥군, 충북보은군, 전남함평군, 전남구례군, 강원화천군, 전남강진군, 전북순창군, 전남곡성군, 경북봉화군, 경북영양군, 전북장수군

※ 주 : 순위와 관계없이 나열함

4. 2007 가

포상종류	최우수	우 수	준우수	분야별 우수	발 전
우수기관수	13	13	13	9	3
포상금(백만원)	1,560	1,170	910	88	26.5
공로공무원 장관상	13	13	13	7	-

【종합 부문】

평가군	최우수	우 수	우 수
가	서울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나	부산해운대구	대전 서구	서울 은평구
다	부산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라	부산수영구	부산 북구	광주 남구
마	경남창원시	경기수원시	경북구미시

평가군	최우수	우수	우수
바	경남진주시	경남김해시	강원춘천시
사	전남목포시	충남보령시	충남서산시
아	강원태백시	충북제천시	전북남원시
자	전북완주군	충북음성군	경남고성군
차	경남하동군	충남금산군	전남해남군
카	충남서천군	경북성주군	경북고령군
타	강원고성군	경남산청군	경남의령군
파	강원화천군	전남강진군	전북순창군

※ 총 39개 지자체 중 19개 지자체(48.7%)가 신규로 순위권 진입

【분야별 부문】

분 야	복지 총괄	복지 행정 혁신	지역 복지 계획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장애인 복 지	기초 생활 보장	자 활	의 료
지 역	전북 고창군	부산 진구	경기 안산시	인천 연수구	서울 도봉구	경기 이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부산 사상구

【발전 부문】 :

※ 2006년도 대비 종합점수 및 등위가 현저히 향상된 지자체

5.

가 가 (WILD-CARD) 가
 가 .
 , 2007 가
 1 가 2008
 232
 가 1/5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IV 사회복지관의 지원 및 육성*

1.

1983

2.

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파악 및 평가

가 가

나.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집필자 : 민간복지과장 송정근

다.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 역할

라.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

마.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체

3.

가. 가족복지사업

가 ,가 ,가 , 가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다. 지역사회조직사업

라. 교육문화사업

마. 자활사업

4.

〈표2-5-9〉 시·도별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407	95	51	25	17	19	19	7	54	14	10	17	18	16	15	21	9

〈표 2-5-10〉 사회복지관 건립실적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계	'85~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사업량	138	56	3	1	3	6	10	11	1	8	8	10	12	9	
사업비	계	1,847	737	18	14	44	76	140	142	16	100	113	144	160	143
	국고	666	321	9	5	16	27	42	43	5	30	34	43	48	43
	지방비	1,181	416	9	9	28	49	98	99	11	70	79	101	112	100

※ '05년부터 지방양양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06 건립예산 없음

〈표 2-5-11〉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별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기타
시설수	407	298	62	22	25

*기타 : 학교법인, 의료법인

5.

가

4



민간 복지자원의 활성화*

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및 육성

1.

가. 목적 및 설립 배경

1975
가
1998 7 1
16

나. 조직체계 등의 변화

1999 4 1
가
가
10%
, 2002 12
(10 1 ~ 9 30 1 1 12 31),

*집필자 : 민간복지과장 송정근

2008 3

2.

가. 모금

2007 12 1 2008 1 31 2 “ 2008 ”
 1,985 (1,038 , 947) 22.0%가

〈표 2-5-12〉 연도별 모금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2005	2004
합 계	267,407	217,746	214,742	175,630
중 앙	122,837	113,185	116,401	80,526
지 회	144,570	104,561	98,341	95,104

〈표 2-5-13〉 연말연시 이웃돕기캠페인 모금실적(2007.12.1~2008.1.31) (단위 : 백만원)

구 분	모금목표액	모금실적	달성율(%)
중 앙	108,000	103,778	96.1%
지 회	70,588	94,747	134.2%
계	178,588	198,525	111.2%

나. 배 분

2005 1,772 , 2006 1,837 , 2007 2,230

〈표 2-5-14〉 2007년 분야별 배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 배분실적	
	금 액	비 율
계	223,025	100
신 청 사 업	9,960	4.5
기 획 사 업	71,074	31.9
긴 급 지 원 사 업	23,532	10.5
지 정 기 탁 사 업	118,459	53.1

3.

1998

II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가 ,

가 가 ,

가 (善意) 가

1.

2001 11 가
 “ ” 2007 12 4,063
 1,880,401 , 753,634
 2006 12 2,938 가 2007 1,125
 2007 (753,634) 2006 (519,080) 가
 45.2% 가
 1994 가

2.

DB
 . 1995 11
 (VT - NET) 1999
 가 , 2001 11 DB
 2003 가
 가 . 2007
 60,000 2008 70,000 가
 가 , 2005 前 1
 가

〈표 2-5-15〉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 현황

(2007년 12월말 현재)

구 분	인증센터	인증요원	2007년도 연간봉사횟수	2007년도 연간봉사시간
자원봉사인증센터 (16개 시·도)	4,063개소	9,702명	4,367,752회	15,366,597 시간

※ 주 : 1.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현황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지정 및 위촉된 수입
 2. 2007년도 연간봉사 횟수 및 봉사시간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활동한 자원봉사자(753,634명)의 봉사 실적을 합한 값임

〈표 2-5-16〉 시·도별 인증센터 현황

(2007년 12월말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63	470	233	138	153	334	255	171	448	193	193	366	269	309	259	152	120

III 기부식품제공사업(Food Bank)

1.

2.

가. 운영 체계

가

(), (),

()

가

1998 1 4 (, , ,) 1998

7 58 가

(1688-1377) . 2007 12 288 (1, 16,

271) 가 .

〈표 2-5-17〉 시·도별 푸드뱅크 설치 현황 (2007. 12월 현재)

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88	1	44	17	11	11	13	7	6	45	19	15	20	15	24	19	17	4

나. 추진 실적

〈표 2-5-18〉 기탁 및 배분실적(2004~2007)

(단위 : 백만원)

연 도	기탁액 (백만원)	배 분 실 적					기탁 자수	푸 드 뱅크수
		계	이용 시설	생활 시설	기타 법인, 단체	재가이용 대상자		
2004	31,500	28,280	10,866	8,673	3,471	5,270	3,371	259
2005	39,514	36,915	13,410	11,530	5,200	6,775	3,185	270
2006	36,491	33,749	12,156	10,556	4,719	6,318	3,124	278
2007	40,495	38,711	15,053	12,564	5,091	6,003	2,863	288

※ 주 : 기탁회원수 및 푸드뱅크 수는 연도 말 현재 회원임

다. 이용 대상자

가) , 가 , .

3.

가

IV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실시

1.

가 “ 2 , 5 ”
가 2008

가 .

가

, ,

.

2010

, 가

.

2.

1995 4

가

가

.

2008

(4)

(1)

2

.

6

가

.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I 보건복지콜센터 운영배경

2004 . 가 가

2005 11 1
One-Stop

가

가

*집필자 : 보건복지콜센터장 양운선

II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상담현황

1.

가. 일반상담
 365 24 ,
 9 6
 Callback

2.

〈표 2-5-20〉 상담그룹별 주요 상담내용

구 분	주요 상담범위
소득보장반	국민기초생활, 자활, 의료급여, 국민연금, 긴급복지지원(주간) 등
복지서비스반	사회복지시설·법인, 푸드뱅크, 의사상자, 사회복지사, 노인복지, 장사, 인구정책, 모자보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청소년, 보육 사업 등
건강생활반	금연사업, 영양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암환자 지원, 예방접종, 모자보건, 정신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시험, 의료분쟁, 공공보건, 혈액정책, 생명윤리, 한방정책, 건강보험 등
긴급지원반	긴급복지지원(야간, 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3.

가. 일반상담

129

나. 전문상담

가
DB 가
DB .

다. 1차 상담후 이관

가 .

가

[그림 2-5-1] 1차 상담 후 이관하는 경우



라. 기타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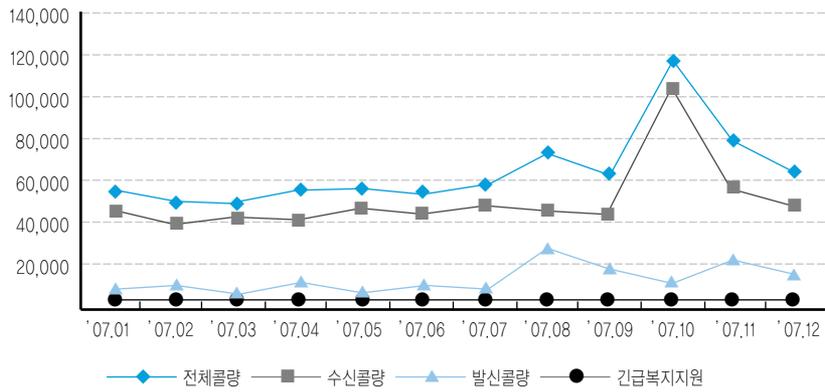
가
가

4.

가
 ‘ 129 ’
 .
 2005 11 129 2007 12 1,480
 가 74% , 26%
 가
 가
 , 2007 10 2
 가 129 가
 가 .

[그림 2-5-2] 2007년도 상담 처리 현황

구 분	총 전화 (통)	증 감	수신량(콜)	발신량(콜)	
'07년	1 월	54,524	△4,226	45,808	8,716
	2 월	50,400	△4,124	39,115	11,285
	3 월	49,777	△623	42,451	7,326
	4 월	54,900	5,123	42,291	12,609
	5 월	55,047	147	46,925	8,122
	6 월	54,677	△370	43,793	10,884
	7 월	58,196	3,519	48,152	10,044
	8 월	74,575	16,379	45,668	28,907
	9 월	62,848	△11,727	44,502	18,346
	10 월	116,032	53,184	103,504	12,528
	11 월	79,384	△36,648	55,954	23,430
	12 월	64,706	△14,678	48,051	16,655
계('07)	775,066		606,214	168,852	
월평균	64,589		50,518	14,071	



III 고객중심의 콜센터 운영추진

1. ARS

가. 추진배경

ARS

ARS

ARS

ARS

가

ARS

나. 벤치마킹 및 시험운영

ARS

다. 결과분석 후 본격시행

2006년 6월 12일, ARS가 87%가 ARS
 ARS
 '129'가 , ARS
 20%가

2.

가. 추진배경

365 /24
 174 , 82 3 7
 VTL(Virtual Tape Library)

나. 주요내용

VTL(Virtual Tape Library) 가 ,
 , 365 /24 DB
 가 ,
 (消散) 가가 ,
 가

IV 향후과제

1. 129

‘ 129 ’
가
129
가

2.

가 가
가

3. ISP

가 가
가
가

제 6 장

건강보험

제 1 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1 개요

1.

가

〈표 2-6-1〉 사 보험과 사회보험의 특성

구 분	사 보 험	사 회 보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방법 ○ 보험료 ○ 보험급여 ○ 보험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가입 •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 •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가입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

*집필자 : 보험정책과장 임종규

2.

1963. 12. 16. (300)
 1976. 12. 22.
 4 5
 - (1977.1)
 - 가
 筭1977. 7. 500 ()
 筭1979. 1.
 筭1979. 7. 300
 1980
 - 1981. 7. 1 (, ,)
 - 1982. 7. 2 (, ,)
 - 1988. 7. 5

 - 1984. 12. (,)
 - 1987. 2.

 - 1988.1. .
 - 1989.7.
 (12)
 1989. 10. (1982.8.~1984.12. ,)

 - 1998. 10. 1 (. 227)

 - 2000. 7. (139)
 가
 2000. 3.
 2002. 1.△ - . (,)

2003. 7. 가
2007. 1^ _ (06.12.31)

3.

1989 7 1
. 2007 96.3% 4,782
, 3.7% 185
가 가 가 ,
가 가 , 가
, 가 가 .

〈표 2-6-2〉 의료보장 적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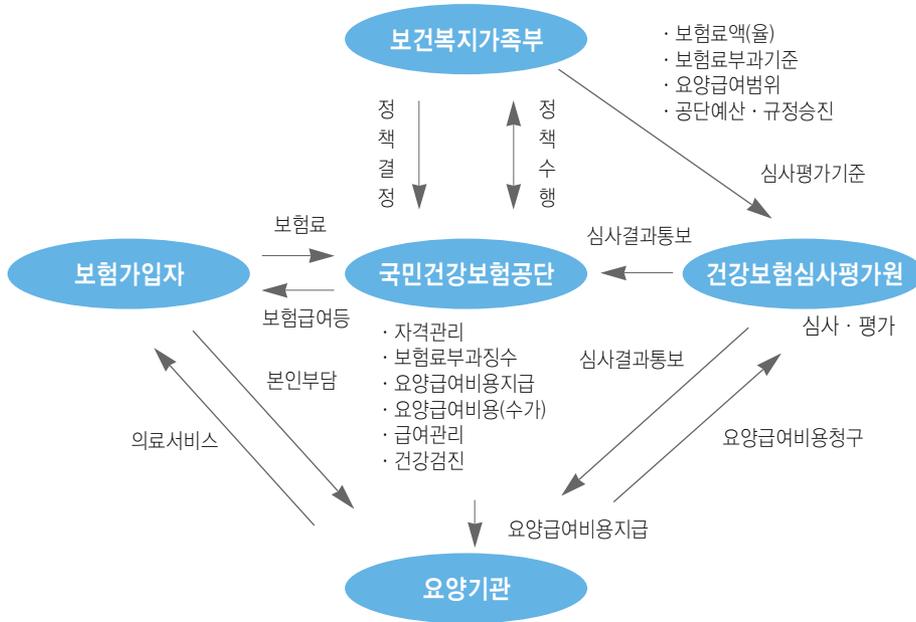
(2007.12.31 기준, 단위 : 만명, %)

구 분		적 용 인 구	구 성 비
계		4,967	100
건강보험	소 계	4,782	96.3
	직 장	2,942	59.2
	지 역	1,840	37.1
의료급여	소 계	185	3.7
	1 종	106	2.1
	2 종	79	1.6

4.

가 , , 가
가
가 ,
가

[그림 2-6-1]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5.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

(, ,

) 가 .

, 가 가

(2006) 가

가 1/2 , 가 . ,

가 ,

1998
 , 2002 (2002 1)
 가 가 40%(2005
 35%) , 10%(2005 15%)
 2007 100 14
 100 6

〈표 2-6-3〉 재원조달 체계 (2007년 기준)

구 분		직 장 근 로 자	농 · 어민, 도시자영자
재원 조달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월액의 4.77% 사용자,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 교직원은 본인, 학교경영자, 정부가 각 50%, 30%, 20%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재산(자동차포함)의 등급별 적용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 세대주가 자진납부 또는 보험자가 방문 징수
	정부지원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담배 부담금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	

6.

가 가 ,
 가 가 ,
 가 . . .

- 입원 : 20%
- 외래 : 종합전문요양기관 : 진찰료총액+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종합 병 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읍·면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 병 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읍·면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 의 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1,500원(방문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약 국 조 제 료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1,200원(방문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 가
20%
30 50%

II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제도 운영

1.

가 (,),
5
- 5 : (,)
- 5 : (,)+ (가)
가

〈표 2-6-4〉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2007년 기준)

구분	내용
보험료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부과점수(§ 62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종합소득, 농업소득) -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 경제활동능력(성·연령)
보험료율	○ 보험료부과점수를 나타내는 점수에 보험료 환산금액(139.9원)을 곱하여 부과
보험료 부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전액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정부지원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14%) - 담배부담금(6%)
평균보험료	○ 55,054원(연간평균 세대당 월보험료)
부담주체	○ 세대주·세대원 모두 보험료부담

※ 2008년 1월부터 보험료부과점수에 148.9원을 곱하여 부과

3 , 가 . 가

가

100% 가 ,

28 , 6,579 . 가

〈표 2-6-5〉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2007년 기준)

구분	내용
보험료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월액(§ 63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총액 기준(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보험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월액 × 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이전 : 조합에 따라 3~6%
보험료 부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 50%
평균보험료	○ 62,430원(사용자포함 124,860원)
부담주체	○ 근로자 : 보험료 부담(피부양자 : 보험료 부담없음)

※ 2008.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5.08% 부과

가 , 가 .
 , 1986 3.57% , 1995 3.03%
 가 1997 가 3.13%
 , 1998 3.27%, 1999 3.75% 가
 , 2000 7 가 2.8%, . 3.4%
 2001 1 . 가 3.4% . ,
 2002 3 3.63%, 2003 1 3.94%, 2004 1 4.21%, 2005 1 4.31%, 2006 1
 4.48%, 2007 1 4.77% , 2008 1 5.08% .

〈표 2-6-6〉 연도별 평균보험료를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직 장					공·교
	평 균	공 동	단 독	최 고	최 저	
1993	3.06	3.06	3.06	4.4	3.0	3.8
1994	3.04	3.03	3.04	4.0	3.0	3.8
1995	3.03	3.03	3.05	4.0	3.0	3.8
1996	3.05	3.05	3.05	4.8	3.0	3.8
1997	3.13	3.13	3.14	4.4	3.0	3.8
1998	3.27	3.22	3.43	6.0	3.0	4.2
1999	3.75	3.70	3.89	6.0	3.0	5.6
2000. 7	2.8% 일원화					3.4
2001. 1	3.4% 일원화					
2002. 3	3.63%					
2003. 1	3.94%					
2004. 1	4.21%					
2005. 1	4.31%					
2006. 1	4.48%					
2007. 1	4.77%					
2008. 1	5.08%					

〈표 2-6-7〉 건강보험대상자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만명, %)

연 도	지 역				직 장			
	계	가입자	세대원	부양율	계	가입자	피부양자	부양율
2000	2,349	821	1,528	(1.9)	2,240	727	1,514	(2.1)
2001	2,321	856	1,465	(1.7)	2,317	789	1,528	(1.9)
2002	2,291	870	1,421	(1.6)	2,375	832	1,543	(1.9)
2003	2,227	873	1,354	(1.5)	2,483	880	1,603	(1.8)
2004	2,139	862	1,277	(1.5)	2,598	928	1,670	(1.8)
2005	2,016	838	1,178	(1.4)	2,723	974	1,749	(1.8)
2006	1,896	811	1,086	(1.3)	2,845	1,041	1,803	(1.7)
2007	1,840	737	1,103	(1.5)	2,942	1,117	1,825	(1.6)

※ 연도말 기준

〈표 2-6-8〉 연도별 평균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 역	세 대	36,253	39,071	43,390	45,818	46,871	49,688	55,054
	1인당	12,982	14,650	16,807	18,256	19,237	21,050	24,065
직 장	세 대	28,830	35,209	44,581	49,675	52,956	57,092	62,430
	1인당	9,542	12,220	15,727	17,752	18,999	20,713	23,449

※ 지역 : 세대(본인)부담분만 포함

※ 직장 : 근로자부담분만 포함(총보험료의 50%)

2.

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편입

5 가 가 가
 1 가 가 2001 7 5 가

, 2003 7 가 가 5
 (. , . 15) 80
 가 , 2003 2006 ,
 2007 12 46 , 가 117 (287) 5
 .
 가 가 , 가
 2.385% 2.385%
 가 .

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가
 가 , 가 .
 2001 7 가 ,
 가 (56 , 856) , 2002 5
 가
 , 2005 19 가 , 2006
 4,000 가
 .
 가 .

다. 현역병 및 수형시설 수용자 건강보험적용 및 농·어민 경감 확대

, 가

2004. 4.30 , : 2006. 1. 1)
 , ^ (2004 1 29)
 가 , 2004 1 .
 (22%) (8%) 30% , 2005 (18%)
 40% , 2006 1 (28%) 50%

라. 실업자에 대한 특례 및 휴직자 보험료 경감 적용

2 가 가 가
 가 가
 가 6 가 3
 , 50%
 .(2007.7.1)
 , 가 가 , , 1
 50% ()
 50%) 가
 .(2007.7.1)

III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1.

가 가

1998 10 227 ,1
 ,142 1998
 10 1
 2000 7 1 139
 , ,
 2001 1 1
 ,2003 7 1

2.

5.31. 2001 “ ” 2 4,088 가 ,
 . 가 가
 , 가

2002 7,600
 2003 1996 1 794
 . 2004 1 5,679
 2005 1 1,788 가 ,2005
 ,6 ,
 2 1,000 가 2006
 17.7% ,747
 2007 가 8%
 ,가 6.5%
 2,847

〈표 2-6-9〉 연도별 건강보험재정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수입(A)	78,491	86,923	95,29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8	252,697
	지출(B)	87,092	95,614	105,38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5	255,544
	당기수지	△8,601	△8,691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수지율(B/A)	110.9	110.0	110.6	120.7	105.5	93.6	91.6	94.2	100.3	101.1
	누적수지	30,359	22,425	9,18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지역	수입(A)	39,621	43,519	46,534	63,209	69,284	74,818	75,907	77,116	79,837	63,236
	지출(B)	41,193	46,802	49,523	68,299	70,525	74,370	77,019	81,844	90,322	98,513
	당기수지	△1,572	△3,283	△2,989	△5,090	△1,241	448	△1,112	△4,728	△10,485	△35,277
	수지율(B/A)	103.4	107.5	106.4	108.0	101.8	99.4	101.5	106.1	113.1	155.8
	누적수지	7,278	3,995	364	△6,700	△7,941	△7,493	△8,605	△13,333	△23,818	△59,094
직장	수입(A)	30,378	31,229	31,659	53,214	69,619	93,413	109,815	126,209	144,041	189,461
	지출(B)	34,252	36,993	38,700	72,212	75,985	83,067	93,024	109,693	134,303	157,031
	당기수지	△3,874	△5,764	△7,041	△18,998	△6,366	10,346	16,791	16,516	9,738	32,430
	수지율(B/A)	112.8	118.5	122.2	73.7	109.1	88.9	84.7	86.9	93.2	82.9
	누적수지	22,312	17,305	8,359	△11,409	△17,775	△7,429	9,362	25,878	35,616	68,045
공교	수입(A)	8,509	12,175	12,823	-	-	-	-	-	-	-
	지출(B)	11,712	11,819	12,883	-	-	-	-	-	-	-
	당기수지	△3,203	356	△60	-	-	-	-	-	-	-
	수지율(B/A)	137.6	97.1	100.5	-	-	-	-	-	-	-
	누적수지	769	1,125	466	-	-	-	-	-	-	-

3.

가 가

가

1998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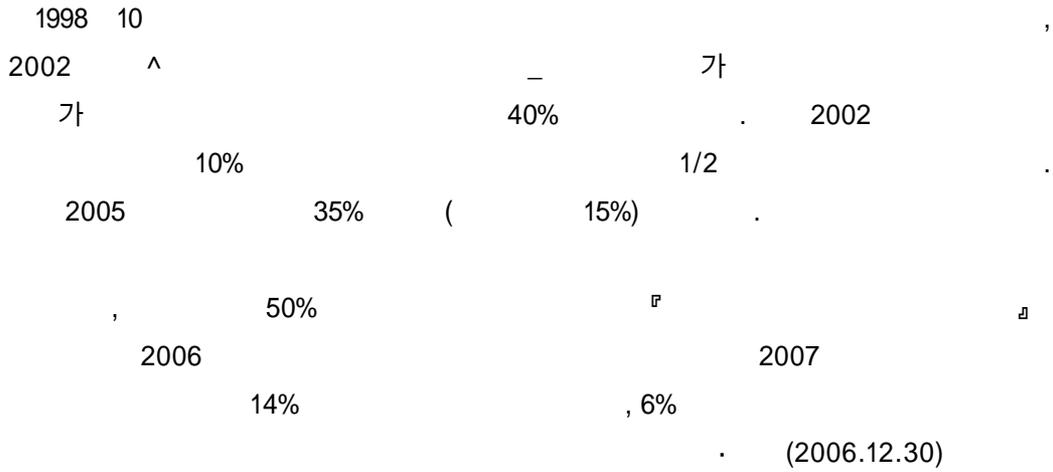
가

1/2

2006

“

”



〈표 2-6-10〉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

(단위 :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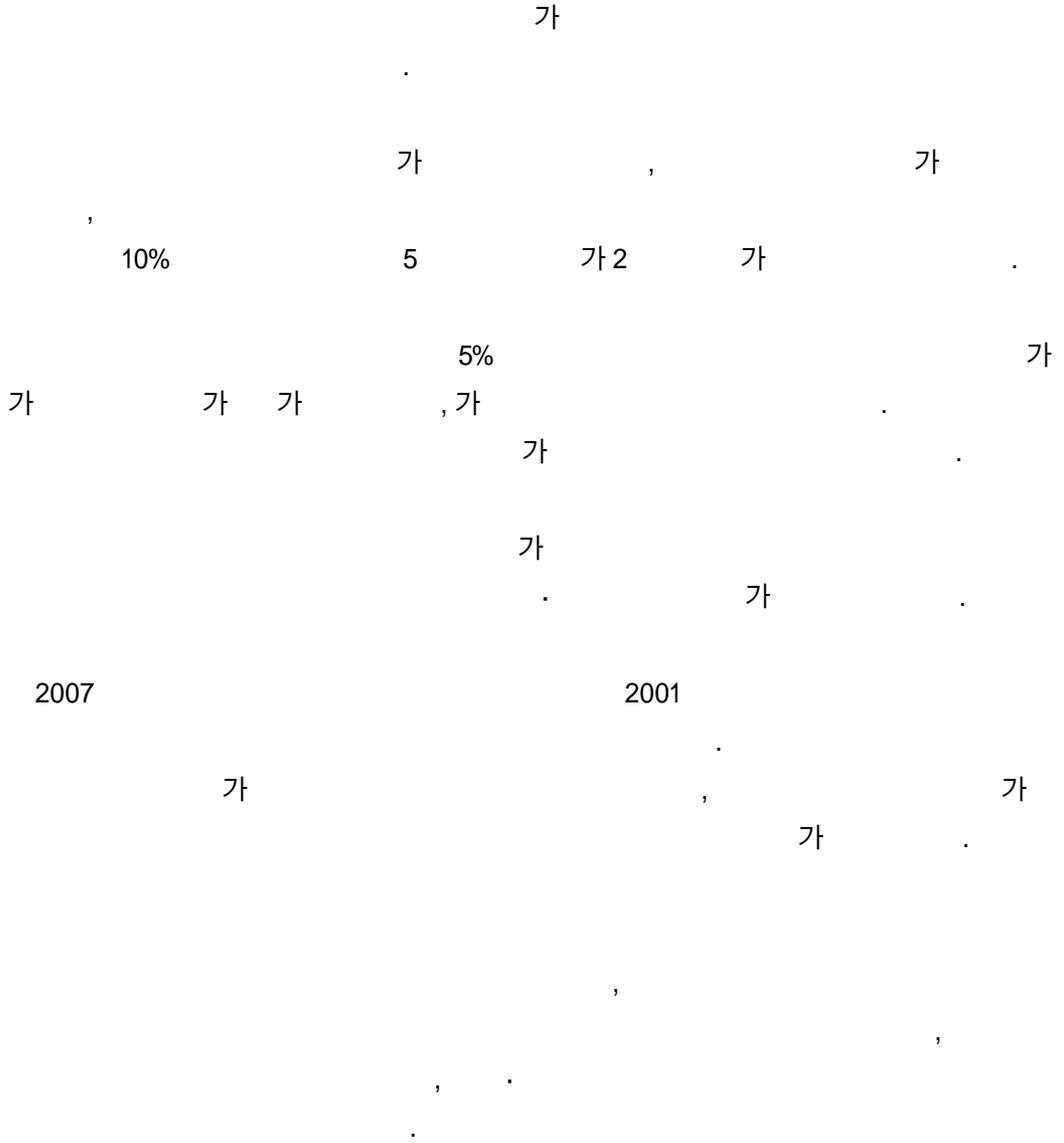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 원 율	40.5	38.1	32.7	30.1	29.7	28.2	26.5	30.3	38.4	42.7	46.0	45.2	45.1	42.5	17.3
지역지출*	15,748	18,164	23,122	28,966	33,534	38,163	44,065	51,161	68,299	70,525	74,370	77,019	81,844	90,322	212,530
국고지원	6,381	6,924	7,553	8,723	9,954	10,760	11,656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증진기금	-	-	-	-	-	-	-	-	-	-	4,392	6,446	6,263	9,253	9,664

* 2007년은 보험료 수입액

가

“ ” 가 가

4.



IV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1.

() 1977 7 1 ,
2000 7 1
13 가
가
48
가
가
18
가
가 2 8 , 5 ,
4 가
15 15

가	가						
10	10	가	10	가	6	7	
가							
가1	15						
		2007	11	23			
1	6	178			225	(178	
)							11,370
	8,874						
		2,496					

2. 가

2000	7	1			가		
23						가	
	가		43	2	56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5
5 , 1 , 가 3 ,
1 , 1 가 , 3
1
가 59 가
가 가 , 가
가 1,050 (50 , 1,000)
가
가 ” , “ 가 ” , “
가
7
64% 가



건강보험 급여 체계*

I 건강보험 수가관리

1. 가

가. 수가계약 내용 및 절차

2000. 7. 1 42 가

가 , 24 가 , (가 가 .

) 가 가 .

가

가 (가) , ' 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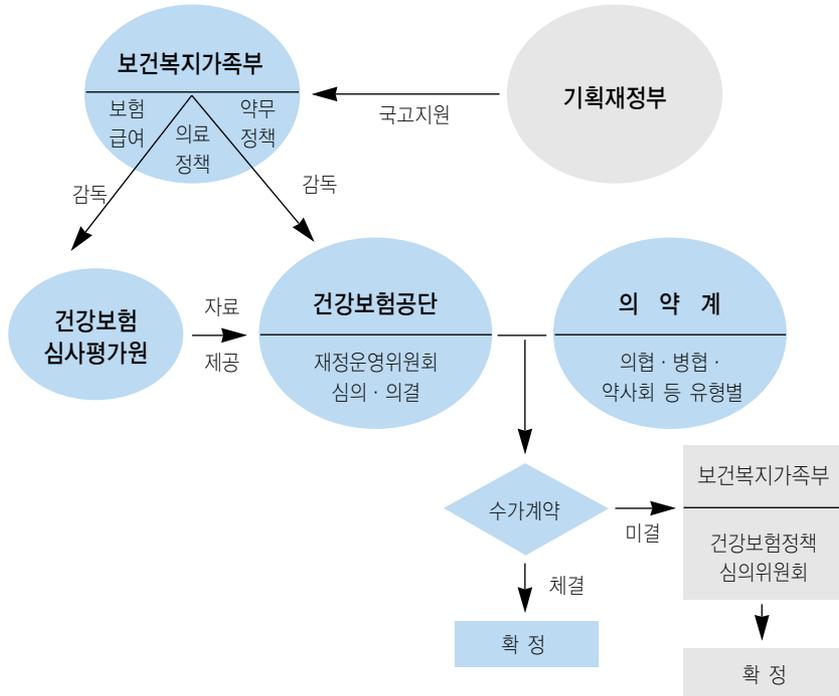
() 가 가

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보험급여과장 이창준

[그림 2-6-2] 수가계약의 절차와 이해당사자



가 (RBRVS) 가 ,

42

1

75

가

2001

2005

가

가

, 2006

가

2007 가
 2008 가

〈표 2-6-11〉 의료수가 합의과정과 환산지수의 변동 상황

(가) 연 도	(나) 합의 결과	(다) 조정률	(라) 환산지수
2001	결렬 (건보심에서 결정)	7.08% 인상	55.4원
2002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	2.90% 인하	53.8원
2003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	2.97% 인상	55.4원
2004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	2.65% 인상	56.9원
2005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	2.99% 인상	58.6원
2006	계약 (계약당사자간 합의)	3.50% 인상	60.7원
2007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	2.30% 인상	62.1원
2008	계약당사자간 합의 : 5개 계약결렬 : 2개(의원, 병원)	1.94% 인상	의원 : 62.1원 병원 : 62.2원 치과 : 63.6원 한의원 : 63.3원 약국 : 63.1원 조산원 : 80.7원 보건기관 : 62.1원

※ 주 : 건보심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자임
 ※ 자료 : 2007 건강보험 주요통계(2008.2)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994
 가 가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1997
 가 2001
 (resource - based) 가 (relative value) 가
 가 가
 가 , , , ,
 , 가
 가 .
 가 ‘ , ‘ 가
 , 가 가 2003
 ‘ 가 , 가
 , 가
 3 新 가 2008

〈표 2-6-12〉 현행 상대가치점수 및 신상대가치점수 비교

구 분	기존 상대가치점수	新 상대가치점수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범위	행위료에 포함되는 업무나 재료비용에 대해 논란이 있음	행위정의를 통해 행위료에 포함되는 업무나 재료비용을 명확하게 함
의사업무량/진료비용 구분	구분없음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
의료사고 위험도	별도로 구분 안됨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별도로 계산
치료재료	행위료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치료재료 비용이 비보험 형태로 존재	비보험 재료나 기타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분리하여 상대가치점수를 도출

3. (DRG) 가

가 가 , , ,
 가 가 가
 , 가 ,
 .
 가 가
 가 1995 1 DRG
 , (DRG) 1997
 가 2001 3 .
 가 2002 8
 2003 9 7
 .
 , 가
 가 2008
 1 .

II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 체계의 발전

2000 7 1 2007 12

1.

가 가 가 20% ,
 30~50% 30% . ,

30 120 50%

가

6 300 2004 7 2007 7 200 가

가

6 200 200 가

200 200 가

6 200 가

가

가

가

2.

가.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2000 7 70

2000.7.1	70	65	
2001.7.1	가 15,000	가 10,000	가 15,000
1,500 (30%)	30%),	가 10,000	1,200 (30%)
(4,500 +3,000 =7,500)	가 15,000	가 10,000	65
	4,800	2,700	

나.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가	가
20%	가 30%, 40%,
50%	
2004	2003
62 (101)	(75)
2006	2005
15	9
2007	125

다.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특례

10%

라.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경감

가	6	가	2006.1.1
70%	2007.8.1	6	가
6			2007 11

3. .

가 가 , ^ .
 - 가가
 .
 ,
 ^ -
 .
 , 가 가
 가 2000.7.1
 , 2004.12.1 ()
 , 2005 1

4.

14 77 39 , 24 ,
 80% .
 ,
 .
 2005 , , 가
 , 58 , 36.6% .

가

2008

5.

가. 대형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절차 변경

, () 1
 가 , ,
 , , , ,
 가가 , ,
 가가 , , .
 2000.7.1 1
 , , , , , 가
 가가 . 가

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 개선

.
 가
 ,가 가
 ,
 7
 .

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

가 ,

가 .

6.

가

^

() 가 30 가

가

150 .

(2006.10.27) ,

가

2008.7.26 가 .

가 .

III 건강보험 정보화사업(EDI)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

EDI “ , 가 , ”

EDI 1994 5 , 6 11

EDI 12 100 .

1 1996 12 11 , 1997 5 EDI EDI

1998 8 EDI

2000 7 가 가

2007 12 76,752 96.2% 73,870 EDI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I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가 2007 9 5
29.5%

2006
25.8% OECD 17.3% 2001 5
가 15.0% 가 10.6% 가 가

가, .
가 ,
가

〈표 2-6-13〉 총진료비 중 연도별 약제비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총 진료비	약제비(추정)	약제비 비율	증가율
2002	190,606	48,014	25.19	14.85
2003	205,336	55,830	27.19	16.28
2004	223,559	63,535	28.42	13.80
2005	247,968	72,289	29.15	13.78
2006	285,580	84,041	29.43	16.26
2007	322,590	95,126	29.49	13.18

*집필자 : 보험약제과장 이태근

1.

		가		(Negative list)	
	2005	2	20,564		
5,000					
		22.6%	(05.2)		
(Positive List)		가		가	
08.1.1	15,216	(06.12)	06.1.1	21,740	
		가			
	가	가		가	가
		68%			
	가	80%			

2.

()

Positive List , 5 가

가 , 2007 2 (,)

가 . 가 2008 가가 ,

(1,184), (805)가 2008 , (755),

(1,577)가 2009 , (2,974) 2010 , -

(412) 2011 가 .

가 가 , 2002

가 가 -

가 ,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표 2-6-14〉 기등재의약품 연도별 평가대상

구 분	평가대상 약효군 수 및 품목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범평가군 (품목수)	2개약효군 (295)				
본 평가군 (품목수)		6개 약효군 (3,748)	10개 약효군 (4,755)	15개 약효군 (4,647)	16개 약효군 (3,084)

3. 가 가 - 가 가

가. 약가 재평가

가 가

7 가(A7; , , , , , ,)
 .
 가 7 가 가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가 , , , , , ,
 65%, 82% 가
 .
 2002 6 7,400
 3,500 .

〈표 2-6-15〉 약가재평가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 현황

연 도	재평가품목수	인하품목수(%)	평균인하율	인하액
2002	12,178	2,732(22.4)	7.2%	734억원
2003	344	82(23.8)	7.5%	43억원
2004	749	226(30.2)	6.3%	57억원
2005	5,320	1,477(27.8)	10.8%	591억원
2006	4,895	1,421(29.0)	17.2%	812억원
2007	4,596	1,570(34.2)	14.1%	1,565억원

나. 사용량-약가 연계 재평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200 , 가 가
 가 가가 .

II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OECD 가 ,

1.

3.0, 1.97, 1.98 2005 1 4.16
 1 4.56 2.02, 1.64 18
 2

가

가

가

2008 7 1 5 (, , , ,) 7 (, , , , ())

2.

7.7%

가

2008 10 1

6 가 7

6

3.

가
가

가

4.

가 5

(06 가가

가 가가
, 2006 1 300
30% 가)

가

가

5.

()

2004 . ()

2 가

가 .

가 (.)

2007 4 1 .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III 보험약제 사후관리

1. 가

가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

1999 11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2.

2007 3 가 , 2 1,114
 0.67% 2000 15
 2,500

〈표 2-6-16〉 연도별 약가인하 현황

연도(시행일 기준)	인하품목 수	평균인하율(%)	보험재정절감추정액(억원)
2000	295	3.01	23
2001	5,819	7.4	1,277
2002	1,953	5.66	575
2003	1,794	3.19	468
2004	782	2.16	38
2005	1,561	1.56	90
2006	1,519	0.85	57
2007	1,114	0.67	58

제 4 절

건강보험급여 사후관리*

I | 요양기관 사후관리

1.

가 () (1

) ()

(2)

, 가
가

가

*집필자 : 보험평가과장 양병국

2.

가. 추진 실적

가
 84 2 가 () , 2004
 775 , 2005 885 , 2006 851 , 2007 744 가
 가 , 가
 (1) (2~5)

〈표 2-6-17〉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총괄) (207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연 도	실 사 기관수	부당사실확인기관수					부 당 금 액
		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처 분 절차중	
2004	775	619	210	207	200	2	103
2005	885	688	216	214	240	18	88
2006	851	628	112	115	146	255	140
2007	744	579	152	111	118	198	144

※ 주 : 1) 부당금액은 추정금액임.
 2) 부당이득금 환수 :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 중 부당청구의 정도가 처분기준에 미달하여 부당금액만을 환수하는 기관임.

가 (Data Mining) , 가

2004

2004 1 1 ()

5

(2007 : 8,941 150,960),

3

2005. 7. 1 2007 31 113,380

, 가 가

(2005 5 , 2006

13 , 2007 16).

나.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강화

가 , .가

, 가 1

가

2 5

, 1 95

1,000

5

2 가

(2004.3.31) . , 가

3.

가 2008 가 가 1

II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

가

2000 7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현황

〈표 2-6-18〉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혈 • 집중치료실 • 슬관절치환술 • 정신과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심근경색증(AMI)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I(완료) • PCI(완료) • CABG(완료) • 뇌졸중(pilot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졸중(계속)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pilot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졸중(완료)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 진료량 지표(7개수술)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추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약처방비중 추가 • 제약절개분만 • 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신피질호르몬제 추가 • 제약절개분만 • 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통소염제 추가 • 제약절개분만 • CT • 수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품목이상처방비중추가 • 제약절개분만 • CT • 수혈 • 슬관절치환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관용약처방율추가 • 제약절개분만 • 급성심근경색증 • CT • 수혈 • 슬관절치환술

※ 2001~2002년 : 약제급여(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약품목수),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조혈모 세포이식 실시기관, 제약절개분만, CT(전산화단층촬영), 혈액투석

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현황

2005 5
가 . 2007 (9) .
(10) . (12) 가

[그림 2-6-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양호기관 명단공개 허혈성심장질환(11월) (의료의 질 평가결과) 항생제처방률(10월) 제약절개분만률(9,12월) 주사제처방률(5,9월)	전체기관 명단공개 제약절개분만률(7월) 주사제처방률(5월) 항생제처방률(2월)	추가 공개 항목 진료량지표(12월) 호흡기,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10월) 뇌졸중(9월)

다.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가 (2000.11.1 가) 2007 5 가
, 가 , 가 , 가
.

3.

2008 가
가 , 7 . 8
, 17 가 .
가
2 1% 加減
(2007.7~2010.12). 2008 가
, 2009 1 가 , 2010 1 가 5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III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관리

1.

				36,655
	가	2000	12	()
2,616	가	가	2007	12
12,391				
	2007	13,499		
(4.18%)	가			
^				
^				

2.

2007	2006	가	155
가	15.09%	27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표 2-6-19〉 연도별 치료재료 사후관리 현황

구 분	인하품목수(개)	평균인하율(%)	보험재정절감추정액(억원)	비 고
2000년도	1,570	12.50	439	제정고시
2001년도	1,153	4.50	113	업체별 코드로 개정고시
2002년도	127	15.20	8	체외고정기구류
2003년도	1,020	25.35	534	척추고정용, 인공무릎, Nail-set류, 인공고관절
2004년도	616	13.61	116	중재적시술재료, 캐스트류
2005년도	550	3.49	17	인공수정체, Pheresis용류, Ligament&Tendon류, Trauma용 Plate류 등
2006년도	158	10.84	13(74.01%)	봉합사류, 필름류, 인조뼈류 등
2007년도	155	15.09	27(74.27%)	CAST Splint류

※ 2006년도부터 보험자 부담 재정절감액(비율)으로 표시

3.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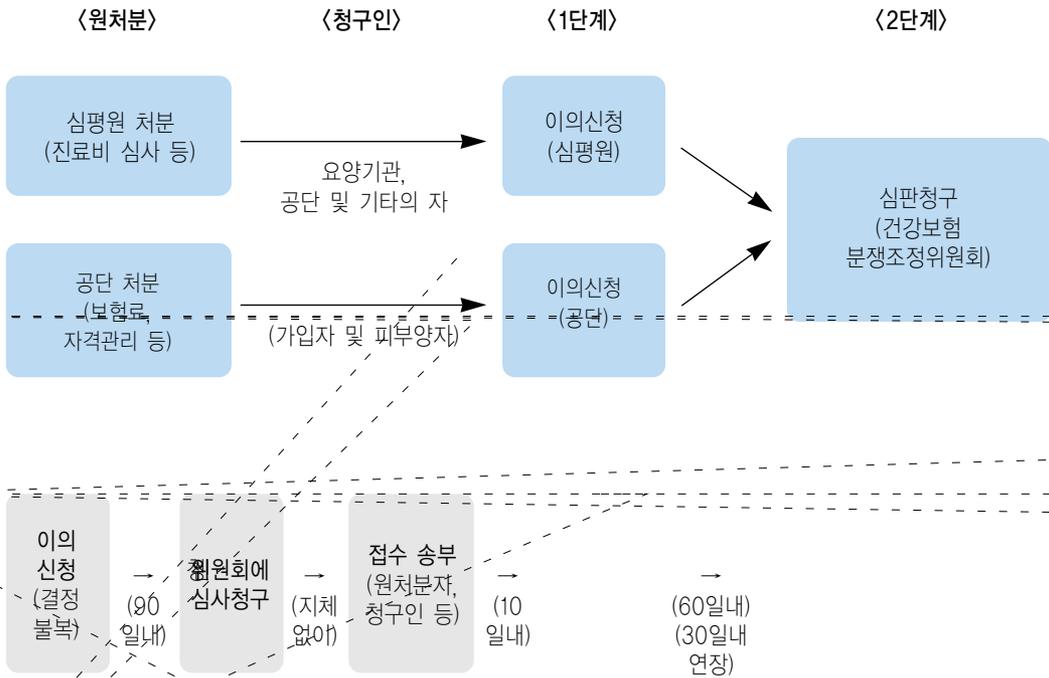
가

.

IV 건강보험 심판청구

1.

가 (가) .
 가 (가)
 가
 90 .
 (77 , 77 2).



2.

1 (가) .
, 가 15
3 , 2008 3 28
35 .

3.

가. 건강보험 심판청구 업무 개선

가
3 가 ,
가
06 T/F
Action Learning

2007 12

나.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2007 가 3,776 , 2,226 ,
 1,196 3,422 . 2,226 18 , 421 , 1,735 ,
 52 .

〈표 2-6-20〉 연도별 심판청구 처리현황(접수기준) (2007.12.31 현재,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접수	총계	재 결					취 하			연도 이월
			소계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정	자진	
2001	689	519 (170)	356 (137)	6 (5)	87 (20)	258 (109)	5 (3)	163 (33)	163 (33)		170
2002	3,029	618 (2,411)	182 (1,874)	3 (13)	38 (385)	136 (1,462)	5 (14)	436 (537)	429 (537)	7	2,411
2003	3,041	793 (2,248)	384 (1,846)	7 (7)	50 (407)	319 (1,425)	8 (7)	409 (402)	409 (402)		2,248
2004	2,870	1,240 (1,630)	723 (1,280)	3 (2)	137 (322)	563 (949)	20 (7)	517 (350)	500 (336)	17 (14)	1,630
2005	2,494	1,965 (529)	1,187 (400)	4 (2)	299 (139)	878 (256)	6 (3)	778 (129)	759 (114)	19 (15)	529
2006	3,170	2,506 (229)	1,447 (138)	14 (1)	370 (38)	1,054 (98)	9 (1)	1,059 (91)	1,028 (90)	31 (1)	664
2007	3,776	2,758	1,737	15	281	1,389	52	1,021	985	36	1,018

※ ()안의 숫자는 연도이월 건 중 익년도 처리한 숫자임.

〈표 2-6-21〉 연도별 심판청구 처리현황(처리기준)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총 계	재 결					취 하			비 고
		소 계	인 용	일부인용	기 각	각 하	소 계	인 정	자 진	
2001	611	410	7	109	289	5	201	201		
2002	788	319	8	58	245	8	469	462	7	
2003	3,176	2,235	16	427	1,770	22	941	941		
2004	3,511	2,587	14	550	1,996	27	924	907	17	
2005	3,600	2,472	6	623	1,830	13	1,128	1,095	33	
2006	3,035	1,847	16	509	1,310	12	1,188	1,142	46	
2007	3,422	2,226	18	421	1,735	52	1,196	1,168	28	

- ※ '01년 처리건 : 92건('00) + 519건('01 접수분)
- ※ '02년 처리건 : 170건('01) + 618건('02 접수분)
- ※ '03년 처리건 : 2,383건('02) + 793건('03 접수분)
- ※ '04년 처리건 : 28건('02) + 2,243건('03) + 1,240건('04 접수분)
- ※ '05년 처리건 : 5건('03) + 1,630건('04) + 1,965건('05 접수분)
- ※ '06년 처리건 : 529건('05) + 2,506건('06 접수분)
- ※ '07년 처리건 : 664건('06) + 2,758건('07 접수분)

4.

가

2008

제 7 장

국민연금

제 1 절

국민연금 운영현황*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연도	1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992	1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999	4																																
2003	7																																
2006	1																																

*집필자 : 국민연금정책과장 고득영, 국민연금재정과장 이스란, 국민연금급여과장 배금주

I 적용 대상

가 가 18 60 ,
 가 가 , ,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18 60 가 1995
 7 가 1999 4
 , , 5 2003 7
 가 가 .
 2006 1 .
 가 가 가 가 .
 가 .
 가 60 가 가 가 20
 65 가 .

〈표 2-7-1〉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 입 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1988	4,432,695	4,431,039	-	-	1,370	286
1989	4,520,948	4,515,680	-	-	4,036	1,232
1990	4,651,678	4,640,335	-	-	8,274	3,069
1991	4,768,536	4,747,605	-	-	14,921	6,010
1992	5,021,159	4,977,441	-	-	32,238	11,480
1993	5,159,868	5,108,871	-	-	40,452	10,545
1994	5,444,818	5,382,729	-	-	48,332	13,757
1995	7,496,623	5,541,966	1,890,167	-	48,710	15,760

연도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1996	7,829,353	5,677,631	2,085,568	-	50,514	
1997	7,835,878	5,600,947	2,085,489	-	47,208	102,234
1998	7,126,307	4,849,926	2,129,243	-	29,024	118,114
1999	16,261,889	5,238,149	2,083,150	8,739		5,23

II 연금급여

1.

4,200,000,000원

2006년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 (가)

5

가 1999. 1. 1

20
(1988.1.1),
가
50) 60

2008
(1995.7.1)
가
5 가 60 가
가
가 1993

가 20 가 60
가 60 65
, 55 가
가 15

20 10 , 1999
가 .

가 (1 4)
, , 10 가 , 가 (1
가 가) 2
.

가 가 ,
18 , 60 (), 18 , 60
() 2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 (18

2), (60 2)가
 가 가 .
 가 10 가 60 , (
), ,
 가
 .
 가 가 가 , , , , ,
 , . 4 .

〈표 2-7-2〉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실적 (2007.12.31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계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총계	수급자	10,055,677	1,973,767	1,592,056	80,035	301,676	8,081,910	35,851	8,001,617	44,442
	금액	29,177,747	16,900,516	12,746,056	1,119,955	3,034,505	12,277,231	223,895	11,968,891	84,445
'88	수급자	3,128	-	-	-	-	3,128	-	3,128	-
	금액	301	-	-	-	-	301	-	301	-
'89	수급자	59,347	1,798	-	42	1,756	57,549	27	57,522	-
	금액	6,034	772	-	19	753	5,262	35	5,227	-
'90	수급자	257,101	5,069	-	307	4,762	252,032	194	251,838	-
	금액	42,301	3,282	-	223	3,059	39,019	260	38,759	-
'91	수급자	382,790	9,271	-	879	8,392	373,519	332	373,187	-
	금액	110,882	7,463	-	862	6,601	103,419	546	102,873	-
'92	수급자	492,471	16,301	-	2,172	14,129	476,170	1,344	474,826	-
	금액	216,541	15,845	-	2,902	12,943	200,696	2,155	198,541	-
'93	수급자	583,014	35,203	10,971	3,896	20,336	547,811	2,341	545,470	-
	금액	333,131	32,708	6,447	5,781	20,480	300,423	4,467	295,956	-

● ● 제7장 국민연금

구분	합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계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94	수급자	845,613	54,396	22,530	5,435	26,431	791,217	1,566	789,651	-
	금액	519,074	56,101	18,524	8,596	28,981	462,973	3,584	459,389	-
'95	수급자	875,899	77,709	38,162	7,088	32,459	798,190	1,529	796,236	425
	금액	755,460	89,310	37,517	12,665	39,128	666,150	3,902	661,754	494
'96	수급자	942,232	107,554	58,099	8,670	40,785	834,678	1,341	831,530	1,807
	금액	1,117,645	136,143	67,616	16,967	51,560	981,502	3,965	975,571	1,966
'97	수급자	983,386	149,680	83,222	10,536	55,922	833,706	1,268	830,138	2,300
	금액	1,485,530	204,135	109,722	22,213	72,200	1,281,395	4,635	1,274,014	2,746
'98	수급자	1,266,593	197,868	112,946	13,245	71,677	1,065,725	1,625	1,061,643	2,457
	금액	2,439,729	302,927	171,425	31,368	100,134	2,136,802	6,727	2,126,221	3,854
'99	수급자	1,249,257	282,407	175,572	16,906	89,929	966,850	1,944	962,578	2,328
	금액	3,871,969	477,350	299,592	45,740	132,018	3,394,619	11,887	3,378,752	3,980
'00	수급자	927,545	618,232	482,042	21,914	114,276	309,313	2,170	304,127	3,016
	금액	1,607,035	924,518	651,368	70,098	203,052	682,517	15,799	662,420	4,298
'01	수급자	948,164	770,568	602,197	27,456	140,915	177,596	2,469	170,542	4,585
	금액	1,569,257	1,301,142	973,630	83,583	243,929	268,115	18,286	243,445	6,384
'02	수급자	1,052,327	916,630	717,488	32,876	166,266	135,697	2,194	129,239	4,264
	금액	1,915,255	1,652,529	1,254,730	103,849	293,950	262,726	16,419	238,685	7,622
'03	수급자	1,169,441	1,052,414	819,800	39,727	192,887	117,027	2,853	108,740	5,434
	금액	2,328,449	2,017,911	1,533,339	131,921	352,651	310,538	21,978	278,232	10,328
'04	수급자	1,533,059	1,424,083	1,156,098	47,260	220,725	108,976	3,609	99,750	5,617
	금액	2,914,015	2,914,015	1,987,451	163,629	417,886	345,049	29,297	303,194	12,558
'05	수급자	1,757,674	1,651,681	1,349,626	54,467	247,588	105,993	4,147	96,078	5,768
	금액	3,584,901	3,210,044	2,531,536	193,931	484,577	374,857	35,713	324,885	14,259
'06	수급자	1,985,502	1,858,769	1,517,649	61,762	279,358	126,733	4,898	115,394	6,441
	금액	4,360,239	3,899,369	3,103,161	225,607	570,601	460,870	44,239	400,674	15,957
'07	수급자	2,244,477	2,110,519	1,731,560	67,091	311,868	133,958	5,167	121,200	7,591
	금액	5,182,611	4,748,988	3,857,709	245,898	645,401	433,623	48,325	368,374	16,924

※ 주 : "총계"란의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수급자이었던 자를 포함

3. 가

가
가 .
,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가 .

가 가

(1976.8.1), (1999.5.1), (2000.8.1), (2001.4.1), (2003.1.1),
 (2003.2.1), (2003.10.1), (2004.4.1), (2004.4.1),
 (2006.5.1), (2007.3.1), 가 (2007.3.1), (2007.6.1)

, , , ,

2.

가. 가입기간 합산협정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 , , 가 , 가

, , , , ,

, 가 , , , , 가

나. 보험료 면제협정

가 가 , 가

가 가 가

.



국민연금기금운용*

I 개 요

1.

(101)
 가 , ,
 .
 가 가 ,
 .

2.

	1988	2007	12	
256		36		220
256		84	1988	2007 12
7.56%				2010 320 ,
2020	920			

*집필자 : 국민연금재정과정 이스란

[그림 2-7-1]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시가기준)

(단위 : 십억원)



<표 2-7-5>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88~'07
조성(A)	18,811	20,276	22,832	27,489	26,894	30,440	35,595	256,121
- 보험료	12,069	13,818	15,611	17,143	18,543	20,152	21,670	171,321
- 운용수익	6,740	6,456	7,221	10,227	8,225	10,123	13,828	84,246
- 기 타	2	2	0	119	126	165	97	554
지출(B)	1,672	2,036	2,463	3,247	3,967	4,763	5,594	36,497
- 연금급여	1,569	1,915	2,328	2,914	3,585	4,360	5,183	34,360
- 운영비	103	121	135	333	382	403	411	2,137
	17,139	18,240	20,369	24,242	22,927	25,677	30,001	

※ 위의 수치는 시가 기준임

3.

가
 , 가
 , 가 20 [(14)]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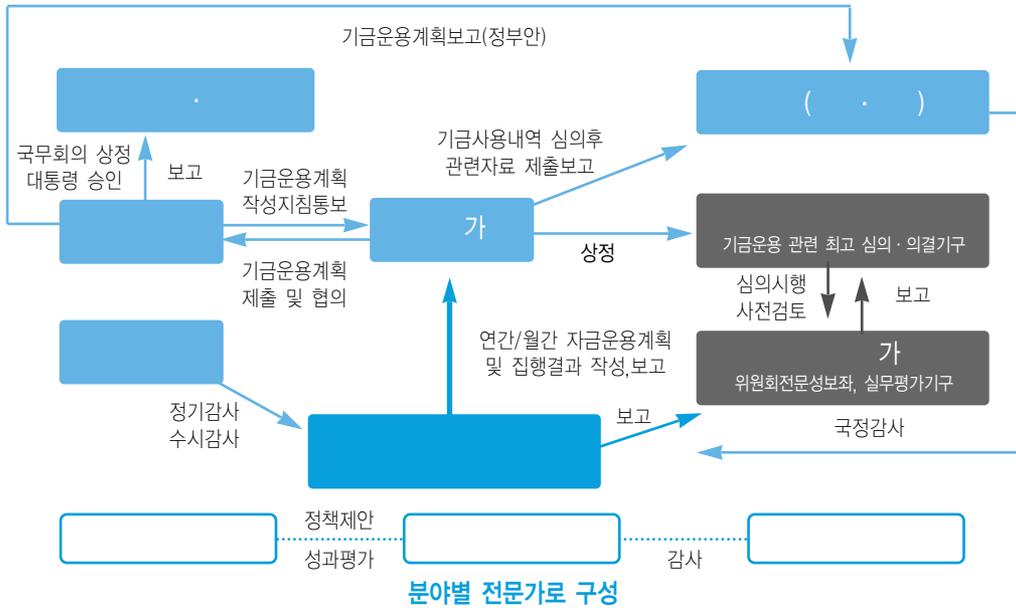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 항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가능하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농어업인 단체 이외의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관계전문가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 항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외)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농어업인 단체 이외의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그림 2-7-2]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II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 : 2007

1.

가

가

가. 수익성의 원칙

가

가

나. 안전성의 원칙

다. 공공성의 원칙

라. 유동성의 원칙

마. 운용독립성의 원칙

2.

3.

III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 2007

1. 2007

가. 재무현황 분석

2007 12	220 1,279	가	가
30 4,017	가	가	가
가	가	가	가
8,079	가	가	25
5,044	3,601	가	가
2007	(308)	가	(56)
634	,	가	(
)	4,235	가	

〈표 2-7-6〉 국민연금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도 (당기)	2006년도 (전기)	전년 대비		
			증 감	증감률	
자 산	유동자산	677,939	419,860	258,079	61.5
	비유동자산	1,523,340	1,477,402	45,938	3.1
	합 계	2,201,279	1,897,262	304,017	16.0
부 채	유동부채	366	1,000	△634	△63.4
	비유동부채*	4,678	443	4,235	956.0
	소 계	5,044	1,443	3,601	249.5
자 본	자본금	1,369,976	1,205,100	164,876	13.7
	이익잉여금	829,194	673,075	156,119	2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935	17,644	△20,579	△116.6
	소 계	2,196,235	1,895,819	300,416	15.8
합 계	2,201,279	1,897,262	304,017	16.0	

*비유동부채는 공단임대보증금과 파생상품부채로 구성되며, 파생상품부채는 결산기말 현재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의무가 발생한 것

() 219 6,235 30 416 가
 .
 가 16 4,876 가 ,
 가 15 6,119 가 , 가
 가 가 가 가
 2 579 .

나. 손익현황 분석

〈표 2-7-7〉 국민연금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도 (당기)	2006년도 (전기)	전년 대비	
			증 감	증감률
I. 연금보험료수입	216,702	201,523	15,179	7.5
II. 사업수익*	169,303	108,336	60,967	56.2
III. 연금보험료지출액	216,702	201,523	15,179	7.5
연금급여적립금전입액	164,876	157,921	6,955	4.4
연금급여전출금	51,826	43,602	8,224	18.9
IV. 사업비용**	10,631	10,940	△309	△2.8
V. 사업이익(I + II - III - IV)	158,672	97,396	61,276	62.9
VI. 사업외수익***	1,574	1,539	35	2.3
VII. 사업외비용****	4,127	3,987	140	3.5
VIII. 경상이익(V+VI-VII)	156,119	94,948	61,171	64.4
IX. 당기순이익	156,119	94,948	61,171	64.4

*금융자산운용수익 등으로 매도가능증권이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을 말함

**금융자산운용경비로 지급수수료,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외환환산손실 등을 말함

***관리운영비 국고전입금, (공단)일반회계수익전입금 등을 말함

****관리운영비 전출금, 복지시설사업손실금 등을 말함

● ● 제7장 국민연금

2007	21 6,702	가	가(
544)	(58)		1 5,179
가 ,	16 9,30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6 967	가	.
	21 6,702	1 5,179	가 ,
	(16 4,876)	(5 1,826)	
	1 631	가	가(3,001)
	가		
309			
15 8,672 ,	6 1,276	가	.
	1,574	(15)	,
가(38)		(7)	
	35	가	.
()*	15 6,119	6 1,171	가 .
	가		.

*특별손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인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과 동일함

〈표 2-7-8〉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과목	계획 (A)	실적 (B)	증감 (B-A)	비율 (B/A)
수입	연금보험료수입	215,268	216,702	1,434	100.7
	운용수익	113,592	138,386	24,794	121.8
	투자원금회수금	303,142	428,265	125,123	141.3
	전입금	1,370	1,370	-	100.0
합계		633,372	784,723	151,351	123.9
지출	연금급여	52,194	51,826	△368	99.3
	복지사업자금	136	129	△7	94.9
	자산취득비등	148	96	△52	64.9
	기금관리비	116	95	△21	81.9
	사업운영비	4,194	4,104	△90	97.9
	성과급	19	10	△9	52.6
	소계	56,807	56,260	△547	99.0
운용		576,657	728,463	151,806	126.3
합계		633,464	784,723	151,259	123.9

※ 주 : 계획상의 수입과 지출의 합계금액 차이는 '06년도 복지타운운영비(48억원), 업무용회관건립비(42억원) 및 연구원운영비(2억원)의 이월예산이 계상된 결과임.

2. 2007

가. 투자 현황

2007 12 가 219 6,235 (15.8% 가) ,
 219 934 (99.8%) , 2,036
 (0.1%) 3,264 (0.1%) . 79.6%, 17.5% ,
 2.5%, 0.2% .

〈표 2-7-9〉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시가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규 모	비 중	규 모	비 중	규 모	비 중	
총 계		1,639,450	100.0	1,895,819	100.0	2,196,235	100.0	
공 공		-	-	-	-	-	-	
복 지		3,025	0.2	2,432	0.1	2,036	0.1	
금융 소계		1,633,256	99.6	1,890,343	99.7	2,190,934	99.8	
금융	채권	소 계	1,414,824	86.3	1,644,324	86.7	1,748,443	79.6
		국 내	1,295,213	79.0	1,480,033	78.1	1,574,815	71.7
		해 외	119,611	7.3	164,291	8.6	173,628	7.9
	주식	소 계	203,949	12.4	219,863	11.6	384,704	17.5
		국 내	197,135	12.0	207,225	10.9	330,892	15.1
		해 외	6,814	0.4	12,638	0.7	53,812	2.4
	대체투자		7,798	0.5	21,678	1.1	54,061	2.5
	단기자금		6,685	0.4	4,478	0.2	3,726	0.2
	기 타		3,169	0.2	3,044	0.2	3,265	0.1

※ 주 : 금융부문을 제외한 공공, 복지부문은 매입가 기준 금액임. 기타부문은 자산취득비 및 기금보관금 등임

나. 수익률 현황

2007 (가) 가 6.84%(가 8.68%) , 가 13 8,278 (가 17 5,285) .
 2007 6.30% 0.54%pt. ,
 가 2.50% 4.34%pt. .(< 2-7-10>)
 3 가 6.14%(가 7.67%) , 88 ~ 07
 가 84 2,460 (가 88 3,056) .

2007 (가) 가 6.86%(가 8.70%) , 3 가 6.16%(가 7.70%) .
 2007 33.66%, 가 2.65%(가 4.83%) ,
 3 29.47%, 가 3.04%(가 4.81%)

〈표 2-7-10〉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및 수익금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05~'07)	연평균 ('88~'07)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률	수익금		
공공부문	4.16	1,388	-	-	-	-	4.16	8.26	190,827		
복지부문	3.60	92	3.63	71	1.52	34	2.92	7.69	6,231		
기타부문	-	-	-	-	3.81	222	3.81	2.85	751		
개 인 예 금	장부가	9.68	138,322	4.93	96,276	8.70	175,029	7.70	7.85	685,247	
	시 가	5.65	80,645	5.77	100,971	6.86	138,022	6.16	7.39	644,651	
	채 권	장부가	4.75	60,985	4.85	74,072	4.83	82,094	4.81	5.92	445,932
		시 가	0.26	3,308	5.81	88,768	2.65	45,087	3.04	5.38	405,336
	주 식	57.57	76,644	5.49	11,131	33.66	90,363	29.47	22.69	224,969	
	대체투자	8.48	468	6.59	722	6.08	2,248	6.44	6.07	3,459	
	단기자금	3.50	225	4.19	350	4.75	324	4.16	7.13	10,887	
	전 체	장부가	9.55	139,802	4.93	86,347	8.68	175,285	7.67	7.92	883,056
시 가		5.61	82,125	5.77	101,043	6.84	138,278	6.14	7.56	842,460	

※ 주 : 시가는 채권평가손익이 반영된 장부가 평잔기준 수치인 반면, 장부가는 채권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장부가 평가기준 수치임

다.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현황 : 금융부문

2007 가 * 7.05% (6.79%) 0.26%pt
 , 3 (6.11%) (5.99%) 0.12%pt .
 (36.39%) 4.33%pt , (2.69%)
 0.23%pt , 3 (31.95%) (2.92%)
 2.01%pt , 0.09%pt .

*시간가중수익률은 각 자산단위 해당기간 일별 시가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됨. 시간가중수익률은 자산의 규모 및 자금의 유출입과 무관한 성과를 나타내어, 벤치마크대비 또는 다른 기관, 펀드와의 상대비교를 위한 수익률 계산방식으로 널리 사용됨

〈표 2-7-11〉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 금융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최근 3년간('05~'07)			최근 5년간('03~'07)				
	기금	BM	차이	기금	BM	차이	기금	BM	차이		
금융	계	7.05	6.79	0.26	6.11	5.99	0.12	6.96	6.77	0.19	
	채권	소계	2.69	2.92	-0.23	2.92	3.01	-0.09	4.55	4.54	0.01
		국내	2.73	2.67	0.06	2.99	2.92	0.07	4.56	4.49	0.07
		해외	2.33	5.33	-3.00	1.19	4.41	-3.22	5.74	4.21	1.53
	주식	소계	36.39	32.06	4.33	31.95	29.94	2.01	28.12	25.68	2.44
		국내	39.25	35.07	4.18	33.15	31.13	2.02	28.77	26.34	2.43
		해외	6.41	9.04	-2.63	10.73	12.75	-2.02	-	-	-
	대체투자	7.73	8.41	-0.68	7.80	8.04	-0.24	4.85	8.54	-3.69	

※ 주 : 해외채권은 2004년에 시작하였고, 해외주식은 2003년 12월에 시작

〈표 2-7-12〉 경제성장률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단위 : 억원, %)

구 분	국민연금기금				경상경제 성장률	국고채 수익률 (3년만기)	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총수익률		금융부문 수익률					
	시가	장부가	시가	장부가				
1988년	11.98	11.98	12.96	12.96	19.06	-	72.76	7.15
1989년	12.79	12.79	14.35	14.35	12.87	-	0.28	5.70
1990년	12.55	12.55	13.83	13.83	20.64	-	-23.48	8.57
1991년	12.76	12.76	14.04	14.04	21.06	-	-12.24	9.33
1992년	12.68	12.68	14.07	14.07	13.95	-	11.05	6.21
1993년	11.99	11.99	13.87	13.87	12.87	-	27.67	4.80
1994년	12.12	12.12	13.95	13.95	17.04	-	18.61	6.27
1995년	11.81	11.81	12.19	12.19	17.23	13.39	-10.25	4.48
1996년	10.55	10.55	11.16	11.16	12.48	11.84	-26.24	4.92
1997년	8.84	8.84	5.56	5.56	9.38	12.26	-42.21	4.44
1998년	14.41	14.41	18.37	18.37	-1.43	12.94	49.47	7.51
1999년	12.80	12.80	24.49	24.49	9.38	7.69	82.78	0.81
2000년	5.87	4.69	1.34	-1.83	9.29	8.30	-50.92	2.26
2001년	9.01	8.99	11.41	11.37	7.51	5.68	37.47	4.07
2002년	7.67	6.35	8.39	6.29	9.99	5.78	-9.54	2.76
2003년	7.03	7.83	7.58	8.59	5.91	4.55	29.19	3.51
2004년	8.07	5.89	8.40	6.01	7.55	4.11	10.51	3.59
2005년	5.61	9.55	5.65	9.68	3.99	4.27	53.96	2.75
2006년	5.77	4.93	5.77	4.93	4.61	4.83	3.99	2.20
2007년	6.84	8.68	6.86	8.70	6.30	5.20	32.30	2.50
연평균('05~'07)	6.07	7.70	6.09	7.75	4.96	4.77	28.43	2.48
연평균('03~'07)	6.66	7.36	6.85	7.57	5.66	4.59	24.77	2.91
누적('88~'07)	575.41	581.56	720.45	705.72	682.75	162.38	277.40	149.04
연평균(20년간)	10.02	10.07	11.10	11.00	10.83	-	6.87	4.67

※ 주 : 1)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부문 시가평가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음.
 2) 연평균수익률은 기하평균수익률임.
 3) 경상경제성장률은 명목GDP상승률을 의미함.

3. 2007

2007 12 가 37 9,972 2006
 87.8%(17 2,901) 가 , 2007 16.9%
 (10.4%) 6.5%pt. .

〈표 2-7-13〉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시가기준, 억원, %)

구 분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금 액	비 중(주)	금 액	비 중(주)	금 액	비 중(주)
주 식	100,768	49.4	118,562	53.9	232,189	60.4
국 내	93,954	47.7	105,924	51.1	178,468	53.9
해 외	6,814	100.0	12,638	100.0	53,721	100.0
채 권	54,551	4.3	64,209	3.9	103,600	5.9
국 내	51,356	4.0	54,217	3.7	80,780	5.1
해 외	3,195	8.4	9,992	6.1	22,900	13.2
대 체 투 자	7,470	95.8	14,300	65.9	34,183	63.2
위탁운용 계	162,789	10.0	197,071	10.4	369,972	16.9

※ 주 : 해당 자산별 위탁운용 비중이며, 위탁운용 계는 금융부문에서의 비중임

4. 2007

2007 453 1,926
 , 1,830 (95%), 96 (5%), 0(0.0%) .

〈표 2-7-14〉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단위 : 건수, %)

연 도	행 사 주주총회수	행사 안건수	행 사 내 역					
			찬 성		반 대		중립/기권	
			건 수	비 중	건 수	비 중	건 수	비 중
2007	453	1,926	1,830	95.0	96	5.0	0	0
2006	487	1,878	1,796	95.7	70	3.7	12	0.6
2005	317	1,395	1,334	95.6	38	2.7	23	1.7
2004	348	1,145	1,093	95.5	16	1.4	36	3.1
2003	164	782	767	98.1	15	1.9	0	0.0

※ 주 : 지분율 1%이상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분율 1% 미만 기업일 경우에는 중요한 안건만을 대상으로 함.

IV 국민연금기금의 3대 정책과제

1.

가. 투자대상의 확대

가, 2000
가, 2002
2003 ()
2004 SOC, (Alternative Investment)
(outsourcing)
2007
가, 2030
가, 2030
()
()

나. 중기('08~'12) 자산배분(안) 마련

가
5
(08~12) ()
7.3%< (4.5%)+
2012
가 (2.6%) + (20bp)>

(high - risk high - return)
(Shortfall Risk) 10% *

〈표 2-7-15〉 중기('08~'12) 자산배분안

(단위 : 시가기준, 억원, %)

구 분	2007년말		2008년말	2012년말
	금액(조원)	비중(%)	비중(%)	비중(%)
주식 전체	38.4	17.5	23.8	30% 이상
국내주식	33.0	15.1	17.0	20% 이상
해외주식	5.4	2.4	6.8	10% 이상
채권 전체	175.2	80.0	73.3	50% 이상
국내채권	157.9	72.1	66.4	50% 미만
해외채권	17.3	7.9	6.9	10% 미만
대체투자	5.5	2.5	2.9	10% 미만
계	219.1	100.0	100.0	-

2.

가. 위탁투자 확대 지속 추진

2000년 3.5% (2002년 3.5%)

2004년 8.1%, 2006년 10.4%, 2007년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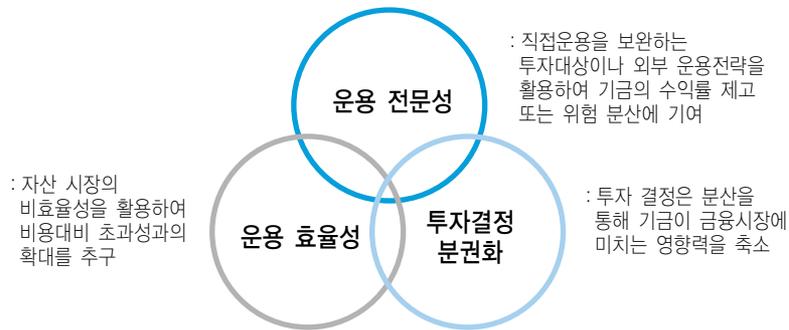
2007년 6% (2008년 55%, 5.0%, 100%)

23% (15.0%, 75.0%가)

* '허용위험한도 10% 이내' : '향후 5년간 기금의 누적수익률이 향후 5년간 누적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10% 이내', 즉 10년에 한번은 5년간 기금의 누적수익률이 5년간 누적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

(World Bank),

[그림 2-7-3] 위탁운용 결정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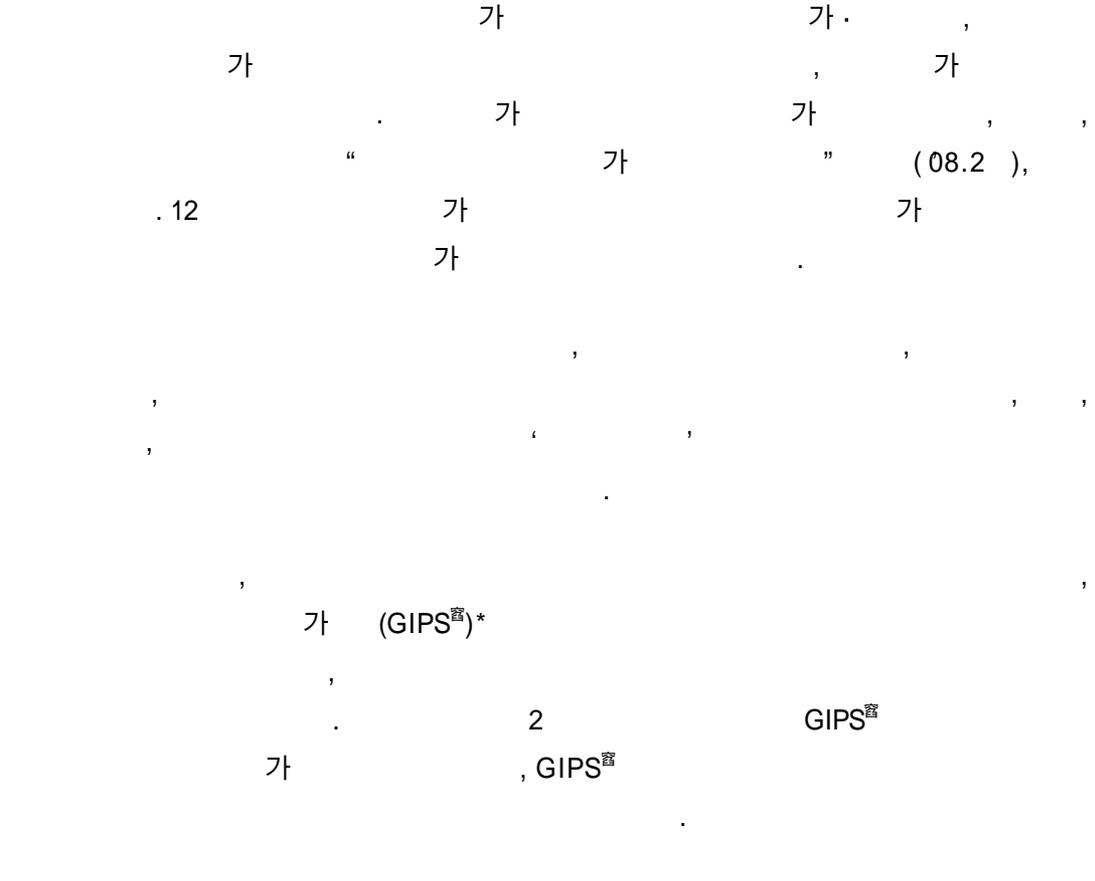


나.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연도	의결권 행사 횟수	의결권 행사 금액 (백만원)
2006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4	가
가	*	가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은 (표 2-7-14) 참조

다.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투명성 강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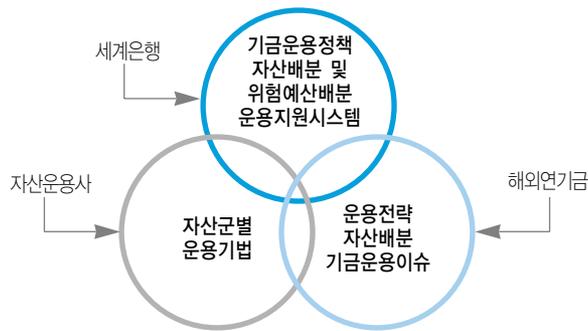
가.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국제투자성도평가기준(GIPS®)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선진국에서는 연기금 및 민간 자산운용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28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07 1 MSIM(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CSAM(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5) , 7 (World Bank) 11

[그림 2-7-4] 전략적 제휴의 세 축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가 가 가
 ,
 .
 2003 16
 , 17
 , 가
 .
 2007.7 ,
 .
 , ,
 가 가

가 , (가)
 (, , 가 ,)
 .
 가가 , .

V 국민연금 재정계산 : 2008

, 가 ,
 .
 , 1998 5
 가 .
 가
 ()
 4 2
 2003
 (07.7) .
 2 「 「 가
 」 「 가
 2008 3 가
 , 가 2008 8
 , 가 *
 (9), (10)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에는 각 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연금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제 3 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Social Safety Net)

가 가 10 가 40 가 , 가

가 . 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전 국민 연금제도의 정착

1,827 가 가 197 6 , 가 708 6 197 , 182 .

*집필자 : 국민연금정책과장 고득영

가 2007 12 가 906 3
 47.9% 435 . .
 가 가 107 7
 가 , 5 934
 가 .
 - 가 ^ -
 , 2003 2 . . . 4
 . 가 .
 ,가 .
 . 가 5 .
 , 가 가 2003 7
 가 .

1.

(,) 23
 .
 가 ,
 .
 2003 12 ,
 (, 3)
 4 ,
 2005 10 3 (, ,)

4 () , 2008 3
 , ,)
 가 .

2.5 가

5 4.5%(4.5%) ,
 5 가
 (03.7 7%, 04.7 8%, 05.7 9%) 가 .

, IMF . 가
 가

「 」 2002 5 가
 가

2003

6

5 가 가
 , 1 (03.7.1) . 45 23
 (가 19 , 4) , 2 (04.7.1) 가
 22 , 3 (06.1.1) 174 27
 58 , 103 ' 06.6

3. 4

4 (. . .)
 4 ()
 4
 4
 , 4 .
 , 2001 3 4
 , 2001 5
 (ISP)
 .
 12 ^4
 4 (27 -) , 4
 .
 (8 , 7) 가
 2003 5 2007 12 56,350 ,
 가 33,248 , 23,102 100
 .
 2002 7 4
 (www.4insure.or.kr) 2007 12 658 가 ,
 25 .
 , (10 64) .
 4 ,
 가 , 4 .

가 . 3
 , . 가 .
 . 95 4
 가 06
 “ ” 3
 17 가 .
 , “ ” “ ”
 . 2010
 , , . 4
 .

II 연금급여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가 .
 가 .
 . 가 .
 , 1998 12 2003 5
 가 , , 가 , 가
 , . 3 , 5
 .
 가 2001 가,
 , 2002 3
 .

가
2
1

2003 10
16
17 (2004. 6.2)

2006 6 가 가
12.9% 50%
11 06.12
가 , 07.3
가 , 3.29 , 3.30
가

07.4.2
(:123,
:124, :23) (:131, :136, :3)

(, , ,)
)

3 5 9% ,
60% 08 50% 28 40%
(4.25) 4
가 6 07.6.29
4
7.3 07.7.23

제 8 장

보건의료정책

제 1 절

보건의료정책

제2부 부문별 보건의료정책

I 개 요*

1.

가. 들어가는 말

가, ,

1977 12 1989

,	.	.	.
(, ,)	1975 178	2007 2,240	.
,	1975 22,183	2007 12 103,556	가 .

*집필자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강림

1970 1 45 1965 52.4 2005 78.5
 2002 5.3 (OECD HEALTH DATA).
 가 GDP 2005 (15.3%), (10.7%)
 6%
 가 .

21

가가

, WTO/DDA

가 .

나. 보건 의료 정책의 주요 성과

2002 3 2003 10 가
 2004 500 78 ,
 2005 260~500 79 , 2006 260 112
 가 .

2006 2007 4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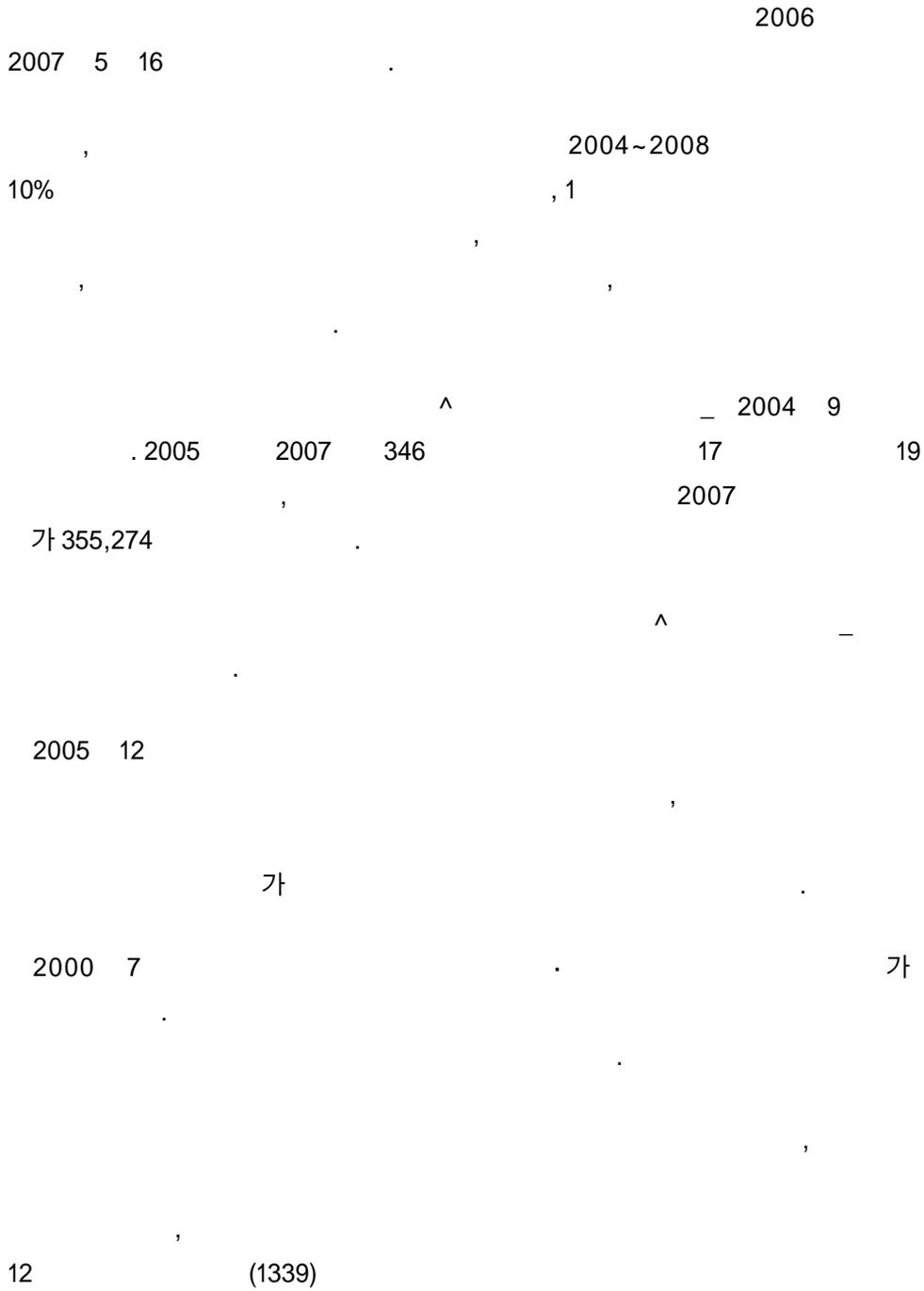
가 .

21

300

(2003.9.15) ,

1975



〈표 2-8-1〉 응급의료기관 현황

(2007년 12월)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총 계
1	16	4	100	331	451

다.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

가

〈표 2-8-2〉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2007년 12월)

구 분	계		공 공		민 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기 관 수	56,399	100	3,646	6.5	52,753	93.5
병 상 수	450,592	100	49,585	11.0	401,007	89.0

가

가

(, , ,)

가

가 가

가가 가 . , 가

가 가 76%

, . 87.6%가, 83.8%가

, ,
가

3.

가

가

가
가

3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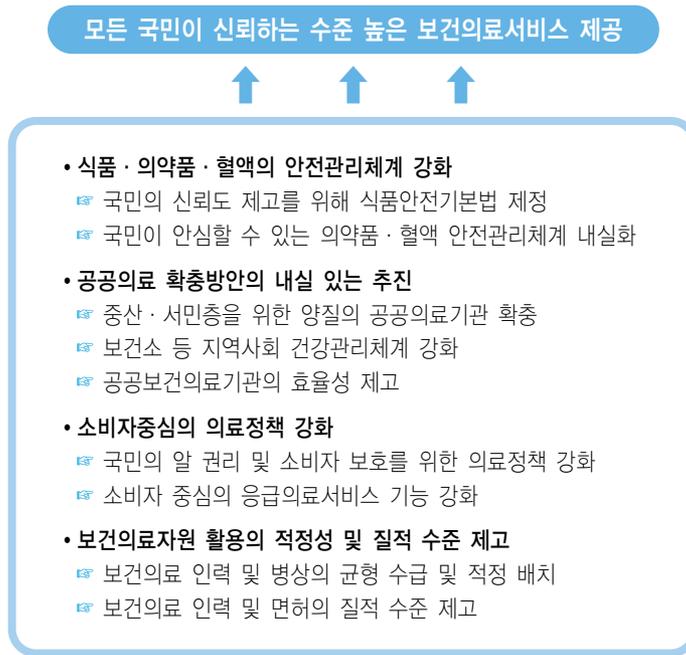
24

. 2010

60

(CRM)

가



II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1.

가,

*집필자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강립

가
가
82.4%, 88.3%가
가
가

〈표 2-8-3〉 GDP 대비 국민의료비(2004) (단위 : %)

한 국	미 국	독 일	일 본
5.6	15.3	10.6	8.0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6

3
가
21
가 , 21
2.
2
, 3

III 의료의 질 관리*

1. 가

가. 목적과 기대효과

가 가 , 가

*집필자 : 의료제도과장 전병왕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

나. 도입 경과

가
 1994 1995
 가 가 684
 가 (1994.11.16) , 12 7 가
 (13) .

다. 시험평가 및 준비평가

1995 가 2004 가 가
 가 가 , 가
 .
 가 가 , 1
 1995 3 (39) , 1996 400 (56) , 1997
 300 (40) , 1998 300 (30) , 1999
 가(16) , (29) . 2000
 가 , 5 가 가
 , 2001 (33) 가 .

라. 법적 근거 마련

1999 12 52 1995 가 가 가
 2002 , (2002.3.30, 6686) 가

가 가 1 2003.3.31

58 (가) 1 가 가 , 2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마. 2004년 의료기관 평가

2004 가 가 , 가 가
 (300) 가 가
 42 500 36 가

가 가 , 가 , 가 , 가
 가 가

(), (), 가, () 10~15
 가 가 가

가 가

가 가

8 11 , , ,
 (performance), 가 ,
 가 가 가
 가 '90' , 가
 가 '50'

' (90)'; ' (70 ~90)'; ' (50 ~70)'; ' (50)'

바. 2005년 의료기관 평가

2005 . 가 260~500 가 79 가
 , 300~400
 400 가 , 가 가
 . 2005 10 11 , 2006 4 가
 18 가 .
 가 가 가 ,
 가 2004 가 가 , 2005
 2004 가 .

사. 2006년 의료기관 평가

2006 260 112 300 6
 가 . 2006 가
 가 가 , 가
 가 가
 .
 , 가 가 가
 .
 2006 9 10 , 가
 가 가 .
 2006 가 , 가 가
 . 2006 가 260 가
 .

아. 2007년 의료기관 평가

2 가(07~09)가 2007 2004 가
 43 500 43 가 .2007
 가 1 가
 2 가 ,
 , , 4 ,14 .
 1 가 , 가 가
 , , .
 2007 10 11 , 가
 2008 5 가 .2007 가
 1 가 ,
 4 , 가 가
 .
 2007 가 15 가 1
 , 가 가 ,
 가 가 ,
 , .

자. 향후 추진계획

가
 가 ,
 , 가가 가가
 ,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
 , 가

2.

가. 추진 배경

1980 , 가 가
 . 가 가

가 가 , . 가

나. 병원감염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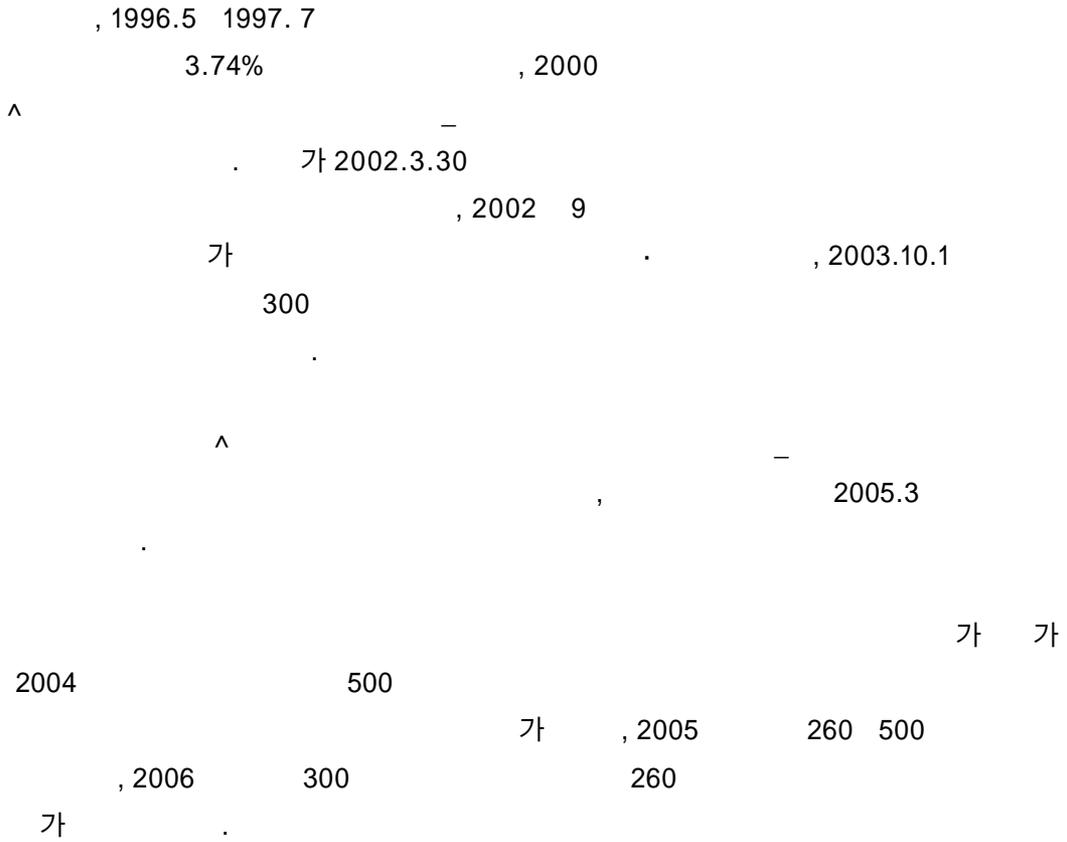
1992 [] 80 . , 2002.3.30
가

2003.10.1 300

다. 추진 경과

(2000.7.7) , 1995
가 가

가 .



라. 향후 추진방향

2003 10 300

IV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1.

가. 도입의 필요성

1989 69 2004 802 12 가 .

가

가

3 . 4.6 1 2.3 , 2 3.9 , 가 .

5~6 .

가 , .

*집필자 : 의료자원과장 배경택, 의료제도과장 전병왕

나. 추진 내용

(1) 추진 경위

1989년 12월, 제1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0년 4월,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1년 2월,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3년 1월,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4년 11월,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5년 3월,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5년 11월 12일,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6년 10월,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7년 11월 12일,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999년 11월 2일,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하였다.

15

2002 「
 , 43
 「 ()」 2002 10 30 , 2003 2 21
 가 2004 16
 2005 12 12 「 ()」 , 2006
 5 9 「 ()」 3
 17
 2002
 , 가 , 가

(2) 관계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

2002
 가
 2002 ()

가 . 가

가

가

()가

가

다. 향후 추진계획

가

가

가

가

가

2.

가. 추진 배경

1973

221

가

1951 「

, 1962 「

1973 27 , 34 가
가 , 가
.
.
30 ,
 , 34 가
가
.
 ,
 .

나. 개정 추진 경과

가 20
 . 2007 8
 15 「 」 5
 07. 5.16 .
 ,
 ,

다. 개정 방향

3가 . ,

가

가

가

라.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가

2

가

2

가

가

가

〈표 2-8-4〉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좋아하는 점

	현 행	개 정 안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양방, 한방진료를 받기위해 각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환자가 몸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함	노인환자, 중증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음
선택권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원칙 명시
	비급여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없어 비용을 고려한 의료기관 선택이 어려움	성형수술, 치아보철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음
환자의 안전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있고 감염관리인력기준은 아예 없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관리기준이 강화됨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원칙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진료정보 보호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일부 가능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환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제한함
	진료정보 누설 금지의무가 의료인에게만 적용됨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

〈표 2-8-5〉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좋아하는 점

	변경 전	변경 후
경쟁력 및 자율성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 불인정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 허용
	부실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없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의료법인이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부 회계감사 실시
	환자의 유인·알선이 원천적으로 금지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며 100~300 병상 종합병원의 수준이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음	의료기관의 중별구분 개선 -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 -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 특화병원 지정
	의료인은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 가능
	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며, 신체 부위이나 치료방법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복수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개설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면허 행위만 할 수 있음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사는 병원에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 가능
편의·권익	의무기록 기재사항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누락 시 처벌 대상	의무기록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임의적 기재 사항 누락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
	의료인에 대한 폭력, 난동의 경우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음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므로 물리적 보관장소 확보 문제 발생	폐업 시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관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양도 시 의무기록 인계 가능
	면허시험에 합격했어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의료행위금지	의료인 면허시험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이전에도 의료행위 가능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

마. 향후 계획

가

가

가

가

3.

가. 현황

가

()

가 가

(10

)

5 3 “ 가 가

” 가 가

나. 도입 배경

(867 , 1991.3.29)

, 46 (, 37 2)

(2000.9.5. 174)

다. 추진 실적

1998 1

1999.9.16 , 1999.11.12

라. 시행상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4. 가

가. 목적과 기대효과

2006 4 28

가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나. 추진경과

54 가 7 가

가 2007 6 11 가 3

가

3

20

가

248

5

가 가

가

가

10

가

55

가

가

2007 6 15

가

다. 평가절차

가

가

가

가

가

가

90

가

가

가

가

10

180

가
가
60
가
가
1

라. 신청 및 평가현황

2007 5 8 가 , 2007 12 55
(6.9). 55 28 (50.9%)
26 (47.3%) (38 ,
69.1%), 50%

〈표 2-8-6〉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현황 (단위 : 건수, %)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5 (100.0)	10 (18.2)	16 (29.1)	9 (16.4)	5 (9.1)	4 (7.3)	6 (10.9)	2 (3.6)	3 (5.5)

2007 8 5 가 가 55 52
가
가가 22 (42.3%)
(12)
(10)
8
가 가 17
2007 8 30

마. 향후 추진계획

가 . 2008 7 26
가

가 . 가가 2008 3 ,
53 3 가 ,
가 .
가 . 가 가 ,
가가 .
가 .
가 .



의료자원정책*

I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1.

가. 보건의료 인력관리 실태 및 현황

, , , 2
 , 3 3 2
 , 2
 (, , , ,)
 , 2 가 , 80
 가 .
 가가 가

*집필자 : 의료자원과장 배경택

〈표 2-8-7〉 보건의료관계 인력의 양성기관 및 2008년 입학정원

대 학	학 교 수 (개)	정 원 (명)
의 과 대 학	41	3,058
치 과 대 학	11	750
한 의 과 대 학	12	750
약 학 대 학	20	1,323
간 호 대 학	72	4,076
간 호 전 문 대 학	59	7,610

※ 통폐합으로 전문대 ↓ · 대학 ↑

〈표 2-8-8〉 연도별 의료관계 인력 면허등록 상황

구분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의 료 기 사	의 무 기록사	안경사	응급 1급	응급 2급
1985	29,596	3,789	5,436	29,866	6,247	59,104	106,340	21,681	396	-	-	-
1990	42,554	5,792	9,619	37,118	7,643	89,032	143,760	44,841	2,123	10,260	-	-
1991	45,496	6,120	10,137	38,396	7,862	95,335	143,760	49,482	2,486	11,627	-	-
1992	48,390	6,839	11,285	39,564	8,012	101,140	152,966	53,980	3,061	12,018	-	-
1993	51,518	7,569	12,180	40,779	8,150	107,883	162,047	56,680	3,564	12,682	-	-
1994	54,406	8,179	12,939	42,037	8,262	114,320	177,252	61,448	4,270	13,819	-	-
1995	57,188	8,714	13,681	43,269	8,352	120,415	188,714	65,961	4,681	14,671	-	146
1996	59,379	9,299	14,371	44,577	8,447	127,145	195,289	69,751	5,349	15,946	346	507
1997	62,609	9,289	15,383	45,820	8,516	133,920	207,484	75,512	6,142	16,995	934	1,024
1998	65,431	9,914	16,126	46,998	8,590	141,094	218,718	81,539	6,811	18,220	1,504	1,482
1999	68,204	10,706	16,878	47,425	8,662	151,326	231,280	87,829	7,399	19,305	2,279	2,013
2000	71,045	11,481	17,748	49,538	8,733	160,301	242,262	94,432	7,645	20,168	3,032	2,429
2001	73,826	12,084	18,580	50,773	8,807	170,852	254,622	101,858	8,151	21,308	3,738	2,976
2002	78,162	13,549	19,600	53,124	8,881	181,786	272,101	109,049	8,818	22,564	4,329	3,514
2003	78,559	13,564	19,788	52,399	8,714	191,254	304,024	116,172	9,277	23,615	4,890	4,003
2004	81,914	14,348	20,727	53,537	8,628	202,012	321,152	124,638	10,140	24,652	4,999	4,410
2005	85,284	15,200	21,566	54,845	8,657	213,647	340,375	134,373	10,825	26,001	5,528	4,935
2006	88,776	16,016	22,367	56,234	8,685	224,142	362,020	144,052	11,429	27,417	6,043	5,372
2007	91,393	16,661	23,114	57,285	8,587	235,682	382,722	154,172	12,448	28,712	6,589	5,815

※ 주 : '03년도 면허등록자수는 면허관리시스템 개발로 그동안 미 신고된 사망자를 확인하여 제외한 숫자이며, 간호조무사는 자격등록자수임.

10 가
, 가
가

〈표 2-8-9〉 보건 의료 인력 국제 비교

(단위 : 명)

연 도 별	지 표	의료인당 인구				병상당 인 구
		의 사	치과 의사	약 사	간호사	
우 ¹⁾ 리 나 라	1990	887	4,457	1,155	482	320
	1995	681	3,278	1,036	372	246
	1998	618	2,880	988	329	198
	1999	594	2,776	976	313	181
	2000	572	2,666	954	295	164
	2001	655	2,787	1,515	492	166
	2002	644	2,730	1,510	471	149
	2003	608	2,666	1,482	465	146
	2004	639	2,823	1,609	537	137
	2005	613	2,701	1,568	525	127
	2006	588	2,596	1,534	502	118
2007	574	2,538	1,550	480	108	
주 ²⁾ 요 선 진 국	일 본('05)	493	1,378	777	112	71
	미 국('05)	413	1,731('03)	1,310	130	313
	캐나다('05)	464	1,727	1,269	100	294
	스웨덴('05)	296	1,221	1,376	95	281('00)
	독 일('05)	293	1,265	1,716	103	118
	프랑스('05)	296	1,482	866	130	134
	영 국('05)	416	2,116	1,545	110	256

※ 주 : 1) 우리나라는 2000년도까지는 면허등록 의료인수, 2001년도부터는 활동 의료인 수(한의사포함)

2) 주요선진국은 활동 의료인 수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6, 1st edition

나. 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1) 의 사

1970 가
1970 가

1977 4 5
 .
 1977 14 1,380 , 1978
 가 1999
 41 3,300 가 ()
 .
 2007 91,393 , 10 ()
 174 160~250 가 ,
 3,000 가 가 가
 2010 10 가 216
 .
 1997 12 “ ”
 .
 가

〈표 2-8-10〉 취업형태별 의사 수 (2007.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보건기관
취업자수	70,355	28,568	8,236	31,578	1,973
구성비(%)	100	40.6	11.7	44.9	2.8

(2) 전문의

가 77

가 () 1 (가)
 4 (가 , , 3)
 가
 . 2007 26 64,079
 70.1% .
 , 1996
 가 , 가 26
 가 .
 가 .
 . 2002
 ,
 가 , ,

〈표 2-8-11〉 연도별 전문의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의 사 수	59,379	62,609	65,431	68,204	71,045	73,826	78,162	78,559	81,914	85,284	88,776	91,393
전문의수	34,726	37,620	40,669	43,779	46,904	50,075	52,700	54,870	57,506	59,385	62,188	64,079
비 율(%)	58.5	60.0	62.2	64.2	66.0	67.8	67.4	69.8	70.2	69.6	70.0	70.1

(3) 치과 의사

2007 23,114 , 1 2,096 .
 (10 50 60 ,
 39) 2010 10 가

51

가
가 가

(4) 한의사

2007 16,661 1979 2,913
5 가 1979 3 2007
11 1 750 가
2007

가
가 가
가 가
가 가

(5) 간호 관계 인력

가 , 가 가
가 가 1
가 가 , 2007
8,587
1 480 , 2007 235,682

(2007. 12) 57%가 가 , 100,919
 ,
 , , 13
 ,
 2007 382,722
 “ (83-3)”
 5 50% , 5
 100%
 38 3
 가 .

(6) 의료기사 등

·
 , , ,
 , , , 가 .
 1988 가 2007 28,712
 ,

다. 향후 의료인력 정책방향

, 가

가 1989. 7. 1 가 가
 . 가
 가 .

II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 면허제도 적정관리

1. 가 .

1952 , , 300
 가 . 1955 , 1962
 1998 7 20
 , 2007 5 8 가 .

〈표 2-8-1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근거법령 및 시험 종목

근 거 법 령	시 험 종 목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식품위생법(영양사에관한규칙)	영양사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생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응급구조사 1급 및 2급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지 · 보조기기사

〈표 2-8-13〉 보건 의료 인 국가 시험 시행 현황 (2007년 말 ~ 2008년 초)

(단위 : 회, 명, %)

종 목 별	시험횟수	최근 시험 시행 결과			
		접수자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계	-	63,027	57,955	41,706	72.0
의사	72	4,059	4,028	3,887	96.5
치과 의사	50	907	895	854	95.4
한 의 의사	63	977	968	868	89.7
조산사	19	27	26	24	92.3
간호사	48	12,726	12,542	11,333	90.4
약사	59	1,614	1,570	1,359	86.6
한약사	9	177	170	145	85.3
한약조제자격	12	-	-	-	-
임상병리사	35	2,532	2,395	1,225	51.1
방사선사	35	2,497	2,346	1,826	77.8
물리치료사	35	2,989	2,933	2,519	85.9
작업치료사	35	995	955	650	68.1
치과기공사	35	1,798	1,731	1,490	86.1
치과위생사	35	3,777	3,733	3,216	86.2
의무기록사	24	2,107	1,875	1,247	66.5
안경사	20	2,737	2,508	1,620	64.6
영양사	31	9,983	8,340	4,416	52.9
위생사	29	11,404	9,270	3,653	39.4
응급구조사 1급	13	818	806	728	90.3
응급구조사 2급	13	773	747	606	81.1
의지보조기사	8	130	117	40	34.2

가 가

가가

가

가가 , 가

가 . 가

, 가

2. 가

1952 가 가 가 1963
 가 1994 가 가 , ,
 , , 19 가 가 .
 1998. 5. 4 가 가
 가 .
 가 32 ,
 4 2 49 . 08 9.63
 41 () , 20
 가 .

3.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1 가 2~3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OECD

가 . , 가 2009
 ,
 가 .
 가
 . 2003 가 가
 가

III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1.

2007 12 2,240 ,
 352,540 . 2,079 (92.8%) 303,428
 (86.1%)
 (82.4%, 83.8%)

〈표 2-8-14〉 부문별 의료기관 현황(2007) (단위: 개, %)

구 분	공 공	민 간	계
의 료 기 관 수	161(7.2)	2,079(92.8)	2,240(100.0)
병 상 수	49,112(13.9)	303,428(86.1)	352,540(100.0)

※ 주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특수병원 포함)

2.

1986 (OECF 174 , KFW 25) 67 1978 1985
 1988 26

1991 1993 1,000
 50% 1991 6,000 , 1992 7,000 , 1993
 7,000 3 20,000 , 1994 2007
 () 5,540 , () 1,838

1997
 . 2004
 가 ^

- 가 . , .

3.

가 ,
 , 1990

1994 IBRD 6,000 , 2,000 ,
 2,000 .

, 1997 IMF ,

2005. 12. 7^
 37 264 , 247 -
 . 07.12.31

IV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지원

1.

. 2006
 5 2, 3, 4, 5 , , ,
 () 가 .
 가 .
 1989 ,
 15 가 OECD 가
 (,)

가 88 . 1988
 1989 가 1989
 가 1991 4 ()
 가 129
 1991 1992
 가 , , 가
 가 1994
 가 , ,
 가 , ,
 가 , ,
 1995 , 1996
 . 119 129
 1998 7 . 119가,
 (1339)가 2005
 2 T/F ,
 가 .
 가 , ,
 가 , ,
 가 가 가

가

2000

3

가

가

가

가, . 2000

가

2000

가

가

2002 3

20%

가가

4~6
500

2003
가 50

434

, 2004
500

5

〈표 2-8-15〉 응급의료기관 구성체계

(2007.12.31 기준)

종 별	수	지 정 권 자	주 요 역 할
중앙응급의료센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응급의료체계 관리총괄
권역응급의료센터	1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와의 협의)	권역내 최종 응급진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와의 협의)	전문응급진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100	시·도 지사	중증응급환자 진료
지역응급의료기관	331	시장·군수·구청장	경증 응급환자 및 야간·휴일의 일 반환자 진료

2.

가 39.6% 20%

가 , , , 3

가.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

가 1995

2007 538

3D

가

451 (2007)

가

2007 9 11 가 ,

(,) ,

87.5%, 72.9%, 86.5%,

74.1% 가 . 5% 가 가

가 가

1 2007 1

119 1,301 1 1,333

5,347

가 가

〈표 2-8-16〉 응급의료 인력 현황 (2007.12.31)

구 분	현 원	비 고
응급의학전문의	538명	1996년부터 전문과목 신설됨
응 급 구 조 사	12,482명 (1급 : 6,617명)	1995년부터 자격증 신설됨

나. 진료권별 응급의료기관의 불균형 배치 및 질적 수준의 미흡

가 24 가 , , 가

2007 12 451 가
 2003 가 가
 가 . .
 2007 12 100 , 16 44
 1 가 100~150

〈표 2-8-17〉 응급의료기관 현황 (2007.12.31)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총 계
1	16	4	100	331	451

가 , , .

다.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비효율성

1996 가 119 ,
 6.4 .
 10.4 2 가

라.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기능 미약

SAMU
 , 가 가
 가가 .
 가 .
 2000 8
 12 .
 가 .
 2007
 (NEDIS) DB
 2006 2007 3 9 2007 12 3
 99 .

마. 응급의료 관련 통계·자료 수집체계의 미흡

가 가 ,
 가 .
 1996 ~1997 가
 1999 2004 2 .

가 .
 , 가 가 .
 2004 (NEDIS)
 2007 , 7
 (, ,) DB

3. 2003 ~2007

2003 2004
 가 가
 1998 50.8% 2004 39.6% 2007
 2010 2005
 . 2003 ,

가. 제도개선

2002 3 가
 20
 , 2007
 ,
 가 .

나. 응급의료 재정 확충

2003 50 500
, 2004
162 3 2006

〈표 2-8-18〉 응급의료기금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응급의료기금	48	475	560	583	632	613

다.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 구축

1997 ~1998 2003 -2004 가
가 10.8%, 가 4.8%가

1997 ~1998 2 가 3
, 3 2 가 가

2004 가 (39.6%)
가 25.7% 14%
2007 가

〈표 2-8-19〉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 문제요인 분석결과(2004)

문 제 요 인	예방 가능한 사망률	병원 도착 전 요인	병원 단계내 진료 요인
%	39.6	14	25.7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03년 1월 1일 기준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2004년 1월 1일 기준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이는 2003년 1월 1일 기준에 비해 1.5% 증가한 24만 1천 명에 달한다.

2003년 1월 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기준, 2005년 1월 1일 기준, 2006년 1월 1일 기준, 2007년 1월 1일 기준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각각 24만 1천 명, 24만 2천 명, 24만 3천 명, 24만 4천 명, 24만 5천 명에 달한다.

2003년 1월 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기준, 2005년 1월 1일 기준, 2006년 1월 1일 기준, 2007년 1월 1일 기준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각각 93.8%, 95.3%, 91.1%, 95.2%, 84.3%, 86.3%에 달한다.

2003년 1월 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기준, 2005년 1월 1일 기준, 2006년 1월 1일 기준, 2007년 1월 1일 기준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각각 (16), (99), (309)에 달한다.

2003년 1월 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기준, 2005년 1월 1일 기준, 2006년 1월 1일 기준, 2007년 1월 1일 기준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각각 159, 110, 205, 146, 126에 달한다.

, 2006 24
 3D
 (50)
 2003
 2004 3 가 가
 가
 (.)
 119 , 186

〈표 2-8-20〉 119구급대 구급장비 확충 현황(2007)

이 송 수 단		구 급 장 비			
응급헬기 등 의료장비	구 급 차	자동심실제세동기	휴대용 산소소생기	제세동 패치	구급차 소독기
7	184	154	180	872	194

2004 가 39.6%
 20%
 2005 7 가 39.6% 20% “2006 ~2010
 ”

2003 12 2004 7
 (,) 가 가 119
 ,
 . 가
 .
 , 가
 가
 2003 6 2004 6
 14 . 2004 9 2005 2
 16
 . 2005 45
 2006 가

라. 재해대응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2002 , ,
 . 2003 ,
 .
 2004 .
 .
 2007

4.

2003 , 2004

2005 (05 ~ 10) , ,

(hardware)

가

“ 2010 가

”

20%

제3절

공공보건의료정책

I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

가 .
1 , 2 , 3
가
3
가
가 가
가
05 09 5 ^
(05.12)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공공의료과장 설정곤

2.

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예상

OECD 가 GDP 6.0%(2005) OECD 가
 , 1 가 (95 05) 7.6% .

〈표 2-8-21〉 주요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현황 (2005년 기준, 단위 : %, \$)

	호 주	프랑스	일 본	스웨덴	영 국	미 국	한 국
국민의료비/GDP	9.5	11.1	8.0	9.1	8.3	15.3	6.0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95-'05)	4.7	2.3	2.6	3.8	4.2	3.6	7.6
1인당 국민의료비(USD)	3,519	3,374	2,358	2,918	2,724	6,401	1,318
(공공/국민)의료비	76.0	79.8	82.0	84.6	87.1	45.1	53.0

※ 공공의료비에는 정부지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포함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7

가 () , . 가()
 가가 .

〈표 2-8-22〉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추계(중립적 시나리오 가정시)

연 도	2001	2010	2020	2030
국민의료비	33조원	74조원	171조원	373조원
GDP대비(%)	6.1%	8.1%	11.4%	16.8%

※ 출처 : 김창엽,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2004

, 1 53.0%(2005) (45.1%)
 , 1,318\$ OECD 가 .

2001 50% , 2006
가 가 .

〈표 2-8-23〉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 추이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공공부문 지출액(조원)	3.0	5.9	12.9	25.7	30.0p
비중(%)	39.5	38.1	48.5	53.1	55.1p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6 국민의료비 잠정 결과 보고

나. 급성기병상 등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1 , 05) 6.5 OECD 가(3.9)
 , OECD 가
가 .

〈표 2-8-24〉 주요 OECD 국가의 급성기병상 현황

(2005년 기준, 단위 : 개, 인구 1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호 주	프랑스	독 일	일 본	스웨덴	영 국	미 국	한 국
2005	3.6	3.7	6.4	8.2	2.2	3.1	2.7	6.5
2000	3.8	4.1	6.8	9.6	2.4	3.8	2.9	5.2

※ OECD 평균은 2005년 3.9개, 2000년 4.30개임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7

다. 국가의 역할·책임 확대 요구 증가

,
가 . 가 .
 , 가 . 가
가 .

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흡

가

〈표 2-8-25〉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2007.12.31 기준)

보건의료기관 분류		기 관 수		병 상 수	
국·공립 일반병원	국·공립 종합 병원	4	2.2%	2,040	3.9%
	국립 대학 병원	14	7.7%	9,786	18.5%
	지방 의료원	35	19.2%	7,959	15.1%
	적십자 병원	6	3.3%	1,239	2.3%
	보훈 병원	5	2.7%	2,502	4.7%
	산재 병원	9	4.9%	3,793	7.2%
	경찰 병원	1	0.5%	500	0.9%
	군 병원	20	11.0%	6,198	11.7%
국·공립 특수병원	암 전문 병원	2	1.1%	994	1.9%
	아동 병원	1	0.5%	295	0.6%
	재활 병원	2	1.1%	260	0.5%
	정신 병원	18	9.9%	8,256	15.6%
	결핵 병원	3	1.6%	1,373	2.6%
	한센(나) 병원	1	0.5%	1,000	1.9%
	노인요양 병원	43	23.6%	6,123	11.6%
	(장애인) 치과 병원	1	0.5%	0	0.0%
보건 의료원	17	9.3%	473	0.9%	
공공 병원 계		182	100.0%	50,751	100.0%
보건기관	보건소	234			
	보건지소	1,288			
	보건진료소	1,913			
보건기관 계		3,435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3.

가

4.

가. 공공의료기관 기능 특화 및 효율화

()

가

가

가

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연도	가	2020	가
2009	254	22,770	(85 7,734)
2010	(65	2.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 (40)

다.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 가

가

가가

라. 필수 보건 의료 안전망 확충

SARS,

가

()

가

II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1.

(top - down)

가

(bottom - up)

*집필자 : 건강정책과장 정중현

2. 가

3 6 3 6 4

가 . 가 1994

(1994 9) .

1995 가 ,

1996 4 ,

. 1996~1997 가 가

. 가 가

1996, 1997 가 가

가 가

, 가 . 1997 1 , 1999 3

, 가 .

가가 . 2001

가 가 가

가 가 , 가가 .

40 2002 3

(2003~2006) 가 . 2003 2006

가 ,

2003 40 , 2004 68 , 2005 69 , 2006 69

가 .

2006	3	,	가	가, 1~4	가,
	가		3		,
	3		가	가	4
					가
2007	4	,	가	4	.
1	가	3	1	가 (40)	가
			가		4
			가		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 ◎ 제1기(1996년)
 - 1997~1998년도 계획 수립 및 일부지역 평가시행
- ◎ 제2기(1998년)
 - 1999~2002년도 계획 수립 및 일부지역 계획서 평가
- ◎ 제3기(2002년)
 - 2003~2006년도 계획수립 및 전국 시도·시군구 계획서 평가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 현지평가 시행 (2003. 10)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03년) 및 시행계획(04년) 평가시행(2004. 5)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 시행 (2004. 9)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04년) 및 시행계획(05년) 평가시행(2005. 3)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 현지평가 시행(2005. 9)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05년) 및 시행계획(06년) 평가시행(2006.5)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4차 현지평가 시행(2006. 9)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06년) 평가시행(2007.3)
 -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종합 평가대회 실시(2007. 8)
- ◎ 제4기(2007년)
 - 2007~2010년도 계획수립 및 전국 시도·시군구 계획서 평가
 -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 현지평가 시행 (2007. 9)

3.

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작성주기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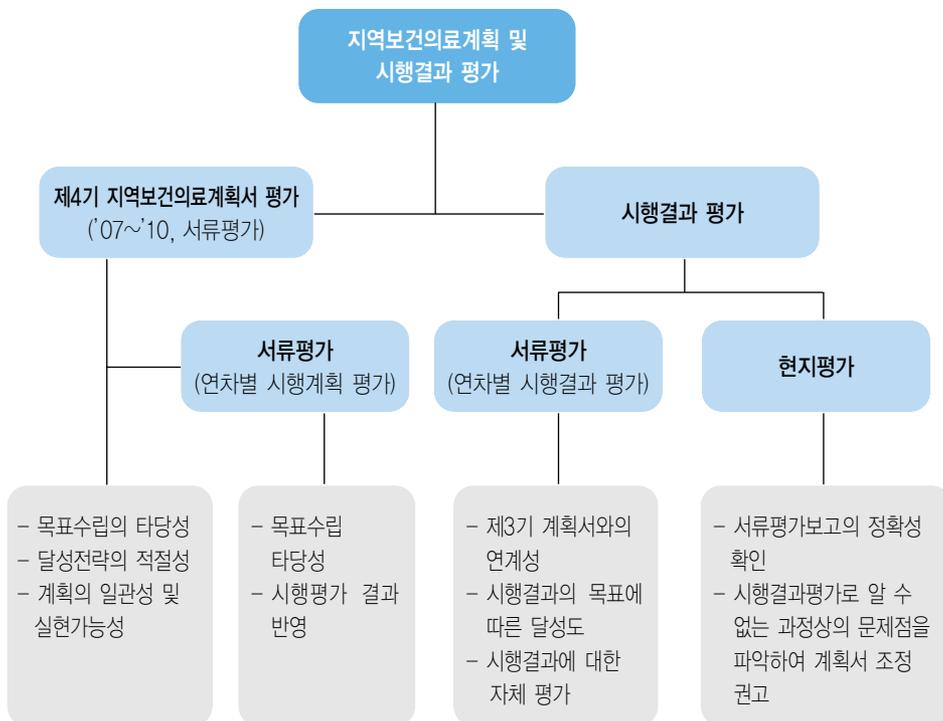
〈표 2-8-26〉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작성주기

작성주체	작성계획	주기	제출시기	제출처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4년	시행전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연차별 시행계획	1년	시행전년 11월	
	연차별 시행결과	1년	시행 후 3월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시행전년 6월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1년	시행전년 6월	
	연차별 시행결과	1년	시행 후 2월	

나.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흐름도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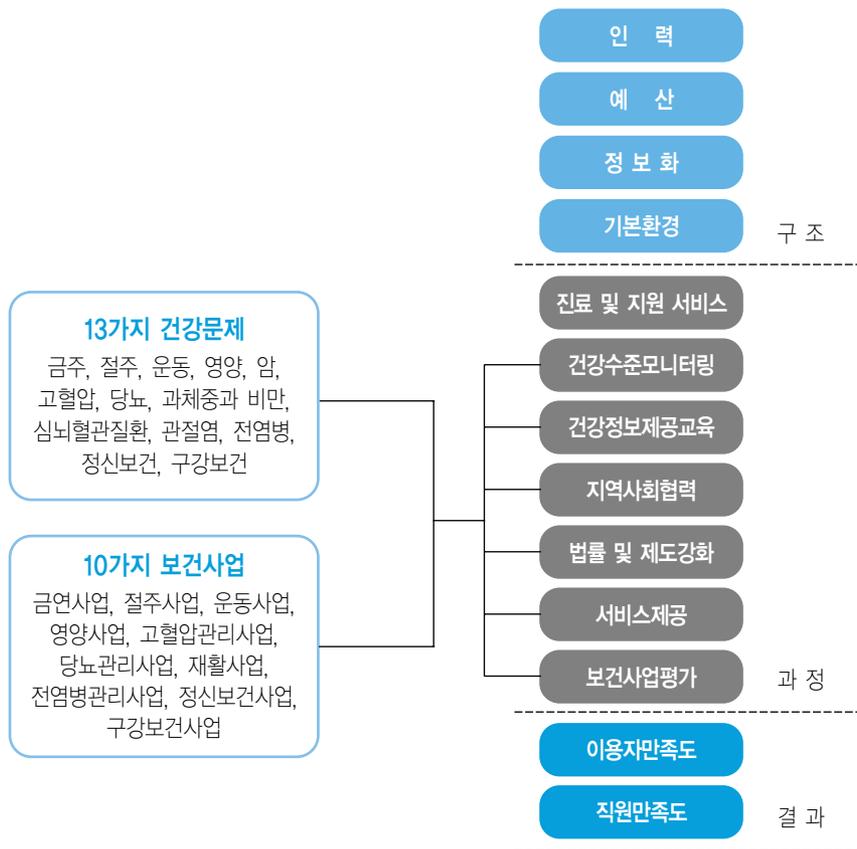
〔그림 2-8-1〕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구조도



가 . 가 가
 .
 2007 4 1 가 가가
 가 , 3
 2006 가 .

[그림 2-8-2] 현지평가기준의 변화

(2007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현지평가 기준)



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쟁촉진

가 . 가 ,

III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1.

〈표 2-8-27〉 보건소 등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근 거	설 치 기 준
보 건 소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군·구별 1개소(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설치)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읍·면별 1개소(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 및 통합지소 설치·운영)
보건진료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이(里)단위의 오·벽지에 설치

2007 12 251 , 1,288 , 1,913
3,452 . .

*집필자 : 건강정책과장 정중현

600

2007
가

2014

가

IV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

2.

가 가 가

^

2010_

*집필자 : 건강정책과장 정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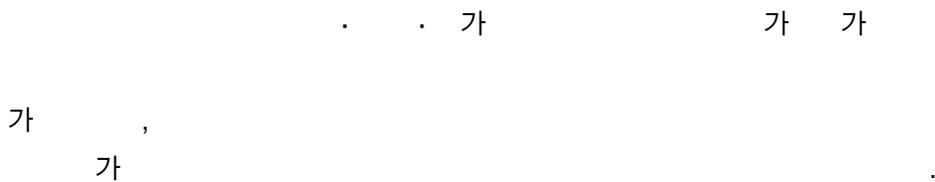
3.

가. 사업 대상

- 전국민이 사업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지역사회 의 요구, 담당인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대상자 범위를 설정
- 다만, 이전 순위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가 안정화된 후 다음 순위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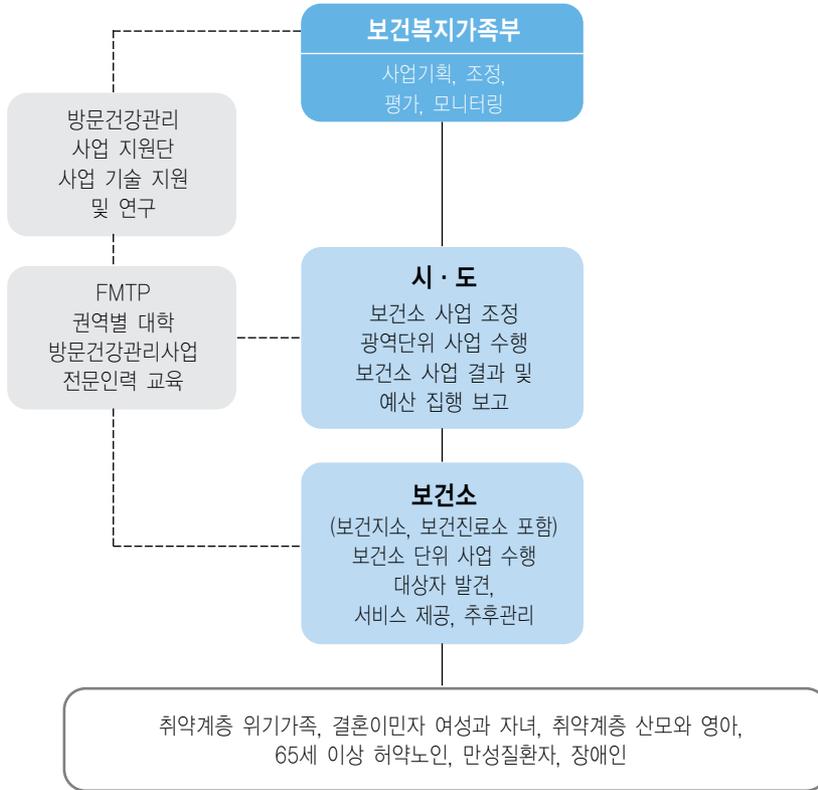
- 1 : 65 ,
- 2 : 1
- 3 : * 65 , , , , ,
가 , . .
- 4 : 가 (,)
- 5 : ***
- 6 : 1~5

나. 사업 수행 체계도



*차상위 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자
 **방문건강관리사업팀으로 의뢰된 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팀의 인력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함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인자(혹은 건강보험부과 하위 20%인 자)

[그림 2-8-3] 사업 수행 체계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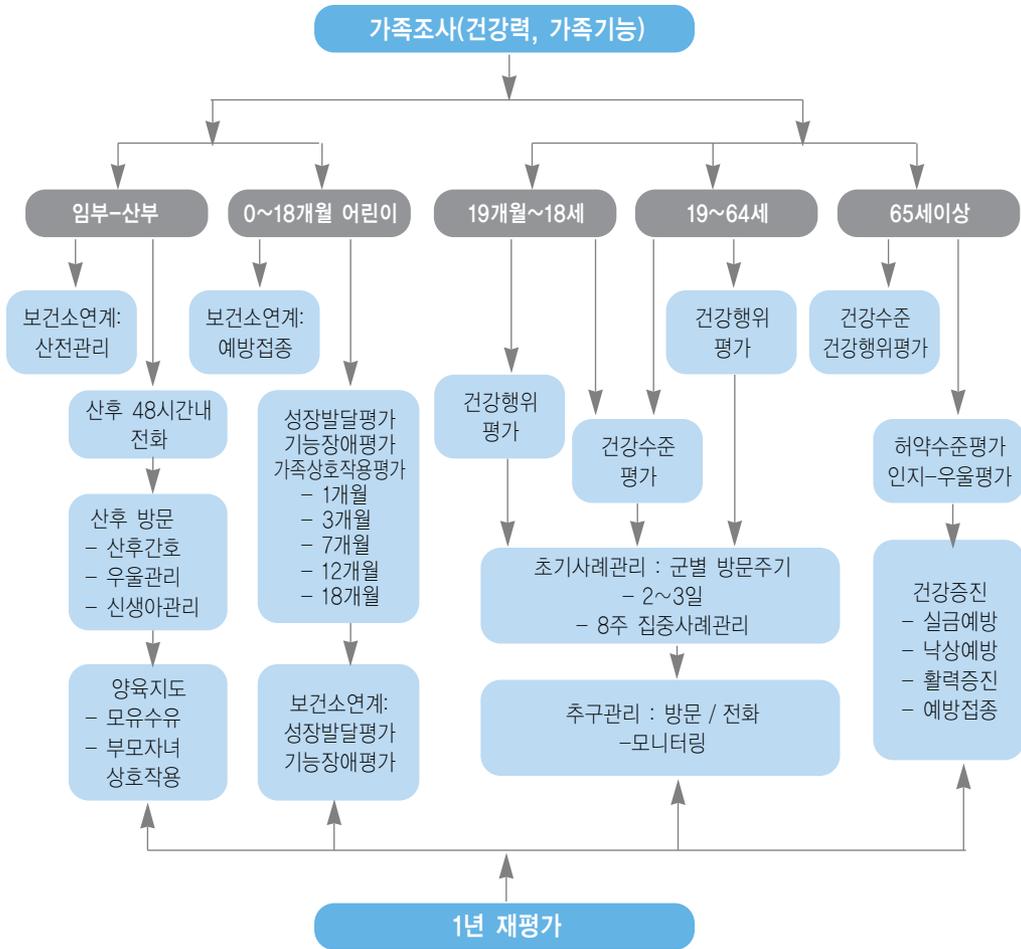
1

(), 가 ()
가

3 1

(),

[그림 2-8-4] 취약계층 가족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5.

가. 관리가구 현황

4,515,312가 , 831,692가 , 20% , 3,683,620가
 15,432(1.8%), 가 877,883가 (19%) ()
 () 581,124(66.2%), 가 () 281,327(32.0%)가

관리가구수	집중관리군(1군)	정기관리군(2군)	자가관리군(3군)
877,883가구	15,432(1.8%)	581,124(66.2%)	281,327(32.0%)
서비스 주기	거동불편(일상생활 능력) - 주1회 ~ 월 1회 이상 방문	만성질환 보유 - 월1회~3개월1회 이상 방문	만성질환 미보유 자 - 년1회 질병 및 건강관리현황

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만성질환 발견 및 관리 현황

1,000 351 가
250 , 135 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뇌혈관 질환자	암환자	요실금	방문건수
358,610명 (37.1%)	249,805명 (25.8%)	135,343명 (14.0%)	52,602명 (5.4%)	27,870명 (2.9%)	22,818명 (2.4%)	2,443,969

* 조사대상자 19세 이상 : 967,628명

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관리 가구

가 가 974,225 19 64
420,177 (43.2%) 65 546,857(56.1%) (단위 : 명)

등록 가구원	19세~64세	65세 이상	영유아	임산부	결혼 이민자	건강상태 판정건수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974,225 (100.0)	420,771 (43.2)	546,857 (56.1)	6,597 (0.7)	5,290	11,064	12,219	12,928

6.

가. 방문건강관리인력 확보 및 질 관리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 FMTP) , , .
08 2,300

2,000 / 07 , 2,300 / 08 , 2,500 / 09 가

나.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운영

(08 100 가 12 210 가) , 가

다. 대상자 DB 및 기록체계 전산화

가

라. 장기요양보험도입에 따른 등외 등급자 관리

08 7 가 ,

V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제도 운영*

1.

가. 개요

1978 12 ^ , 가 3

나.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혁

(1) ^ _ 1980 12

*집필자 : 건강정책과장 정충현

「공중보건법」 제12조, 1991. 12. 「

(2) 2002. 12. 가
가 , 가.
가 , 가.

(3) 2007. 4

가 가

다. 공중보건역사의 의무와 복무관리

(1) 공중보건역사의 의무

가

가

가

7

5

8

(2) 공중보건역사의 복무관리

「공중보건법」 제20조, 「2007」

라. 공중보건직의 배치와 향후 전망

1979 144 가 4 ,
 2005 가
 2007 1,613 100 가 . 2007 12
 4,757 3,419 .
 가 , 가
 가 ,
 (, 2007)'
 , 2007.7 , 가 T/F
 , 「2007 」

〈표 2-8-31〉 공중보건직의 연도별·종별 신규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 계	의 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소 계	일반의	인 턴	전문의		
1996	1,013	780	348	-	432	233	-
1997	1,121	810	356	173	281	311	-
1998	1,057	805	99	220	486	242	10
1999	1,184	853	236	77	540	272	59
2000	1,076	790	219	87	484	265	21
2001	1,340	957	149	95	713	345	38
2002	1,687	1,089	268	71	750	324	274
2003	1,662	943	207	169	567	332	387
2004	1,848	1,159	398	134	627	386	303
2005	1,712	1,008	325	107	576	411	293
2006	1,513	965	305	52	608	296	252
2007	1,613	1,003	367	27	609	292	318

〈표 2-8-32〉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치과 의사	한 의 사
		일반의	인 턴	전문의		
총 계	4,757	983	179	1,766	979	850
보건(지)소	3,419	894	150	677	902	796
복지시설	55	9	2	31	3	10
병원선	17	-	-	7	5	5
보건기관·단체	286	34	14	205	10	23
공공병원	394	1	2	363	20	8
민간병원	477	4	-	467	3	3
기 타	109	41	11	16	36	5

2.

가. 사업 배경

1980 12 ^

나.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1) 설치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설치지역

(가) .

() 가 30 가 500

(300) 5,000 가

(3) 설치 및 운영방법

(가) . .

()

다. 보건진료원 자격, 교육 및 임용

(1) 자 격

가 가 24

(2) 직무교육

(가) :

() : 16 2

() : 24

() : 8 , 12 , 4

() : 가 .

(3) 임 용

(가) : . .

() : . .

라. 농특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업무

14

(1) 보건진료원 의료행위의 범위(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 시행)

(가) ,

()

()

()

()

() 가

()

() 1 7

(2) 의료행위 외의 보건진료원 업무범위

(가)

()

()가

()

()

마. 시·도별 보건진료소 설치

(2006.12.31 현재, 단위 : 개소)

시·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950	1,919	1,904	1,904	1,891	1,899	1,902	1,905	1,911
부 산	6	6	6	6	5	5	5	5	5
대 구	9	9	9	9	9	9	9	9	9
인 천	29	29	26	26	25	25	25	25	25
광 주	16	16	16	11	11	11	11	10	10
대 전	8	8	8	8	8	8	8	8	8
울 산	12	11	11	11	11	11	11	11	11
경 기	175	172	168	168	160	161	161	161	162
강 원	133	134	125	131	131	131	130	130	131
충 북	164	162	162	162	162	162	162	163	163
충 남	231	228	232	233	233	233	235	238	239
전 북	256	252	249	249	242	242	241	240	240
전 남	333	324	327	328	329	331	331	332	331
경 북	322	313	310	310	310	312	312	312	312
경 남	210	209	209	209	209	212	215	215	219
제 주	46	46	46	46	46	46	46	46	46

바. 보건진료소 재정운영 실태 등

(1)

(2) 200,000 (300,000)

제 4 절

혈액 수급 및 안전관리 정책*

I 혈액사업 현황

1.

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1952 가
1954 2 ,
1954 6
1958 1
2
1970
가
1974 “ ”
1971 2,552
가 1974 48,000 가

*집필자 : 공공의료과장 설정곤

나.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1981 4
 가
 (1994. 21 1999 93),
 (1991) (1997)
 가 가(1981
 37 1998 250) 5%
 1987 HIV 가 가 , B 가 1990
 . 1991 C 가
 400mL
 1997 가

다. 2000년대 이후 오늘까지

2002 5
 , 2000
 가
 ,
 2004 가 가 , 2006
 가 ,

, 2004
가 가 , ,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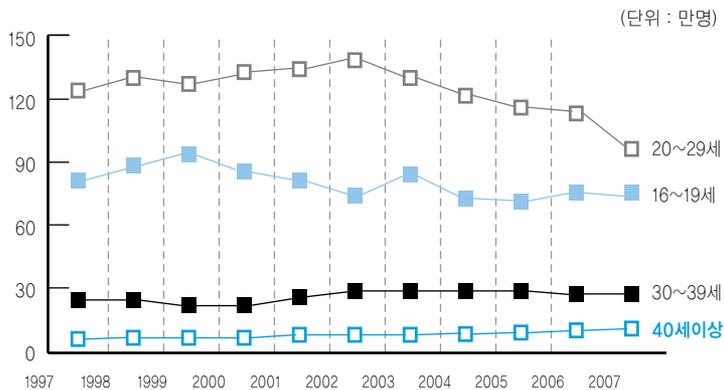
2003 , , 가

〈표 2-8-33〉 연도별 헌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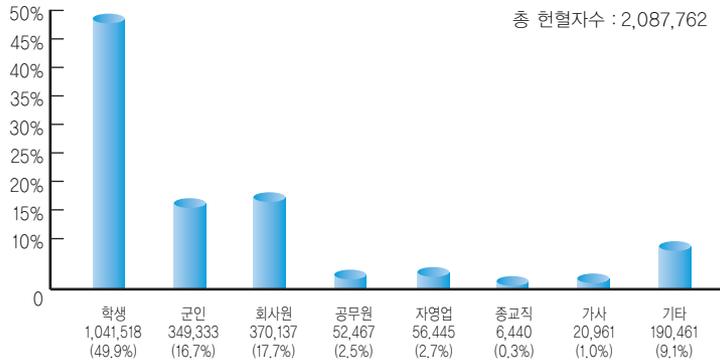
구 분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헌혈자수(만명)	218	253	247	252	254	234	227	230	208
국민헌혈률(%)	4.8	5.5	5.3	5.3	5.3	4.8	4.7	4.7	4.3
개인헌혈자비율(%)	32.5	43.6	46.3	41.1	41.9	44.2	46.8	53.9	56.9
헌혈부적격비율(%)	8.0	12.2	16.0	15.7	16.2	20.1	20.9	22.1	22.5

2007 가 76.2% , 30
93.6% , 66.6%

[그림 2-8-5] 연도별 연령별 헌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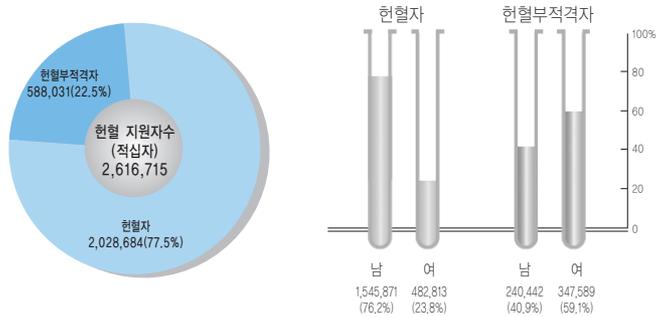


[그림 2-8-6] 2007년 직업별 헌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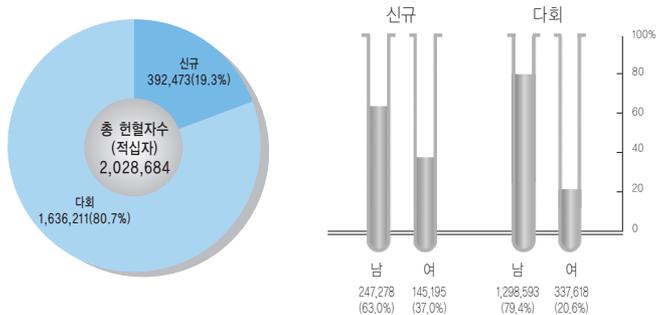


가 가 22.5%가
가 59.1%

[그림 2-8-7] 2007년 헌혈부적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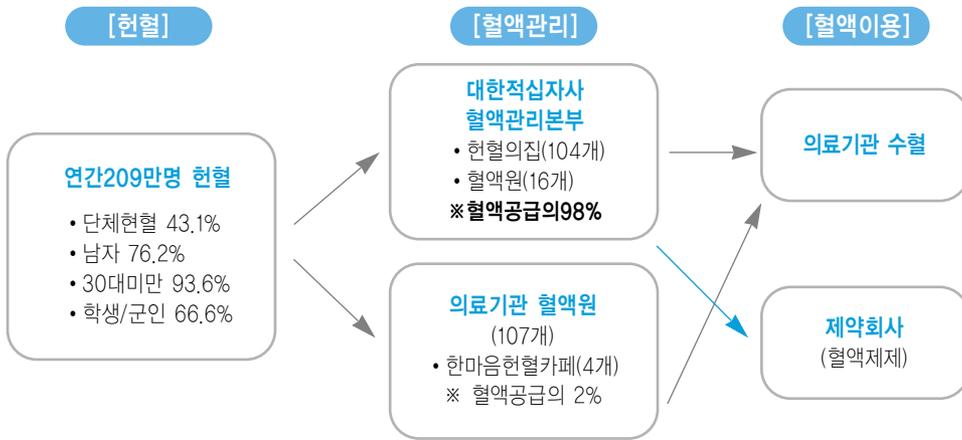


[그림 2-8-8] 2007년 신규 헌혈자 현황



2007 가 , 16 , 가 107 가 98%

[그림 2-8-9] 2007년 혈액사업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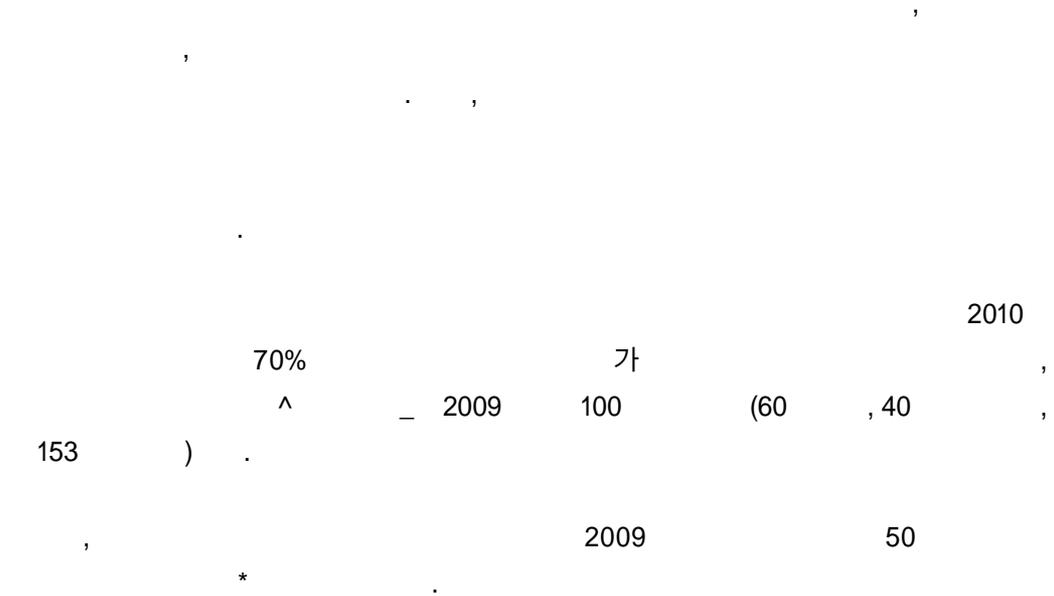
II 혈액관리 정책

2000 가 2004 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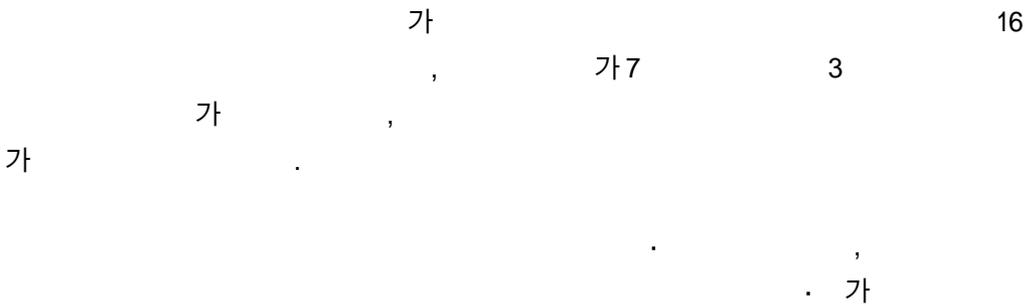
1.

가. 헌혈자 모집 및 채혈단계부터 안전한 혈액 확보

가 , ^ _ 가 가



나. 혈액검사체계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전성 확보



다. 신속하고 안전한 혈액공급과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을 위한 정도관리체계 구축

*헌혈자가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대한적십자사의 등록회원으로서 가입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임

1

가

5

가 가

가

가

가

라.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혁신

마.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 강화

가

가

가

가

가

, 5

3,129

〈표 2-8-34〉 혈액관리체계 개선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312,934	22,982	64,713	70,913	75,413	78,913
인프라 구축 (국고)	합 계	143,756	9,528	32,032	34,732	34,732	32,732
	헌혈의집 신설·개선 ¹⁾	111,860	6,832	6,832	32,732	32,732	32,732
	검사시스템 자동화 ²⁾	23,200	0	23,200	0	0	0
	정보시스템개선	696	696	0	0	0	0
	혈장보관소	8,000	2,000	2,000	2,000	2,000	0
운영비 (혈액 수가)	합 계	169,178	13,454	32,681	36,181	40,681	46,181
	등록헌혈제 활성화	79,000	8,000	11,500	15,000	19,500	25,000
	검사시스템 운영	52,000	-	13,000	13,000	13,000	13,000
	혈액공급소 신설	38,178	5,454	8,181	8,181	8,181	8,181

※ 주 : 1) 연도별 구체적인 소요금액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검사자동화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임대규모, 장비사양 등의 결정에 따라 사업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가. 헌혈자 모집 및 채혈단계부터 안전한 혈액 확보

2005 2007 346 , ^ -
 26 , 29 .
 2004 44.2% 2007 56.9% 가 2007 2006
 5,849 가 가 355,262 .

나. 혈액검사체계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전성 확보

(delta check)
 가 (double check) 2004 .
 2005 2 HIV C * ;
 19 (4 , C 15) .

*핵산증폭검사로 HIV는 22일~11일, C형간염 84일~23일로 미검출시기를 단축하였으며, 2007년까지 에이즈 4건, C형간염 15건의 감염혈액을 사전에 선별하여 폐기함

가 가 ,2006
가 ,
가

다. 신속하고 안전한 혈액공급과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을 위한 정도관리체계 구축

2004 10
(Look - Back System)
2006 10 100
가

라.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혁신

가
2003 22 2007 34),
- . (

마.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 강화

가 가 가
가

III 혈액사업 추진방향

가 ,

.

,

3

,

.

.

.

, 가

가

“

”

,

‘

“

가

.

제 5 절

장기기증 및 이식 정책*

I 개 요

1906 가 50 가 1954
1988 .
가 . 가
가 . 가
가 . 1999.2.8
2000.2.9 .
가 . , 가
가

*집필자 : 공공의료과장 설정곤

가 .

, 2002.8.26

가

가 .

, 가

2007.9.28.

2007

가 ,

가

“ (RIUS) ”

II 장기이식 관리체계

가

가 .

(KONOS)

가 .

가

가

III 장기의 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

1.

가. 적용대상 장기의 종류

(Kidney) · (Liver) · (Pancreas) · (Heart) · (Lung) 5
 (Bone marrow) · (Cornea) . 가 , , 9

가

〈표 2-8-35〉 장기 및 인체조직의 구분

구분	장기	인체조직
근거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7종)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9종)
저장 및 보관	보관 및 저장 불가(다만, 각막의 경우 전문 보존액을 사용할 경우 14일 정도 보존가능)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이식요건	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
수입가능여부	불가능 (다만, 각막 수입가능)	가능 (패키지로 상품화)
관련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은행(Tissue Bank)

나. 적출 및 이식의 제한

가 .
가 .

다. 장기매매 금지

10 5
2
가 .

2.

가.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1 ,
(16)가 . 3
,16 , ,
,16
, , 4 가 .
, 16 가
가
가

나. 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가, 가 가

(16) 가

가 2 가

가 가 14 가

4 가

가

1 가 2

1 3 5 가 2

(가 1 1) 2006.9.

2007.9.28.

〈표 2-8-36〉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비교

구 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 뇌(큰골)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정지 (심한 혼수상태)	기억, 사고, 운동감각 무의식 상태
운동능력	어떠한 강한 자극에도 전혀 무반응	손발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나 거동 불가
호 흡	불가능	가 능
소화, 순환, 혈압조절	불가능	가 능
회복가능성	불가능(사망)	수개월·수년생존→사망 혹은 회복
장기기증 가능여부	가 능	불가능

※ 뇌간 : 큰골반구와 작은골을 빼고 사잇골, 숨골 부분으로 된 머릿골의 근간이 되는 부분

다. 이식대상자의 선정

가 가

(1) 원칙

가

(2) 이식대상자 선정예외

2

가

가
가

가

20

(20

가

)

가 가

IV 장기이식 관련기관

가

가

(HOPO)

〈표 2-8-37〉 장기이식관련기관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권역* / 기 관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이식 의료기관	뇌사판정 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계	133	74	69	19
1권역	79	42	40	9
2권역	22	14	13	4
3권역	32	18	16	6

※ 1권역(5개시·도)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6개시·도) : 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권역(5개시·도)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

가

”

15 20

2.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3.

()

가

4.

가

5.

3

6 ~10

2

3 2

(

: 07.9.28.)

1

가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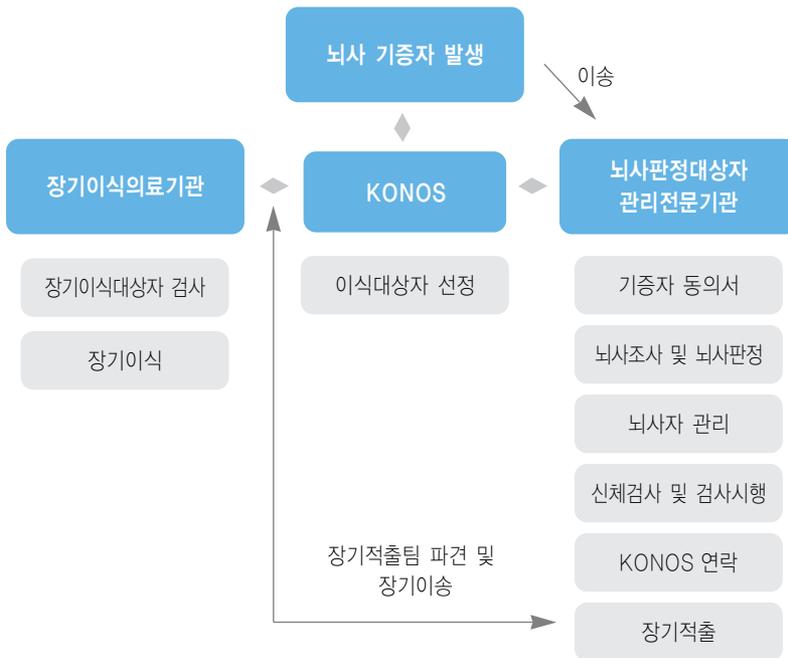
가

가

6. (HOPO :Hospital based-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2

[그림 2-8-10] 장기기증 적출 흐름도



V 장기이식 관리업무 운영방향

05.10.24.^

(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가 , KONOS

(KONOS)

5 10 6 1 HOPO() 2007
2008 2

※ 장기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이란?

()

One-Stop

〈표 2-8-38〉 장기이식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누 계	신 장	간 장	췌 장	심 장	폐	골 수	각 막
2004	13,100	5,131	1,460	148	143	47	2,622	3,549
2005	15,012	5,846	1,905	175	161	50	3,190	3,685
2006	17,219	6,724	2,413	231	168	51	3,870	3,762
2007	20,047	7,845	3,143	280	192	53	4,635	3,899

(단위 : 건)

연 도	뇌사자 (명)	이 식 건 수						
		계	신 장	간 장	췌 장	심 장	폐	각 막
2004	86	363	167	64	10	23	4	95
2005	91	400	173	66	12	26	8	115
2006	141	597	263	118	29	29	5	153
2007	148	676	281	127	18	50	17	183

(단위 : 건)

연 도	이 식 건 수			
	계	신 장	간 장	골 수
2004	1,547	686	480	381
2005	1,430	589	530	311
2006	1,505	672	560	273
2007	1,432	631	612	189

제 9 장

보건산업 육성사업

제 1 절

보건산업정책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I 보건산업 육성*

1.

가 2004 11 “
 50 ” . ,
 ‘ 50 ’ .
 2007 17 ,
 12 , 11 , 9 , 3 , 4 .

*집필자 : 보건산업정책과장 송재찬

2.

가. 의약품 산업

구분	07.4.2 (FTA)			FTA		
	2008	2017	3	07.6	1	1
가	GMP			(MRA)		
	FTA (08~10)			07.6 (11~12)		
	3			3 (13~17)		
나	17			4		
	2005~2007			2009		
	12			15		
다	2008 6			20		
	12			20		
	. 2010 R&D			, ,		
라	FTA			GMP		
	GMP			FTA		

나. 의료기기 산업

12 2005~ 2007 7 , 5
 .^ 가 - 가 가 .
 , 가 가 가
 ISO17025 가 .
 2007 GMP , “
 ” ,
 가 .
 가 가 , 2008
 .
 R&D , . .
 R&D 2008
 6 50
 07 789 17 “
 가 ” .
 “ ” , ,
 “ 2007 ” .
 2008 , ,
 “ ” .

다. 식품 산업

11 2005~2007 3 , 8
 . “

”
 ^
 -
 .
) 가 6 2007 HACCP(
) 가 “ HACCP ” HACCP
 , HACCP
 HACCP
 2006 (OEM) GMP 가가
 GMP GMP . GMP
 .
 가가 가
 2008 6 1
 . 가 , R&D
 .

라. 화장품 산업

9 1 8 가 .
 . EU 가
 .
 (OEM) , “ ”
 (: 가)가 가
 가
 .
 가 R&D
 가

“ ” . “ ”

마. 의료서비스 산업

3 가 . “ ” 가 , , (15 , 76) , 가 , () , 가 , 2005 2015

(가)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육성

가 (Value Chain)

寶庫

가

(Innovative Research Hospital) 2

가

5 가

08 2

(나)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익창출

가 가 가 가

가,

(다)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및 공급체계 효율성 강화

가

1 ('06)가 OECD 가 3.9

6.8

가

(라) 보건의료정보화(u-Healthcare) 추진

바. 산업 공통과제

가
KOREA 2007”

BT
R&D

R&D

가
『u-Healthcare
가가

4 가

가

, 2007

“ BIO

R&D 5

, .가 .
2007 .

3.

“ 50 ”
가 . 가

,
.

가 ,

,

.

1 1 가
가

IT, BT 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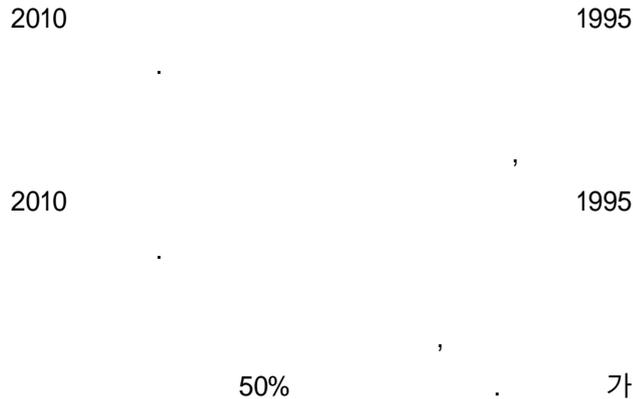
.

II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1.

,

*집필자 : 보건산업기술과장 나성웅



〈표 2-9-1〉 2007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목표 및 내용	지원금액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신약, 바이오이종장기, 바이오칩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분야 : 바이오신약, 바이오이종장기, 바이오칩 보건산업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건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분야 : 신약,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제품, 임상시험인프라, 벤처 및 중소기업, 이전기술상용화 BT, NT 등을 활용한 미래 보건의료 핵심기술 개발로 질병극복 및 보건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분야 : 보건의료유전체연구, 생명노화연구, 생체조직장기, 임상연구, 중개연구, 나노보건기술 등 	95,597
10대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내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된 혁신병원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메디클러스터 형성 병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상호 연계에 의한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기술이전과 창업을 활성화 	9,000
계		104,597

2.

1995 2007 8,871 2007 가

논문 발표 현황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SCI	비SCI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9,529편	5,612편	1,419건	929건	1,000건	269건

1995 2007 92 , 90 , 12
 , () ^ (B)_ 9
 () ^ ()_ 5
 11 .

(NCBI)
 (02. 12.) , 10
 ‘ (daumone)’ (2005 , Nature誌) ,
 (2007)

3.

(BT), (IT) (NT) 가
 , 가 ,
 가 2008

, 가 , , R&D

III 보건의료 정보화 및 u-Healthcare 활성화*

1.

(/ ,) , 2005

(ISP) . .

() 가

가 (e-Health) .

,

,

,

(EMR) (CDSS)

,

,

가

가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보건의료정보과장 이재국

2004 12
 가
 2005 5 300
 , 2 2005 6 2006 5 1
 2
 , ,
 .
 2006
 ,
 .
 R&D
 , ,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 e-Health
 .

2. u-Healthcare

u-Healthcare IT 가
 ‘ , ’
 , ()
 .
 .
 .
 u-Healthcare 1988
 52 12
 .

3.

가.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 촉진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u-Healthcare R&D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의료정보법」 제정(12.22)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정보법」 제4조(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따라 의료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u-Healthcare R&D

라. u-Healthcare 시범사업 추진

IT
 u-Healthcare 가
 u-Healthcare

[그림 2-9-1] 보건의료 정보화 비전 및 목표



IV 생명윤리 인프라 구축*

1.

가 , 가 .

가 ,

가 ,

가 , 「

(“ ”) 2004 1 29 2005 1 1 .

“

가 ,

”

가 「 가

」 가 , .

「

」 ,

· ,

· .

· ,

· ,

· ,

·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생명윤리안전과장 곽숙영

가

, 2007 2
2008 6 5
가

(2011)

2008 12 6

2. 가

7 가 가 (가)가 6 20
가 가

가 5 가

가

가

1 (05.4.7~ 08.4.6)

가

(05.7.15)

(06.2.2)

(06.9.25)

(06.12.10)

(06.12.18~ 07.1.10)

(07.3.23)

(07.3.23)

3.

()

7

가

(가)1

()1

IRB

IRB

가

가

IRB

가가

Western IRB

. Western IRB WHO, NIH,

07 13 IRB

가

IRB

가

IRB

(KAIRB)

06
IRB , IRB 가 . IRB

4.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IRB) , , , ,
(, 가),
가 . 가 ,
, ,
, ,
가

가

5가

가

(22 2),
. (: 07.10.4)

5.

가

가

가

()
가

가

63

가

가

가

가

가

가

25

1

가

()

14

6

()

가

(06.11.23) , 가

(: 07.10.4)

6. (LMO)

가

가

(BT)

, 08 1 1 LMO

가

Infra LMO

가

LMO 가

가

가

LMO

가

가

가

가

LMO

가

LMO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1.

IT 가
 , 80
 21 4
 R&D ,
 가 1994 「
 BIO
 2010 ,
 6 , B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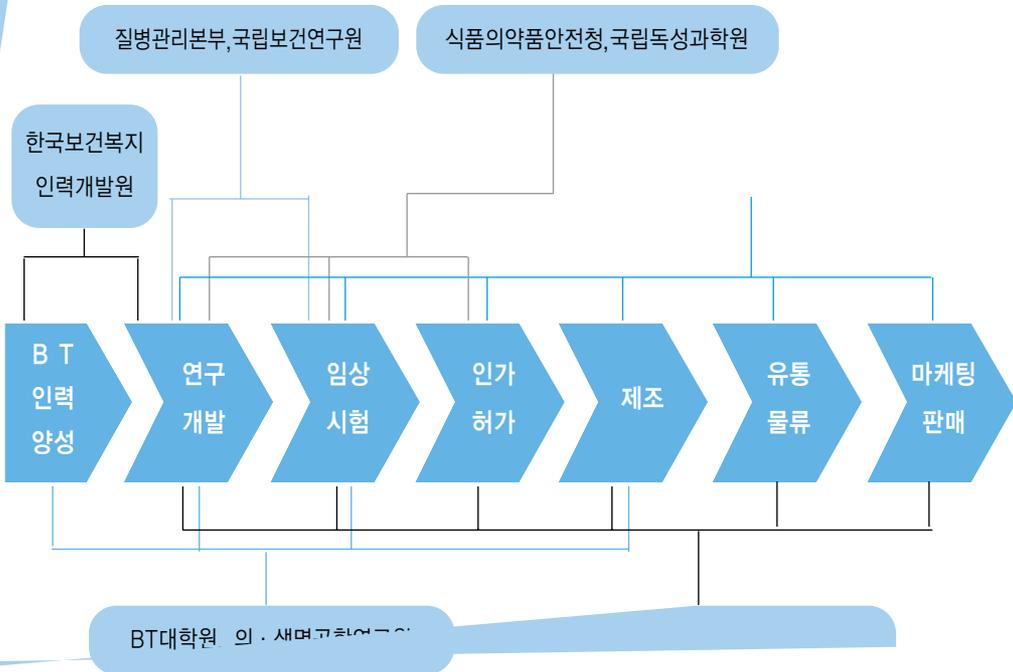
4,632 m² ,
 , R&D 1,655 m², BT
 645 m², 6

*집필자 : 생명과학단지과장 박정배

400 m², . . . , , . . . , 1,932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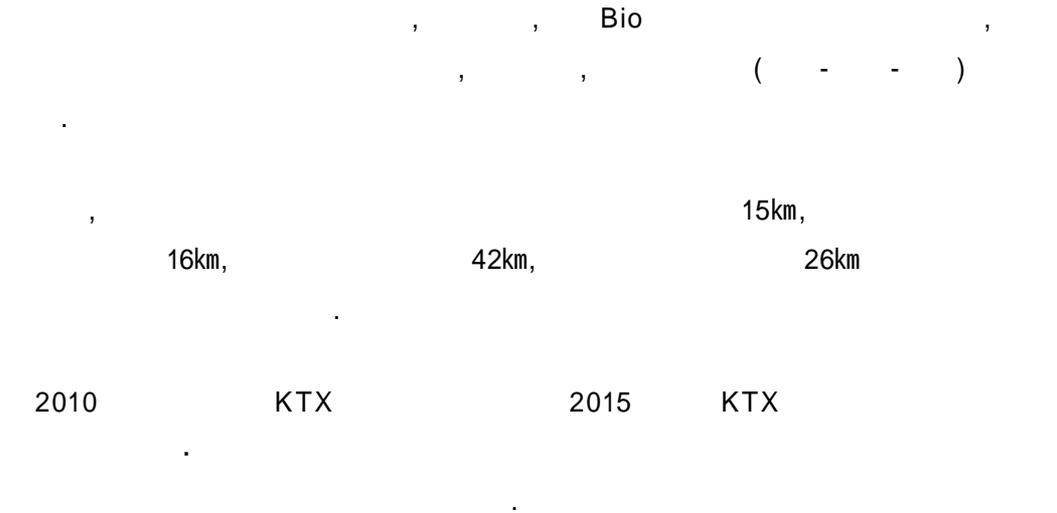
, . . . 가, . . . , . . . , BT . . . BT , . . . , BT . . . , Bio , . . . , 6 . . .

그림 2-9-3] 산학연관의 혁신클러스터 체계도



가

, 6



3.

2003 10 4,632 m² 2010
 , , , (42)가 ,
 . 2008 6
 , 96% , 10 “BIO KOREA
 2008 OSONG”
 2004 11 『 』 2006 5 ,
 1~3 LG 52 가 . 2007 7
 3 MOU(221 m², 2 6)
 2007 9 , , BT ,

	5		12	49,587m ²
	Bio			가 .
	BT		BT	
	(2003.12), (2006.9), (2007.7)	, 2007 11	6 (2004.11), (CM)	(2005.4), (2006.12), 가 2010
3	(KOTRA)			2006
			bio korea 2007	가

4.

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단지 조성 및 첨단 기업체 유치

가 one stop

bio

2008 10

BIO KOREA 2008 OSONG

가

()

70

나. 생명과학단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기능 강화

Bio

BT

가

가

BT

BIO

가

BT

다.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 이전사업 지속 추진

6

, 2008

2010

제10장

의약품 · 식품정책

제 1 절

의약품 정책*

I 의약품 정책의 기본 방향

.가

, GMP

*집필자 : 의약품정책과장 김광호

가 ,

가 1

.

,

BIO 가 BIO

,

.

, 가 . (, ,)

가 ,

,

,

,

.

,

가 ,

.

,

.

가 (: ,가 ,) 가
 가 가()
 .
 , 가 가
 가 .
 , ,
 .
 ,
 .
 ,
 .
 , 100
 .
 “ ” 「 」
 2007.10.17 . (2008.10.18)
 () ,
 가 .

II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1. 가(DUR Drug Utilization Review)

2004

〈표 2-10-1〉 연도별 병용금기·연령금기 청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총 계	병용금기	연령금기
'04년(8~12월)	4,515	3,252	1,263
'05년(1~12월)	45,076	17,328	27,748
'06년(1~12월)	11,267	6,036	5,231
계	60,858	26,616	34,242

DUR (,), ,
가 T/F 2007 3 가 . T/F

2007. 4. 11. 133 , 23 156 가 , 가

96 288 .

7 27 「 」 「 」 .

(300) .

, 10 , , , “

” 가 .

DUR 가

가

가

가

(Pop-up)

“

”

“

” 2007. 12. 17.

2008. 4. 1.

가

2.

“ ” 가
(: ,) , 「 」 15

, 가 가 가

가
 가 1 () 20
 2007.9.17 2008.6.30 10
 “ ” , 가
 50 WHO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Prescribing』
 2007 9 1,000 246 24.6% , 2007 12
 7,136 2,683 37.6% 가
 가 가

3.

2007.6.1. 「 가
 가
 가 “ ” “
 ” (6)
 가

4.

“ ” 「 」 2007.10.17
 , () 1 () 2008.10.18
 , () .

「 」
 ()
 T/F 「 」 .

.
 , ,
 .

가 ,
 가 ,
 ,
 .

가 “ ” .
 . 1977 , EU 가 가 1997 , 2001 .

“ ” .
 ,
 가 ,
 가가 .

III 의약품 등의 공급 · 유통체계 개선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 ’
(1994.5.20) ,
{(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 KGSP) (2002.1.12)

2001 ()

가 * , .
가 , .

가 , ,
(2007.11)

가

*2000년 700개 → 2007년 1,733개 (출처: 한국약품도매협회)

1.

가가 2007 10

가가

, 2008 1 *

가

2.

2008 ** 가

, 2008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보고 주기를 분기별로 하고, 공급내역 보고 범위를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하고 주기를 월별로 단축, 다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대상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하고 보고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것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련 약사법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08. 10. 18일부터 시행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 공포(2008.1.15)

(800)

가

3. RFID

· , () (EDI) . 2008 , 9 (EDI) * . , , 가 , , (2010.1.1) , 가 , () 가 가 GS1-128 (2012.1.1, 2013.1.1) . 가 , ()가 가 2008.6.5 43,738 103,825 ** ,

*2009년 중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 추진

**2008.6.5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43,738개 품목에 103,825개 표준코드를 부여 · 공고

() (RFID)* 가 가
2006 2007 2008
가 RFID
가
가

4.

3 가
가
「 」 “ ” 가
“ “ ” 가
가
가
가
가
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여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

I 식품환경의 변화

가 가

MHz # 單

II 식품위생 관련 제도 개선

1.

1945년 12월 24일 제정된 「식품위생법」(1945.12.24)은 우리나라 식품위생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1962.1.20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133조가 신설되었다. 1962.1.20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133조가 신설되었다.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剛策 芻戴 /12 栒琪 ☎1601#1#29 8剛策 芻履力]= 芊 卍) 芑芑 i

가 가 . 2004
 가 , 2008
 가 .
 가 ,
 가 가 .

〈표 2-10-2〉 식품별 관리 소관 부처

식품종류	소관부처	소관법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농산물, 축산식품 어유(간유) 및 선상수산제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먹는물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주류	기획재정부(국세청)	주세법

2.

가. 식품관련 법령(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신설

가 . 가 ,
 .
 (食生活) 「 」 (2008.6.13)
 2008.12.14 .

2005.3 가 6
 (2008.5.22) ,
 「 」 ,
 ,
 ,
 ,
 200m 가 (Green Food Zoon) , 가
 가 , , 가 ,
 ,
 ,
 , 2010 .
 「 」
 (08.3.31) . 2009.3.22 .

나. 식품위생법 개정

(06.9.27,
 06.12.28, 07.12.21) ,
 2008.6.22 .

· FTA ·

100 ,

.가

.가

가

가가

가

가가

가^ㄱ

가

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006. 9. 27. , 2007. 1. 1.

) ,

(2007. 12. 13. , 2008. 3. 14.

)

가

,
 (2008.1.21 , 2008.3.14)
 ,
 , . . . 2
 , 「 」
 (2008. 6. 20. , 2008. 6. 22.) , .
 가
 가
 . . .
 (2008.6.20 , 2008.6. 22)
 가가 , 가
 가
 , ' ,
 ,
 가 , , 가
 가 , . 가
 가 . 가
 , . 가

III 식품정책 방향

1.

가

가 ,

가

가

가 , 2010

10% , 2008

가 (08~12) ,

(500) ,

가 (HACCP) (07, 339 12, 1,400)

HACCP HACCP

〈표 2-10-3〉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연 도	발생건수(건)	환자수(명)	환자수/건(명)
2003	135	7,909	58.6
2004	165	10,388	63.0
2005	109	5,711	52.4
2006	259	10,833	41.8
2007	510	9,686	19.0

3.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취지 및 전망

· 가
 ,
 , 가 , .
 가 .
 ,
 ,
 가 가 .
 (2002. 8.26)
 2004 1 31
 가 가 .
 .

나. 건강기능식품법 정책 방향

(1)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의 조기정착, 합리적인 제도개선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가

(2)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반 구축

가

가

(GMP)

GMP

(3)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질서 확립

(, , , TV

)

4.

3,000

1999.11.13

2000 「 」

2005 1
, 2006 12

IV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

1.

가 (鮓)

1982 ‘ ’

1992 ^
^ — , 1996 4 ‘

가

1996. 11. 20

^ — ^
. 1992

가

2.

(Well-being)

가

가

가. 실천적인 음식문화 개선

나. 모범음식점 정비 및 운영관리 강화

다. 「좋은 식단」실천의 지속적인 추진

라. 홍보활동 강화

TV,

[관련 통계 현황]

〈표 2-10-4〉 식품제조 · 가공업소의 업종별 위생 감시 실적

(2007.12.31 현재)

구 분	위생감시 건수	부적합 건수	행정처분 내용				고 발
			영업취소 폐쇄	영업 정지	품목 · 류 정지	시정 (기타)	
계	788,866	53,007	15,181	7,659	820	28,140	2,797
식품제조가공업	31,653	3,524	314	464	799	1,910	10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54,112	2,912	1,311	109	6	1,393	119
식품첨가물 제조업	392	94	7	4	15	23	0
식품소분업	11,288	1,042	603	80	0	353	27
식품운반업	1,858	136	15	5	0	115	3
식품판매업	64,078	4,246	2,207	58	0	2,134	28
식품보존업	334	20	9	1	0	10	0
용기 · 포장 · 용기류제조업	1,017	82	43	11	0	30	1
식품접객업	624,134	40,951	10,672	6,927	0	22,172	2,516

〈표 2-10-5〉 식품접객업소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계	일 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 란 주 점	유 흥 주 점	위탁급식 영업
		다 방	제과점	기 타			
700,771	579,908	22,871	14,026	31,796	15,772	29,089	7,30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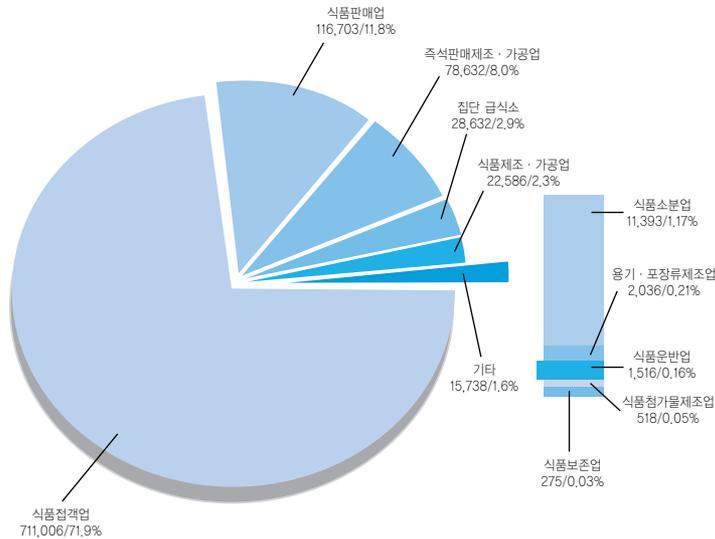
〈표 2-10-6〉 집단급식소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계	학 교	기업체 등
30,960	10,206	20,754

[그림 2-10-1] 식품제조 유통과 판매업체 현황(2006)

(단위 : 개소)



2006년 973,297개소로, 2005년 973,297개소보다 25,140개소 증가하였다. 이는 2004년 973,297개소보다 13,184개소 증가하였고, 2003년 973,297개소보다 78,632개소 증가하였다. 2002년 973,297개소보다 145,335개소 증가하였다.

〈표 2-10-7〉 수입식품 검사종류

구분	검사대상	검사내용
서류검사	모든 수입식품	제품정보, 부적합이력, 표시, 증명서, 안전기준(GMO·유기농·광우병)등 검사
관능검사	농·임산물 (동일사동일식품)	표시, 포장상태, 이물, 제품의 성상·맛·색·냄새 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최초 수입식품, 부적합 재수입, 위해우려식품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

〈표 2-10-8〉 수입식품 연도별 검사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건수(건)	215,494	238,539	270,163
중량(천톤)	11,261	11,227	11,798
금액(백만\$)	7,586	7,811	8,488

2007
],
46,106 (17.1%),

270,163 [(2-10-9)
27,972 (10.4%),
179,982 (66.6%),
16,103 (5.9%)

2007 5 . 가 86,272
(25.0%), 41,444 (20.6%), 가 4,773 (7.4%), 1,410 (6.2%),
38,162 (5.3%) , 5 65%()

〈표 2-10-9〉 품목유형별 수입 현황

(2007.12.31 현재)

구 분	건 수	중량(톤)	금액(천\$)
원료성식품	39,276	7,261,422	3,121,228
가공식품	165,132	4,120,615	3,889,253
식품첨가물	31,071	193,752	519,230
기구용기포장	27,696	213,159	708,479
건강기능식품	6,988	10,009	250,102
합 계	270,163	11,798,959	8,488,294

제 11 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제 1 절

건강생활 실천*

I 개 요

70%

가

가

가

*집필자 : 건강정책과장 정충현, 건강증진과장 신승일

2005
72

2006

21

2010

(Health Plan 2010)

가
가 ,“

가

^

가

40 - 66

6

()

가

II 범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의 생활화

1.

2002 2003 100 2004
156 , 2005 246 , 2006 248 (, , ,)
2007 251
, 2010 72
' 2007 ,
2007
가 , 가
가

2.

2005
“ 2005 ” “ 2006 ” “ 2007 ”
, , , , , ,

〈표 2-11-1〉 금연사업의 필수사업

사업영역	예시
금연환경 조성	① 금연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흡연구역 시설기준위반 행위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경찰청협조) •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행위 ② 금연구역 모범 이행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③ 금연거리조성 등
금연홍보	④ 금연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서 배포한 동영상 및 인쇄매체 등의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기타 가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 금연 앰플램, 금연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 • 거리 캠페인(니코틴 의존도 측정행사 등) • 금연포스터 대회, 금연글짓기 대회, 금연걷기대회 등
금연교육	⑤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상담 및 교육 실시 ⑥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시도교육청과 협력) ⑦ 사업장 금연교육 ⑧ 대학교 금연교육 ⑨ 유치원·초등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⑩ 금연지도자 교육 ⑪ 금연관련 워크샵, 세미나, 금연사업평가대회 등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⑫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의 금연상담전화(Quitline) •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기타	• 검증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연방법은 시행하지 않도록 함

〈표 2-11-2〉 신체활동 및 운동 사업의 필수사업

사업영역		필수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① 주민대상 교육·홍보 및 운동정보제공 ② 지역사회 캠페인
사업 기반 조성 및 구축사업		③ 지역사회 자원 연계 ④ 지역사회 운동 조직 후원 및 활성화 ⑤ 지역사회 사회체육 및 운동시설 확보 등 지지적 환경 조성
주민 대상운동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사업 (건강군 대상)	⑥ 노인체조 및 운동프로그램
	고위험군 대상사업	⑦ 어린이 비만교실 및 비만캠프 ⑧ 성인 비만교실 및 운동 프로그램
	질환군 대상사업	-
	기타 전문사업	⑨ 운동지도 프로그램

〈표 2-11-3〉 영양사업의 필수사업

사업영역		필수사업
우선 추진 사업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	① 아침결식 예방사업 ② 임신·수유부 영양관리 사업(모유수유촉진사업 등)
	(2) 체중관리 사업	③ 체중관리 사업, 비만 아동 관리사업, 성인 비만 관리 사업
차선 추진 사업	(3) 기반조성 및 구축사업	④ 사업기반조성 및 구축사업
	(4) 기타 사업	⑤ 식생활 지침 홍보·교육 ⑥ 식사상담 프로그램 운영

〈표 2-11-4〉 절주사업의 필수사업

사업영역	필수사업
사업 기반조성 및 구축사업	① 절주 홍보 ② 절주실천유도 환경 조성 ③ 지역사회 연계
생애 주기별 사업 (건강군 대상)	④ 청소년 절주·금주 교육 초등학교 절주·금주 교육(농촌은 성인 절주·금주 교육)
고위험군 대상사업	⑤ 절주 상담실 운영
질환군 대상사업	-
기타 전문사업	⑥ 인터넷 절주 홍보 및 교육

3.

‘ () 2002
13 900 ,
2004 (5 9 , 7,500 가),
(5 16 , 4,000 가), (5 23 , 3,000 가) 31
51,500 , 2006 2
가 .
2006 ,
2007 ,
‘ Up&Down ’ CF .
가 .

4.

2005년 건강생활 실천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5년	2006년
건강생활 실천율 (%)	8.152	8.484

2005년 건강생활 실천율(8.152%)은 전년 대비 0.48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기초조사(144,100명) 결과이다.

2006년 건강생활 실천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6년	2007년
건강생활 실천율 (%)	15.612	15.493

2006년 건강생활 실천율(15.612%)은 전년 대비 0.493%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기초조사(147,100명) 결과이다.

2007년 건강생활 실천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7년	2008년
건강생활 실천율 (%)	16.476	16.200

2007년 건강생활 실천율(16.476%)은 전년 대비 0.20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기초조사(18,200명) 결과이다.

III 국민건강 교육·홍보

국민건강교육·홍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초조사(http://www.hp.go.kr,)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생활 실천율, 흡연율, 비흡연율, 과체중율, AIDS, 정신건강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2008년 건강생활 실천율 20% 달성을 위한 국민건강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가 , 가 ,
 , , , , ,
 . , , , , ,
 / . .
 , (http://
 nosmokeguide.hp.go.kr, :) (“ !
), , (, , , , , ,
 ,), 가 , , 2006
 () ()

IV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강화

2001 61.8%, 2005 52.3% (OECD)
 가 < 2-11-5>, , , ,
 . 9 .
 42%(07 12) , ,
 . 가 , 가
 가 가 가 가
 2010 30%

〈표 2-11-5〉 성인 흡연을 국제 비교

(단위 : %)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호 주	18.9	16.5	17.7
캐 나 다	19.1	15.5	17.3
프 랑 스	28.0	19.0	23.0
미 국	19.1	14.9	16.9
일 본	45.8	13.8	29.2
한 국	52.3	5.8	28.9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7(호주, 프랑스 : '04년 자료, 캐나다, 미국, 일본 : '05년 자료)
 ※ 한국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임

1.

가

가

2.

가
354 558

1

6 (

2,049

22

7,258

14,878

2009

1 5

2007

, 2007)

(,
88.6%가,

89.2%가

가 가

2006

가 2005 5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_

가

〈표 2-11-6〉 담배규제기본협약과 우리나라 법·제도 현황 비교

담 배 규 제 기 본 협 약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조항	주 요 내 용		
제6조	담배가격 및 세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에 대한 조세 및 가격정책 시행 또는 면세담배 수입·판매 제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담배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229조(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260조(지방교육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염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법 제1조(부가가치세) ※ '04년 500원 인상
제8조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건물·공연장·체육시설, 학원, 지하상점가, 의료기관, 학교 등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담배성분 규제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에 대한 시험·측정 및 규제 담배제조·수입업자의 담배제품의성분·배출물에 대한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 연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표시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분검증기관의 연차보고 의무화(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국제표준화기구 권고방법에 따른 측정오차를 ±20%로 규제(담배 사업법시행령제9조의4 및 6)
제11조	담배포장 및 레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협약발효후 3년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의 포장에 최소 한 면의 30% 이상 차지하는 건강경고 기재, 경고그림 권고 담배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표시(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포함)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 담배사업법 제2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 포장지의 앞, 뒷면 각각의 넓이의 30/100흡연경고문구 표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30/100
제13조	담배광고·판촉·후원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제품의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도 가능성 있는 광고·판촉·후원 금지, 판촉 및 후원에도 경고포함, 구매 촉진용 직간접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 담배업계의 광고·판촉·후원비용을 정부당국에 공개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담배관련 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 국제적 행사(활동)에 의한 담배후원 금지 또는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연 60회 이내의 잡지 광고, 사회·문화·음악·체육등의 행사후원 (여성·청소년대상제외),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의 광고 외에는 모든 담배광고 금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일반인에게 담배 무상 제공 금지, 소매인에게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행위규제(담배사업법 제27조의2)

담 배 규 제 기 본 협 약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조항	주 요 내 용		
제14조	담배중독 치료·금연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중독 치료 및 금연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직장·보건소 등을 통한 금연프로그램과 니코틴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 '05년 3월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 '05년 하반기부터 금연상담전화(Quitline) 개설
제15조 제16조	담 배 불법거래 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제품 원산지 판정을 위판 표시 시행 - 판매지역을 명시하는 문구, 추적체제 개발 검토 등 • 18세 미만인(혹은 해당 국가법이 규정한 성년 연령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 구매자에게 적정연령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 -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 금지 • 담배 날개 및 소량포장 판매 금지 • 구매자가 직접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선반진열 등) 금지 • 담배 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과자류, 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제조는 허가제, 담배수입판매 및 담배도매업은 등록제채택(담배사업법 제11, 13조) •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담배포함) 판매·대여·배포 금지(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연령 확인 의무 부과 -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담배의 포장 및 내용 변경 판매 금지(담배사업법 제20조)

3.

, ,
 .
 ,
 (http://www.cleanschool.or.kr)
 가 ,
 ,
 , 2007 가
 118
 2007 ‘
 (Smoke-Free Hospital) , 46
 , 「 , 」 ‘
 ,

가

7

TV , 2007 「 2 (가
 ,) 「 3 (,가 ,) 3 TV
 778 (86.4) , . 325

TV CF 1, 3
 1, 5

가

2,759,285 ,1 7,551

6.6%가 , 35.7%가 1 , 71.6%가 1

4. 가가

()

297,509 가 , 93.51% 278,199 . 2007
 99.36% 276,427 , 4

● ● 제11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221,015 (79.95%), 6 200,558 (72.55%),
 6 120,807 (43.66%)
 140
 7,853 6 3495 (53.8%), 12 2124
 (41.3%), 6 903 (35.5%)
 ()
 2007 12,183
 1 6
 (3.30~4.7,)

5. 가

가 WHO FCTC 2 58 WHO

〈표 2-11-7〉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등 실적

회의명	일시 및 장소	내용	비고
Implementing the WHO FCTC 워크숍 참석	'07.6.2~6.6. 필리핀 마닐라	WHO FCTC 이행 관련 서태평양지역 각 나라별 이행상황 점검 등 논의	
WHO담배규제기본협약 제2차 당사국 회의	'07.7.2~7.6. 태국방콕 UNCC	간접흡연예방 및 담배제품 규제에 관한 상세 지침 등 논의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개최	'07.9.10~9.14.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ICC)	세계보건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회원국 간 협력증진	

V 국민건강영양관리의 실천 등

, 가 .

가 .

1.

(6) 200% 가 (. .) 가 .

2004 “ 가
 ” 2005 3 2006
 15 6,908 가 2007 13 20
 11,162 가 ,

〈표 2-11-8〉 사업 대상자 자격기간

구 분	자 격 기 간
영 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 아	생후 만 5세 이하(72개월 미만)
임 신 부	출산 후 6주까지
출 산 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표 2-11-9〉 식품패키지별 식품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명	식품패키지 I (영아, 0~5월)	식품패키지 II (영아, 6~12월)	식품패키지 III (1~5세 어린이)	식품패키지 IV (임신·수유부)	식품패키지 V (출산부)	식품패키지 VI (완전모유수유)
조제분유	필요량	필요량				
이유식(분말)		필요한 경우 ¹⁾				
쌀		45g	45g	90g	90g	90g
국 수			100g/주	200g/주	200g/주	200g/주
달 갈		50g(노른자)	50g	50g	50g	50g
우 유			400ml	400ml	200ml	400ml
씨리얼			30g	30g	30g	30g
김			3g	3g	3g	3g
미 역				2.5g	2.5g	2.5g
당 근		18g	18g	35g	35g	35g
참치통조림						30g
귤/오렌지주스						귤 중 1개 주스 200ml ²⁾

※ 주 : 1) 필요한 경우에는 쌀과 달걀 대신 시판이유식을 기준량의 1/2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음.
 2) 가을, 겨울 등 가격이 저렴한 계절에는 귤을 공급함. 봄, 여름 등 귤의 가격이 비싼 계절에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100% 오렌지주스를 공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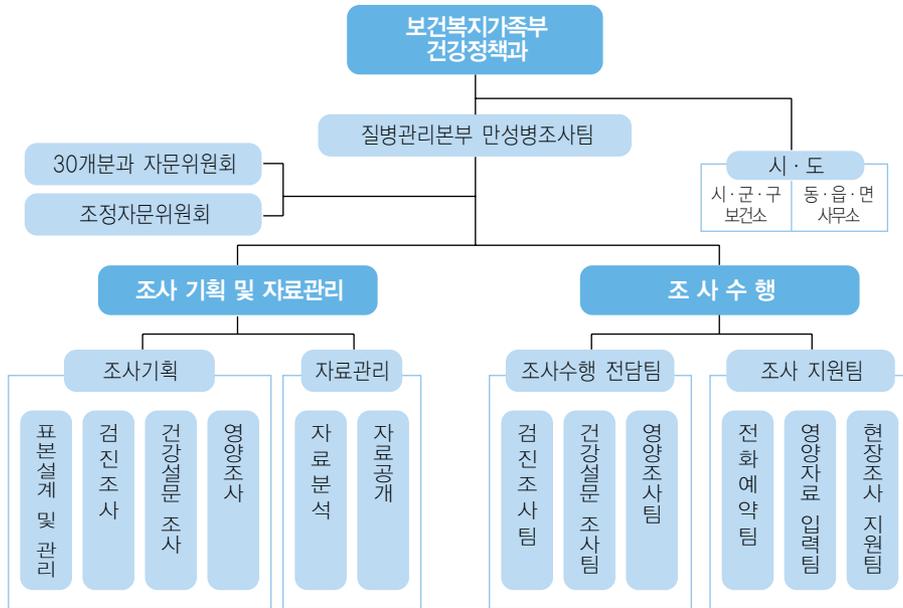
VI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 기초 연구

1.

16 1998 3
 (69) (83) 1998 , 1998
 2001 , 2005 2007 4 가 .
 (, ,) ,
 가 가 ,
 가가 가 . , 3 ,
 4 (07- 09) , 4
 , ,
 4 , ,
 2007 7 12 100 (: 65.8%).
 , 2007 7 1 - 3 .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그림 2-11-1] 국민건강영양조사 추진체계



가. 조사 목적

가

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실시계획

4 (07 09) 가 . (1
 3) 200 , 4,600가 . 4 1
 (2007) 2007 7 6 100 2,300가 ,
 4 2 (2008) 가 1 .

〈표 2-11-10〉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표

조사구분	조 사 내 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장소
건강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질환이환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의료이용 	만 1세이상	면접조사	검진·건강 설문조사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 의식행태(흡연, 음주, 운동 등) 	만 1세이상	자가기입	
검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측정 임상검사(혈청지질, 혈당, B형 간염 등)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만 1세이상 만10세이상 만10세이상 만 1세이상 만19세이상	계측 및 검진	
영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섭취조사(식품의 섭취횟수, 섭취량) 식생활조사(식습관, 외식횟수, 수유 등) 식품섭취빈도조사 	만 1세이상 만 1세이상 만12세이상	면접조사	가구방문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활용

1 ~ 3 . 가 2007 7 ,
 4 1 .
 (Health Plan 2010) 가가 가 , 가
 가 .

2. DB

가. 사업 목적

(DB) . DB
 가 , ,

01 5 , , , , ,
 DB , 06
 DB , 07 / DB . 08
 DB DB . DB DB
 가 DB ,
 DB .

나. 7차년도 : 눈대중량의 부피 및 중량 환산 DB 구축사업

1 1 ,
 24 . 24
 , 가
 (g) 가 1 , 1/2 ,
 6cm 가 ,
 DB .
 ,
 ,가 , ()
 ,
 . D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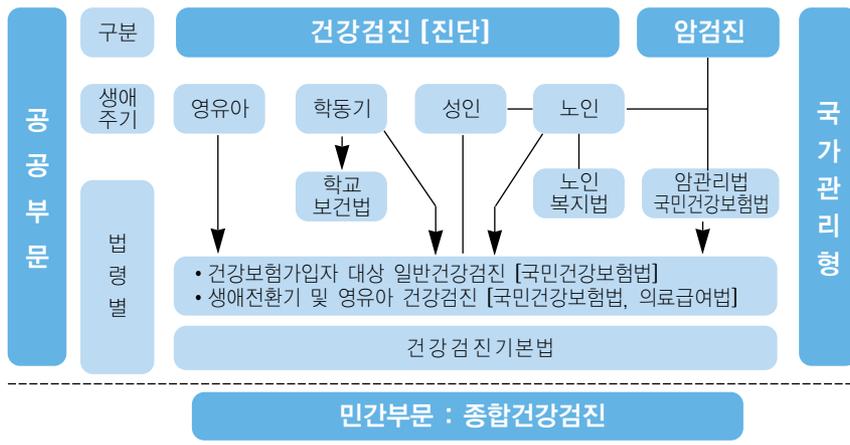
VII 질병의 조기에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1. 가

가 1980 .
 27 . , 가

가
40 가 , 가
1990 1999 가
5 (, , ,)
50% 가
50%
20%
65
가

[그림 2-11-2]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 ❖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가족부) : 6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의 장 의무사항)
- ❖ 학교보건법(교육과학기술부) : 초등 1, 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 ❖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 근로자 건강진단 - 일반, 특수, 수시, 임시, 배치전
- ❖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가족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의료급여법(보건복지가족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 ❖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 65세 이상 노인(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3.

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진경과

「2006년 7월 4일 시행된 「2006년 8월 21일 시행된 T/F가 , 가 , 가 . 가 가 . 가 가 . 가 . 07.4.5 , 07.4.10 .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내용

「1. 2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 66 , 가 . 2 1 , 가 , .

「
가2

가가
() 가

가

「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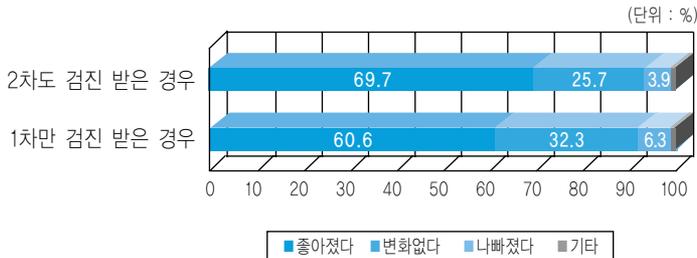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진 실적 및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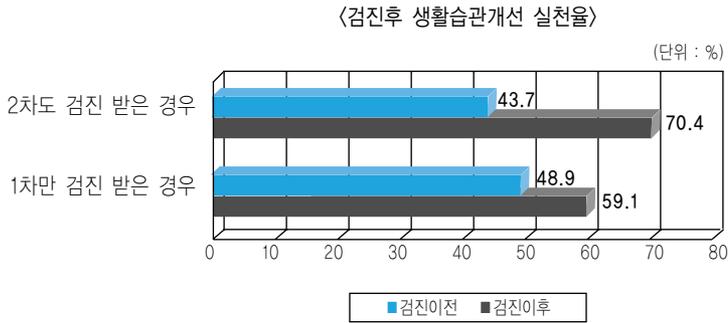
07 「
가 45%가
「
가

990 , 2 , 65.4%가 가
, 2 가 가
(69.7%) , 40
50% 가 , 2 가
26.7% 가
가 가
76.1%가 , 70%가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 설문 조사 ♣

〈이전 국가 검진프로그램과의 비교〉





(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향후 추진일정

가

나. 영유아 건강검진

(1)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경과

2007 11 (08.1) , 4
07.2 6 , 4
T/F 5 7
가 , 6 7
가 , , 가 가
, 8 (,
9

2007 11 15 가 , 2008 1
12 ,

(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내용

6 4 , 9 , 18 , 30 , 5
.
가
가
가

검진항목	검진시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문진 및 진찰	●	●	●	●	●
신체계측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	●	●	●
	영양	●	●	●	●
	수면	●			
	구강		●		
	취학전준비				●
구강검진			●		●

(3) 영유아 건강검진 향후 추진일정

가 , , 가 가
. 2~3

4. 가

가

「 가 가 」 08.3.21 09.3.22

「 가 가 가 」

1 가 2 가 ?

「 가 가 가 」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제 2 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I 개 요

비 전	모성과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정 책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임기여성 · 모성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 ❖ 영유아 건강능력 확보 ❖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인적자질 향상 ❖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추 진 전 략	가임기여성 생식 건강증진	임산부 건강지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영유아 장애 예방 지원	임신 · 출산의 사회 책임 강화
주 요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통역 지원 • 대학생 생식건강 센터 운영 • 청소년 성교육 • 계획임신 정보 지원 • 임신 · 출산문화 개선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등록제 도입 • 철분제 제공 • 모자보건수첩 활성화 • 임신부배려 캠페인 강화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수유 증진 • 수첩 활용 • 건강검진유소건자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 지원 · 육성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환아관리 • 선천성난청 조기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임부부 지원 •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감소 추진

※ 관련과제 : 임신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WIC), 임신부및영유아 건강검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집필자 : 모자보건과장 이원희

II 모성건강관리 강화

1. 가

가. 여성생식 건강프로그램 지원

연도	가	가	가	가
2010)	가	가	1	(06
가				
2007				10
		14		
			가	

나.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

34	(05,)
4.4%		
28	가	
가		
2007		
(08.2)		

2008 ,

다. 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제공

가 가 가
가 , . .

2005.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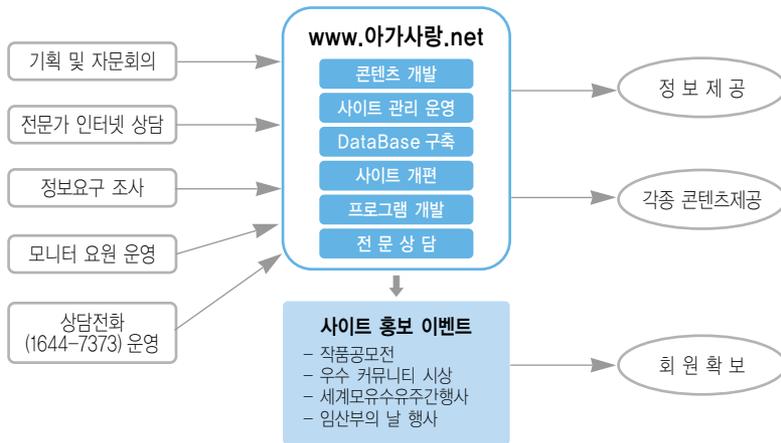
『 가 , www. 가 .net』 () , 2006

, 가 , , ,

e- , 2007 , , ,

가

임신·출산 포털사이트 운영



2.

가.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실시

10 10

(

3 2, 2005.12) 2006 2007 10 2
 1,000
 가 , ,
 2008 3 (10 10)

나. 제왕절개 분만감소 사업 추진



※ WHO 권고 : 5~15%, 미국 30.2%('05), 유럽전체('00) 15.7%, 영국('03) : 22%

가 가
 , 2007

20 가 (6,000)
 ,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
 , 2008 .

3.

가 가
 (05.12.7) , 06.12 294 07.12
 377 가 .

III 영유아 장애예방 및 미숙아 관리체계 강화

1.

가
 6 (, , , ,)
 (가 200% 가)

〈표 2-11-11〉 연도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발견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검 사 인 원		343,908	386,889	412,653	425,046	451,138
발견	페닐케톤뇨증 등	16	19	29	77	105
	갑상선기능저하증	47	113	182	234	232

※ 2007년도 모자보건사업 실적보고(보건복지가족부)

2.

2007	8,811	2007	16
2008	32	2009	1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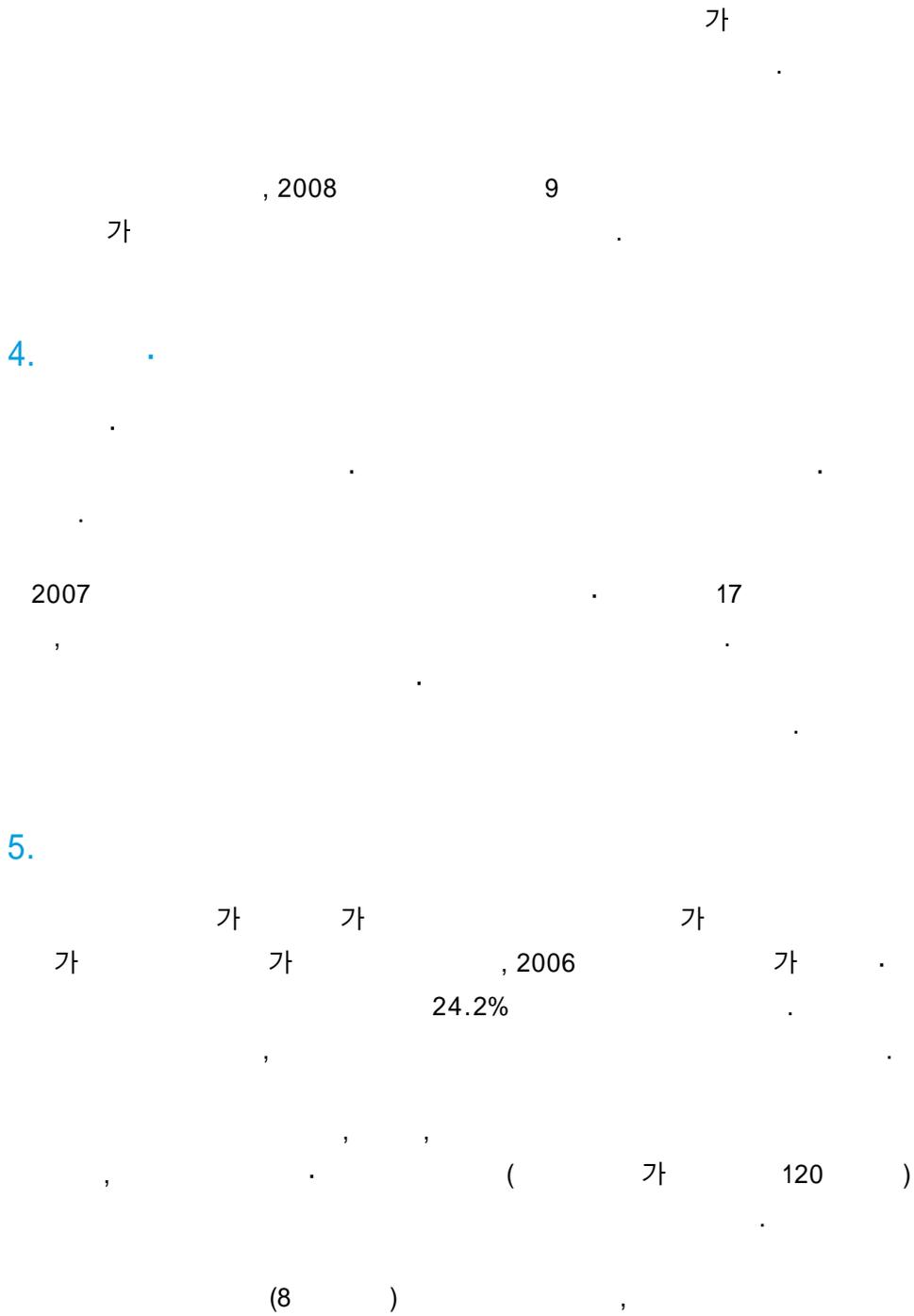
130%	가	500~100	가
가	5	500	가

〈표 2-11-1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미숙아등 지원자 수	1,171	1,580	3,075	9,490	12,648
지원액(백만원)*	2,110	2,859	5,143	10,501	12,780

※ 2007년도 모자보건사업 실적보고(보건복지가족부), 국고 40% 지방비 60%



가 (www.mom-baby.org)

1992 (WHO)

“ (BFHI :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 2008 55 BFHI 가 2007 28 가

IV 불임부부 지원사업

가 가 가 가 가 가

2006 가

300 (14,000) 510) . 2007 4,400

2008 121 17,000

2009 255 270 2 3 , 1

: 2 34%, 3 45%, 4 52%(, 03)



전염성 질환 등 관리*

I 급성전염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1.

2000년 8.6%가 증가하여 2005년 1.0% (0.04%(21/10))로 감소하였다. 1979년 1993년 5.1% (1965년 0.35%(85/10))로 증가하였다. 2007년 2003년 (SARS) (AI)로 증가하였다.

*집필자 : 질병정책과장 정은경

2. 2007

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강화

03.12 04.3 06.11 07.3 가
 , 08 4 AI
 AI
 (H5N1)가 ,
 08.4 14 381 , 240
 가
 (WHO) 가 가
 , , 2 가 , 20 30%
 , , 1,000 5 가
 가
 가
 , 07 5

(1) 신종전염병 위기대응 체계구축

(06.8)
 ,
 (BCP) 가
 ,
 07 7 AI
 가 BSL -

, , 가

(2) 신종전염병 감시 강화

, , 100

(3) 신종전염병 위기대응능력 함양

, 가

(4) 신종전염병 대비 국내·국제 공조체계 구성

07 4 ,

06 “ ”
34

, HPAI() ,
AI()

SOP(Stand Operating Procedure) .

(5) 항바이러스제, 격리병상 시설 등 사전 필요물자·시설 확보

124 6 (6), 29
가 (06.10) 06 09

400 06 96 07 100

196

〈표 2-11-13〉 격리병상확충사업 추진 현황

연도	병 원 명	격리병상수			
		계	일반격리	음압격리	추진경과
	계	196	133	63	
2006	국립의료원	68	53	15	07.7월 준공
	국군수도병원	28	24	4	07.12월 준공
	소 계	96	53	43	
2007	국립목포병원	50	40	10	- 현재 '0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임
	인천광역시의료원	25	20	5	
	전북대병원	25	20	5	
	소 계	100	80	20	

(6)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인체감염예방관리 강화

AI
 AI·PI
 AI AI
 가 AI
 28,216 (101.3%)

(7)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검역 강화

(AI) 가
 “ AI ” , ,
 , , AI
 , (AI) 가 AI

나. 접촉성·식품매개성전염병 집중관리 강화

, ,
 , 가 , ,
 가

, 가 , 가

(1) 설사질환 원인 병원체에 대한 진단법 개발 및 실험실 감시체계 강화

(Multiplex - PCR)

, , 가
 가 , APEC Pulse-Net, NIH
 (entrovirus)

(2)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 지속 추진

, , , , 70%
 가 .
 , 26 가 “ ” (05. 7.)
 . 2007

(가) 학술연구 용역 사업 (3차 전국민 손씻기 실태 및 인식도 조사 실시)

- 7 1,064 , 60.1%(06 : 63.5%)가
- 53.6%, 66.5%가

66.1% 가 , (62.1%), (50.7%), (36.8%)

(나) 손씻기 아동극 및 체험행사 전국 순회공연 실시

- 12 . ‘ , ,

(다) ‘올바른 손씻기’ 홍보 활동

- TV (SBS , 07. 4) 「 」
- 6 , 2
- (400) (07. 8~9)
- (07. 8)
- 가 (07. 9,)
- 「 Hi Seoul 」
- (07.10)

(라)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 홈페이지(www.handwashing.or.kr) 개선을 통한 추가 자료 게재

- ,

다.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

(1) 전염병예방법에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 추가('05.7)

“ ” ,
 05.7 .(2 7).
 06. 6 , , , ,
 , , (SARS), -

(2) 인수공통전염병 공동대책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확대 및 운영 예규 제정('05.12)

SARS, ,
 2004 4 .

22 . ,6 2 , 2 , 2 , 가 16
 8 61 05.12 , 06.1 가

(3)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전용 실험실 및 부검센터 설치

- 2001 ,
 2005 2
 가 .
 , 2006 4

(4)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실태조사 실시

06 , , 6,000
 , 07 , 1,700 0.23%
 , Q , 0.7%, Q
 1.2% PCR 5,6%, RPLA 0.4%,
 0.4% .
 08 가 3

라. 곤충매개전염병 관리

(1) 말라리아 박멸사업

1993 DMZ , 가 가
 2001 ~2003 30% . 2005
 56%, 2006 50% 가 , 2007 8.6% 가
 가 .

2001 가

(2)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가 (가 ,) 2003 가
 가 6 가
 가 가

7 18 , 07 가 가
 (,) (, , ,) 7%

2007 7 31 가 가

II 전염병 감시

1.

가. 전염병 감시체계

WHO “ ” ‘ , 가

가 .
 , 2007

〈표 2-11-14〉 감시체계 현황

(2007. 12 현재)

구 분	보 고 체 계
전수감시	

- ※ 주 : 1) 결핵, 한센, AIDS는 별도의 감시체계 운영 중
- 2) 표본감시 대상 전염병 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은 표본 병·의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신고함

〈표 2-11-15〉 전염병 환자발생 보고 현황 1

(단위 : 보고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콜레라	162	4	1	10	16	5	7
장티푸스	401	221	199	174	190	200	223
파라티푸스	36	413	88	45	31	50	45
세균성이질	927	767	1,117	487	317	389	13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1	8	52	118	43	37	41
백일해	9	21	5	6	11	17	14
파상풍	8	4	8	11	11	10	8
홍역	23,060	62	33	11	7	28	194
유행성이하선염	1,668	764	1,518	1,744	1,863	2,089	4,557
풍진	128	24	8	15	12	18	35
일본뇌염	1	6	1	0	6	0	7
수두	-	-	-	-	1,934	11,027	20,284
말라리아	2,556	1,799	1,171	864	1,369	2,051	2,227
성홍열	49	54	107	80	87	108	146
수막구균성수막염	11	27	38	8	7	11	4
레지오넬라증	2	1	3	10	6	20	19
비브리오패혈증	41	60	80	57	57	88	59
발진열	16	9	9	19	35	73	61
쯔쯔가무시증	2,637	1,919	1,415	4,698	6,780	6,480	6,022
렙토스파라증	133	122	119	141	83	119	208
브루셀라증	0	1	16	47	158	215	101
공수병	1	1	2	1	0	0	0
신증후군출혈열	323	336	392	427	421	422	450
덴기열	6	9	14	16	34	35	97
리슈마니아증	0	1	0	1	0	0	0
바베시아증	0	0	0	0	1	0	0
크립토스포리디움증	0	0	0	0	1	0	0
주혈흡충증	0	0	0	0	0	0	2
보툴리눔독소증	-	0	3	4	0	1	0
큐열	-	-	-	-	-	6	12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과 표본감시체계 및 실험실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
-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 환자발생 보고가 없는 페스트,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탄저, 황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아프리카수면병, 요우스, 핀타,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제외
- 0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
- : 신고·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또는 광역시 승격이전)

〈표 2-11-16〉 전염병 환자발생 보고 현황 2

(단위 :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콜레라	0.34	0.01	0.00	0.02	0.03	0.01	0.01
장티푸스	0.84	0.46	0.41	0.36	0.39	0.41	0.45
파라티푸스	0.08	0.86	0.18	0.09	0.06	0.10	0.09
세균성이질	1.94	1.59	2.31	1.00	0.65	0.80	0.2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02	0.02	0.11	0.24	0.09	0.08	0.08
백일해	0.02	0.04	0.01	0.01	0.02	0.03	0.03
파상풍	0.02	0.01	0.02	0.02	0.02	0.02	0.02
홍역	48.17	0.13	0.07	0.02	0.01	0.06	0.39
유행성이하선염	3.48	1.59	3.14	3.60	3.83	4.27	9.28
풍진	0.27	0.05	0.02	0.03	0.02	0.04	0.07
일본뇌염	0.00	0.01	0.00	0.00	0.01	0.00	0.01
수두	-	-	-	-	3.97	22.56	41.29
말라리아	5.34	3.74	2.42	1.78	2.81	4.20	4.53
성홍열	0.10	0.11	0.22	0.16	0.18	0.22	0.30
수막구균성수막염	0.02	0.06	0.08	0.02	0.01	0.02	0.01
레지오넬라증	0.00	0.00	0.01	0.02	0.01	0.04	0.04
비브리오패혈증	0.09	0.12	0.17	0.12	0.12	0.18	0.12
발진열	0.03	0.02	0.02	0.04	0.07	0.15	0.12
쓰쓰가무시증	5.51	3.99	2.93	9.69	13.93	13.26	12.26
렙토스파라증	0.28	0.25	0.25	0.29	0.17	0.24	0.42
브루셀라증	0.00	0.00	0.03	0.10	0.32	0.44	0.21
공수병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신증후군출혈열	0.67	0.70	0.81	0.88	0.86	0.86	0.92
당기열	0.01	0.02	0.03	0.03	0.07	0.07	0.20
리슈마니아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바베시아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크립토스포리디움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혈흡충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보툴리눔독소증	-	0.00	0.01	0.01	0.00	0.00	0.00
규열	-	-	-	-	-	0.01	0.02

- 1)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과 표본감시체계 및 실험실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
- 2)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 3) 환자발생 보고가 없는 페스트,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탄저, 황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아프리카수면병, 요우스, 핀타,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제외
- 4) 0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
 - : 신고·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또는 광역시 승격이전)
- 5) 발생률 : 연간 보고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인구 10만명당)로 나눈 값

나. 표본감시를 통한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운영

가

(18)

2,500

(VRSA), - (CJD)

〈표 2-11-17〉 표본감시기관 선정기준

(단위 : 환자수, 명)

전염병명		선정기준
바이러스성 간염	B형간염(급성B형간염, 주산기 B형간염), A형, C형 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
	산모B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
성병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병원(비뇨기과, 산부인과, 피부과) • 보건소+민간의료기관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은 보건소만 지정 ※ 가능한 한 민간의료기관은 비뇨기과, 피부과 중 1개, 산부인과 1개로 총 2개소를 지정함
인플루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만명 미만 : 지정하지 않음 - 인구 3만~5만 미만 : 보건소만 지정 - 인구 5만 이상~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보건소+민간의료기관 1개소, 인구 10만 증가 시 민간 의료기관 1개소 추가) ※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지정함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생충학교실이 설치된 의과대학
크로이츠펠트-야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신경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

〈표 2-11-18〉 연도별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수

(2007.12 현재)

표 본 감 시 전 염 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수
바이러스성간염	873
산모B형간염	1,007

- 1) 기관당보고수는 당해년도 전염병 환자발생 총 신고수를 연간 환자발생을 1번 이상 신고한 전체 기관수로 나눈 것임
- 2)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 : 기간 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 기간 내 총 진료환자 수 × 1,000
- 3) 2006.11 VRSA 진단기준이 개정(VRSA: 반코마이신최소억제농도 16 $\mu\text{g}/\text{mL}$ 이상, VISA: 반코마이신최소억제농도 4 $\mu\text{g}/\text{mL}$ 에서 8 $\mu\text{g}/\text{mL}$)됨에 따라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상구균(VISA)감염증 사례가 보고되었음
- 4) 2001년 CJD 감시체계 구축 이후 현재까지 국내 vCJD 환자 보고는 없었음

(1)

가

(2)

100

다. 자발적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가

(1) 학교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 249

- 139, 70, 2, 2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9	11	19	11	10	9	7	8	19	19	14	3	23	24	40	27	5

- :

- : (),

(2) 안과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 80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0	16	7	5	3	4	3	3	11	4	3	3	4	4	3	3	4

(3) 소아전염병감시체계 운영

: 188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8	45	25	11	8	7	7	8	30	4	9	6	8	2	8	5	5

(2):

〈표 2-11-20〉 전염병발생 정보자료 제공현황

순서	명 칭	발행 주기	부수	주 요 배 부 처
1	2006 전염병감시연보	연1회	500	관련기관, 시·도, 시·군·구, 의과대학, 관련 학회
2	소아전염병발생연보	연1회	220	표본의료기관,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시·도
3	학교전염병발생연보	연1회	470	학교, 교육청, 시·도
4	안과전염병발생연보	연1회	120	표본의료기관, 대한안과개원의협의회, 시·도
5	전염병보고및정보관리지침	연1회	1,000	관련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6	인플루엔자표본감시안내	비정기적	200	인플루엔자 신규지정 표본감시의료기관

순서	명 칭	발행 주기	부수	주 요 배 부 처
7	바이러스성간염 표본감시안내	비정기적	200	바이러스성 간염 신규지정 표본감시의료기관
8	성병 표본감시안내	비정기적	200	성병 신규지정 표본감시의료기관
9	VRSA뉴스레터	연1회	500	표본의료기관, 관련단체(학회)
10	학교전염병학기보고서	연1회	500	표본참여학교, 시·도, 시·도교육청
11	인플루엔자월보	월1회	전자 매체	홈페이지 게재
12	CDMR(감염병발생정보)	월1회	3,400	관련기관, 시·도, 시·군·구,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병원, 의원), 관련협회
13	표본감시월보	월1회	전자 매체	시·도 보건과, 보건위생과, 보건위생정책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발송)
14	CDWR(감염병발생주보)	월1회	2,000	관련기관, 시·도, 시·군·구,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병원, 의원), 의과대학, 관련협회
		주1회	전자 매체	홈페이지 게재
15	소아전염병발생주보	주1회	"	홈페이지 게재, 회원에게 전자메일 발송
16	학교전염병발생주보	주1회	"	"
17	안과전염병발생주보	주1회	"	"
18	CJD뉴스레터	연1회	1,000	표본감시의료기관, 관련학회(신경과)

III 예방접종 관리

1. 2007

가

가.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행

1996 ()
 () , 2007 171 ()
 11,211 .

〈표 2-11-21〉 최근 3년간 주요 접종별 보고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보건소	병·의원	보건소	병·의원	보건소	병·의원
BCG	118,965	225,429	108,607	229,653	107,494	246,279
B형간염	863,163	857,446	892,942	865,258	954,459	925,392
DTaP	1,000,741	640,449	1,105,646	571,802	1,263,045	546,956
폴리오	749,040	501,114	946,811	449,117	1,075,861	427,177
MMR	584,850	283,083	557,340	224,182	613,874	231,224
일본뇌염	1,179,323	373,209	1,114,028	302,563	1,252,723	336,512
수두	91,146	123,643	184,367	113,997	227,581	106,753
Td	49,771	41,193	257,962	52,093	298,085	47,369

※ 병·의원 보고실적은 실제 접종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출처 : 2005년 및 2006년 실적(2007년 7월호 예방접종월간소식지), 2007년 실적(2007년 12월호 예방접종월간소식지)

나. 예방접종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가 . .
 05 06 , (06.9)
 (06.12), (07.10)

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확립

(15)

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1) 홍역 퇴치사업

1965년 5월 1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된 홍역 퇴치사업(2012년 11월 30일까지)은 2007년 11월 30일까지 18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표 2-11-22〉 연도별 확인 사업 실적

연도	전체 학생수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자				미제출자	제출률	접종률
		계	접종자수	접종제외자				
				접종금기	홍역없음			
2005	623,204	622,103	621,615	488	-	1,101	99.8%	99.7%
2006	601,965	601,349	600,853	496	-	616	99.9%	99.8%
2007	606,314	606,084	605,649	435	-	231	99.9%	99.9%

※ 접종률 = 접종자수/전체학생 수×100

※ 2005년부터 과거 홍역을 앓았던 경우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킴

(2)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시되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실시율은 30%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실시율(3.4%)보다 높았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실시율은 2002년 7월 3.4%에서 2007년 7월 30%로 증가하였다.

〈표 2-11-23〉 B형간염 수직감염 신규 등록자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직감염 노출 신생아수(명)	16,186	14,894	15,351	14,448
신규 등록자수(명)	15,591	14,488	15,057	16,503
등록률(%)	96%	97%	98%	100%

※ B형간염 수직감염 노출된 신생아 추정수 = 출생아수 × 0.034(표면항원양성률)

* 2006년 출생아수를 적용한 미확정 통계임

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가

가

가

2001 () 2005

, 1995 「 가 」

2007 21 13

〈표 2-11-24〉 최근 3년간 백신종류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건수

접종명 연도	계	비 씨 지	B 형 간염	디티 에이피	폴 리 오	디티 에이피 /기타	티 디	수 두	엠 엠 알	엠 알	일본 뇌염	일본 뇌염/ 기타	신 증후군 출혈열	인플루 엔자	장티 푸스	기 타
2005	364	239	7	27	1	15	1	-	1	-	11		1	56	1	4
2006	635	400	14	38	4	48	3	5	17	-	30	4	2	65	-	5
2007	515	262	13	20	-	43	-	9	16	-	41	5	3	53	2	48

〈표 2-11-25〉 최근 3년간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현황

연 도 별	신 고 (건)	보 상 신 청 (건)			
		소 계	보 상	기 각	보 류
2005	364	18	13	5	-
2006	635	24	15	9	-
2007	515	21	13	8	-

바. 예방접종 등록사업

2002

2007 55 DB

〈표 2-11-26〉 주요 예방접종의 전산등록률 현황

구 분	2006			2007		
	보고실적 ¹⁾	등록실적 ²⁾	전산 등록률(%) ³⁾	보고실적 ¹⁾	등록실적 ²⁾	전산 등록률(%) ³⁾
BCG	338,260	129,838	38.4	353,773	161,933	45.8
B형간염	1,758,200	952,541	54.2	1,879,851	1,124,874	59.8
DTaP	1,677,448	1,144,967	68.3	1,810,001	1,350,340	74.6
폴리오	1,395,928	960,218	68.8	1,503,038	1,140,530	75.9
MMR	781,522	563,248	72.1	845,098	624,998	74.0
일본뇌염	1,416,591	1,088,001	76.8	1,589,235	1,290,411	81.2
수 두	298,364	196,570	65.9	334,334	243,729	72.9
Td	310,055	239,114	77.1	345,454	296,287	85.8

- 1) 보고실적 : 매월 서면 또는 웹으로 보고되는 예방접종실적
- 2) 등록실적 : 예방접종등록시스템으로 등록되는 예방접종기록
- 3) 전산등록률 :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등록실적
- 4) 자료출처 : 2006년 실적(2007년 7월호 예방접종월간소식지), 2007년 실적(2007년 12월호 예방접종월간소식지)

2. 2008

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

가

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관리방법 개선

가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및 안전관리 강화

가

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1) 홍역

5 (2001 ~2005) (2006 11)

(2) B형간염 수직감염

B 5% , B ^B 가

마. 예방접종 등록사업 조기 정착 여건 조성

IV 결핵 관리

1.

4000~2000 , 1882 Koch ' Tubercle bacillus ' 1944 1960

1960 가
 , , 가 .
 2000 가 가
 OECD 가 가
 가 「 2030 」 .

〈표 2-11-27〉 결핵유병률(Tuberculosis Prevalence Rate) 추이

연도 및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인구 (천명)	전연령	29,160	31,435	35,281	37,449	41,055	42,869	44,851
	5세이상	24,222	26,625	30,740	33,946	36,970	39,590	41,535
연간결핵감염위험률(%)		5.3	3.9	2.3	1.8			

주) 자료원 : 제7차 전국결핵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 대한결핵협회, 1996)

2. 2007

가. BCG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

BCG BCG
 , BCG
 77% 가 가 12~15

가 BCG
1 1
BCG 가
BCG 2006
(3,000) , KGMP 가

〈표 2-11-28〉 BCG 신생아 예방접종 실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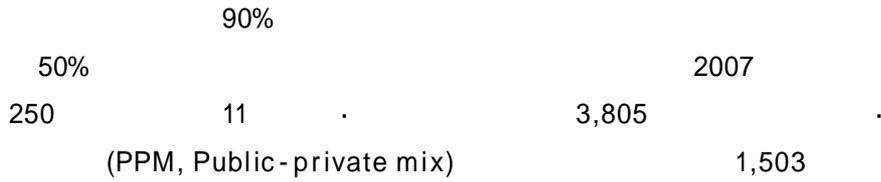
연도별	대상 인구 ¹ (A)	계(B)	접 종 실 적		B/A ²
			보건소	병·의원	
2002	470,251	377,731	100,965(26.7)	276,766(73.3)	80.3
2003	490,488	364,994	97,358(26.7)	267,636(73.4)	74.4
2004	451,219	350,445	102,780(29.3)	247,665(70.7)	77.7
2005	413,839	324,070	94,679(29.2)	229,391(70.8)	78.3
2006	424,737	321,744	89,317(27.8)	232,427(72.3)	75.8
2007	449,027	344,318	98,143(28.5)	246,175(71.5)	76.7

주) 1. 대상인구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0세 인구
2. 대상인구별 접종실적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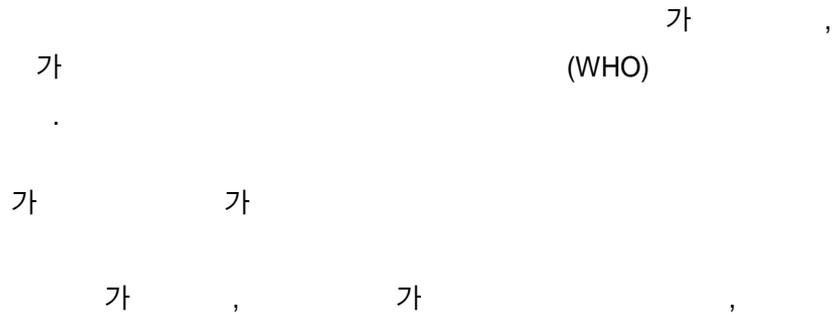
나. 결핵환자 발견 사업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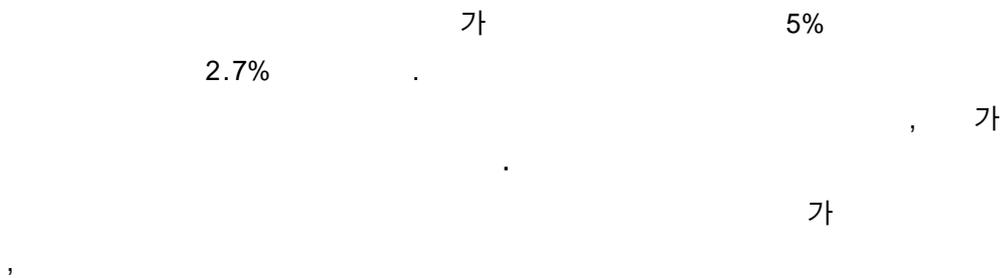
다. 효율적인 결핵환자 관리를 통한 치유율 제고



라. 국제협력 및 교류를 통한 국가결핵관리의 국제적 위상제고



마.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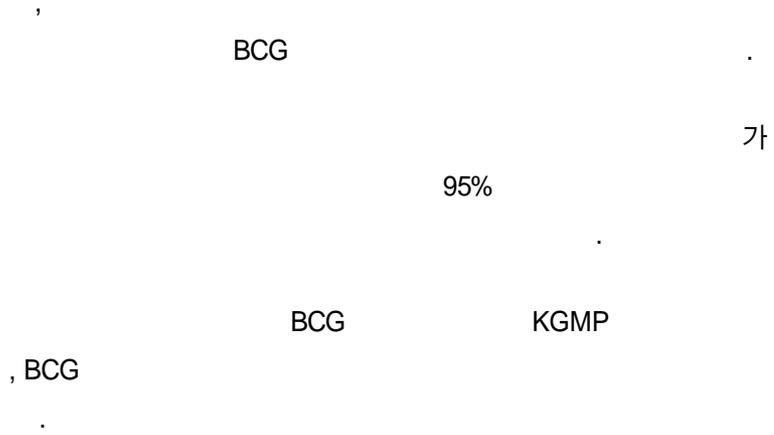


3.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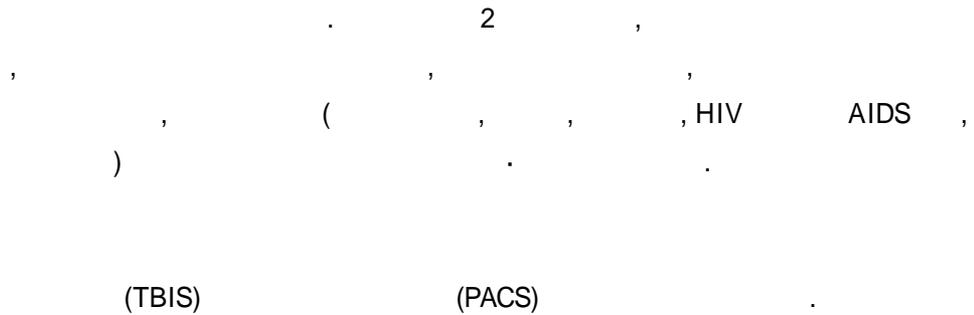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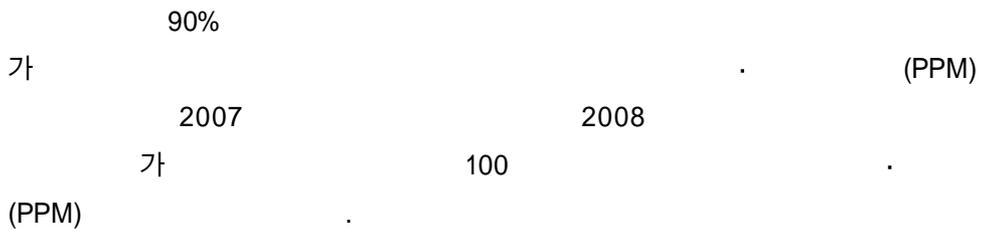
가. BCG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연구 확대



나.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활동 강화



다.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통한 치유율 향상



3 .

()

라.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가

가 /

CD

「 」

, 가

마.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가

가

가

V HIV/AIDS 및 성병 관리

1. HIV/AIDS

2007	744	HIV	2007	
5,323	,	713	980	4,343

2007 2006
 (750) 0.8% 744 5,323 가 4,861
 (91.3%) 462 (8.7%) 10.5 가 4,545
 2,728 (60.0%), 1,763
 (38.8%) ,

가

가

〈표 2-11-29〉 HIV/AIDS 감염인(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85~'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감염인 (여자)	5,323 (462)	517 (64)	105 (12)	124 (17)	129 (18)	186 (26)	219 (25)	327 (35)	398 (35)	534 (32)	610 (53)	680 (40)	750 (62)	744 (43)
감염인증 환 자	713	41	22	33	35	34	32	42	88	62	79	67	75	103
사망자 (환자)	980 (683)	76 (37)	33 (25)	36 (30)	46 (37)	43 (34)	52 (32)	58 (42)	76 (58)	96 (63)	114 (81)	91 (65)	109 (76)	150 (103)

※본 통계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수치 변경될 수 있음.

가. 2007년도 사업실적

(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가

가

가 가

2007 ^ HEAD TO HEART _
 2006 TV
 2007
 2005 ^ _ 2007 3
 Opinion leader
 2007
 435

〈표 2-11-30〉 에이즈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률 (단위 : %)

구 분	연 도	2003	2005	2007
에이즈에 대한 편견·차별에 긍정적 태도 (자녀가 같은 학교 등교 및 옆자리 착석 허용)	성 인	20.6	24	50.4
	청 소 년	17.3	19.8	-
처음만난 사람과 성관계시 콘돔 사용률 향상	동성애자	23.7	42.6	45.8
	일반 성인	10.8	23.0	33.7
동성애자 고정파트너와 성관계시 항상 콘돔사용	-	-	34.2	35.8

(2) 검사 및 상담활성화

2006 2007
 2 (VCT), 11 (VCT 4), 2 (VCT)

〈표 2-11-32〉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 및 외국인 에이즈 예방지원사업 개요

센터명	사업내용
에이즈 감염인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인 종합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면접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 ○ 감염인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즈 정보, 사이버 교육, 상담원 양성교육 - 에이즈 예방교육강사 양성교육, 전문가화 활동가 양성, 정보화 기초교육 ○ 감염인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실 및 건강교실 운영, 치과진료 지원 ○ 감염인 자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복지 및 간병 지원, 감염인 취업 지원, 감염인 자조모임 지원 ○ 기관 홍보
외국인 에이즈예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관 홍보 및 에이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교육차량 운영 ○ 외국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가별 외국인 대상 동료 교육자 양성,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 상담 및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내방상담, 현장상담, HIV 검사, 검사전후 상담 ○ 취약감염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인 치료 지원, 감염인 숙식 및 출국 지원

나. 향후 추진 계획

AIDS
가

2.

가. 개요

가

가

()

() 가 (1999.8)

『 (2004.9)

가

가

가

나. 추진실적

(1) 성병건강진단 실적

『 8 『 3 5 ()

< 2-11-33>.

2003 156,444

, 2004 129,309 , 2005 105,447 , 2006 117,242 , 2007 96,662

2004

< 2-11-34>.

2003 1.67%, 2004 1.56%, 2005 1.32%, 2006 1.09%,
 2007 1.05% ,
 . 2003 82%, 2004 80%,
 2005 83%, 2006 85%, 2007 84% 가 < 2-11-35>.

〈표 2-11-33〉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검진주기

관리구분	대 상	매독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²
성병정기 검진대상자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 ¹	1회/6월	1회/6월
	유형접객원	1회/3월	1회/1월
	안마시술소	1회/3월	1회/3월
	기타성병매개우려자	1회/3월	1회/1주

주) 1.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기존의 다방의 여자 종업원을 의미함.
 2. 그 밖의 성병검사 중 기타성병매개우려자의 경우 클라미디아감염증검사는 1회/3주로 함.

〈표 2-11-34〉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업종별 등록인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	27,390	26,298	23,919	18,581	15,364	12,515
유형접객원	116,179	122,308	101,046	83,666	98,874	81,720
안마시술소	1,857	1,916	1,712	1,380	1,090	826
기타성병매개우려자	5,334	5,922	2,632	1,820	1,914	1,601
전 체	150,760	156,444	129,309	105,447	117,242	96,662

§ : 2007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표 2-11-35〉 성병건강진단대상자 검진실적 및 치료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록자(명)	150,760	156,444	129,309	105,447	117,242	96,662
검진자(건)	2,526,068	2,647,320	2,506,714	1,740,546	1,598,582	1,423,042
감염자(건)	44,585	44,261	39,096	23,009	17,357	14,985
치료자(건)	35,547	36,169	31,273	19,054	14,763	12,656
치료율(%)	79.73	81.72	79.99	82.81	85.06	84.46
양성률(%)	1.76	1.67	1.56	1.32	1.09	1.05

§ : 2007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VI 한센병 관리

1.

가 가 (BC2000) Kushtha
 (滌者:BC2697)

2

(1214 ~1259) (惡瘡)
 (大風癩)가

1907 가 「 」

1916 100 .

1961 .

가 .

() ,

2. 2007

가. 효율적인 한센병관리사업을 통한 예방 및 치료효과 제고

251 17 20 가 ,

707 56

12 .

, 1989

14,684

2006 274 (1.8%) , 2007 363 (2.5%) 가
()

〈표 2-11-36〉 연령별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0~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한센사업대상자수	14,684	2	12	121	751	2,422	11,376
구 성 비	100%	0.01%	0.08%	0.82%	5.11%	16.49%	77.5%

※ 주 : 한센사업대상자 중 남자 8,035(54.7%)명, 여자 6,649(45.3%)명임

나.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6 691 89
1,760
4 가
(60 , 55)

894

다. 한센병재활지원을 통한 자립보호

2007 110 , 140 , 34 , 151
24 , 58 , 124 , 81 ,
5 100

라.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3. 2008

가.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활동 지속 실시

21 가 , 가 .
 , 가 가 가
 2008 < 2-11-37>
 748,908

〈표 2-11-37〉 2008년도 한센병 관리 주요사업 목표 (2007.12.31 기준, 단위 : 명)

사 업 명	목 표	비 고
신환자발견사업	748,908명	한센병 환자 조기발견사업
한센사업대상자지원	14,684명	보건소 및 한센전문진료기관
한센장애인등 입원보호	694명	6개 입원보호시설
한센양로자 생계지원	1,000명	89개 정착농원 및 재가자

나. 한센인에 대한 재활 및 복지사업 지원 강화

2007 , 5,137 , 1,335

다. 한센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연구사업 강화

가

가 ,

()

「 가 」

()

VII 검역 관리

1.

가. 검역의 목적

나. 검역대상 전염병

「4」 “ ” 2 「 가 가 「 4 가 가 「 가 (SARS) ”4 「 가

다. 국립검역소현황

13 11 가

〈표 2-11-38〉 전국 검역소 현황

(2007.12.31 현재)

구 분	계	인천공항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	
검역소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 소	11	1	1	1	1	-	1	-	-	2	-	1	2	1	
인 원	331	71	49	31	20	14	23	12	15	20	22	16	25	13	
검 역 구 역	51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서울공항, 도라산	부산항, 수영만 김천항, 다대포항, 신 항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군산항, 장항항, 보령항, 대산항, 태안항, 당진항	광주공항 목포항, 원도항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마산항, 진해항	김해공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 미포항	대구공항, 포항항	양양공항, 삼척항, 동해항, 목호항, 옥계항, 속초항, 고 상	제주공항, 제주항,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포항	
검역실적	항공기	127,332	108,221	-	-	-	677	-	-	10,725	6	1	1,615	9	6,079
	선박	72,118	-	25,188	16,215	3,328	1,730	7,117	1,591	-	2,498	8,629	3,172	2,138	512
	차량	89,597	69,581	-	-	-	-	-	-	-	-	-	-	20,016	-

라. 국립검역소의 주요업무

(1) 검역

(2)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O-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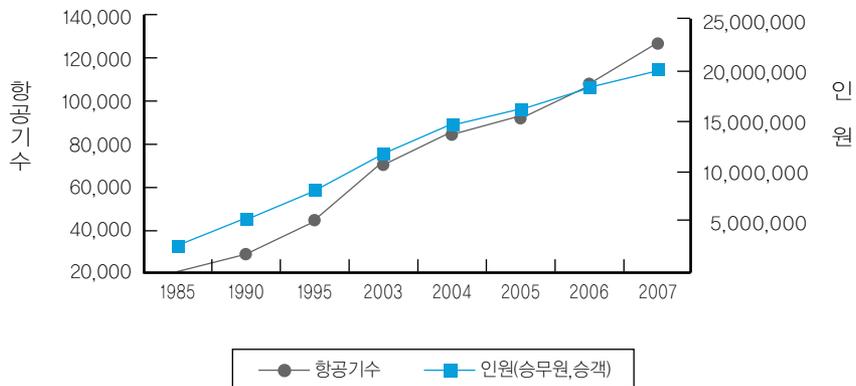
(3) 예방접종

마. 검역실적

(1) 항공기검역

1985	가	2007	가	13,907	,	2,382,410
가	가	가	가	127,332	,	20,162,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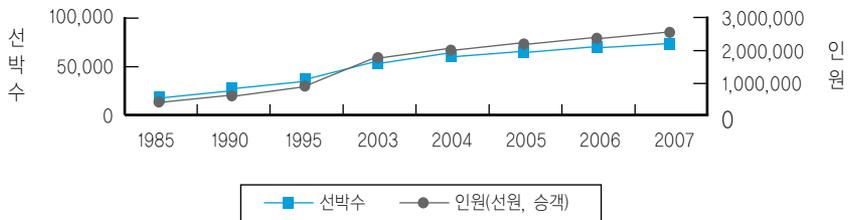
[그림 2-11-3] 항공기 검역현황



(2) 선박검역

1985 72,118 , 15,907 , 2,563,046 , 367,900 , 5 , 7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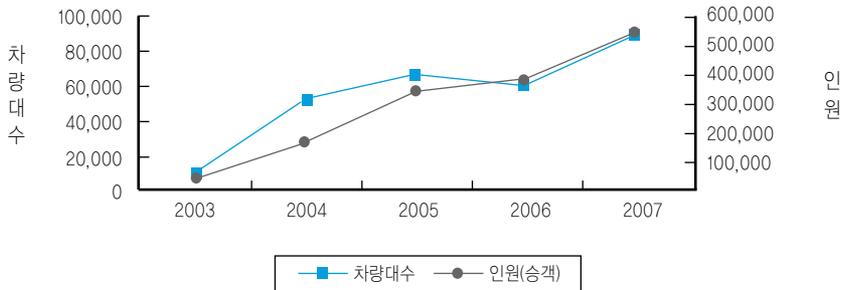
[그림 2-11-4] 선박 검역현황



(3) 육로검역

2003 2 , 2007 89,597 , 532,610 .

[그림 2-11-5] 육로 검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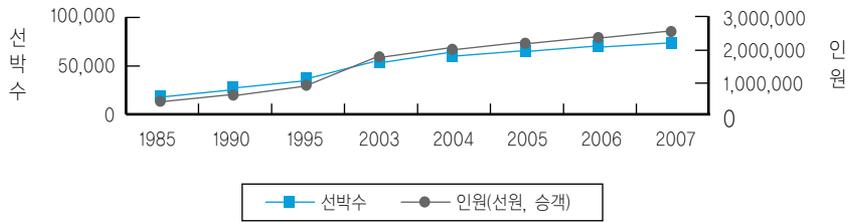


사. 예방접종 실적

가 2,500 (1) , 15,000 (1) , 가
1,000 .
1995 12,621 2007 4,382 ,
(30~40%)가 1990 (WHO)

가 , 1995 4,000 17,981 가

[그림 2-11-6] 예방접종 현황



2.

가. 검역지소 신설 및 인력보강

(07. 12)

가 , ,

나. 검역장비 현대화

가 , ,

2010

10

다. 검역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EDI

,

」 , ()

(WHO, IHR2005)

가 , 가
가

라. 해외발생전염병의 정보수집 및 제공

WHO , CDC
(http://travelinfo.cdc.go.kr) (http://cdc.go.kr), 가

마. 검역구역내 전염병병원체매개체 조사

06 ^
, 2007 4 10 7
2008

제 4 절

공중위생 관리*

I 공중위생관리법 연혁

1. [1986.5.10 3822]
4
3 가

2. [1989.3.31 4106]

3. [1990.1.13 4217]
가

*집필자 : 생활위생과장 유수생

4. [1991.3.8 4339]

가.

5. [1993.12.27 4636]

가

가

6. [1994.8.3 4781]

7. [1995.1.5 4908]

8. [1995.1.5 4914]

가

9. [1995.12.29 5100]

가

10. [1997.12.13 5453]

1998. 1. 1

11. [1999.1.21 5654]

12. [1999.2.8 5839]

13. [2000.1.12 6155]

14. [2001.1.29 6400]

가

2

15. [2002.1.19 6616]

가

가

16. [2002.8.26 6726]

가

가 가

17. [2004.1.29 7147]

18. [2005.3.31 7455]

19. [2006.9.27 8003]

2

20. [2007.5.25 8488]

가「 ,1 「 2 ,「 」

21. [2007.12.14 8689]

「공중위생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 가

II 공중위생업소 현황

1.

2
 3
 (1) (6) : , , , , , ,
 (2) (6) : , , , , , ,
 (3) (2) : ,
 - : , ,
 - : , 가 , 가 , , (,)
 (4) : .

2.

31,913 , 9,146 , 24,308 ,
 81,781 , 18 9 .



가

.(07.4)

가

나. 위생용품 규격기준 고시 개정

^

301

28 가 , 3 “ 8

” 2 , 47

다. 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설치관련 조치

VOCs() ,

가 2005.11.1

1 2006.11.2 , 가

라. 전통 솥가마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가 , 가 가 .

가 ,

가
,
(214 27)
가
가

2. .

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도구 개발 및 평가 실시

. 가 가
2 가 , 가
, 가 ,
, 가
가

나. 합리적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가
,
가 .

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자 및 대국민 홍보

가 ,
,
.

라. 이·미용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 이·미용교육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이·미용교육제도의 현황
- 이·미용교육제도의 개선방안

마. 뷰티산업 육성

- 뷰티산업의 현황
- 뷰티산업의 육성 방안

제 5 절

만성·퇴행성 질환(고혈압 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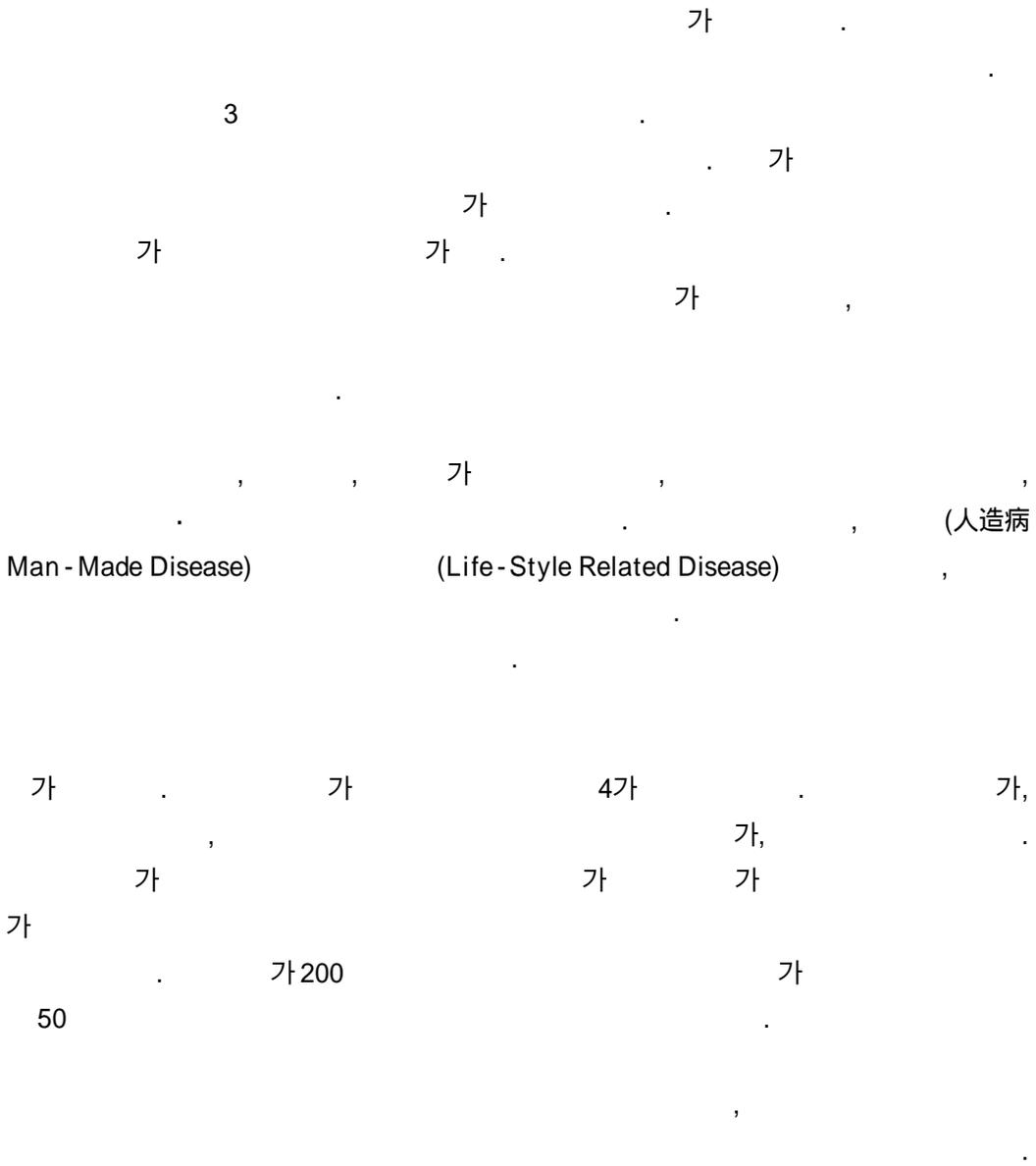
I 개 요

가 . 2006 . , , 27.3% , 27.0% , 가 . ,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

*집필자 : 질병정책과장 정은경

II 만성질환의 특성 및 현황

1.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뇌졸중 현황

(2006) 10 61.4 30,036 .30
 1.79%, 1.86%, 1.73% , 70
 가 , 60-67 가

〈표 2-11-41〉 성별·연령별 뇌졸중 연간 의사진단 유병률¹⁾

구 분	남 (인구1,000명당)	여 (인구1,000명당)	계 (인구1,000명당)
전체(30세이상)	1.86	1.76	1.79
30~39세	0.16	0.05	0.10
40~49세	0.50	0.54	0.52
50~59세	2.59	1.78	2.19
60~69세	4.76	5.32	5.06
70세이상	8.39	4.52	5.94

※ 주 : 1) 면접조사에서 “지난 1년간 3개월이상 뇌졸중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율”

※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보건복지가족부

나. 허혈성 심장질환 현황

(2006) 10 29.2 , 14,276 .
 30 1.92%,
 1.92%, 2.16% , 가 .

〈표 2-11-42〉 성별·연령별 허혈성 심질환 연간 의사진단 유병률¹⁾

구 분	남 (인구1,000명당)	여 (인구1,000명당)	계 (인구1,000명당)
전체(30세이상)	1.92	2.16	1.92
30~39세	0.22	0.20	0.21
40~49세	0.52	0.47	0.49
50~59세	2.03	2.50	2.26
60~69세	4.67	5.84	5.30
70세이상	6.83	6.33	6.51

※ 주 : 1) 면접조사에서 “지난 1년간 3개월이상 심근경색 및 협심증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율”

※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보건복지가족부

다. 고혈압 현황

(2006) 10 9.5 4,539 . 30
 27.9% , 가 30.2% 25.6% . 60
 가 가 70 , 가 .

〈표 2-11-43〉 성별·연령별 고혈압 유병률¹⁾

구 분	남(%)	여(%)	계(%)
전체(30세이상)	30.2	25.6	27.9
30~39세	14.2	3.1	8.3
40~49세	27.1	11.5	19.4
50~59세	42.9	38.2	40.6
60~69세	52.5	54.9	53.8
70세이상	43.6	62.3	55.4

※ 주 : 1) 수축기혈압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이상 또는 혈압강화제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

※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보건복지가족부

라. 당뇨병 현황

(2006) 10 23.7 , 11,600 . 30
 8.1% , 가 9.0% 7.2% .
 50 가 가 , 가 .

〈표 2-11-44〉 성별·연령별 당뇨병 유병률¹⁾

구 분	남(%)	여(%)	계(%)
전체(30세이상)	9.0	7.2	8.1
30~39세	1.2	1.1	1.1
40~49세	9.0	4.9	7.0
50~59세	16.6	8.1	12.3
60~69세	15.4	15.7	15.6
70세이상	14.2	17.4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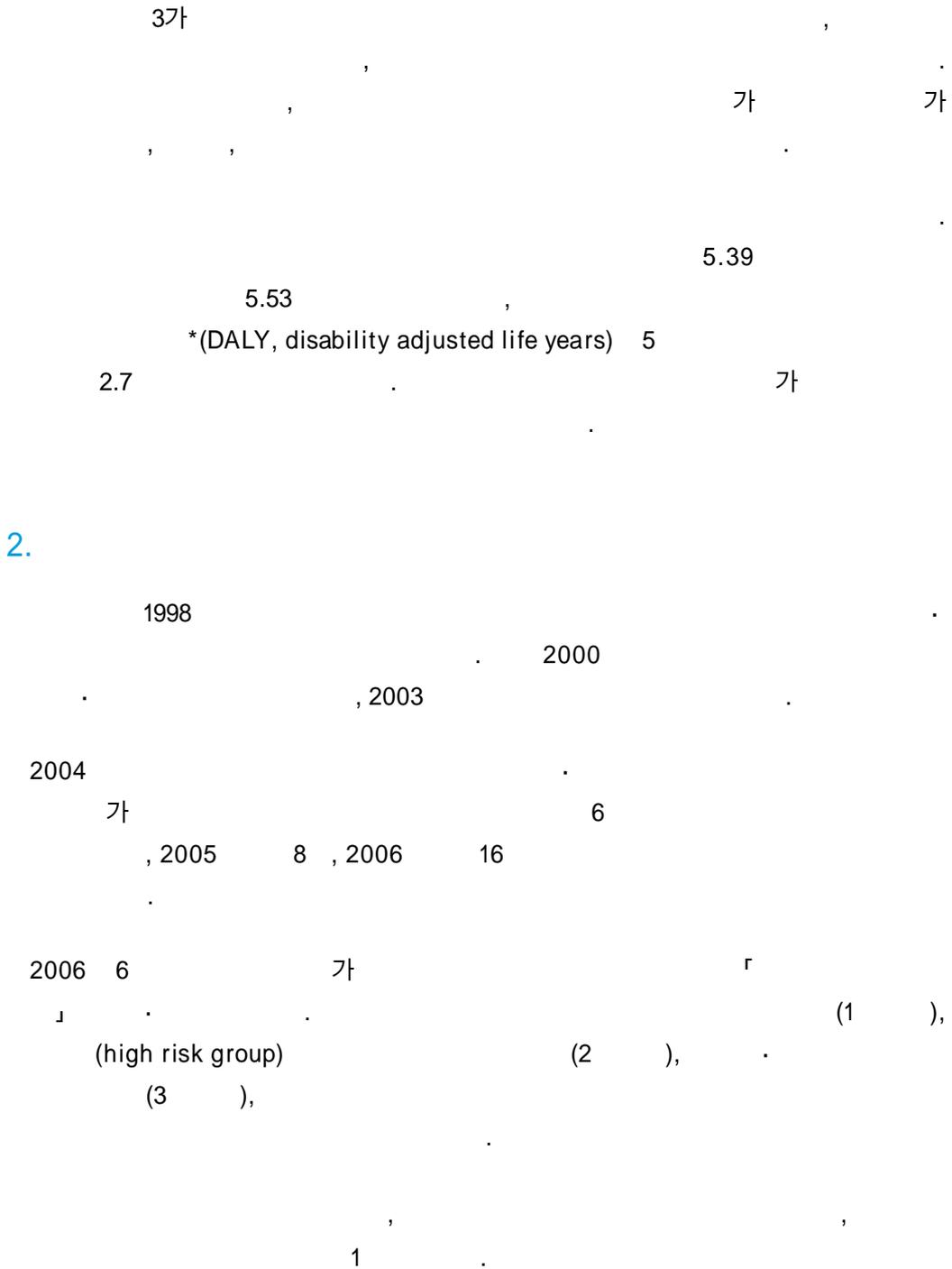
※ 주 : 1) 당뇨병 유병률 : 공복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한 사람의 비율

※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보건복지가족부

III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1.

2006 10 1 가 2, 3, 4, 9 가 , , ,
 . , , ,
 가 27.3% 1 27.0% .
 1 .



*장애보정 생존년수 : 사망률과 이환율을 함께 고려하는 질병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서 기대수명과 장애정도를 반영한 손실년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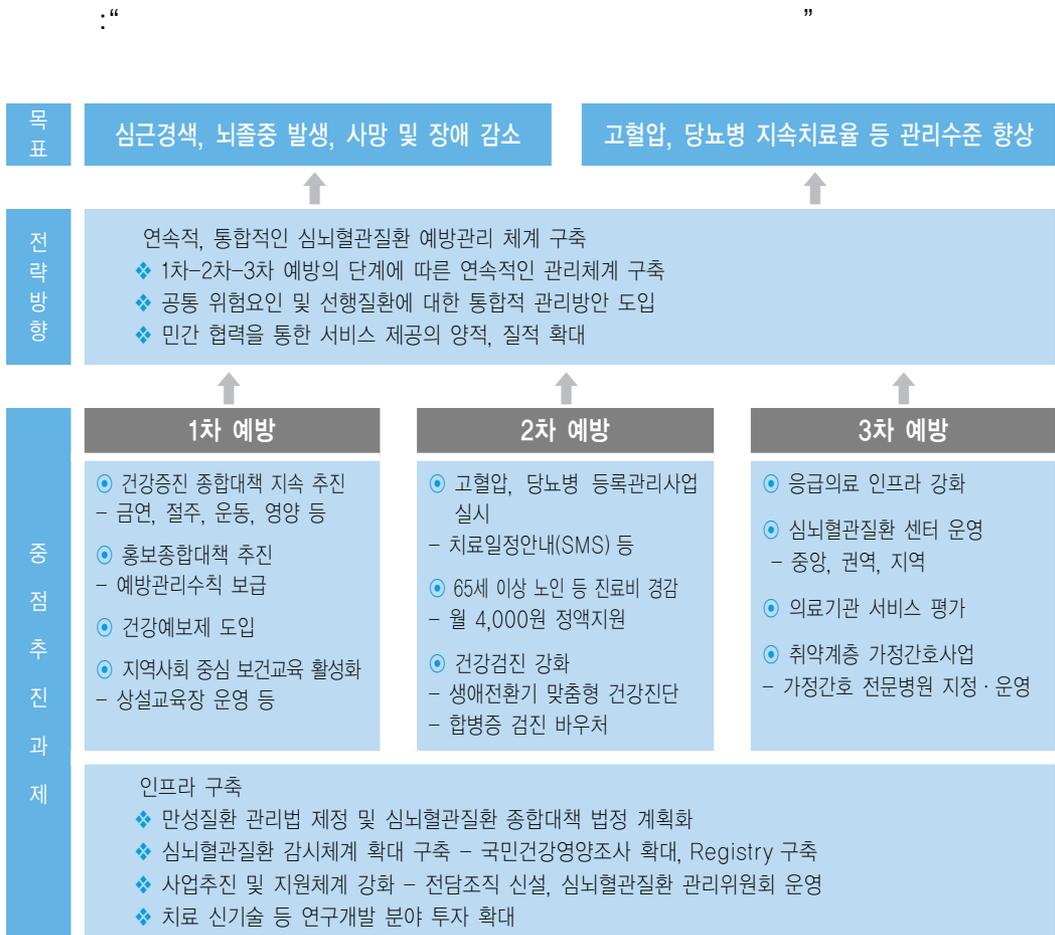
가

2

가

3

〈표 2-11-45〉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개요



3.

07

1 TV, , TV
 , 8

(2 , 200)

2007.9
 () , 4 375 (47%),
 850 (72%) 21,841 (15,722 , 6,119)
 가가
 (9) (1)
 가
 (23)

IV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1.

가 . 가 . 가 .

가 2000 1,451

109 “ ” 2001

(, , ,)

, , , ,

2002 , 2003

, 2004

가 2005 , , 가 71 ,

2006 , 가 89 .

〈표 2-11-46〉 연도별 의료비 지원현황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상질환(종)	4	6	8	11	71	89	111
지원대상(명)	8,693	11,469	13,056	14,087	16,756	18,886	21,144
예 산(억원)	226	220	263	285	353	390	391

※ 예산은 국고지원금이며, 지방비 50%는 별도 부담

2. 2007

2007 , 22 가 111 .

21,000 391 ,

3 5 , 20 30

가 , .

, .

〈표 2-11-47〉 의료비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대 상 질 환	지원기준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111개 질환	요양급여
간 병 비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무코다당증, 부신백질 영양장애 환자 중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변병 장애 1급 등록자	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무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 장애 환자	월평균 10~80만원
장애 보장구 구입비	• 3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3.

2008

가

제 6 절

암질환 관리*

I 개요

가 가

. 2006
27.0%(65,909) 1 .

10 1996 110.1 2006 134.8 가
, , 가,

가 2006
2 2 .

.
.

. 1 , .
2 ,
3 가

*집필자 : 암정책과장 이민원

〈표 2-11-48〉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암 증별 사망률 변화

(단위 : 인구 10만명당)

구 분	모든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암 ¹⁾	전립선암 ²⁾	식도암	
전체	1996	110.1	19.4	25.5	21.4	6.3	4.4	6.2	1.3	3.0
	2006	134.8	28.8	22.0	22.4	12.8	7.1	5.1	4.1	3.0
	10년증감	24.7	9.4	-3.5	1.0	6.5	2.7	-1.1	2.8	0.0
남자	1996	140.4	28.7	32.0	32.6	6.5	5.1	-	1.3	5.3
	2006	171.7	42.8	28.9	33.9	14.1	7.7	-	4.1	5.5
	10년증감	31.3	14.1	-3.1	1.3	7.6	2.6	-	2.8	0.2
여자	1996	79.4	10.0	18.9	10.0	6.1	3.6	6.2	-	0.7
	2006	97.7	14.8	15.1	10.9	11.6	6.4	5.1	-	0.5
	10년증감	18.3	4.8	-3.8	0.9	5.5	2.8	-1.1	-	-0.2

※ 주 : 1) 여자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2) 남자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망원인통계연보, 2007

1996 10 가
 , 2000 2003
 ^ - .
 1999 가 2004
 5 (. . . .) 가 .

1. 가

가가

(2003.5.29), 2004 3 ^ _ (3.5) ^ _ (3.29)

(2007.4.28) (2006.10.28) 2007 4 ^ _

^ _ 가

가

가

가

가

가

^ _ 가

15

가

가

가

가,

가

가

, , , ,
· ,
, 가 ,

가
가

가
가

2.

1,100 가 670
(Globocan, 2002), 13 가 6 6
(WHO)
가 가 , 가가 ,
가 가

2006.10 10 .

가

가

가. 대국민 암 예방 교육·홍보전략 마련

TV , ,

2005

TV

2007

1

2005

가

가

(www.cancer.go.kr)

(1577 - 8899)

2007 50

DB

2015

200

〈표 2-11-50〉 암 DB 구축현황

연 도	구축 암종수		암 종 명
	해당년도	누 적	
'03년	17개	17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췌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뇌종양, 후두암, 소아백혈병, 소아림프종, 신경모세포종, 율름종양
'04년	5개	22개	구강암, 담낭, 담도암, 맥락막흑색종, 소장암, 인두암
'05년	7개	29개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청신경초종, 척수암, 뇌하수체선종, 전이성뇌종양, 신경교종
'06년	11개	40개	소아뇌종양,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균상식육종, 난소상피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신우요관암, 외음부암
'07년	10개	50개	악성림프종, 자궁내막암, 임신용모질환, 고환암, 위림프종, 비소세포폐암, 식도암, 소세포폐암, 자궁육종, 위장관간질종양

, 2006 10 가

가

10가

10

2007 3 10

, 2007 3 21

, 1

‘ , ‘ ; , 가

‘ , 가

가

가

나. 암 예방 교육·홍보사업 담당인력 교육

, 가

2001

가

3.

1980

가

. 1978

가

“ ”

가

1980

47

가

2002

176

가 1997
(Population Based)
가 8 (. . .)
2001 1
)
2002 1 116,034 ,
65,020 (56.0%), 51,014 (44.0%) 1.27 : 1
, , , , , 6
, 가 DB 1993 2002
(800,704) 2004
가 774,950(98.6%) 5 ,
5 1993~1997 41.4%, 1998 - 2002 45.5%
. 1998~2002 5 49.4%, 13.6%, 14.4%,
60.2%, 84.6%, 80.1% .

〈표 2-11-51〉 우리나라 호발암의 등록 건수 (단위 : 건, %)

전 체		남 자		여 자	
암 종류	등록 수	암 종류	등록 수	암 종류	등록 수
위 암	22,920(19.8)	위 암	15,063(23.2)	유 방 암	7,928(15.5)
폐 암	14,885(12.8)	폐 암	10,967(16.9)	위 암	7,857(15.4)
간 암	13,877(12.0)	간 암	10,437(16.1)	대 장 암	5,532(10.8)
대 장 암	12,952(11.2)	대 장 암	7,420(11.4)	갑 상 선 암	4,586(9.0)
유 방 암	7,984(6.9)	전 립 선 암	1,938(3.0)	자 궁 경 부 암	4,368(8.6)
갑 상 선 암	5,299(4.6)	방 광 암	1,928(3.0)	폐 암	3,918(7.7)
기 타	38,117(32.8)	기 타	17,267(26.6)	기 타	16,825(33.0)
합 계	116,034(100.0)	합 계	65,020(100.0)	합 계	51,014(10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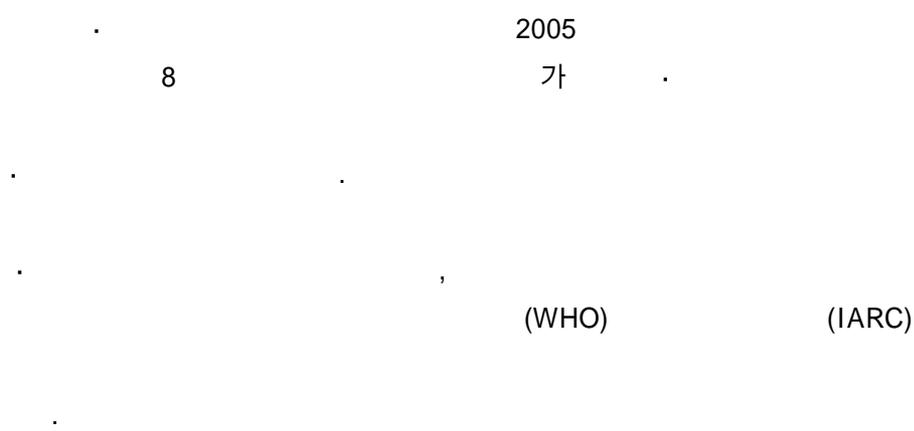
〈표 2-11-52〉 우리나라 6대 호발암의 한·미·일 5년 생존율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1993~1997)	한국 (1998~2002)	미국 (1996~2003)	일본 (1996~1998)
위 암	43.5	49.7	24.3	50.2
간 암	11.0	14.7	10.8	19.0
자궁경부암	78.7	80.4	71.6	66.4*
유 방 암	79.6	85.0	88.6	81.0
대 장 암	55.0	60.6	64.1	56.3/53.5**
폐 암	11.4	13.7	15.0	16.8
전 체	41.7	46.1	64.9	43.5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

*자궁암 **결장 / 직장암



〈표 2-11-53〉 최근 4년간(1999~2002년) 우리나라 암 발생현황

1999년		籬	2000년		籬	2001년		籬	2002년	
계	101,025건		계	101,385건		계	110,804건		계	116,034건
남자	57,677건	남자	57,906건	남자	62,743건	남자	65,020건			
여자	43,348건	여자	43,479건	여자	48,061건	여자	51,014건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4. 가

1

2

가

2004 5 (, , , ,) 가

〈표 2-11-54〉 2007년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개요

구 분		의료급여 수급자 ²⁾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50%) ¹⁾
대상자 선정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검진대상자(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검진대상 암 종 별	위 암	만 40세 이상 남·여	만 40세 이상 남·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	※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이 건강검진 대상 자중 여성 희망자에게 전액 무료 실시 (공단)
	간 암	만 40세 이상 남·여(고위험군)	만 40세 이상 남·여(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만 50세 이상 남·여
비용부담 방법		국민건강증진기금 50% 지방비 50%	국민건강보험공단 80% 국민건강증진기금 10% 지방비 10%

- 1) 건강보험 대상자 중 비사무직인 경우 1년에 1회,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검진가능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간장 질환 여부를 모르는 경우, 기초검사를 우선 실시

〈표 2-11-55〉 5대 암 검진 프로그램

구 분	검 진 대 상	검진주기	검 진 방 법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검사
유 방 암	3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여성	매월 2년	유방 자가검진의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질세포 검사
간 암	40세이상남녀(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 장 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 반응검사 : 이상 소견시대장내시경검사 또는 이중 조영바륨검사

※ 자료 : 암 조기 검진사업 실시기준(고시 제2007-10호)

〈표 2-11-56〉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의 료 급 여 수 급 자							건 강 보 험 가 입 자						
	'02	'03	'04	'05	'06	'07	'08	'02	'03	'04	'05	'06	'07	'08
예 산*	3,001	3,200	3,200	3,484	3,751	8,390	9,614	5,769	7,711	7,902	15,516	18,076	10,619	13,651
수검자	252	271	325	428	453	552	750 (목표)	533	854	934	1907 1,907	2,863	3,377	3,750 (목표)

※ '06~'08년 예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위탁 수수료 1,505백만원, '08년 예산 중 암검진기관 평가 업무 위탁 수수료 1,000백만원 미포함

5.

가
가

가

, 가 2002
2005

가

가.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70 80%

가 . 02 ~ 04

가 1,663 25

2005 16 18 (0~17)
(C00~C97, D00~D09, D37~D48)

()

25 70
1 2
1 . 2006
300% 4 가 351

1 9 8 2,046 (5,203) ,
 2007 300% 4 가
 361 2 2,407 (4,425)

나.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 가
 18 2005
 가 2007
 3 , 3
 1 20 1 2007 29,806
 (11,348)

다.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 63,000 ,
 가 52,500 3 1

6.

()
 가
 , (HLA Typing) 가 25%
 1 .
 가 가
 1994
 DB , 2001

2007년 2월 5일 기준, 139,428명(2006년 18,000명, 2007년 20,000명, 2008년 18,500명)으로, 80~90%가 DB 2010년 20,2015년 30

〈표 2-11-57〉 골수기증희망자 모집·등록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4~'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골수기증희망자 모집·등록	21,385	3,058	5,000	12,000	12,000	15,000	16,000	22,200	32,785	139,428
예 산	4,410	680	750	1,848	1,848	2,310	2,614	3,474	4,557	22,491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DB 이전 5,200명 포함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DB 이전 12,785명 포함

가
() HLA
HLA
D/B
(HLA)
, HLA
HLA

7.

6 6 가 , 36 가
80~90%가

가

가

, 가 가 .

(단위 : 만원)

구 분	사망전 1년간	사망전 3개월간	사망전 2개월간	사망전 1개월간
평균의료비	1,500	922	775	544
비 중	100%	61.6%	51.7%	36.3%

※ 자료 : 말기암환자 의료비 지출실태 분석, 국립암센터, 2005

64.4%가 3

가

17%(415 , 07) ,

7%

가

가

가 ,

, 2003 ~2004 2 5

, 2005

〈표 2-11-58〉 연도별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운영지원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비 고
지원기관수(개)	15	21	23	기관당 4천5백 지원
병상수(개)	267	377	415	
국고지원금	320	900	1,150	

2005 4 가
TFT_ ,
, , , , ,
2007 가
2003 2007
「 」 . , , .
8.

[그림 2-11-7] 지역암센터 현황

(1 : '04년, 2 : '05년, 3 : '06년 지정)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2007 3 가 (, ,) 가 2
 (1 , 1) , , .

9. 가

2005

가 , 가

2005 4 가

, , , , 가

, , , ,

가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보건소 임예방관리	1,220	1,230	1,231

2007 가 50% 가

,

※ 세부서비스 내용

의약품 지원	의료장비 지원	간병용품 지원	기타 서비스	교육 및 홍보
통증치료제, 수액 소독약품, 구강청정제 등	체온계, 에어매트, 장루용품 등	기저귀, 영양제, 영양식 등	영적지지, 말동무, 가사지원, 목욕 등 위생지원	홍보물 배포 등

10. 가

1965 WHO 1967
2006 가

〈표 2-11-59〉 국제암연구소 회원국 현황

회원국	가입년도	회원국	가입년도	회원국	가입년도	회원국	가입년도
독 일	1965	프랑스	1965	이탈리아	1965	영 국	1965
미 국	1965	호 주	1965	네덜란드	1967	벨기에	1970
일 본	1972	스웨덴	1979	캐나다	1982	핀란드	1986
노르웨이	1987	덴마크	1990	스위스	1990	스페인	2003
한 국	2006	인 도	2006	러시아	2007	아일랜드	2007

가 , ,
가 ,
가 , 가
가

III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1.

가

2000.1.12 2001.6.20
 358 (208 , 150) , 2005
 2007 5
 가

2007. 4 , , 가

4 22 1 1 1
 11 7 2 , 가 가
 가 3 11 ,

2007. 12 1,054 963

2.

가. 암 연구사업

, 가
 가
 (translational)

2, 4, 22, 1, 60, 118

가 가 ^

60

4

()

〈표 2-11-60〉 연도별 암 연구 개발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	계	88,320	1,000	1,530	1,445	1,445	1,500	5,000	5,000	10,000	12,000	13,400	15,000	21,000
	암정복 추진연구	41,820	1,000	1,530	1,445	1,445	1,500	1,000	1,000	4,000	5,000	5,900	7,000	11,000
	기관고유 연구	46,500	-	-	-	-	-	4,000	4,000	6,000	7,000	7,500	8,000	10,000
연구 개발 과제	계	1,066	46	50	41	32	31	52	66	119	104	154	159	212
	암정복 추진연구	675	46	50	41	32	31	22	22	64	55	88	93	131
	기관고유 연구	391	-	-	-	-	-	30	44	55	49	66	66	81

나. 진료체계 구축

(1) 의료장비 도입·설치

IMRT(), CT simulator
 PET(), Coincidence Camera
 (PACS) (OCS)
 가
 EU PET-CT
 IBA 가 2007
 5,600 가

(2) 진료체계 구축

6
 가 11
 ,
 가 ,

다. 국가 암 관리사업지원

가 가
 가 가 , 5
 가 , 가
 , 가
 , 가
 가가

, 2007 가 가 ^ 2 10 _
 가 가 가
 3 11 2007. 12 38 34

라. 인력양성 및 정보교류

·
 , , ,
 · ·
 < >
 가 , < 가
 > 가
 ·
 < > 가 가
 3
 70%가
 · 6
 , < >, < >, <
 >, < >, < >, <
 < >, < >, <
 > , < >
 ·
 가 가
 1 < >

가 2~3 < >

< >

제 7 절

정신보건*

가

1990

1997

가

2001

2000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정신건강정책과장 류지형

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

1.

가

1998 () 4 2006
105 (40, 65) , 2007 151 ()
92, 59) ,
31 . ,
1999
(2004.1.29 “ ” “ ”
)
가 , .
2003

“ ” (2004.1.29)

가

2.

가

1997 2 1998 10 , 1999 19 ,
 2000 47 , 2001 64 , 2002 86 , 2003 90 , 2004 123 , 2005
 136 , 2006 147 2007 12 179 .
 5,203 3,722 1,481 가
 . 2001 10 가 가
 가 , 2007 67 .

2001 가

가 , 3 , 가 .
 . . 1 가 .

3. .

ADHD, , , 가
 . , ,
 . 2002 16 2007
 32 .
 10 , 가
 . (1, 4, 1, 1)
 . 2007 16 36,000
 , 08 245 가
 .
 , , , .
 , 가 , ,
 .
 , 2007
 2005 , , ,
 . 가 .

II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20 , 1986 10 10
 9.1~11.8 1996 1998
 IMF 19.9 .
 2000 2 2001
 2003 24.0 1998 , 가
 가 2005 26.1 . 2006

5 10 23.0

가
10 , 20~30 1
(2005).

2005

가

24 (2)

III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1.

가

가 . 가

1999 (4 4)

2006 PDP, TV()

2006 21.2% 가

2.

3 가

IV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여건 개선

1.

2007 12 59 14,689
 가 가
 . 1980 가 1990
 , 1990
 가 .
 2002 2 2003
 , 2004
 ,
 ,
 .
 .
 , 2000 , 2002 2005 , ,
 , 가 ,
 .
 가 , .
 .

2.

2007 12 1.33 WHO() 1,173 6 6 1.0 1962 2 6 가 12 가

1999 “ ” 1 10 2006 가

가 1998 6 70 1 60 가

1 1999 가

2006 6 31.8%

〈표 2-11-61〉 정신보건관련시설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개소, 병상, 명)

구 분	기관수	병상/정원 /이용자수	주 요 기 능
계	1,624	-	-
정신보건센터	151	66,653/연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 예방, 정신 질환자 발견·상담·진료의뢰·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 지자체 지원 30개소 포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32	2,889(등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교육·홍보
사회복귀시설	179	1,481(입소) 3,722(이용)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치료·요양 후 퇴원(소)한 정신질환자 대상 사회복귀훈련 실시
정신요양시설	59	14,689(입소)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 훈련 서비스 제공
알코올상담센터	30	4,286(등록)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서비스 제공
정신의료기관	1,173	66,739	급성 정신질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3.

가

100 1
2007 12 7,894

185

2001
, 2007

53

136 , 76 ,
 32 , 90 2
 22 , 3 17
 1,026 .

〈표 2-11-62〉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현황 (2007. 12)

분 야	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계	7,894	1,242	5,004	1,648
1 급	1,594	468	838	288
2 급	6,300	774	4,166	1,360

〈표 2-11-6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현황 (2007. 12)

종 류	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기관수	136 (198)	76	32	90
수련정원	1,026	258	479	289

※ ()는 수련과정 수임

V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1.

. 2006 , 18 64
 5.6% 179 ,
 GDP(2004
) 2.9% 20 .

가

TV, PDP,

(A.A) 가 ^ _

2.

가

가 , 가 가 , 가

2000 4
2001 9 , 2002 14 , 2003 17

2007

30

가 , 2007
 가 4 .
 2000
 가 ,
 가 2006 8 29 가 ^
 2010_ . .
 , , , 20
 (107) , 18 .
 , 가 , 가 ,
 가 ,

I 개 요

1.

1945 가 , 1997 11
 (1995) (2000)
 . 2007 5

2.

2010 80 35 17 가 2005 78.6
 (, 2006.12.),
 2005 67
 가
 , 2006
 12 1 가 1972 0.6 2006 2.2 3.6
 , 2003

〈표 2-11-64〉 한국 12세 우식경험영구치아수 변화

(단위 : 개)

조사년도	전 국	도 시	비도시
1972	0.6	-	-
1979	2.2	2.5	1.7
1990	3.0	2.9	3.3
1995	3.1	3.0	3.6
2000	3.3	3.1	3.5
2003	3.3	3.4	2.6
2006	2.2	2.2	2.6

, OECD 가

〈표 2-11-65〉 주요 OECD 국가 12세 우식경험영구치아수 변화

국 가 명	1인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아수					
	이 전	조사년도	중 간	조사년도	최 근	조사년도
그 리 스	4.4	1965	1.6	1993	2.2	2000
네델란드	6.5~8.2	1965	0.9	1992~3	0.8	2002
뉴질랜드	6.0	1973	1.5	1993	1.6	2006
덴 마 크	6.4	1976	1.2	1995	0.8	2006
독 일	6.0	1973	1.7	1997	0.7	2005
미 국	4.0	1965~7	1.4	1991	1.19	'99~'04
스 웨 덴	6.3	1977	1.0	1997	1.0	2005
스 위 스	2.3~9.9	1963~75	1.1	1991	0.86	2004
아이슬란드	8.7	1980	1.5	1996	1.4	2005
아일랜드	5.4	1972	1.9	1992	1.3/1.1(F)	2002
영 국	4.7	1973	1.1	1996~7	0.7	'04~'05
핀 란 드	7.5	1975	1.2	1994	1.2	2000
호 주	2.6~6.0	1973~8	1.1	1993	0.8	2000
한 국	0.6	1972	3.1	1995	2.2	2006

※ 자료 : 세계보건기구(WHO)홈페이지(<http://www.whocollab.od.mah.se>)

가 가 가
 . 2007 가 1 1094
 3.4% , 2006 3.8%(1 723)
 가 .
 2007 (, ,
) 5 3 (, ,
 ,) , 10 3 (, ,
) .

II 구강보건정책

1.

()
 가 . 10
 ‘ 2010 ’ (2002 4).
 , 2005‘ (2005 12) 가 ,
 .
 ()
 ,
 .
 2010 .

〈표 2-11-66〉 주요 2010년 구강보건정책목표

목	표	2000년	2010년
치아우식증 발생예방목표	5세 치아우식 경험율	83%	67%
	12세 치아우식 경험율	77%	62%
치아우식증 악화예방목표	5세 치아우식 유병율	64%	51%
	12세 치아우식 유병율	42%	34%
치주병발생 및 악화예방 목표	15세~19세 치면세마필요자율	37%	33%
	35세~44세 치면세마필요자율	77%	70%

가

2.

2007

”

-
-
-
-
-
-
-

3.

가.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사업

. 2007 536 (187 (10),
312 , 37) .
, , , , , ,
가 가 100
, 가 가 300 , 가
가
가

나. 이동구강진료용 차량 및 장비지원

2002
, 가
가가 2007 ,
9 가 ,

4.

(0.8ppm) () (1995) 18
 (2000) 10 ‘ , .
 1981 2007 25 ,
 292 가 가 .
 “ 가 ()
 ” . WHO 1957 () 가
 58 .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Cancer Institute),
 (Royal Statistical Society) ,
 (CDC) 20
 10 (FDI)
 , “
 (10)” ,
 ()
 (NIDCR) 5~17
 () (1979~80, 1986~87)
 가 39% , 가 1
 75% .

1999 () 가 33~70%(3~5) , 2005
 2004 38~69%(6~14) 가

2007 3~7

가 가

가 , ,
 가 .

5.

가. 치아홈메우기사업

(pit & fissure sealant) 1, 2
 2002 ()
 65~90% (100 270)
 . 2007
 21 .

나. 불소용액양치사업

() 200

, ()
 1 1 0.2% 0.05%

6.

2002 .
 “ ” “ ” 가 ,
 , 1
 , 2003
 가 CD ,
 , 2004 ,
 2005 CD . 2006
 CD . 2007 CD,
 .
 2006 가
 ‘ . , ,
 30 .
 . 가

7.

2002 가 70
 , 2007 9
 .
 , 가
 . 가
 가

8.

가

가

()

9.

2005

가

2007

19

III 치과의료정책

1.

21

가

〈표 2-11-67〉 구강보건의료인력

(2007.12, 치과병·의원)

구강보건인력(면허자수)			치과 병·의원(개소수)		
치과의사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합 계
23,846	23,114	33,792	13,339	153	13,492

2.

2004

2008 . 2007 339 , 332 . 2008
220
가 .

3.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가



한방의료 정책*

I 개 요

1993 6 11
 1996
 가
 2005 10
 ,
 .
 가 (, ,) 21 21
 가 가 가가
 , 21
 가 .
 ,
 .
 2010
 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한의약정책과장 김덕중

II 한의약 육성 추진

가 . 가

가 . 가

, (1978) 가

2003 8

.(2004. 8.)

가 ,

, R&D ,

가 .

가 (3)

가

5 (6)

가

(10)

가 (12)

가

(14)

가

5 가 .

가 .

III 한방의료 자원

1.

가. 인력 현황

2007 12 16,663 11 가
 , 750 , 4,500 3
 120 , 2007 12 1,079 .

〈표 2-12-1〉 한의약관련 인력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명)

한 의 사	한 약 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업사	침 구 사
16,663	1,079	26,222	1,617	41

※ 보건복지가족부 면허관리 시스템

2008 50
 . 50

가 265 200 (16,530
) ,
 (100) .

나. 한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가 , 가

1999. 12. 15“
 ” . , 12. 29 .
 .
 가 가
 1 , 3
 8 . 2007 54 가 ,
 519 (280 , 239) 2007 12
 1,368 .
 가
 .
 , .
 .
 2007 6 ,

다. 한약사 제도 정착기반 조성

1994 .
 1996 , , 1998
 3 120 .

 ^
 가 “ ”
 .

가

Hub

2.

2001	45						
		4			5		
2002							
		272					
2003	2004	310	()				
778		, 2005		443	,		2,160
	, 2006	443	,		2,160		
2005				Hub			2005
23	2006	30			870		1,305
2007				191			443
				358	()		2,043
		Hub		35		1,305	

2006, 2007
 (3) 1,311

3. 2008

2008
 () 1,635 , Hub 45

1,957

8 5

V 한의학의 국제 교류

1. .

1994 3 .
, 1995 4 「 」 1995
10 1 .

. , , ,
, FHH ,
.

10 . 가 2007 12 .
. , .

, 2008 WHO “ ”
, 2009 WHO

11 . 2008 .

2.

1993 2006 12 , 30 77
 . 1993 1998
 NGO , 1998 12 ()
 .
 2003 200
 , 가 WHO
 . 2003 10 152
 2 .
 2006 , , 7 , 2007
 , , 7 12,300
 .
 가
 .
 2007 12 , , , ,
 5 8 가 , ,

3.

2008 WHO

“ ”

2009 WHO

,
(WPRO)
WHO

(WPRO)

, WHO

2004 WHO

, 2005

200

가

나. 주요 내용

· · · 가
, , ,
, ,

, 가

, 255
, 255

2.

가. 제도의 성과

1996 7 가

, , 가
가
,

2007 1 7 27

나. 제도의 문제점

가 . 255
가 .
가 ,
가 .

3.

가.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강화

2010
2008 255 356

나. 유통구조의 개선

가

III 한약유통실명제 추진

1.

가

10
2005 5 .

2.

2005. 2. 17 3

「 ,
」 (2005. 5. 25) .

90.1% , 2005. 12 62%, 2006.11 83.5% 2007. 11
가
.

IV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

1.

가 가 , 가

2.

, , , , , , , , (.), , , ,
14

: 1998 26 2001 21 2004 18 2006 14
17

3.

1995

2006

4

제 4 절

한방산업 정책*

I 개 요

Colin G.

Clark 1 . 2 . 3 .

, 1 , 2 , ,

, 3 ,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WHO) 2050 50

가가

2003 8 2005 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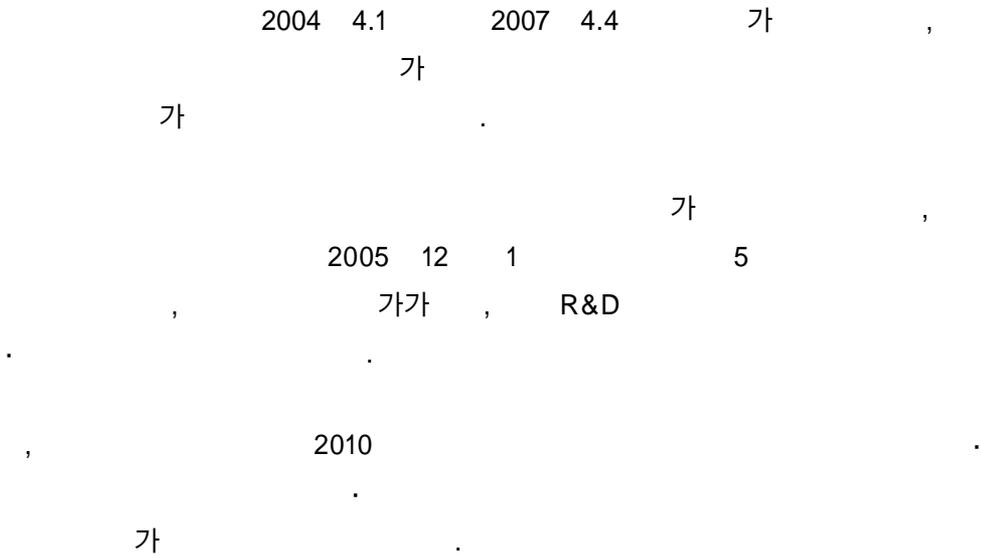
, 2005 12 1 「 5 」

R&D

*집필자 : 한의약산업과장 박상표

II 한방산업 육성

1.



2.



III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

1.

가
가
가
(2010)

2.

가가

〈표 2-12-3〉 연구개발 단계별 목표

단 계	세 부 내 용
제1단계 : 기초연구단계 (1998~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한의학적 이론의 객관화·과학화 •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입증된 한방치료기술 수집 및 유효성 검증 • 한약재 또는 한방처방의 난치성질환 관련인자에 대한 방어 및 억제방법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는 기반 연구 및 기술 확보
제2단계 : 연구심화단계 (2003~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능이 검증된 한방치료기술의 인체 내 작용기전 중점연구 • 효능이 입증된 한약재 또는 한방처방의 인체 내 작용기전, 대사 및 독성 연구 •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연구를 통한 핵심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제3단계 : 실용화단계 (2008~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응용기술 개발 •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의 임상연구 • 한약제제, 의료기기 등을 위한 한방실용화 기술 개발

3.

(“ ”) ^R&D 가
 ,
 .
 ,
 가 가
 가 .

4.

2010 1998 2010 (13) , ,
 2,087 , .

〈표 2-12-4〉 2010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단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초연구단계 (1998~2002)	연구심화단계 (2003~2007)	실용화단계 (2008~2010)
총 계	2,087	457	820	810
정 부	1,471	411	574	486
대 학	209	46	82	81
산 업 체	407	-	164	243

5. 2007

1998 2007 393.4 183 , 2007
 70

IV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

1.

가

가가

2.

가가

5 (, , , ,)

.가 .

가

가가

제13장

정책혁신

제 1 절

보건복지 주요업무 평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1. 가

가 48 가 가
 . 가 , , , ,
 가 가 , 가 .
 .
 (, , , , ,)
), , 가 .
 , 07 (5, 19, 190
 326) 가 (e-IPSES) ,
 .
 가 (, 1) 17 , 6
 23 . 가 , , , ,

*집필자 : 창의혁신담당관 김혜진

가 , 가 (e-IPSES) .
 가 , 가 .
 가 2007 , 가
 , , , 가
 BSC .
 가 , , .
 , .
 가 가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BSC 가가
 (e-IPSES) .

2. 가

07 가 , 가
 .
 60 (96) 59 (95)가
 , “ ”
 1 가 가
 .
 , (07.7) 2047
 20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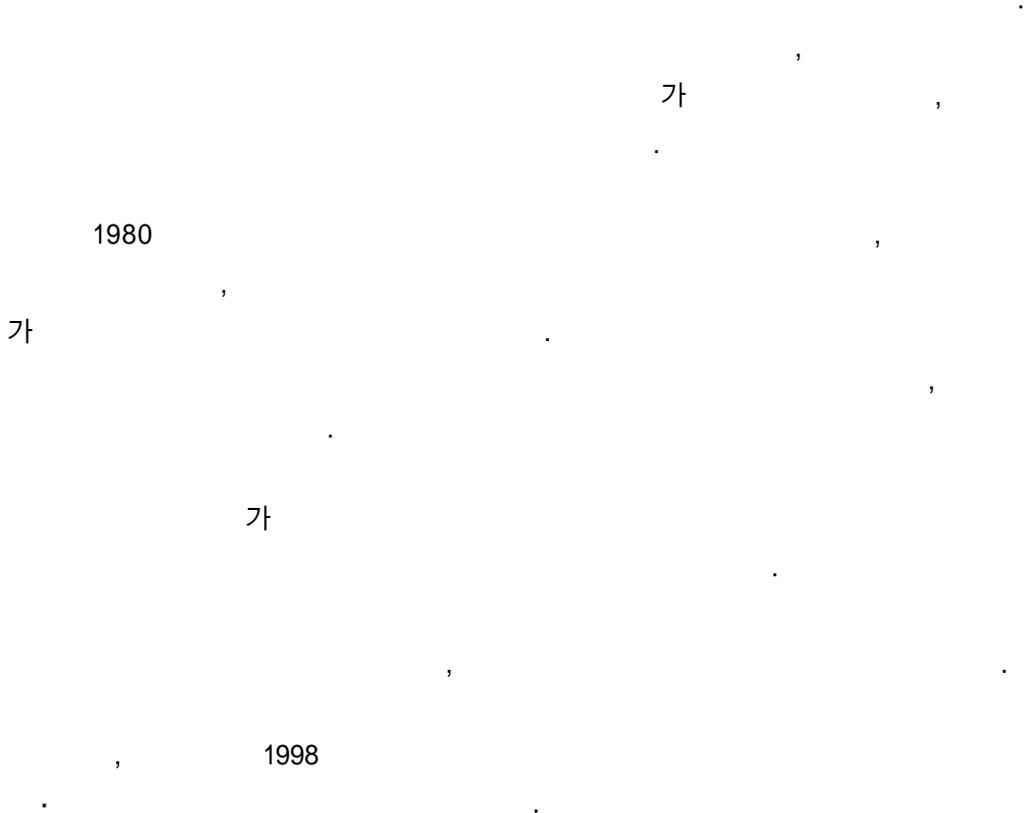
가	, 60	50	가	,	
,	,	,	,	.	
,	가	'	,	가	
,	,	,	,	.	
,	,	6	14	가	
,	100	81.75	가	.	
,	,	,	,	.	
,	,	,	,	.	
,	가	,	,	.	
,	,	,	,	.	
,	,	9	, 11	가	
75.00	가	,	,	.	
,	,	,	,	.	
,	,	가	,	.	
,	,	,	,	.	
07	가	06	가	.	
,	가	(23	, 17	, 6)	가 10%,
BSC 35%,	20%,	10%,	10%,	15%	,
	BSC 50%,	30%,	10%,	10%	.
가	가() 20%,	() 40%,	() 40%	,	가
가5	, 10	, 9	,	가4	, 8
	가3	, 5	, 4	.	
가3	, 6	, 5	.		



규제개혁*

I 추진 배경

1.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집필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홍인

II 규제개혁 추진 현황

1.

(Zero - Bas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가. 규제개혁 추진 실적	1,702	1,073	1,073
나. 규제개혁 추진 계획	1,702	1,073	1,073
다. 규제개혁 추진 예산	1,702	1,073	1,073
라. 규제개혁 추진 인력	1,702	1,073	1,073
마. 규제개혁 추진 성과	1,702	1,073	1,073
총계	1,702	1,073	1,073

2.

가. 보건복지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추진

1998 1,702 63% 1,073

1999
126 가
40 , 2001 34 , 2002 57 가
2003 783 51 , 2004
778 35 , 2005 809 86 , 2006 819 46 , 2007 676
66

〈표 2-13-1〉 연도별 규제정비 계획

(단위 : 건)

년 도 별	당초 규제수	폐지·개선	존 치
1998	1,702	1,073	629
1999	882	126	756
2000	789	40	749
2001	768	34	734
2002	777	57	720
2003	783	51	732
2004	778	35	743
2005	809	86	723
2006	819	46	773
2007	676	66	610

※ 2007.2월 규제분류·등록체계(행위단위→사업단위) 개편으로 규제사무가 일부 통·폐합됨

나. 규제정비 실적

1998 2002 1,330 95.8% 1,275
, 2003 49 , 2004 35 , 2005 86 , 2006 46 ,
2007 66 2007 12 610

다.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실적

2007 87 193

〈표 2-13-2〉 2007년도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

개최일자	안 건 명	심사 건수
'07.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2건 -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규정(고시) 1건 -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건 -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 8건 	13
'07.2.9~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시행령 2건 	2
'0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건 - 의료기기법시행령 1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2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시행령 2건 	6
'07.3.21~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건 - 공공의료에관한법률 1건 	3
'07.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고시) 1건 - 약사법시행규칙 1건 - 의료법시행규칙 1건 -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1건 - 의료법 15건 	19
'07.4.18~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의료원법 2건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건 - 의약품범위지정(고시) 1건 - 사회복지사업법 5건 	10
'07.5.8~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1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 3건 - 국민건강증진법 1건 	5
'07.5.22~5.24		

개최일자	안건명	심사건수
'07.6.18~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3건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5건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2건 - 요양급여비용및의료급여비용가감지급시범사업에 관한 기준(고시) 3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1건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1건 	15
'07.7.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5건 - 약사법시행규칙 1건 	6
'07.7.1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법 3건 -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치·운영에관한특별법 1건 	4
'07.7.25~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2건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1건 - 약사법시행규칙 7건 	10
'07.8.13~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 7건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 1건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3건 	11
'07.8.16~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1건 	1
'07.9.13~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시행령및시행규칙 6건 - 모자보건법 3건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고시) 1건 	10
'07.10.5~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 5건 - 약사법 1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건 - 업무정지처분에같은한과징금적용기준(고시) 1건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대학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고시) 1건 	10
'07.10.25~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 5건 - 약사법시행규칙 3건 - 검역법시행규칙 1건 -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1건 	10
'07.11.15~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채권에관한법률 1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1건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건 - 노인성질병에해당하는진전의범위에관한고시 등 2건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고시) 1건 	6

● ● 제13장 정책혁신

개최일자	안건명	심사건수
'07.11.28~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건 - 영양사에관한규칙 1건 	4
'07.12.11~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등에관한기준(고시) 3건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1건 -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고시) 1건 	5
'07.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및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등세부 사항 (고시) 	1
'07.12.27~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5건 	5

제 3 절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

I 설치 목적

2004 8 5

가

()

II 회의 운영 실적

20	2004 9 16 1	2004 8
	, 2005 21 79	, 2006 18 56

*집필자 : 기획조정담당관 이형훈

, 2007 18 55 「
 , 「
 , 「
 가
 가
 , 「
 , 「
 , 「
 , 「

참 고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 현황

2007

연 도	사회문화정책 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2004년	8	30	4	15
2005년	21	79	11	55
2006년	18	55	7	15
2007년	18	55	2	4
소 계	65	219	24	89

쟁점사항	협의 · 조정	안 료	3
		유 보	-
	토 론		14
단순보고(현황, 추진상황보고 등)			38

2007

차 수	일 자	성 격	안 건	주관부서
1	1. 16	보 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환경부
		보 고	비전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	복지부
		보 고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 개선방안	복지부
2	1. 30	심의(의결)	환경보전 조사 · 감시사업 추진계획	환경부
		보 고	사회문화분야 중기재정계획(안)	합 동
3	2. 13	토 론	고용 · 창업 친화적인 자활지원서비스 강화방안	복지부 · 노동부
4	2. 27	보 고	국어발전 기본계획	문화부
		보 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식약청
		토 론	사회복무제도 도입	병무청

차 수	일 자	성 격	안 건	주관부서
5	3. 13	보 고	여름휴가 분산제 추진 계획(안)	문화부
		보 고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관리 5개년 계획 수립	환경부
		서 면	“글로벌 문화포럼 2007서울” 개최	문화부
6	4. 24	보 고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06~'15)	환경부
		보 고	4대 바우처사업 운용시스템 구축경과 및 향후계획	복지부
		보 고	사회투자정책과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김연명 교수
7	5. 8	보 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환경부
		토 론	지방재정 조정방안	예산처
		토 론	건강투자정책	복지부
8	5. 22	보 고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통계청
9	7. 3	보 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	여가부
		보 고	기초노령연금 시행준비 추진현황	복지부
10	7. 24	보 고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획 보고	문화부
		보 고	참여정부 사회정책분야 추진상황 점검 및 마무리 계획	복지부
11	8. 14	보 고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2007~2012년)	환경부
		보 고	지방자치단체 건강투자 활성화 방안	복지부
		보 고	공공시설, 청소년시설로의 이용 활성화	청소년위
12	9. 4	보 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정책	청소년위
		보 고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복지부
13	9. 18	심 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여가부
		심 의	청소년 자살관련 종합대책	청소년위
14	10. 23	보 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보고	문화부
		보 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계획 보고	환경부
15	11. 20	보 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비전	환경부
		보 고	2007년 동절기 종합대책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 동절기 성매매집결지 등 안전관리 대책 - 동절기 청소년 보호대책 - 동절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업현장 안전대책 - 겨울철 스키장 안전대책	합 동 (복지부) (행자부) (여가부) (청소년위) (환경부) (노동부) (문화부)

차 수	일 자	성 격	안 건	주관부서
16	12. 4	보 고	유휴 공유시설 활용방안	예산처
		보 고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여가부
17	12. 18	보 고	태안 유류유출사고 대응상황 보고 - 종합 대응상황 보고 - 의료분야 등 대응상황 보고 - 관광분야 후속대책 보고 - 환경분야 대응상황 보고	합 동 (행자부) (복지부) (문화부) (환경부)
		보 고	기초노령연금 시행준비 추진현황	복지부
18	12. 28	서 면	'07년 회의 성과평가 및 '08년도 운영계획	합 동

※ 안건 현황(55건) : 복지부 13, 환경부 11, 노동부 3, 여가부 5, 문화부 8, 기타(공통안건 등) 15

III 향후 운영 방안

가

가

가

가

가

제 14 장

정책홍보 관리

제 1 절

홍보관리*

| 정책홍보의 방향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가

가

가

가

()

가

*집필자 : 홍보담당관 현수엽

가

,

3가

가

가

II 주요 정책홍보 추진현황 및 분석

1.

가

(07.7)

가

() “ ”

FTA 가

LPG

LPG

(, ,)

2.

가

가

2007

7가

가

2007 8

, 2008 3

가

3.

가

PCRM

가

KTV VNR

가

2008 2

(1)

()

(,)

4.

2007

가

가

III 향후 추진계획

가 , ,
가
가
가
가
가



보건복지가족통계 생산관리*

I 통계관리 체계

가 .
, 가
「 가 」 가
가 ,
가 2006. 2
, 2008 8
,

II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

가 가 , 가
, , , ,
, ,

*집필자 : 정책통계담당관 김영균

가 , 21 , 1 가 , , .

28 , 21 , 1 , .

가 (www.mw.go.kr) .

가 가 가 , 가 가 , 6 . 가

「 가 」 .

〈표 2-14-1〉 보건복지가족부 작성 통계 현황(2008.7)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관 련 부 서		작성 주기
1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연간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반기
3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	생활위생과	반기
4	암등록 통계	"	암정책과	연간
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	기초생활보장과	연간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	연간
7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	"	반기
8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사회복지정책실	민간복지과	반기
9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연간
10	화장률 현황	"	노인지원과	연간
11	노인학대 현황	"	"	월간
12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보고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	연간
1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	장애인정책국	"	반기
14	등록장애인 현황	"	장애인정책과	분기
15	장애수당수급자 현황	"	장애인소득보장과	반기
16	소년소녀가정 현황보고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과	반기
17	국내입양 현황보고	"	"	반기
18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	"	반기
19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	"	반기
20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	"	반기
21	학대아동보호 현황	"	아동청소년권리과	연간
22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	보육지원과	반기
23	청소년전화(1388) 운영현황	"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월간
24	청소년상담지원 현황	"	"	연간
25	국제검역상황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	분기
26	법정전염병발생보고	"	전염병감시팀	연간
27	한센병관리사업실적	"	에이즈·결핵관리팀	분기
28	결핵관리 현황	"	"	월간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관 련 부 서		작성 주기
1	환자조사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3년
2	영아사망조사	"	"	3년
3	특수환자조사(모성사망조사)	"	"	3년
4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수요 및 이용)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5년
5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원)	"	"	5년
6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5년
7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생활위생과	3년
8	흡연실태조사	"	건강증진과	반기
9	가족실태조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정책과	5년
10	노인실태조사	"	"	3년
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3년
12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현황보고	"	장애인권익증진과	5년
13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	1년
14	가출청소년쉼터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1년
15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1년
16	청소년가치관조사	"	아동청소년정책과	1년
17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3년
18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	1년
19	퇴원손상환자조사	"	"	1년
20	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	말라리아·기생충팀	5년
21	인수공통전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	역학조사팀	1년

가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관 련 부 서		작성 주기
1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1년

III OECD 통계 생산 및 관리

1.

1996 12 OECD 가 OECD
 (OECD 3) 가 가
 1997 .
 OECD 가 OECD 가
 OECD 가 OECD
 OECD 가 .

2. OECD

OECD (Health Data) , 1998 (1,421)
 가 , 1999
 07 7 * 672 .
 06
 72.4%(OECD 76.9%) 07 81.8%(OECD
 82.6%) .
 OECD 가
 , 3 .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비용,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표 2-14-2〉 OECD 통계 요구 및 제출 현황

구 분	보 건 부 문			복 지 부 문		
	요 구 (항목수)	제 출 (항목수)	제출률 (%)	요 구 (항목수)	제 출 (항목수)	제출률 (%)
1997	996	170	17.1	96	51	53.1
1998	1,421	445	31.3	96	53	55.2
1999	986	179	18.2	96	53	55.2
2000	708	245	34.6	66	47	71.2
2001	715	349	48.8	66	47	71.2
2002	701	385	54.9	66	47	71.2
2003	532	320	60.2	66	47	71.2
2004	436	262	60.1	66	47	71.2
2005	410	258	62.9	66	47	71.2
2006	673	487	72.4			
2007	672	550	81.8			

※ 복지부문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08년 현재 '05년기준 자료까지 OECD에 제출하였으며, '06년, '07년기준 자료는 '08~'09년에 통계를 생산하여 2010년에 제출할 예정임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OECD가 , 02

3.

UN, OECD WHO 가
, OECD 가
가 , OECD

OECD 가
,
OECD ,



정보화 추진*

가
(Ubiquitous)

가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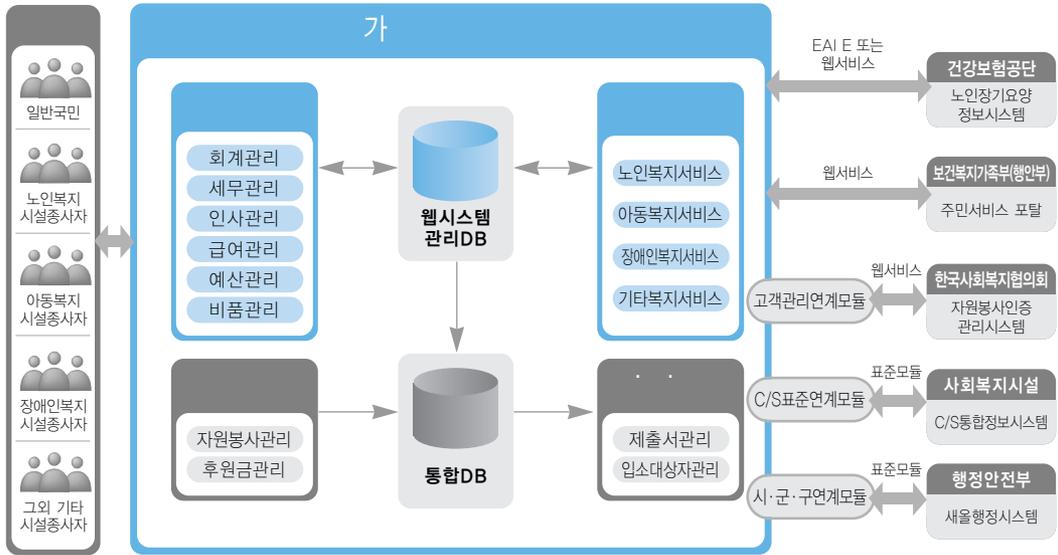
가

1 31, 2003 (ISP**) 2004
. 2005 2

*집필자 : 정보화담당관 임근찬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그림 2-14-1]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체계도



II 식·의약품분야 정보화

2005 8 , 2005 11
 2007
 10 , 2007 12
 (DW)

2007 10
 , 2008 1
 2008 375
 2006 RFID*/USN** , 2006 2007
 ‘ u- , 2007 RFID/USN ()’
 2007 12 ‘ RFID/USN ()’
 () 4 , 33 9 RFID

III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가 (e-Health)
 2005 ‘
 (ISP) ” , ,
 가
 (EH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biquitous Sensor Network

28 가
가

14,000

(OCS)

6-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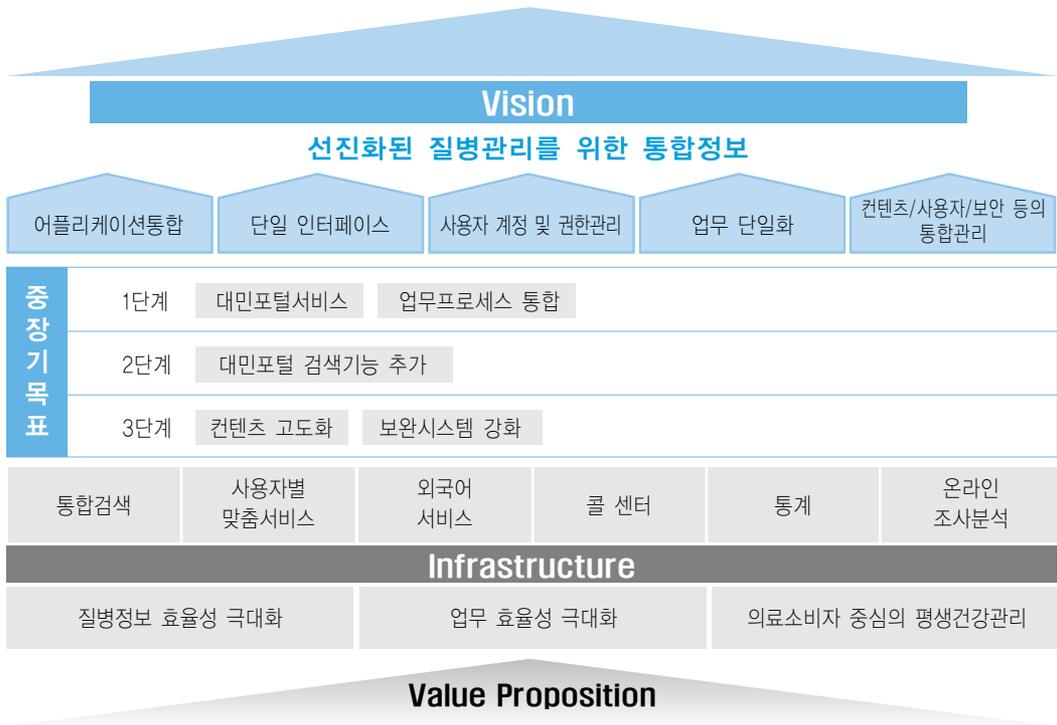
. 07

08

09

, , 3가

[그림 2-14-2] 질병관리본부 통합정보시스템의 목표



IV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가

08 7

07 4

SMS(:Short Message Service)

가

가

가

, SMS DB

“ 2020 ”
(DW)

78

(EP)

V 보건복지 행정분야 정보화

1998

DB

2001

2005

, 2002

2004

2005

“ (UniMOHW) ”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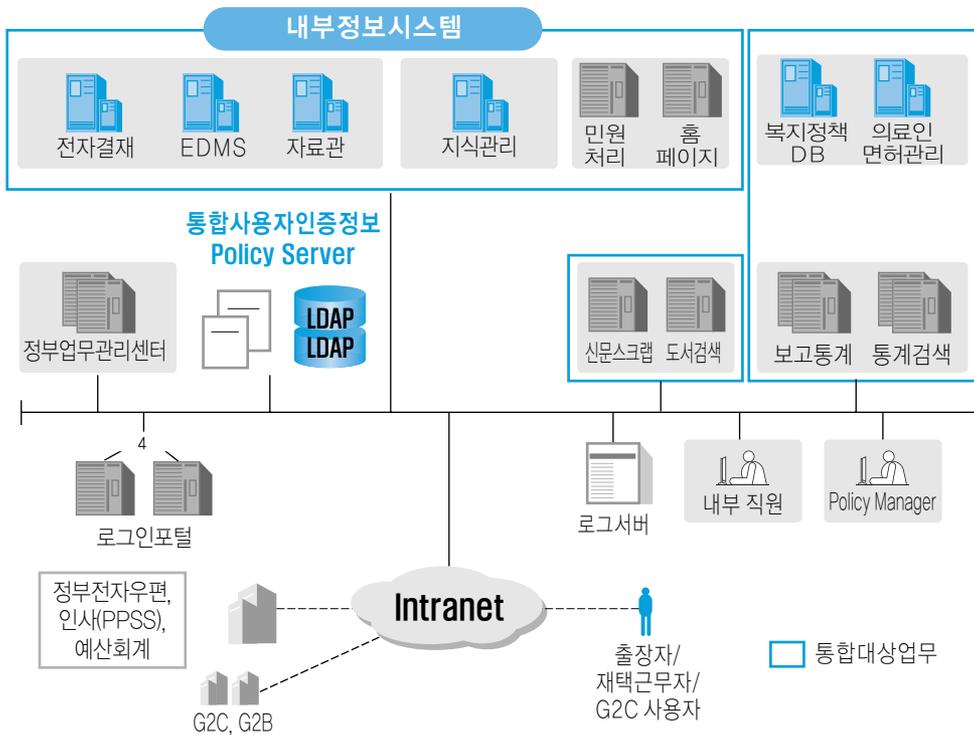
2007

2003

, 2007 12

가

[그림 2-14-3]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VI 보육 및 가족분야 정보화

2005

(ISP)

,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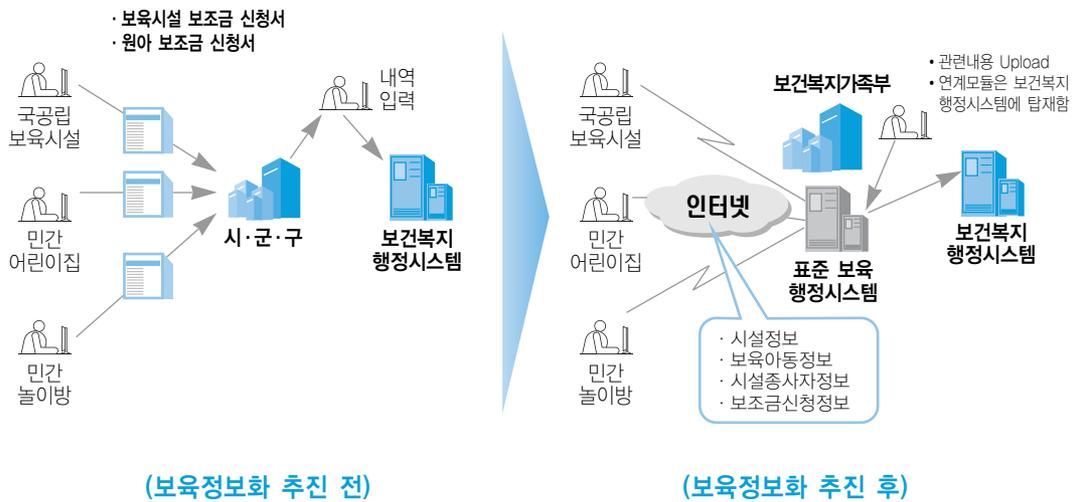
. 2007 12

30,871 ,

1,094 , .

2008

[그림 2-14-4] 보육정보화 추진체계



가 35
, 가
, 2008 가

가 가 ,
, 가 , 가
가 , *
가 (ISP)

*<http://www.familynet.or.kr/>

VII 청소년분야 정보화

, 가

*

**

VIII 정보화 평가

1.

97 가 가 가

, 가 , , 가

가 , 2006 4 , 가 ,

가 , , 가

가 .

가 가

, , 가 , 가

*<http://www.iye.go.kr>
 **<http://yp.youth.go.kr>

가 가 , 가
가 .

2. 가(가) 가(가)

가 06 06

가 .

가 06 , , / , 가
가 08

가 , 가 48
가 . 가 , ,
3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

[표 2-14-3] 자체평가 평가대상사업 목록

구분	사업명	담당부서
1	복지행정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지원팀
2	국가복지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지원팀
3	응급환자진료정보망구축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
4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구축	보건산업정책팀
5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처리시스템구축	질병관리팀
6	검역전산망구축사업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
7	전염병감시정보망 구축사업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팀
8	예방접종등록 및 전염병예측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구분	사업명	담당부서
9	펄스넷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질병관리본부 장내세균팀
10	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및 단백질 지식정보의 자원화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
11	희귀난치성질환 정보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 심혈관질환팀
12	국립재활원 정보시스템 구축	국립재활원
13	건강보험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청구심사 RTE기반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모바일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확대	국민연금공단
16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국민연금공단
17	WEB-FAX 시스템 전국 확대 구축	국민연금공단

[그림 2-14-5]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확인점검의 관계도



3. 가

(EA) (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가

가

제 4 절

국제협력의 증진*

I 중요성

가 21 , , ,
 . 가
 , , , ,
 .
 . 가 .
 , , , ,
 , OECD 가
 6 WHO (2003.1.28)
 가 .
 , WHO OECD ,
 ,
 . 가

*집필자 : 국제협력담당관 최중균

II 국제협력사업

1.

가. 분야별 주요 국제기구

(UNITAID),	(WHO),	(UNAIDS),
(UNDCP),	(UNDP),	(UNFPA),
(APEC/ISTWG),	(UNCSD),	(CBD)
(Biosafety Protocol)	(UNEP),	(POPs) ,
(CITES),	(OECD/EPOC) .	
(OECD/CSTP) .	(OECD/DAC)	
		(OECD/ ELSAC),
(UNECOSOC)	(UN CSD),	
(ESCAP),	(UNICEF),	(UNIFEM),
(ISSA),	(ILO)	(CSW),

〈표 2-14-4〉 보건복지분야 주요 국제기구 현황

기구명	설립목적	협력사업행위
-----	------	--------

기구명	설립목적	협력사업형태	활동내용
유엔인구 활동기금 (UNFPA)	인구 및 가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훈련사업 자문과 지원 물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및 가족계획분야에서 각국정부와 연구기관 등의 활동 지원
유엔아동기금 (UNICEF)	아동의 보건 및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사업 지원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원조사업 전개 개발도상국 모자보건사업, 사회개발사업 원조
유엔마약류 통제계획 (UNDCP)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마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퇴치사업 소요 비용 총당과 배정 마약퇴치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에 관한 국제협력 이행 감시 UN 마약남용 통제기금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마약남용 방지 추진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경제 성장 촉진, 세계무역의 확대, 개도국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사업 정보교환 정책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복지 문제를 망라하는 포괄적 경제협의 회원국간경제·산업·사회정책 등에 대한 정보교류와 공동 연구 및 정책협조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ESCAP)	아태지역의 빈곤감소, 노령화, 인구문제, 자연재해 등 경제사회 개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훈련사업 세미나, 워크숍 국제기구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국의 경제제건 발전을 위한 협력 촉진 경제적·기술적 문제의 조사·연구사업의 실시 및 원조 역내 경제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무역·투자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강화로 지역 공동번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분야별 실무회의 각료회의·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투자 자유화, 인적자원 개발 경제기술협력, 거시 및 금융이슈 등을 위한 협력 촉진 및 이행방안 마련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회원경제의 사회안전망 능력 배양
국제의약품 구매기금 (UNITAID)	3대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의약품을 저가로 개도국에 제공

나.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현황

가

가 ,

가

가

(1) 보건 분야 국제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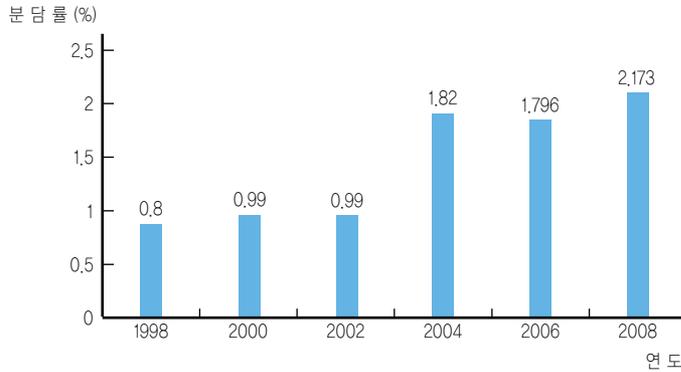
WHO (WHO) WHO
 WHO 가
 가 (5 ,) (9), 가
 WHO
 WHO 가 2003 6 WHO
 3 2006 5 22
 WHO
 , 2007 58
 WHO
 WHO WHO
 WHO . 2005
 가 2006

〈표 2-14-5〉 우리나라의 WHO 법정분담금 현황 (단위 : 천달러)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분담액	4,118	4,171	5,062	7,818	7,817	8,020	8,020	10,092

※ 2005년까지 외교부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

[그림 2-14-6] 연도별 WHO 법정분담금 비율



WHO
 (WHO : 1997 21 3 ,
 : 96 30 2007 30
 1).

<표 2-14-6> WHO 본부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공여실적 (단위 : 천만원)

계	2000	2001	2002	...	2007	2008
173	24	24	-	...	60	65

<표 2-14-7>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공여실적 (단위 : 천만원)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01	25	60	30	-	12	11	13	12	18	40	40	40

WHO
 2008 , 11 가

WHO 가

WHO 협력센터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 National Cancer Center (NCC)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Yongin Mental Hospital
- Catholic University of Korea(Hospice/Palliative Care & Occupational Health)
- Yonsei University
- Kyung Hee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n Institute of Tuberculosis – The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UN
 UNAIDS() HIV/AIDS, STD () ,
 AIDS UNFPA(
) , 1994 1999
 UN 21
 (ICPD POA)
 ,
 ,
 (The Catargena Protocol on Biosafety)
 가 2000.1
 , 가 ,
 가 (LMO) 가(RA), (RM)

OECD/ DB, 가 ,
 ,
 가
 , OECD 가
 2001 3
 OECD Health Project , 2004 5
 OECD
 2005 OECD ,
 3
 2006 12 OECD OECD
 4 OECD
 , 2008 6 OECD OECD MOU
 , 2003 10 APEC TF
 WHO SARS,
 2007 APEC
 , APEC AI · PI Action Plan
 가
 『2006
 가
 가”

2000 가 ,

, .

A (. .), B (. .),

, ,

UN ECOSOC ESCAP(. .)

가 , .

2. 가

, 가

가 . , 가

.

2003 , ,

가 .

2006 5 , 59

가 .

가 가 2007 5 , 60 가

.

, 2003 11 “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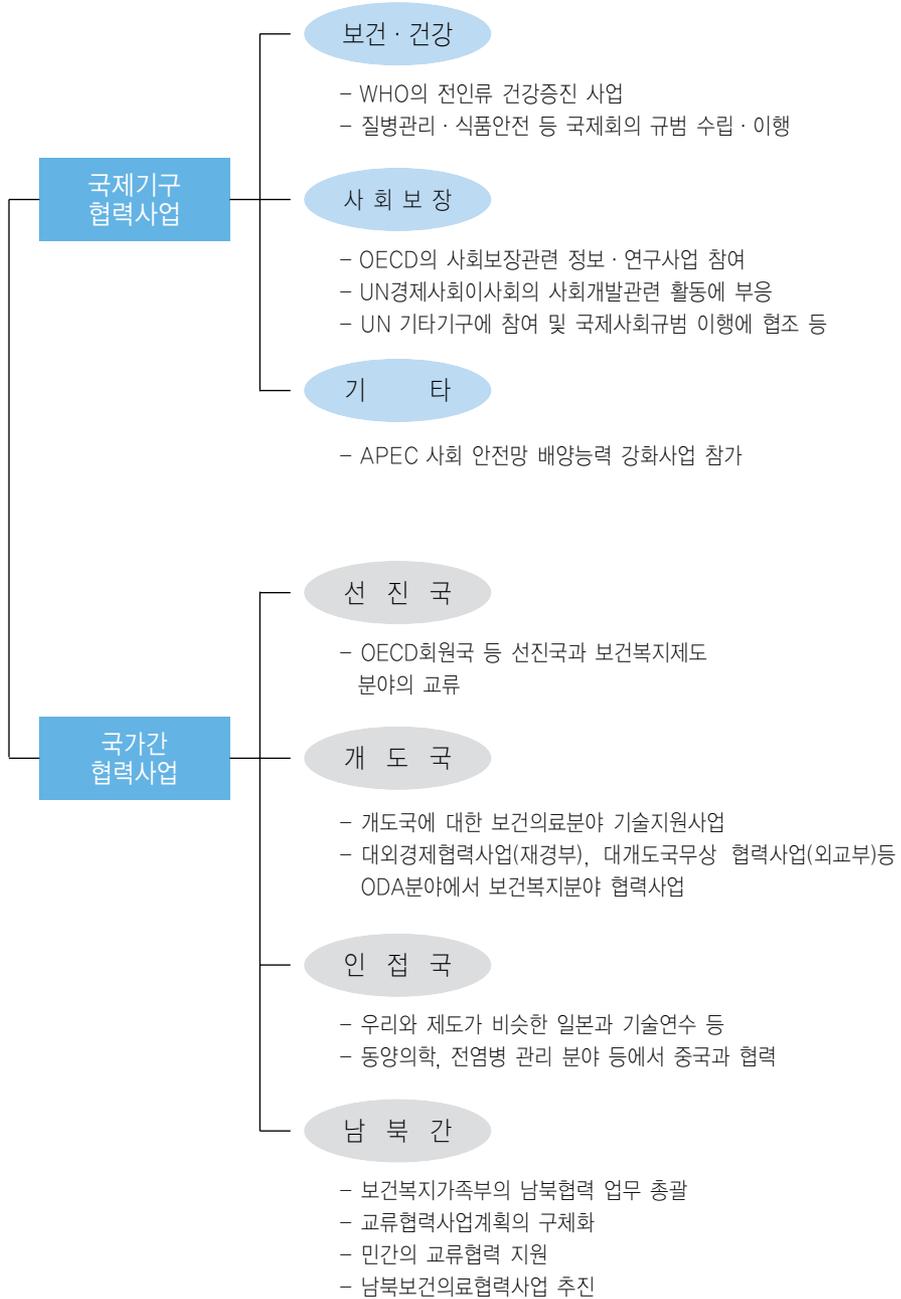
, 가 .

2005 1 2 , , ,가

.

3 가 2006 1 , 가가 가
 가 가 가, , 가
 .
 , .
 , 가
 .
 ,가 ,1 , , 가
 , .
 , .
 , .
 , . (EDCF :),
 가 ()
 가 , ,
 가 .
 2007 4 . . 3 2003
 (SARS), 2004 (AI)
 (Pandemic Influenza:PI) 가 . . 3
 ,
 .
 3 가 “ ” . .
 가 가 PI , ,
 .

[그림 2-14-7]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활동의 개요



III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2000 6 ,
 가 , 가 가
 2001 WHO
 . 2010 ,
 07 594.24
 가 06 (9,353) 07 (7,436)
 20.5%
 2007 “ 1 ”
 4 , , ,
 1995 2007 12
 196,918 26,547 15%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 정책

〈표 2-14-8〉 분야별 대북지원 현황

(단위 : 만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 계
일반구호	2,891 (91)	565 (12)	1,435 (13)	6,067 (45)	4,174 (31)	6,157 (40)	10,472 (42)	4,346 (20)	11,672 (39)	14,792 (46)	62,571 (37)
농업복구	254 (8)	3,941 (84)	8,562 (75)	5,476 (40)	7,351 (55)	7,673 (49)	8,695 (35)	13,744 (65)	14,082 (47)	11,962 (37)	81,704 (48)
보건의료	40 (1)	182 (4)	1,380 (12)	1,996 (15)	1,967 (15)	1,933 (12)	5,624 (23)	3,164 (15)	4,301 (14)	5,716 (18)	26,303 (15)
계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24,791	21,254	30,055	32,434	170,578

※ 자료 : 통일부, 「인도적지원업무편람」, ()는 구성비

IV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

가 , .

2004 3 “

” 2005 12 2006 8 “

” .

2.

, 2007 10 10 가 가 ,

가 . 가 가

2008 10 가 .

2004 9 ,

2007 . 가 ,

2

AI · PI , WHO

(ODA) ,

(KOICA)

, 2006 10 2

2007 , 1

.

45 10 , WHO
 35 12
 9
 (16 5) X-ray
 , 2007 12 5,597
 가 , “ ”
 , WHO 10 “ ”
 , 12 11
 fellowship() . 2007 5
 1 , 9 WHO
 , ‘ (2)
 ‘ (12)
 7 , 11 ‘

3.

가



통상협력의 증진*

I 국제통상 개관

WTO 가 FTA
 APEC, OECD, ASEM WTO FTA

1.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48 1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GATT
 가
 GATT WTO가 1995 2001
 4 가 (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WTO 가 DDA
 (Development) ’

*집필자 : 통상협력담당관 허영주

2002 1 2004 3 DDA
 (modality) 2003 , 2004
 8 DDA ,
 2006 7 , 2007 1
 2007 4 G-4
 (, EC, ,) , 6
 G-4
 WTO , , , ,

2. (Free Trade Agreement : FTA)

FTA(; Free Trade Agreement) , ,
 2007 3 WTO 194 117
 가 .
 FTA WTO가 1995
 가 .
 52%가 FTA .
 90 FTA .
 FTA , , , 90
 FTA , , ,
 FTA , , ,
 가 , , ,

, 가 , (SPS)
(TBT), , (MRA) .

3.

FTA가 FTA
 . , . EU 가 , ^ .
 _ ^ . EU _ ^ .
 .
 (AMCHAM), (EUCCK)
 FTA
 가 , , EU

II WTO/DDA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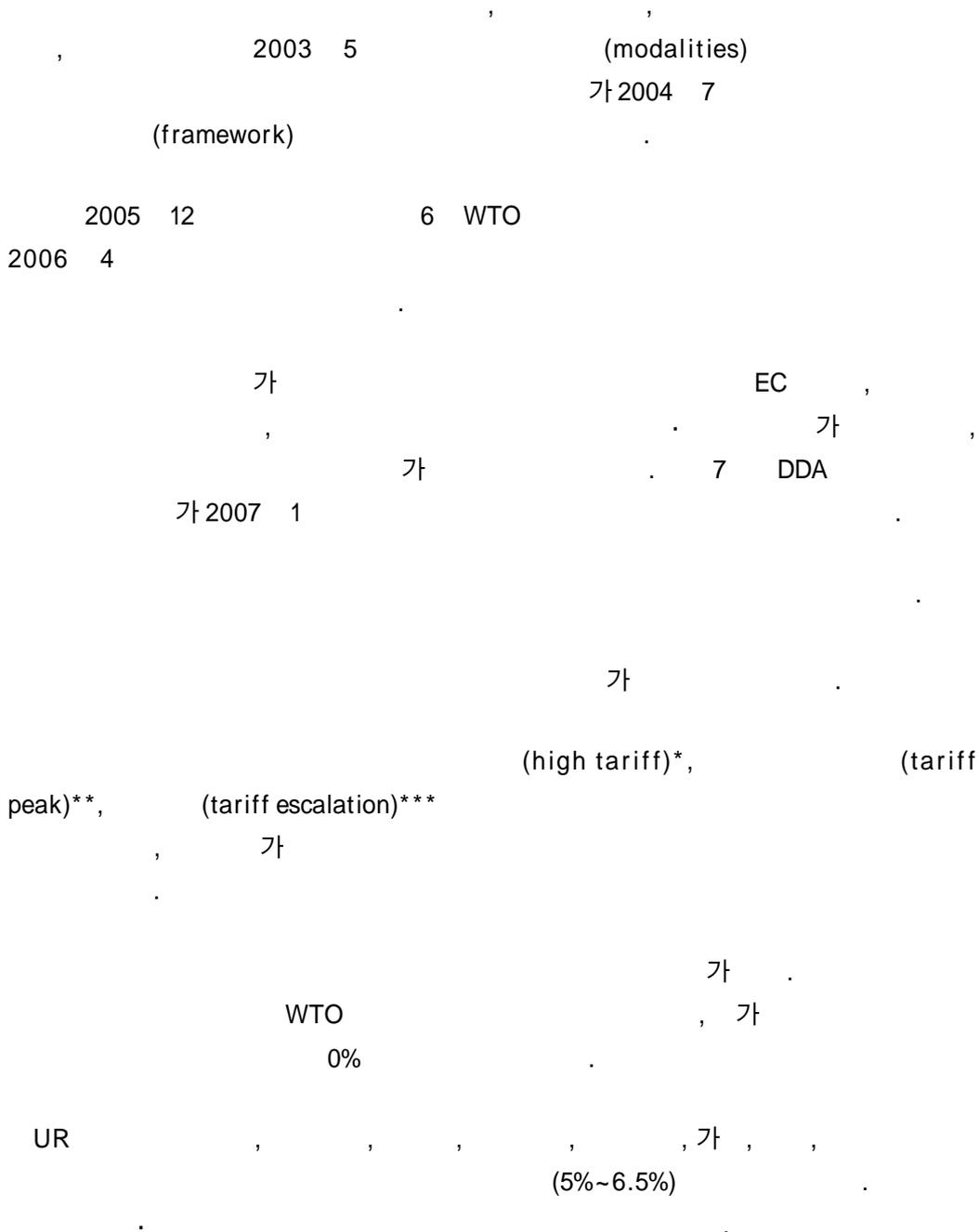
1.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HS 25 99

〈표 2-14-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농산물 품목 현황

구 분	식 품	의 약 품	의료기기	화 장 품
품 목 수	265	484	134	34

※ HS코드 10단위 기준(2007년 산업분류 적용)



*고관세(high tariff) :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높은 관세를 지칭하며 우리나라는 25%이상의 관세를 고관세로 제시한 바 있음
 **관세정점(tariff peak) : 첨두관세라고도 하며 특별히 높은 관세를 의미함. 우리나라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이 되는 관세를 관세정점으로 제시한 바 있음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 관세경사 구조라고도 하며, 제품의 가공도에 따라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

(NTBs)

WTO

〈표 2-14-10〉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관세장벽 목록

(2005년 말 현재)

유형	세 부 유 형	세 부 내 역	품 목
기술 장벽	인증 제도 -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불합리성	PE, PP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위생 인증 획득시 과도한 비용 소요 및 까다로운 절차로 인증 획득이 어려움	식품용기
	검 사 - 과도한 검사 기준 요구 및 비용 소요	화장품에 대해 위생 검사 이외에 상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표 검사 제출 서류가 위생 검사 제출 서류와 상당 부분 중복 되는데도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	화장품

2.

WTO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_ ,
 가 , WTO DDA

Request Offer

2005 1 1

1, 2 (Offer) 36 (Request) ,

25 WTO 8 () ,
 , , 6

UR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

가 , DDA
 (DDA)가 2001 11 2000 WTO
 , DDA
 , TRQ .
 , DDA
 , 가
 ()
 , NTC(Non - Trade
 Concerns :) UR
 NTC UR
 . ,
 .
 가 가 (HS10 582)
 (HS10 13)가 , 가 가
 가

4. (SPS) (TBT)

DDA .
 가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

GATT WTO
 SPS TBT

〈위생 및 검역(SPS)〉

GATT/TBT
 가 WTO SPS 가 SPS
 WTO/SPS SPS 가 가
 SPS TBT
 TBT
 SPS 가
 SPS 가
 SPS 3 SPS SPS 12

〈기술 장벽(TBT)〉

가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
 (certification procedure), (inspection system)

가

(NTBs)
가

가 TBT WTO TBT WTO
. GATT 1979 TBT WTO 가 가
가 , , , 가 가
가 , , , 가
WTO TBT , 가
WTO TBT 가
WTO/TBT , 가
가
TBT 3 가
WTO/TBT .

III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1. FTA

가. 한·칠레 FTA

1998 11 5 FTA

(FTA)

1999 9 . FTA , 1999 12
 . FTA 2002 10 18 ~10 21 6 10
 24 . FTA .

. FTA ,
 가 .

FTA , 가

10 , 94.5% 96.5%
 , (TRQ) , () ,
 가 , , ,
 , WTO / DDA

, GATT 11

, 가 , WTO

나. 한·싱가포르 FTA

가 2003 3 . . 2004.1.27
, 5 2005.8.4 .

가 . FTA

가 FTA 10 ,

91.6% 10 ,

10

가

. , 가

가 , , , 가

, , , , , ,

SPS, TBT MRA()
 . . (NTBs)가
 , SPS WTO SPS , SPS

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4 EFTA FTA
 2004 2 2005.1.18 1
 , 4 2005.12.15
 가 - EFTA FTA Positive
 WTO DDA 가
 · EFTA FTA FTA
 99.1% , 100% , EFTA
 86%, 88.9%
 60%
 가 , , , 가 EFTA

라. 한·미 FTA

21.8%

2004 428 , 287 .
 가 70%
 FTA .

2004. 11 APEC FTA
 , 2005
 . 2006.6 1 8 2007.4.2 .

FTA가 .

6.30 FTA가 (,
 60) ,
 EU FTA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사항>

가 , 가 , 가 가
 ^ _
 가 , ,
 , .

<의약품 지적재산권>

가 4 가

, 가 가

가 가

, 5 가

FTA 가 , 가 가 .

가 , 가 , 가 ,

18

가 .

FTA , , ,

, 5 가 ,

(

)

94%() 3

79.5%

, MRI,
 , X-ray,
 10 10

2. FTA

가. 한·EU FTA

EU 1 , 2 1 . 2006
 EU 492 , 794 , EU 405
 (2005.12) , -EU FTA
 GDP 16~24 (2.02~3.08%) 가 30~60
 , “ FTA ” , EU FTA
 (2003.8) , 2006 2
 -EU FTA
 , 가 가 . 2007 5 -EU
 FTA 1 , 2008 5 7 , 2008

나. 한·캐나다 FTA

. 2004. 5 FTA
 2005 1 3 , 2005 7 1 , 2008 6
 13

가

· EFTA FTA 가

GDP 30% FTA

NAFTA (FTAA)

가

가

가

가

다. 한·ASEAN FTA

, EU 4 ASEAN 10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가 MFN

가 FTA

ASEAN

가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 ASEAN(

FTA 2004 3

5 가 2004.11.30 · ASEAN 2

FTA , 2005.2.23 1 17

2007.4

17 2007.4

FTA

2006.4 11 FTA

2007.6.1

가

가

63%

45%

0-5%

〈표 2-14-11〉 보건상품 관세(식품 포함)

구 분	즉시 철폐	2008.1.1 관세 철폐	2010.1.1 관세 철폐	2016년 20%감축	2016년 20%감축 + TRQ	2016년 5% 이하	2016년 50% 감축	2016년 50% 이하	TRQ	양허 제외	계
품목수(개)	648	543	81	89	1	97	25	2	2	24	1,512

라. 한·인도 CEPA

2004 10.5 3.4 4 GDP 가 가

, BRICs(, , ,) 가

가 가 가

FTA

가

2004.10	FTA	8	3
, 2005.1			
2006.2	(Abdul Kalam)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 가		
		2006.3 1	2008.5
10			
	/		
		3	
	가	가	
2007.4 6			8

3. FTA

가. 한-일 FTA

2003.10)	2003.12.22	FTA	8	(2002.7
			, 2004 11	, SPS
6				

· FTA “WTO
 ”
 ,
 (· BIT) 對韓
 가 가
 , FTA
 .
 , 3
 가 .
 .
 ,
 . 2003 12
 가 , 2004 11 6
 가 .

나. 한-멕시코 SECA 및 한·멕시코 FTA

FTA 2004. 4
 가 , 2004. 10 2005. 8 6
 .
 2005. 9 FTA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3 (2006.2, 4, 6). 2007. 12
FTA 1 FTA

2004 12 GDP (6,765) 가
가 , 1.18%, 0.18%
FTA
가

4.

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가 1992
26 가
가
FTA
가
2006. 11 APEC FTA
가
2007.3 1
2008 6
5

· FTA

나. 한-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MERCOSUR , ,
 , 2004.11
 , 2005.5 1 2006.10 4 가 .
 2007.10 -MERCOSUR
 FTA .
 MERCOSUR
 , BRICs MERCOSUR FTA
 가 .
 가
 ,
 FTA가 , .



제3부 부 록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 조직·기능 및 정원현황 - 제1장

예산 현황 - 제2장

보건복지가족 관계법령 제정·개정 현황 - 제3장

주요 유관법인 현황 - 제4장

제 1 장

보건복지 조직 · 기능 및 정원현황

제 1 절

2007년도 조직의 변천*

근 거 (공포일 · 법령호수)	주 요 내 용
2007. 5.16 / 5. 17 (대통령령 제20057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404호)	<p>【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9854호, 2007. 1. 29. 공포 · 시행)에 따라 정책보좌관을 일반직 · 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정보화 담당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 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 • 건강보험 약제관리의 효율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구제 강화, 공중보건위기발생에의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 장관정책보좌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 →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2 • 정보화 인력 : 1명(5급 2, 기능10급 사무원 △1) • 사회서비스 확충 인력 : 7명(고위공무원 1, 4급 2, 5급 5, 6급 3, 기능10급 사무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의료원 기능10급 교환원 △2, 국립부곡병원 기능10급 운전원 △1 ※ 순증 : 고위공무원단 1, 상계 4급 1, 5급 2, 6급 1 (소요정원 4급 1, 5급3, 6급 2)

*집필자 : 창의혁신담당관 김혜진

근 거 (공포일·법령호수)	주 요 내 용
<p>2007. 5.16 / 5.17 (대통령령 제20057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40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약제팀 신설 : 6명(4급 1, 5급 3, 6급 2) • 보험권리구제팀 신설 : 7명(4급 1, 5급 2, 6급 2, 7급 2) • 보건의료정보화 인력 보강 : 2명(5급 1, 7급 1)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력 보강 : 4명(5급, 6급 2) • 관 신설 :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 팀 신설 : 8개(소요정원 3, 수시직제 1, 자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정원 : 사회서비스기획팀, 보험약제팀, 보험권리구제팀 - 수시직제 : 사회서비스기반전략팀 - 자체 : 기획조정팀, 재정운영팀, 사회서비스개발팀, 보건의료정보팀 • 관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정책관 → 건강정책관 • 팀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인사기획팀 → 혁신인사팀 - 운영지원팀 → 총무팀 - 법무지원팀 → 법무팀 - 정보화지원팀 → 정보화팀 - 조사통계팀 → 통계팀 - 사회정책기획팀 → 사회정책팀 - 민간복지협력팀 → 복지지원팀 - 근로연계복지팀 → 자립지원 투자팀 - 혈액장기팀 → 생명지원팀 - 보건정책팀 → 건강투자기획팀 및 건강생활팀으로 확대개편 - 질병관리팀 → 질병정책팀 - 암관리팀 → 암정책팀 - 정신보건팀 → 정신건강팀 - 구강보건팀·공중위생팀 → 생활위생팀 - 보험급여기획팀 → 보험급여팀 - 보험급여평가팀 → 보험평가팀 -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 보건산업기술팀 및 보건의료정보팀으로 확대 개편 <p>【소속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10급 교환원 △2(본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인력 이체) •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신설 : 6명(4급 1, 5급 1, 6급 2, 연구관 1, 연구사1) • 국립부곡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10급 운전원 △1(본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인력 이체) • 국립나주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10급 간호조무원 △3, → 간호서기 + 3 • 국립군산검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10급 위생원 △1 → 기능10급 보건원 + 1

근 거 (공포일·법령호수)	주 요 내 용
<p>2007. 8. 10 (대통령령 제1942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411호)</p>	<p>【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1명) ○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팀 → 성과조직팀 - 아동안전권리팀 → 아동권리팀 <p>【소속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강화 및 검역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소속기관에 소요정원에 반영한 112명(4급 3, 5급 1, 6급 15, 7급 27, 8급 22, 9급 15, 기능9급 5, 연구관 8, 연구사 16)을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의료원(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3, 7급 7 - 질병관리본부(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1, 연구관 2, 연구사 4 - 국립보건연구원(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 6, 연구사 10 - 국립검역소(17명 : 5급 1, 7급 4, 8급 5, 9급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 김포지소 신설 · 인천공항검역소(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소 4명 : 7급 1, 8급 1, 9급 2 김포지소 8명 : 5급 1, 7급 2, 8급 3, 9급 2 평택지소 2명 : 7급 1, 9급 1 군산검역소 1명 : 9급 1 울산검역소 2명 : 8급 1, 9급 1 - 국립서울병원 2명 : 연구사 2 - 국립부곡병원 17명 : 6급 3, 7급 3, 8급 6, 기능9급 5 - 국립춘천병원 3명 : 7급 3 - 국립소록도병원 9명 : 6급 3, 7급 3, 8급 3 - 국립재활원 31명 : 4급 3, 6급 5, 7급 7, 8급 8, 9급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 여성재활과, 시각재활과, 청각재활과 신설 - 국립포항검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10급 운전원 Δ1 → 기능10급 보건원 1 - 국립부곡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9급 위생원 Δ1 → 기능9급 보건원 1 ○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과 → 소아청소년과 · 진단방사선과 → 영상의학과 - 국립서울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방사선과 → 영상의학과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진료과목 명칭 변경 ○ 검역구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출입사무소(인천검역소 → 인천공항검역소 이관)

● ● 제1장 보건복지 조직·기능 및 정원현황

근 거 (공포일·법령호수)	주 요 내 용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4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423호, 2007·11·30.공포·시행)에 따라 통계인력 6명(5급 2, 6급 2, 7급 2)을 증원
2008. 2. 29 / 3. 3 (대통령령 제20679호 및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2008·2·29.공포·시행)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여성부(가족 및 보육업무)+국가청소년위원회+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신설

제2절

역대 장관·차관 명단*

1.

• 장관

성명	재임기간	비고
전진한	1948. 8. 1 ~ 1948. 12. 23	
이윤영	1948. 12. 24 ~ 1950. 11. 22	
허정순	1950. 11. 23 ~ 1952. 1. 1	
최창술	1952. 1. 12 ~ 1952. 10. 8	
박술음	1952. 10. 9 ~ 1955. 2. 16	

• 차관

성명	재임기간	비고
오종식	1948. 8. 3 ~ 1949. 1. 26	
최창술	1949. 1. 27 ~ 1952. 1. 11	
김용택	1952. 2. 9 ~ 1955. 2. 16	

2.

• 장관

성명	재임기간	비고
구영숙	1948. 6. 4 ~ 1950. 11. 25	
오한영	1950. 11. 26 ~ 1952. 2. 4	
최재유	1952. 2. 5 ~ 1955. 2. 16	

*집필자 : 인사과장 양성일

• 차 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이 갑 수	1949. 6. 11 ~ 1950. 12. 26	
임 문 환	1950. 12. 27 ~ 1951. 5. 7	
최 재 유	1951. 6. 25 ~ 1952. 2. 5	
정 준 모	1952. 2. 7 ~ 1954. 2. 17	
정 진 욱	1954. 3. 15 ~ 1955. 2. 17	

3.

• 장 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최 재 유	1955. 2. 17 ~ 1956. 5. 26	
정 준 모	1956. 5. 27 ~ 1957. 6. 16	
손 창 환	1957. 6. 17 ~ 1960. 4. 27	
김 성 진	1960. 4. 28 ~ 1960. 8. 19	
신 현 돈	1960. 8. 23 ~ 1960. 9. 11	
나 용 균	1960. 9. 12 ~ 1961. 1. 29	
김 판 술	1961. 1. 30 ~ 1961. 5. 18	
장 덕 승	1961. 5. 20 ~ 1961. 7. 6	
정 희 섭	1961. 7. 7 ~ 1963. 12. 16	
박 주 병	1963. 12. 17 ~ 1964. 5. 10	
오 원 선	1964. 5. 11 ~ 1966. 4. 14	
정 희 섭	1966. 4. 15 ~ 1969. 10. 20	
김 태 동	1969. 10. 21 ~ 1971. 6. 3	
이 경 호	1971. 6. 4 ~ 1973. 12. 2	
고 재 필	1973. 12. 3 ~ 1975. 12. 9	
신 현 화	1975. 12. 19 ~ 1978. 12. 21	
홍 성 철	1978. 12. 22 ~ 1979. 12. 13	
진 의 종	1979. 12. 14 ~ 1980. 9. 1	
천 명 기	1980. 9. 2 ~ 1982. 5. 20	
김 정 례	1982. 5. 21 ~ 1985. 2. 18	
이 해 원	1985. 2. 19 ~ 1988. 2. 24	
권 이 혁	1988. 2. 25 ~ 1988. 12. 4	
문 태 준	1988. 12. 5 ~ 1989. 7. 18	
김 종 인	1989. 7. 19 ~ 1990. 3. 18	
김 정 수	1990. 3. 19 ~ 1991. 5. 26	
안 필 준	1991. 5. 27 ~ 1993. 2. 25	
박 양 실	1993. 2. 26 ~ 1993. 3. 7	
송 정 속	1993. 3. 8 ~ 1993. 12. 21	
서 상 목	1993. 12. 22 ~ 1994. 12. 23	

• 차 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정진욱	1955. 2. 19 ~ 1956. 6. 28	
신효선	1956. 6. 29 ~ 1960. 5. 9	
김학묵	1960. 5. 12 ~ 1960. 10. 3	
이병학	1960. 10. 4 ~ 1961. 6. 25	
한국진	1961. 9. 1 ~ 1963. 12. 16	
강봉수	1963. 12. 17 ~ 1964. 7. 6	
손정선	1964. 7. 7 ~ 1966. 12. 27	
김도창	1966. 12. 28 ~ 1969. 10. 26	
홍종관	1969. 10. 27 ~ 1974. 3. 6	
박승함	1974. 3. 7 ~ 1979. 12. 19	
라도현	1979. 12. 20 ~ 1981. 8. 5	
김병수	1981. 8. 6 ~ 1983. 7. 12	
이현기	1983. 7. 13 ~ 1986. 5. 23	
최수일	1986. 5. 24 ~ 1988. 3. 4	
이두호	1988. 3. 5 ~ 1989. 7. 19	
윤성태	1989. 7. 20 ~ 1992. 3. 31	
박청부	1992. 4. 1 ~ 1993. 3. 3	
최수병	1993. 3. 4 ~ 1993. 9. 6	
주경식	1993. 9. 7 ~ 1994. 12. 22	

4.

• 장 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서상목	1994. 12. 23 ~ 1995. 5. 15	
이성호	1995. 5. 16 ~ 1995. 12. 20	
김양배	1995. 12. 21 ~ 1996. 8. 7	
이성호	1996. 8. 8 ~ 1996. 11. 12	
손학규	1996. 11. 13 ~ 1997. 8. 5	
최광자	1997. 8. 6 ~ 1998. 3. 2	
주양자	1998. 3. 3 ~ 1998. 4. 30	
김모임	1998. 5. 1 ~ 1999. 5. 23	
차흥봉	1999. 5. 24 ~ 2000. 8. 6	
최선길	2000. 8. 7 ~ 2001. 3. 22	
김원길	2001. 3. 23 ~ 2002. 1. 28	
이태복	2002. 1. 29 ~ 2002. 7. 10	
김성호	2002. 7. 11 ~ 2003. 2. 26	
김화중	2003. 2. 27 ~ 2004. 6. 30	
김근태	2004. 7. 1 ~ 2005. 12. 31	
유시민	2006. 2. 10 ~ 2007. 5. 25	
변재진	2007. 6. 18 ~ 2008. 2. 29	

• 차 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주 경 식	1994. 12. 23 ~ 1995. 6. 2	
이 기 호	1995. 6. 3 ~ 1997. 3. 6	
전 계 후	1997. 3. 7 ~ 1997. 8. 7	
김 용 문	1997. 8. 8 ~ 1998. 3. 8	
최 선 정	1998. 3. 9 ~ 1999. 5. 25	
이 종 윤	1999. 5. 26 ~ 2000. 8. 10	
장 석 준	2000. 8. 11 ~ 2001. 4. 2	
이 경 호	2001. 4. 3 ~ 2002. 7. 18	
신 언 항	2002. 7. 19 ~ 2003. 2. 28	
강 윤 구	2003. 3. 3 ~ 2004. 7. 19	
송 재 성	2004. 7. 20 ~ 2006. 2. 16	
변 재 진	2006. 2. 17 ~ 2007. 6. 17	
문 창 진	2007. 6. 21 ~ 2008. 2. 29	

5. 가

• 장 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김 성 이	2008. 03. 13 ~ 2008. 08. 05	
전 재 희	2008. 08. 06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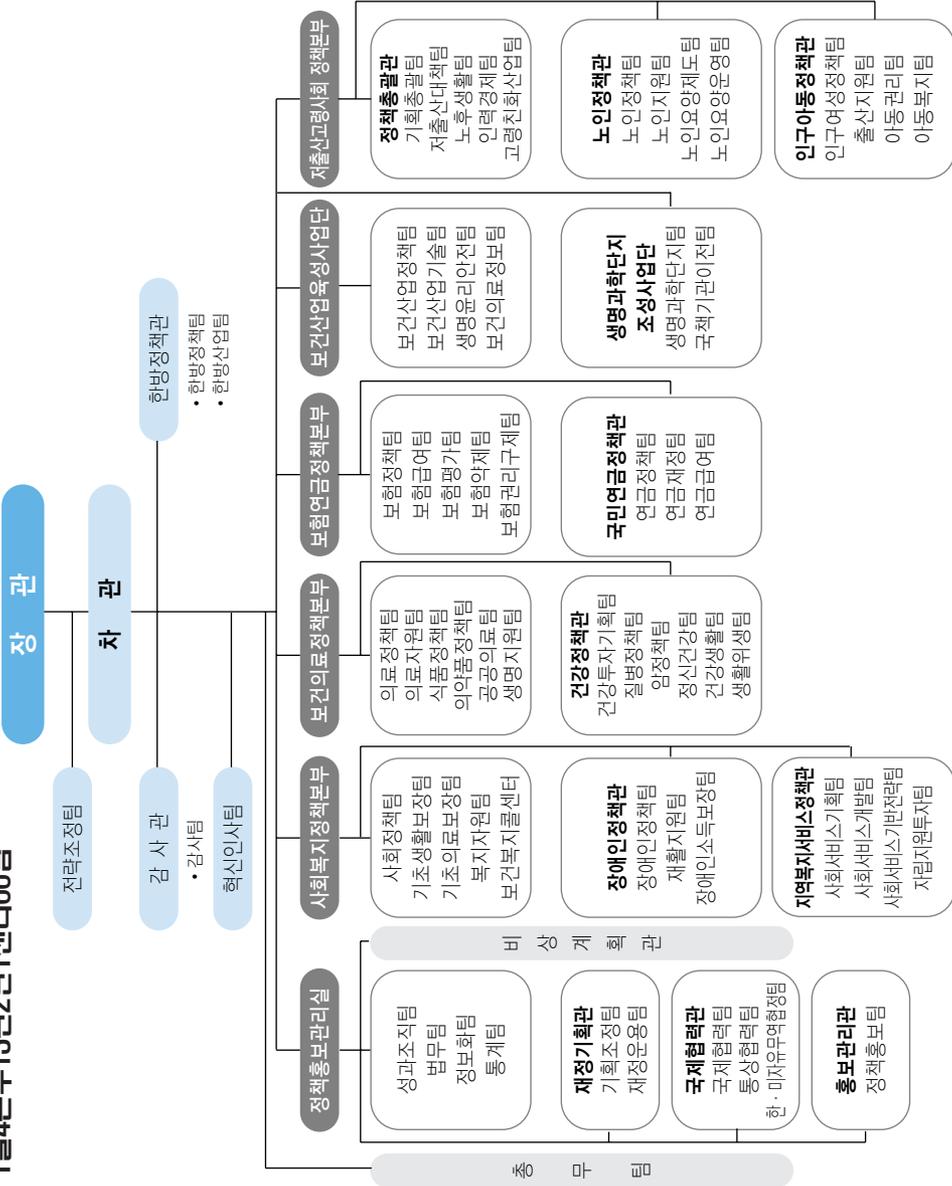
• 차 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이 봉 화	2008. 03. 01 ~ 현재	

제3절

보건복지부 기구도표*

1실4본부13관2단1센터66팀



*집필자 : 창의혁신담당관 김혜진

제 4 절

보건복지부 부서별 기능*

(2007.12.31 현재)

구 분		기 능
전략조정팀		주요 정책현안과제의 발굴·조정,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감사관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사정업무
한방정책관		한방정책 수립·조정, 한방의료인력 수급·관리, 한약처방 표준화, 한약재 규격기준·수급 및 품질관리
혁신인사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인사사무, 변화관리 및 혁신업무
총무팀		문서, 서무, 용도, 회계, 면허등록 및 시설공사 업무
정책홍보관리실	성과조직팀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규제개혁 관련업무, 소송사무 수행 및 행정심판업무, 법규집 편찬·발간 및 법령 질의 회신 총괄
	정보화팀	정보화 장·단기 계획수립 및 추진,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통계팀	보건복지통계관련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통계의 생산 및 관리, 보건복지백서의 발간
	재정기획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결산,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 운영,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수행
	국제협력관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조약 또는 국제협정, 국외기술훈련, 개도국 및 북한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보건복지분야 다자 및 양자 통상업무 총괄·수행, 보건복지분야 통상관련 국제기구 협력
	홍보관리관	보건복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비상계획관	국가비상사태 대비계획 수립 및 조정, 정부연습,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집필자 : 창의혁신담당관 김혜진

구 분		기 능	
사 회 복 지 정 책 본 부	장 애 인 정 책 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지원 및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운영, 지방 이양사업의 총괄	
		기초생활 보장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관리 및 소득·재산에 관한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체계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초의료 보장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 수립·조정, 의료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 수립,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의료급여금 운용 및 관리
		복지자원팀	민간복지지원의 개발 및 육성,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기부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및 육성,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외국인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육성 관리
		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회보험·보건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상담, 위기가정·아동학대·노인학대·자살·응급의료 등 긴급자원 관련 상담 및 기관 연계, 고객만족도 등 상담원 업무 평가
	장 애 인 정 책 관	장애인 정책팀	장애인복지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 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재활지원팀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시설 및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재활정보 및 결연 사업,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개발 및 보급
		장애인소득 보장팀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사업
	지 역 복 지 서 비 스 정 책 관	사회서비스 기획팀	지역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지역복지서비스 인력의 양성, 지역복지서비스 기관의 육성, 보건복지관련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 총괄
		사회서비스 개발팀	지역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복지서비스 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전국 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 기반 전략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자립지원 투자팀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구 분		기 능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등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평가 및 표준 진료 지침 개발 등 의료의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의료기관의 감염대책 및 의료기관의 세탁물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의료자원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 조정,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및 분석,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특수의료장비 수급관리 및 의료용 방사선 장비의 안전 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병원분규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식품정책팀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식품위생심사위원회의 운영
	의약품정책팀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의약품 등의 가격 및 유통정책 수립·조정, 의료용구 및 화장품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육성,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평가 및 혁신 지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단의 운영,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생명지원팀	혈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혈액·장기이식·인체조직 및 체대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혈액수급대책의 수립 및 혈액수가의 관리, 등록헌혈제 도입 및 혈액제도의 조사 연구,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
건강정책관	건강투자기획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건강증진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공중보건조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정책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질병정책팀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의 제·개정, 희귀질환 및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육성, 결핵·한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암정책팀	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암정복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암센터 지원·육성,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암조기검진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정신건강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마약·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에 관한 예방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구 분		기 능
보 건 의 료 정 책 본 부	건 강 정 책 관	<p>건강생활팀</p> <p>국민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민건강관련 사항의 평가·조사 및 연구, 국민영양 상태의 평가 및 개선 지원, 금연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계획의 수립·실행,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p> <p>생활위생팀</p> <p>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미용교육 및 제도 전문화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 및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p>
	보 험 정 책 관	<p>보험정책팀</p> <p>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건강보험 재정관련 정책,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p> <p>보험급여팀</p> <p>건강보험급여(약제 제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 제외)의 기준 수립,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 부담기준의 수립,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약제 제외) 및 지불체계의 수립</p> <p>보험평가팀</p> <p>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에 관한 사항</p> <p>보험약제팀</p> <p>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을 위한 기준 수립,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p> <p>보험권리 구제팀</p> <p>건강보험 권리구제 및 급여 제한 제도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 권리구제업무의 전산화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p>
보 험 요 기 금 정 책 본 부	국 민 연 금 정 책 관	<p>연금정책팀</p> <p>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국민연금업무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p> <p>연금재정팀</p> <p>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관련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국민연금 재정추계계획의 수립, 국민연금기금의 출납·결산 등 회계관리, 국민연금 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p> <p>연금급여팀</p> <p>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국민연금제도 및 기준 관리 개선,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전·사후 관리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p>

구 분		기 능	
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산업정책팀	보건의료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생명공학관련 육성계획 수립, 보건의료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보건산업기술팀	보건의료생명공학관련 육성계획 수립,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총괄 및 조정, 보건의료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의약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 수립,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안전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 및 교육의 지원·육성, 배아의 생성 및 보호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배아연구의 승인체계 구축 및 관리,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개인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수립	
	보건의료정보팀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원격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소비자건강정보에 제공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국책기관이전팀	국책기관 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책기관 이전 사업의 관리 총괄, 기본·실시설계과업지시서의 작성 및 설계도 검토, 건축관련 제반시설 및 공사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건축·토목·조경 시설, 전기·통신 등 소방시설, 방범·보안 등 건물자동화 시설의 계획·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정책 본부	정책총괄관	기획총괄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정책에 필요한 자원 조달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저출산·고령화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 지원, 저출산 고령화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저출산 대책팀	저출산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저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후생활팀	노후생활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노후생활관련 정책의 총괄,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인건강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노인친화적 사회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인력경제팀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 조정,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분석에 관한 사항
		고령친화 산업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총괄·조정,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조정,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구 분		기 능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정책 본부	노인 정책 관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경로연금 등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경로 호친사상 양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유로노인주거복지시설·주택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노인주거개선에 관한 사항	
		노인지원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결연·급식 등 재가노인 보건복지사업, 노인관련 여가시설의 운영 지원,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확대 예방에 관한 사항.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 제도팀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노인보건예방사업 등 노인보건사업종합계획 수립, 노인요양보장관련 시범사업의 시행 및 평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가입자관리 및 전산개발 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반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보장 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치매 및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노인요양 운영팀	노인요양보장 관련 시설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보장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노인요양대상 선정을 위한 판정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계획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평가에 관한 사항, 노인양로시설·노인의료복지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인구 아동 정책 관	인구여성 정책팀	인구 및 출산지원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인구·출산 및 아동관련 정책의 총괄, 출산 친화적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 의식 제고,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출산지원팀	출산지원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팀	아동 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어린이주간 및 어린이 날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팀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의 급식에 관 사항,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제 5 절

보건복지 정원 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명)

기 관 별		계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3,461	2	87	11	2,439	922
본 부	소 계	642	2	9	2	554	75
	장·차관실	14	2	3	2	3	4
	전략조정팀	5				5	
	감사관실	14				12	2
	한방정책관실	16				14	2
	혁신인사팀	13				11	2
	총무팀	29				17	12
	정책홍보관리실	107		5		91	11
	사회복지정책본부	106		1		95	10
	보건의료정책본부	104				92	12
	보험연금정책본부	71				65	6
	보건산업육성사업단	36				33	3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18				17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109				99	10
소 속 기 관	소 계	2,819		78	9	1,885	847
	국립의료원	713		9	1	517	186
	질병관리본부	107				96	11
	국립보건연구원	135				127	8
	국립검역소	331				250	81
	국립정신병원(5)	925		27	5	520	373
	국립소록도병원	201		5		72	124
	국립재활원	233		35	1	163	34
	국립결핵병원(2)	167			2	135	30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7		2		5	

*집필자 : 창의혁신담당관 김혜진

제 2 장

예산 현황*

제 1 절

2007년 예산 개요

2007	11	5,292	2006	18.8%	가
	156	7,177			.
		7.4%			

〈표 3-2-1〉 2007년도

* 일반회계 기준

*집필자 : 재정운용담당관 염민섭

〈표 3-2-2〉 200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증감 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 예산	증 감	증감률(%)
계	10,414,426	11,936,900	1,522,474	14.6
일반회계	9,706,335	11,529,241	1,822,906	18.8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7,494	-	△67,494	순감
재정용자특별회계	60,600	-	△60,600	순감
농특세관리특별회계	164,488	-	△164,488	순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73,024	73,024	순증
균형발전특별회계	-	987	987	순증
국유재산특별회계	45,605	-	△45,605	순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71,500	157,520	△113,980	△42.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8,404	176,128	77,724	79.0

제 2 절

분야별 예산내역

2007 8 1,544
 68.3%, 3 5,050 29.4%
 2,587 (2.2%), 가 424 (0.3%), 가 2,775 (2.3%)

〈표 3-2-3〉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10,414,426	11,936,900	1,522,474	14.6
■ 일반지출계	10,133,889	11,659,412	1,525,523	15.1
• 사회복지분야	6,530,109	8,154,431	1,624,322	24.9
- 기초생활보장	5,341,819	6,575,921	1,234,102	23.1
- 취약계층지원	535,338	720,211	184,873	34.5
- 공적연금(농어민연금)	67,300	500	△66,800	△99.3
- 보육, 가족 및 여성	26,889	31,334	4,445	16.5
- 노인	406,534	572,758	166,224	40.9
- 사회복지일반	152,229	253,707	101,478	66.7
• 보건분야	3,603,780	3,504,981	△98,799	△2.7
- 보건의료	378,796	393,950	15,154	4.0
- 건강보험	3,224,984	3,111,031	△113,953	△3.5
■ 전출금 등	280,537	277,488	△3,049	△1.1
• 회계, 계정간거래	91,213	82,553	△8,660	△9.5
• 기금전출금	189,324	194,935	5,611	3.0
※ 별도 통계				
• 인건비	235,431	258,719	23,288	9.9
• 기본경비	43,726	42,451	△1,275	△2.9

※ 일반회계 기준

제 3 장

보건복지가족 관계법령 제정·개정현황*

제 1 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률 현황

(2008.6. 현재)

분 야	법 률 명	89개
기획조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2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1
한약정책	한약육성법	1
건강정책	기생충질환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에관한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국립암센터법, 암관리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농어촌등보건의료취약지역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별법, 지역보건법,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19

*집필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홍인

분야	법률명	89개
보건산업 육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외국인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0
연금정책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2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 관한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12
장애인 정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안	4
아동 청소년 정책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

2. (8202 , 2007. 1. 3)

3. (8204 , 2007. 1. 3)

1

4. (8205 , 2007. 1. 3)

가

1

11

1

5. (8206 , 2007. 1. 3)

가

6. (8248 , 2007. 1. 19)

가

7. (8334 , 2007. 4. 6)

가 10

7

8. (8335 , 2007. 4. 6)
가

9. (8341 , 2007. 4. 10)
, 가
가

10. (8364 , 2007. 4. 11)
「 2

11. (8365 , 2007. 4. 11)
, 가

12. (8366 , 2007. 4. 11)

13. (8367 , 2007. 4. 11)

가

가,

가

가

14. (8385 , 2007. 4. 25)

65 「 2 8

가 ()

100 20

가 가

가

(30% 20%)

15. (8403 , 2007. 4. 27)

65 65

20. (8490 , 2007. 5. 25)

^ - ^ -

21. (8541 , 2007. 7. 23)

9%
60% 2008 50% , 2009 2028
0.5%p 2028 40%

6 가
가 가 가
12 , 18 가 가

가

22. (8557 , 2007. 7. 27)

가 5% 2028 10%

- ,
- ,
2008 1
가
16.5% 20%

2009 1 1 가 65 70%

- 가

23. (8558 , 2007. 7. 27)

가
가
300 300 1

24. (8559 , 2007. 7. 27)

, , 가「 」 23 2
300

25. (8563 , 2007. 7. 27)

가
가 가
가 가

26. (8570 , 2007. 7. 27)

가 가 . .

27. (8608 , 2007. 8. 3)

- . . 가 가 , 가

- 60

-

가

-

28. (8609 , 2007. 8. 3)

-

가

-

가 가

29. (8610 , 2007. 8. 3)

“ ”

가

“ ”

”

「 」

777

5

3

가

10

30. (8634 , 2007. 8. 3)

31. (8641 , 2007. 10. 17)

답 가 : 100 40 , 100 90
답 , , : 100 30 , 100 70
답 :

32. (8642 , 2007. 10. 17)

가

33. (8643 , 2007. 10. 17)

가가

가

가

가

34. (8644 ,
2007. 10. 17)

35. (8645 , 2007. 10. 17)

- 「
」
36. (8646 , 2007. 10. 17)
(,
)
(INCI)
37. (8647 , 2007. 10. 17)
가가 가
38. (8648 , 2007. 10. 17)
가가 가
가
39. (8649 , 2007. 10. 17)
가가 가
가
40. (8650 , 2007. 10. 17)
가가 가
41. (8651 , 2007. 10. 17)
가가 가
42. (8652 , 2007. 10. 17)
가가 가
(義肢·補助器)

43. 가 (8655 , 2007. 10. 17)

「 가 」 「 가 」
 가 22 가
 65 가

44. (8688 , 2007. 12. 14)

가 가
 「 」 「 」
 .

45. (8689 , 2007. 12. 14)

「 가 」

46. (8690 , 2007. 12. 14)

(6)

47. (8691 , 2007. 12. 14)

48. (8692 , 2007. 12. 14)

49. (8693 , 2007. 12. 14)

50.가 (8695 , 2007. 12. 14)

5 가

가

3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51. (8779 , 2007. 12. 21)



대통령령 제정·개정 현황

1. [국민연금법](#) ([19836](#) , 2007. 1. 18)
가
가
2. [국민연금법](#) ([19878](#) , 2007. 2. 8)
「 [국민연금법](#) 」 ([8004](#) . 2006. 9. 27. , 2006. 12. 28.)
- ,
-
3. [국민연금법](#) ([19882](#) ,
2007. 2. 12)
- .
- .

4. (19918 , 2007. 2. 28)
- 1
5. (19946 , 2007. 3. 22)
- 「 」 (8119 , 2006. 12. 28. , 2007. 1. 1.)
- 「 」 31 「 」
6. (19969 , 2007. 3. 27)
7. (20001 , 2007. 4. 6)
- 「 」 (8203 , 2007. 1. 3. , 2007. 4. 4.)
- 가

8. (2007 , 2007. 4. 12)

9. (20031 , 2007. 4. 27)

(8067 ,
2006. 10. 27. , 2007. 4. 28.)

10. (20032 , 2007. 4. 27)

11. (20039 , 2007. 4. 27)

(8065 , 2006. 10. 27. , 2007. 4. 28.)
가

12. (20031 , 2007. 5. 18)

(8067 ,
2006. 10. 27. , 2007. 4. 28.)

13. (20106 , 2007. 6. 26)

8110 , 2006. 12. 28. , 2007. 6. 29.)

14. (20130 , 2007. 6. 28)

5 · 18 가

15. (20131 , 2007. 6. 28)

「 (2006. 12. 28. , 2007. 7. 1.)

16. (20156 , 2007. 7. 3)

「 (8201 , 2007. 1. 3. , 2007. 7. 4.)

가

17. (20157 , 2007. 7. 3)
「 」 (8202 , 2007. 1. 3. , 2007. 7. 4.)

- ,
가
.
-

18. (20158 , 2007. 7. 3)
「 」 (8206 , 2007. 1. 3. , 2007. 7. 4.)

- ,
가
.
-

19. (20190 , 2007. 7. 25)
「 」 (8153 , 2006. 12. 30. , 2007. 7. 1.)

- ,
가

20. (20287 , 2007. 9. 27)
 가 「 (8403 ,
 2007. 4. 27. , 2007. 10. 1.)

21. (20288 , 2007. 9. 27)
 가

22. (20291 , 2007. 9. 28)
 「 」 (8364 , 2007. 4. 11. , 2007. 7. 12.)

23. (20292 , 2007. 9. 28)
 「 」 (8366 , 2007. 4. 11.)

24. (20295 , 2007. 9. 28)
 「 」 (8008 2006. 9. 27. , 2007. 9. 28.)

- (群島) 가 ,

- 가 .

25. (20296 , 2007. 9. 28)

「 」 (8385 , 2007. 4. 25.
, 2008. 1. 1.)

- , 가

- 가 .

26. (20316 , 2007. 10. 4)

27. (20323 , 2007. 10. 15)

「 」 (8367 , 2007. 4. 11. , 2007. 10. 12.)

- .

- ,

28. (20356 , 2007. 10. 31)

1 가
가

29. (20432 ,
2007. 12. 6)

(醫藥分業) 「 」 .
가

30. (20447 , 2007. 12. 13)

「 」 (8608 , 2007. 8. 3. ,
2008. 2. 4., 2008. 4. 4., 2008. 8. 4.)

200

- 65

31. (20448 , 2007. 12. 13)

(8005 , 2006. 9. 27. , 2007. 1. 1.)

제 4 절

부령 제정·개정 현황

1. (380 , 2007. 1. 12)
 「 」 (7586 , 2005. 7. 13. , 2007. 1. 14.)
 가 .
 - . , 가
 - .
2. (381 , 2007. 6. 13)
 가 가
 “ ” “ ”
 .
3. (382 , 2007. 1. 26)
 . .
4. (375 , 2007. 1. 26)
 .

5. (383 , 2007. 1. 30)
가 2 가 「
(2002. 3. 30. 6686)

6. (384 , 2007. 2. 8)
「 」 (19878 , 2007. 2. 8 .)
,
- . . 가
-

7. (385 , 2007. 2. 7)
. .
.

8. (386 , 2007. 2. 20)
,
.

9. (387 , 2007. 3. 6)
가
가 .

10. (388 , 2007. 3. 7)

11. (389 ,
2007. 3. 9)

(19882 , 2007. 2. 12.)

- 가

-^ -

12. (390 , 2007. 3. 27)

가 가

가

13. 가 (. , 가 13 ,
2007. 3.29)

「 . 」 (8119 , 2006. 12. 28 , 2007. 3. 29)
 , , .
가
 .

14. (391 , 2007. 4. 2)
가 .

^ _ (8037 , 2006. 10. 4. , 2007. 4. 5.)
가

15. (392 , 2007. 4. 5)
2008 1 1 ^ 가 _ () ()
() , ,
, () . .

16. (393 , 2007. 4. 6)
,
^ (8203 , 2007. 1. 3. , 2007. 4. 4.) ^ _
(20001 , 2007. 4. 6. .)
- ,
20 .

17. (394 , 2007. 4. 9)

^ _ (8203 , 2007. 1. 3. , 2007. 4. 4.)
^ _ 4

18. (395 , 2007. 4. 27)

. 가
^ _ (8066 , 2006. 10. 27. , 2007. 4. 28.)

19. 가 (396 , 2007. 4. 27)

. 가 ^ _ (2006. 10. 27.
, 2007. 4. 28.) 가

20. (397 , 2007. 5. 2)

^ _ (8067 , 2006. 10. 27. ,
2007. 4. 28.)

21. (398 , 2007. 5. 1)

「 」 (7936 , 2006. 4. 28. , 2007. 4. 29.)
(鴉馬)

22. (399 , 2007. 4. 30)
 「 」 (8065 , 2006. 10. 27 , 2007. 4. 28)
 가 ,

23. (400 , 2007. 5. 1)
 가

24. (401 , 2007. 5. 4)
 ^ _ (8035 2006. 10. 4 , 2007. 4. 5)
 가

25. (402 , 2007. 5. 8)
 ^ _ (8201 , 2007. 1. 3. , 2007. 7.4.)

26. (403 , 2007. 5. 17)
 3
 ^ 가 (19796 , 2006. 12. 29. , 2007. 1. 1.)
 6 (5 2 , 6 1 , 7 1 , 1 , 1)
 , (3·4 1 , 4·5 6 , 4 1 , 5 6)

27. (404 , 2007. 5. 17)
 ^

- 가 (20057 , 2007. 5. 16.)
- 가
28. (405 , 2007. 6. 15)
- 「 (2006. 12. 28. , 2007. 7. 1.)
- 「
29. (406 , 2007. 6. 29)
- 「
- (2006. 12. 28. , 2007. 7. 1.)
- 가
30. (407 , 2007. 7. 6)
- ^ _ (8335 , 2007. 4. 6. , 2007. 7. 7.)
- 가 가
31. (408 , 2007. 7. 25)
- 가
- 「 」 (2006. 10. 27. , 2007. 4. 28.) 가
- 가

32. (409 , 2007. 7. 27)

「 」 (8366 , 2007. 4. 11.) 「
」 ,

33. (410 , 2007. 7. 27)

가 「 」 (8153 , 2006. 12. 30.
, 2007. 7. 1.)

34. (411 , 2007. 8. 10)

「 가 (20220 , 2007. 8. 10.)
· FTA , , EU FTA
가 .
, 112

35. (412 , 2007. 8. 24)

가「 「 」 (8488 ,
2007. 5. 25. , 2007. 8. 26.)
- 가「 」 6

36. (413 , 2007. 9. 10)

가

「 」 (8275 , 2007. 1. 26. , 2007. 9. 30.)

- . 가

37. 가 (가 14 , 2007. 9. 1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8. (414 , 2007. 9. 20)

「 가 (20236 2007. 8. 22. .

, 20273 , 2007. 9. 7. .)

114 , 2007. 90)

, (HACCP)

A가

- , 가
41. (417 , 2007. 10. 16)
- 「 」 (8385 , 2007. 4. 25. , 2008. 1. 1.) 가
42. (418 , 2007. 10. 17)
- 가 「 」 (8403 , 2007. 4. 27. , 2007. 10. 1.) ,
43. (419 , 2007. 10. 18)
- 「 가 (20266 , 2007. 9. 14. .) 가
44. (420 , 2007. 10. 19)
- 「 」 (8366 , 2007. 4. 11. .)

49. (425 , 2007. 12. 28)

가
가

50. (426 , 2007. 12. 28)

가

51. (427 , 2007. 12. 28)

「 」 (20461 , 2007. 12. 27. , 2008. 1. 1.)
「 」 (428 , 2007. 12. 28.
, 2008. 1. 1.) 1 가 가
1 가

가

52. (428 , 2007. 12. 28)

「 」 (20461 , 2007. 12. 27. , 2008. 1. 1.)
1 가 가 1

가 가 가

가

53. (429 , 2007. 12. 31)
4

54. (430 , 2007. 12. 31)
가 가 가 가
「 」 (8541 , 2007. 7. 23. , 2007. 7. 23.
2008. 1. 1.)
- 가 가 1
- .
-

제 4 장

주요 유관법인 현황*

(2008. 6. 30 현재)

번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1	대 한 적 십 자 사	이 세 웅	서울 중구 남산동3가 32	3705-3514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 법 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2194-7300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 종 호	서울 서초구 효령로 168	705-6114
4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3270-9012
5	국 민 연 금 공 단	박 해 춘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	2240-1114
6	국 립 압 센 터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1	031-920-0114
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 문 식	서울 광진구 지양동 224번지	476-2333
8	대 한 결 핵 협 회	김 성 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150	2636-5271
9	한 국 청 소 년 상 담 원	차 정 섭	서울 중구 신당동 292-61	2250-3000
10	한 국 청 소 년 수 련 원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시 목천읍 고촌리 246-1)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용평면 백옥포리산154-1)	041-620-7700 033-330-0800
1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김 준 명	서울 관악구 신림동	861-4114
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 상 석	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	3156-1114
13	한 국 장 애 인 개 발 원	차 흥 봉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3433-0600
14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천 상 기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양회관 4층	6430-0900
15	대 한 의 사 협 회	주 수 호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794-2474
16	대한치과의사협회	이 수 구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	2024-9100
17	대한한의사협회	김 현 수	서울 강서구 가양동 26-27	2657-5000
18	대한간호협회	신 경 림	서울 중구 쌍림동 88-7	2279-3618
19	대한조산협회	서 란 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5-5	2279-1972
20	대 한 병 원 협 회	지 훈 상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1 현대빌딩 13층	718-7521
21	대 한 약 사 회	김 구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89-3	581-1201
22	한국식품공업협회	박 승 복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6	585-5052
23	인구보건복지협회	최 선 정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	2634-8212
24	한국건강관리협회	이 순 형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097	2601-6141
25	한국한센복지협회	이 헌 기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산 86	031-452-7091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 득 린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2077-3906
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세 중	서울 중구 정동 1-17번지 6층	6262-3002
28	대 한 노 인 회	안 필 준	서울 용산구 효창동 9	715-2928
29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 성 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1461	718-9363~4
30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황 용 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06-27 인덕원프라자 11층	031-425-0701

*집필자 : 규제개혁담당관 노홍인

2007년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년 8월 발행

발행인 : 전 재 희

편집인 : 유 영 학

발행처 : 보건복지가족부

편집참여자 : 정책통계담당관 : 김 영 균

담당 사무관 : 최 만 기

담당 주무관 : 공 헌 식

편 집 : design zone 02) 2264-6764

인 쇄 : (주)문 영 사 02) 504-2275

본 백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백서의 내용 중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02-2023-7161~7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백서는 정부간행물판매센터(전화: 02)734-6818, 394-0337), 교보문고(전화: 1544-1900), 영풍문고(전화: 1544-9020)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